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외교통일위 · 국방위】

2014. 10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Ⅱ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총 괄 I 김 수 흥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I 윤 용 중 예산분석심의관
정 환 철 경제예산분석과장
서 세 욱 산업예산분석과장
문 중 열 사회예산분석과장
박 동 찬 행정예산분석과장
김 중 화 법안비용추계1과장
이 선 주 법안비용추계2과장

작 성 I 전 용 수 남 희 산업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정 민 주 이 경 주 사회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장 석 립 오 동 환 김 수 진 행정예산분석과 예산분석관

지 원 I 이 인 희 행정예산분석과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외교통일위·국방위】

2014. 10

발 간 사

최근 우리 경제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의 질적 성장, 유럽의 디플레이션 위험 등 대외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대내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감소, 잠재성장률의 하락 추세 등으로 저성장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확대 등 재정지출 소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세수실적은 최근 3년 연속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총수입 382.7조원, 총지출 376.0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 지난 9월 22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년보다 총지출을 5.7% 확대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경기 회복과 경제활성화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판단됩니다. 국회의 심사 과정에서는 세입 전망 및 확장적 재정지출, 그리고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절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날 본회의에 예산안을 자동 부의하게 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2014년 정기국회는 「헌법」상 의결기한을 준수하면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하는 책임을 동시에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 9권으로 구성된 「2015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분야별 분석」 및 올해 신규로 발간하는 「거시·총량 분석」 보고서는 분야별 자원배분 및 재정총량 관련 주요 현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과 보좌진, 위원회 그리고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014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국 경 복

「2015년도 예산안분석시리즈」 구성 및 내용

□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시리즈 1~4)

- : 15개 상임위원회 소관 주요 재정사업 분석
- 부처별 분석 I: 운영위·법사위·정무위·재정위
- 부처별 분석 II: 미방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
- 부처별 분석 III: 안행위·농해수위·산업위
- 부처별 분석 IV: 복지위·환노위·국토위·여성위

□ 2015년도 예산안 분야별 분석 (시리즈 5~6)

- : 12개 분야별 주요 현안 및 향후 재정운용 과제 분석
- 분야별 분석 I: 복지·교육·문화·R&D·산업 등 5개 분야
- 분야별 분석 II: SOC·농림·환경·국방·외통·안전·일반지방행정 등 7개 분야

□ 2015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시리즈 7)

- : 총수입·총지출·재정수지·국가채무 및 재정운용에 관한 거시·총량적 분석

□ 2015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시리즈 8)

- :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평등 추진계획 및 성별 수혜 분석

□ 2015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시리즈 9)

- : 부처별/분야별/거시·총량/성인지 예산서 분석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
-

요 약

□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15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의 세 부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351개 사업에 대해 분석 의견을 제시

- 부처별 분석 I: 운영위·법사위·정무위·재정위 소관
- 부처별 분석 II: 미방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 소관
- 부처별 분석 III: 안행위·농해수위·산업위 소관
- 부처별 분석 IV: 복지위·환노위·국토위·여성위 소관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결과]

구 분	소관 위원회	분석 사업(건)
부처별 분석 I	국회운영위원회	4
	법제사법위원회	17
	정무위원회	18
	기획재정위원회	25
부처별 분석 II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1
	외교통일위원회	10
	국방위원회	33
부처별 분석 III	안전행정위원회	3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9
부처별 분석 IV	보건복지위원회	24
	환경노동위원회	30
	국토교통위원회	25
	여성가족위원회	5
합 계		351

□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① 2015년도 예산안 개요: 각 부처별 예산안 현황,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② 예산안의 주요 특징: 해당 부처의 예산안 편성 중점 및 특징
- ③ 주요 사업 분석: 예산·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의 타당성·적정성·효과성 분석
- ④ 예산안 분석 요약: 분석 결과를 예산 과다 편성 등 10개 유형별로 분류

□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안 분석은 ① 필요성·공익성, ② 사업의 유사·중복, ③ 예산 과다 또는 과소 편성, ④ 사업계획 부실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산 과다 편성이 가장 큰 비중(82건, 약 23%)을 차지

[유형별 분석 결과]

유 형	사업수(건)	비중(%)
1. 필요성·공익성 결여	9	2.6
2. 사업의 유사·중복	18	5.1
3. 예산 과다 편성	82	23.4
4. 예산 과소 편성	25	7.1
5. 사업계획 부실	53	15.1
6. 법·제도 미비	41	11.7
7. 집행실적 부진	44	12.5
8. 사업성과 미흡	37	10.5
9. 결산과의 연계	4	1.1
10. 기타	38	10.8
합 계	351	100.0

차 례

제1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3

- 1. 예산안 현황 3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7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1

III. 주요 사업 분석 / 13

- 1.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감소 추세를 반영한 예산 감액 검토 13
- 2. 건물대여료: 정확한 통계를 적용한 예산 증액 검토 16
- 3.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벤처투자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19
- 4.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법적 근거 미흡에 따른 사업 재검토 22
- 5.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필요 25
- 6. 우주개발 관련 투자: 차세대중형위성 발사 시기 재검토 필요 29
- 7. 수출용 신행연구로 개발 및 실증: 집행가능성 낮은 건설공사비의 감액 검토 .. 34
-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기술개발 이전에 실증단지 구축 추진 부적절 37
- 9. 사이언스 빌리지: 기업 출연금 활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40
- 10. SW전문인력역량강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통합 추진 검토 .. 44
- 11. 정보격차해소지원: 고령층 IT창업지원교육 확대 편성 검토 47
- 12.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사업 수행 방안 마련 ... 50

13.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정 필요 ..	54
14.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공인전자주소 이용 확대 방안 마련	58
15. 3D프린팅 산업육성기반구축: 기술확산지원사업 내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과 유기적 연계 검토	60
16.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고려 방안 마련	67
17.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 여부 검토	69
18.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 보완 검토	72

[방송통신위원회]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77

1. 예산안 현황	7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79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81

III. 주요 사업 분석 / 83

1.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 검토	83
2.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집행 관리 방안 마련 ...	88
3.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 계획 정비 필요	92
4.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계층별 인적 구성과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95

[원자력안전위원회]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100

- 1. 예산안 현황 100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01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02

III. 주요 사업 분석 / 103

- 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103
- 2.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전 해체 및 오염제거 기술개발 비중 확대 필요 .. 108

제2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115

- 1. 예산안 현황 115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18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20

III. 주요 사업 분석 / 123

- 1. 교육급여: 수급인원 과다 추계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필요 123
-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계층별 지원단가 조정 검토 .. 127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금 확충 필요	131
4.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수입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37
5.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예산 실행 시기를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140
6.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출연금 총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 마련	143
7. 대학평가 및 운영: 미인정 평가인증기관 지원 지속여부 재검토 및 기관별 지원기준 명확화	147
8.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 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150
9. 인문학 진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과 유사·중복 등	152
10. 학술단체지원: 기존 학술대회 개최예산 활용을 통한 세계화학대회 개최예산 적정 수준 반영	155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비 적정 반영	157
12. 대학 특성화사업: 대학 학과별 특성화에 집중된 사업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 필요	159

[문화체육관광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165

1. 예산안 현황	16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169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173

III. 주요 사업 분석 / 176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신규 반영된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176
2.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투자가 미흡한 장르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 마련	179

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대중음악 장르별 제작지원 사업의 중소형 제작사 중심 지원체계 구축 필요	182
4.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시스템 체계화 및 현황 조사 후 추진	184
5. 종교문화시설건립: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186
6. 해외문화원 운영: 임차료·일반수용비간 비목 조정 및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 사업 적정 예산 반영 필요	189
7.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지역문예회관 공연 지원의 적정 수준 예산 반영 필요	193
8. 유희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과다편성된 연구용역비 적정 수준 반영 필요	196
9.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기념관 건립 예산 일부 조정 검토	198
10.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추진 방식 개선 검토	201
11.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통합문화이용권 수요를 반영한 예산 규모 검토 필요 ..	204
1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탐방로 조성사업 통합관리 필요	208
13.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관광경찰 사업 경찰청으로 이관 검토	212
14.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방자치단체 캠핑장 조성사업 실집행 제고 대책 마련 ..	215
15.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학교체육시설개방 사업 시범운영 후 사업 지속여부 결정 필요	217
16.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집행부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20

[문화재청]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27

1. 예산안 현황	22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29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31

III. 주요 사업 분석 / 233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보조): 집행률 제고 및 문화재수리업 관리·감독 강화 등 233
2. 고도 보존 및 육성: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중 고도 보존 관련 예산 분리 편성 필요 238
3.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관람실적 부진을 고려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240

제3장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45

1. 예산안 현황 24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46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49

III. 주요 사업 분석 / 251

1.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동남아 문화원 건립 적정 예산 반영 필요 251
2.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근거법령 제정,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하여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사업 검토 254
3. 공공외교 역량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관별 역점사업 개발 필요 .. 257
4. 재외국민보호: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확대 제공에 대한 검토 260
5.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일용직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할 필요 263

[통일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67

- 1. 예산안 현황 267
-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69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71

III. 주요 사업 분석 / 273

- 1.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 평화통일 역사자료에 대한 사전조사 부족 .. 273
- 2. 학교 통일교육 강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강사 인프라 구축 필요 276
-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기본경비성 예산을 동사업 내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 279
- 4. DMZ세계평화공원조성: 남·북 간 합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28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85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86

III. 주요 사업 분석 / 287

- 1. 자문회의 운영: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활용 계획 부실 287

제4장 국방위원회

[국방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293

- 1. 예산안 현황 293
- 2. 신규 및 주요 중액사업 296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299

III. 주요 사업 분석 / 301

- 1.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301
- 2. 기본피복: 수의계약 비중 과다 개선 필요 304
- 3. 특수피복: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307
- 4. 통신전자장비 획득: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기 계약 추진 필요 311
- 5. 민간위탁교육: 국외 전문학위과정 체제비 지급기준 개선 검토 314
- 6. 전직지원교육: 취업역량교육사업 국방부로 이관 필요 318
- 7. 과학화훈련: 합참 합동연습지원단 민간 전문인력(비상근) 감축 검토 322
- 8.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홍보매체의 활용도 제고 검토 326
- 9. 병영문화개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 필요 330
- 10. 정책연구활동(R&D): 연구용역의 적극 공개·활용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334
- 11. 방위비분담금: 제9차협정 제도개선사항의 조속한 이행 추진 338
- 1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대책 검토 343
- 13. 1군지사 이전: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348
- 14. 동석사업: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351
- 15. 17사단 101연대: 총사업비 재검토 등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354
- 16. 예비군훈련대: 특별회계 사업으로의 편성 부적정 356
- 17. 공공기금 예탁금: 세입수납 실적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필요 ... 359

[병무청]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 365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 366

III. 주요 사업 분석 / 367

1. 병력동원소집관리: 워크숍개최 예산의 적정 비목 편성 필요 367

제 1 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및 4개 기금(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2,377억원(2.1%) 증액된 11조 3,267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3,254억원에서 2015년 4,739원으로 45.6% 증가하였으며, 우정사업 관련 3개 특별회계가 7조 6,339억원에서 8조 527억원으로 5.5% 증가하였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5,083억원에서 2,408억원으로 52.6% 감소하였다.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예 산	8,853,105	8,042,003	8,634,888	592,885	7.4
-일반회계	435,362	325,378	473,851	148,473	45.6
-지역발전특별회계	2,134	45	1,073	1,028	2,284.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0,189	21,908	45,916	24,008	109.6
-국립중앙과학관(책특)	29,429	28,199	30,723	2,524	9.0
-국립과천과학관(책특)	39,551	32,555	30,584	-1,971	-6.1
-우편사업특별회계	3,637,361	3,803,718	4,041,281	237,563	6.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861,218	3,055,552	3,196,120	140,568	4.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97,861	774,648	815,340	40,692	5.3
(우정사업 관련 3개 특별회계)	8,296,440	7,633,918	8,052,741	418,823	5.5
기 금	2,860,294	3,046,926	2,691,781	-355,145	-11.7
-과학기술진흥기금	299,321	508,287	240,838	-267,449	-52.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7,115	249,375	256,558	7,183	2.9
-방송통신발전기금	1,141,382	1,078,542	1,148,186	69,644	6.5
-정보통신진흥기금	1,202,476	1,210,722	1,046,199	-164,523	-13.6
총 계	11,713,399	11,088,929	11,326,669	237,740	2.1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전용수 예산분석관(yongsu@assembly.go.kr, 788-4628)

남 희 예산분석관(nhec@assembly.go.kr, 788-4632)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5,462억원(3.3%) 증액된 17조 2,427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5조 4,062억원에서 2015년 5조 8,217억원으로 7.7%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86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31.5% 증가하였다.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은 2,494억원에서 2,566억원으로 2.9% 증가하였다.

[표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예 산	12,598,685	13,649,523	14,550,879	901,356	6.6
-일반회계	4,781,923	5,406,155	5,821,738	415,583	7.7
-지역발전특별회계	180,772	186,030	244,682	58,652	3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49,319	359,301	370,411	11,110	3.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914	3,365	-	-3,365	-100.0
-국립중앙과학관(책특)	28,855	28,199	30,723	2,524	9.0
-국립과천과학관(책특)	32,618	32,555	30,584	-1,971	-6.1
-우편사업특별회계	3,567,084	3,803,718	4,041,281	237,563	6.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853,452	3,055,552	3,196,120	140,568	4.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89,748	774,648	815,340	40,692	5.3
(우정사업 관련 3개 특별회계)	7,210,284	7,633,918	8,052,741	418,823	5.5
기 금	2,860,294	3,046,926	2,691,781	-355,145	-11.7
-과학기술진흥기금	299,321	508,287	240,838	-267,449	-52.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7,115	249,375	256,558	7,183	2.9
-방송통신발전기금	1,141,382	1,159,497	1,148,186	-11,311	-1.0
-정보통신진흥기금	1,202,476	1,129,767	1,046,199	-83,568	-7.4
총 계	15,458,979	16,696,449	17,242,660	546,211	3.3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14조 3,136억원으로 2014년 13조 6,537억원 대비 6,599억원(4.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조 7,591억원, 우정사업 관련 3개 특별회계 6조 1,515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7,866억원 등이다. 참고로 R&D 예산은 6조 5,044억원으로 2014년 6조 874억원 대비 6.9% 증가하였다.

[표 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총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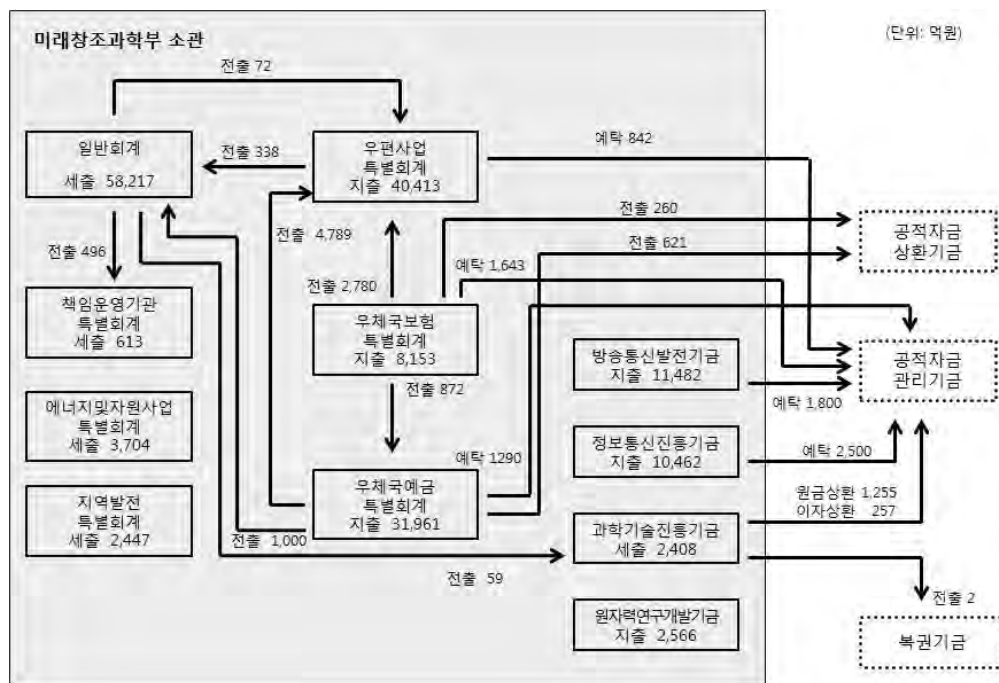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예 산	12,598,685	12,074,072	12,583,400	509,328	4.2
-일반회계	4,781,923	5,355,394	5,759,060	403,666	7.5
-지역발전특별회계	180,772	186,030	244,682	58,652	3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49,319	359,301	370,411	11,110	3.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4,914	3,365	-	-3,365	-100.0
-국립중앙과학관(책특)	28,855	26,539	29,113	2,574	9.7
-국립과천과학관(책특)	32,618	30,594	28,617	-1,977	-6.5
-우편사업특별회계	3,567,084	3,274,690	3,477,035	202,345	6.2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853,452	2,553,094	2,414,636	-138,458	-5.4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89,748	285,065	259,846	-25,219	-8.8
(우정사업 관련 3개 특별회계)	7,210,284	6,112,849	6,151,517	38,668	0.6
기 금	2,860,294	1,579,657	1,730,225	150,568	9.5
-과학기술진흥기금	299,321	82,617	78,018	-4,599	-5.6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17,115	198,747	197,465	-1,282	-0.6
-방송통신발전기금	1,141,382	671,804	786,583	114,779	17.1
-정보통신진흥기금	1,202,476	626,489	668,159	41,670	6.7
총지출	15,458,979	13,653,729	14,313,625	659,896	4.8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가 전출되고 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우체국을 통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우편사업특별회계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미래창조과학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 신규 및 주요 중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37개 사업, 1,726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중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은 창조경제 지원 확대를 위해 신설되었다.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구축은 중소기업 지원 연구개발 예산이다.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일반회계 (17개)	산·학·연·지역 연계 중소기업 신사업 창출 지원	15,000
	신시장창조 차세대의료기기개발	11,600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10,266
	6개월 챌린지 플랫폼 구축운영	10,000
	기업공감 원스톱서비스 구축	8,036
	첨단바이오횰약품 글로벌진출	7,500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4,500
	어린이 과학문화공간 조성	4,315
	C1가스 리파이너리	4,000
	창의소재디스커버리	3,90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3,000
	국립부산과학관운영	1,715
	사이언스 빌리지	1,680
	국가지도통신망 EMP방호 구축	1,320
	평창 ICT 동계올림픽 추진	1,000
	한국인터넷진흥원 지방이전	116
	민간자격 제도 관리 운영	10
지역발전특별회계 (5개)	해외통신 사업자 인증랩 구축	1,500
	한국전기연구원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지원	7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조업ICT융합지원동건립	50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지원	2,00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첨단의료유전체연구원 지원	700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1개)	친환경에너지타운	5,100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과학기술진흥기금(1개)	두드림프로젝트	2,000
정보통신진흥기금 (10개)	커넥티드스마트팩토리	6,300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	5,100
	수요연계형DailyHealthcare실증단지조성	4,500
	스마트카톡 실증환경 구축	4,500
	SW안전성 점검평가	4,200
	스마트그리드보안실증및지원	4,000
	중증질환자 After-care 기술개발 및 실증	3,500
	개방형스마트홈기술개발및실증	2,800
	SW기반안전한금융거래환경조성	2,500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	2,000
방송통신발전기금 (3개)	창조경제밸리육성지원	30,783
	고출력 전자파(EMP) 측정시스템 구축·운영	1,000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1,000
총 37개 사업		172,641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연구 투자 강화와 관련하여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 395억원,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 218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사업은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면서 융합연구 예산이 전년대비 206억원 증액되었다. 창조경제 지원 확대를 위하여 창조경제 기반구축 사업은 전년대비 282.1% 증액되었다. 또한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168.8%),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117.1%), SW산업기반확충(102.4%),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148.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134.7%),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강화(117.1%) 등은 전년대비 100% 이상 증액되었다.

[표 5]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중견연구자 지원	348,795	388,295	39,500	11.3
	한국형발사체 개발	235,000	255,500	20,500	8.7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201,721	223,549	21,828	10.8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44,550	165,400	20,850	14.4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운영비 지원	109,526	128,489	18,963	17.3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	43,040	70,858	27,818	64.6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35,000	46,555	11,555	3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BTL 정부지급금 지원	32,676	45,690	13,014	39.8
	범부처 Giga KOREA	29,262	41,000	11,738	40.1
	창조경제 기반구축	7,100	27,130	20,030	282.1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	19,936	26,049	6,113	30.7
	뇌과학원천기술개발	14,060	24,072	10,012	71.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연구운영비 지원	15,300	23,319	8,019	52.4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8,000	21,500	13,500	168.8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10,080	19,515	9,435	93.6
	국가간협력기반조성	13,417	18,027	4,610	34.4
	ICT기반 공공서비스촉진	9,800	13,247	3,447	35.2
우체국보험 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232,990	277,982	44,992	19.3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146,190	164,276	18,086	12.4
지역발전 특별회계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	9,900	14,600	4,700	47.5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	6,450	14,000	7,550	117.1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우편사업 특별회계	인건비	1,569,703	1,673,056	103,353	6.6
	별정 및 취급국 운영	250,628	265,668	15,040	6.0
	공무원연금부담금	166,924	209,701	42,777	25.6
	집배업무위탁	179,655	192,787	13,132	7.3
	국제우편배달취급비	97,500	128,321	30,821	31.6
	우편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5,517	33,770	28,253	512.1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우편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404,175	478,881	74,706	18.5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탁	19,157	129,005	109,848	573.4
정보통신 진흥기금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147,752	166,349	18,597	12.6
	기술확산지원	67,582	79,252	11,670	17.3
	SW산업기반확충	7,444	15,070	7,626	102.4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	61,996	154,217	92,221	148.8
	비통화금융기관예치	89,959	138,628	48,669	54.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개발지원	39,972	93,820	53,848	134.7
	방송콘텐츠 진흥	17,840	32,500	14,660	82.2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강화	13,185	28,625	15,440	117.1
	ICT 창의기업 육성	15,000	24,593	9,593	64.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100억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2015년 예산안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에서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의 핵심부처로 과학기술과 ICT¹⁾를 접목하여 신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과 더불어 과학기술정책·연구개발·과학기술인력 양성·국가정보화 및 우정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5년도 예산안은 ① 창조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확대, ② 경제부흥을 위한 과학기술·ICT R&D 집중 투자, ③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ICT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창조과학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4.8%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 총지출의 41.0%를 차지하는 과학기술 분야와 9.3%를 차지하는 방송통신 부분은 과학기술·ICT R&D 집중 투자의 결과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형발사체개발(2,350억원 → 2,555억원),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430억원 → 709억원) 등 우주 관련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1,478억원 → 1,663억원),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620억원 → 1,542억원) 등 ICT R&D 예산이 증액되었다.

[표 1] 미래창조과학부 분야별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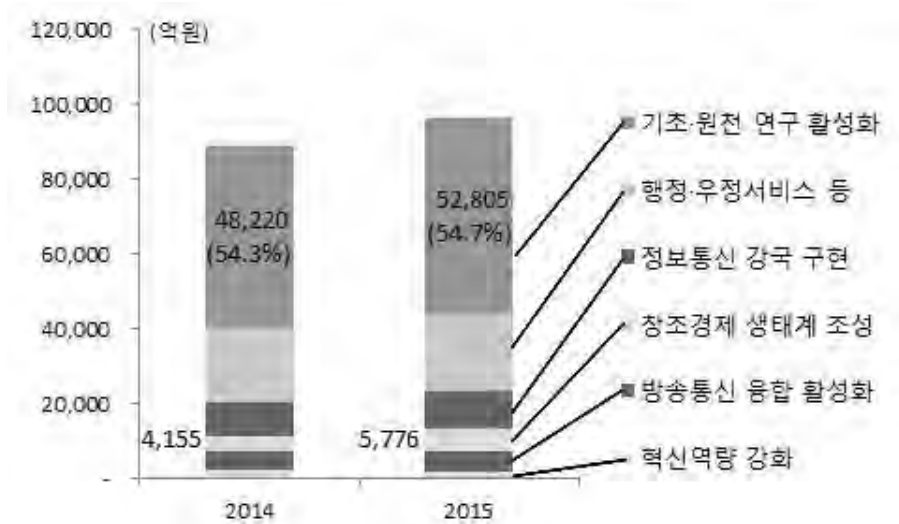
분야 부문	2014 예산(A)	2015		증 감	
	예산(A)	예산안(B)	비중	(B-A)	(B-A)/A
일반·지방행정	901	964	0.7	63	7.0
교육	2,351	2,405	1.7	54	2.3
문화및관광	3,707	4,269	3.0	562	15.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75	1,874	1.3	299	19.0
통신	73,585	74,883	52.3	1,298	1.8
방송통신	12,456	13,368	9.3	912	7.3
우정	61,129	61,515	43.0	386	0.6
과학기술	54,418	58,741	41.0	4,323	7.9
기술개발	22,135	24,185	16.9	2,050	9.3
과학기술연구지원	30,948	33,199	23.2	2,251	7.3
과학기술일반	1,335	1,357	0.9	22	1.7
총지출	136,537	143,136	100.0	6,599	4.8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둘째,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초·원천연구 지원의 비중은 54.7%로 2014년의 54.3%보다 높아졌으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안은 2014년 4,155억원에서 2015년 5,776억원으로 39.0% 증가하였다.

[그림 1] 성과계획서 상의 전략목표별 예산안 현황



셋째, 2015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중에는 사전 검토가 미흡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창조경제밸리 사업(308억원)은 기금의 용도를 벗어나는 출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친환경에너지타운(51억원)은 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넷째, R&D 사업 중에는 집행 시기를 고려할 때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 신규 사업인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30억원)은 발사 시기를 1년 연기할 경우, 우주개발 관련 투자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출용 신형 연구로의 건설공사비(353억원)는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ICT 육성 관련 사업 중에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시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가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과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간 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액 감소 추세를 반영한 예산 감액 검토

-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27억 9,800만원(1.0%) 증가한 2,864억 4,800만원 편성
-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입 예산액의 감액 편성 필요

가. 현황

면허 및 수수료(일반회계, 세입)는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이 사용하는 전파에 대한 사용료, 무선국 허가·검사 수수료, 전자파 적성평가 수수료 등을 부과·징수하는 세입 과목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7억 9,800만원(1.0%) 증가한 2,86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수납액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 (일반회계)	247,885	283,650	286,448	2,798	1.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세입의 예산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의 결산액 평균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의 결산액은 연평균 2.6%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은 전년대비 증액되었다. 또한 2015년 예산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납액 평균 보다 9.6% 높은 규모이다.¹⁾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면허료 및 수수료의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예산액의 연평균증가율이 $\Delta 2.6\%$ 인데 비하여,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Delta 7.3\%$, $\Delta 5.6\%$ 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표 2] 면허료 및 수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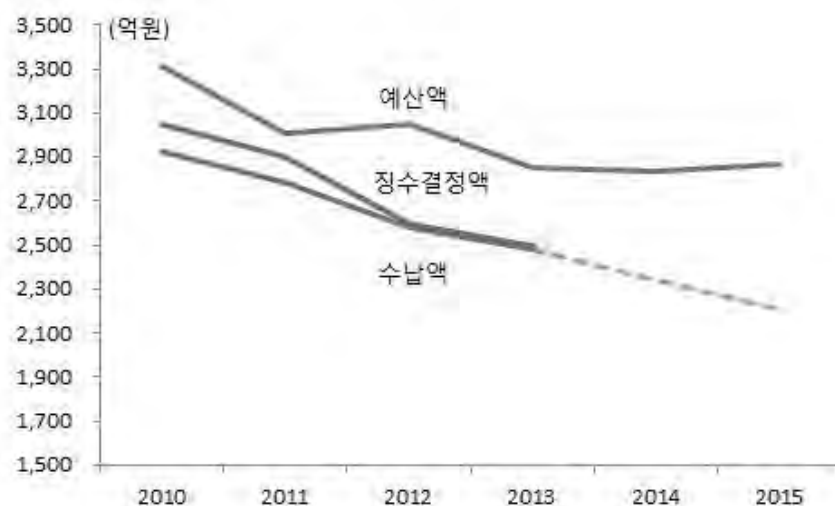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연평균증가율 (2011~2013)	2014	2015
예산액 (증가율)	300,617 (-9.2)	304,738 (1.4)	285,390 (-6.3)	-2.6	283,650 (-0.6)	286,448 (1.0)
징수결정액 (증가율)	290,335 (-4.7)	259,503 (-10.6)	249,762 (-3.8)	-7.3		
수납액 (증가율)	278,445 (-4.9)	257,731 (-7.4)	247,885 (-3.8)	-5.6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동 세입의 2014년과 2015년의 징수결정액 역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 경우 2014년 이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 면허료 및 수수료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추이



주: 징수결정액의 점선은 감소추세를 감안하여 예측한 자료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1)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징수결정액의 평균은 261,354백만원이다.

동 세입 과목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²⁾의 60.5%를 차지하는 주요 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수납액 감소 추세 및 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증액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³⁾

미래창조과학부는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실시하여 동 세입 예산안의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일반회계의 2015년 세입 예산안은 473,851백만원이다.

3)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도 동 세입에 대한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인한 연례적 과다 계상을 지적한 바 있다.

2. 건물대여료: 정확한 통계를 적용한 예산 증액 검토

- 우체국 건물의 대여 또는 사용허가의 대가를 부과·징수하는 세입으로, 전년 대비 21억 9,700만원(8.8%) 증가한 271억 9,300만원 편성
-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을 적용하는 등 추계 방법을 변경하였으나, 예산안이 과소 편성되었으므로 정확한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세입 예산액의 증액 조정 필요

가. 현황

건물대여료(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우체국 건물의 대여 또는 사용허가의 대가를 부과·징수하는 세입 과목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1억 9,700만원(8.8%) 증가한 271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건물대여료 예산안 현황

	2013 수납액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단위: 백만원, %)	
				(B-A)	(B-A)/A
건물대여료 (우편사업특별회계)	27,862	24,996	27,193	2,197	8.8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정확한 통계를 적용하여 예산 증액 필요

건물대여료 세입은 부정확한 추계로 인하여 매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다.

[표 2] 건물대여료 결산 추이

	예산액 (A)	징수결정액(B)	(B/A)	수납액 (C)	(C/A)
2010	21,253	26,039	122.5	25,426	119.6
2011	22,996	25,722	111.9	24,635	107.1
2012	26,900	29,204	108.6	28,231	104.9
2013	24,996	28,758	115.1	27,862	111.5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도 예산안 산출 기준을 전년과 다르게 적용하였다. 2014년 예산안 산출시에는 동 세입의 2011년도 가결산액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동 세입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한 반면, 2015년도 예산안 산출시에는 2013년도 가결산액 및 2010년 부터 2012년까지의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였다.

[표 3] 건물대여료 예산안 산정기준 변경 현황

	2014 예산	2015 예산안
기준금액	2011년 가결산	2013 가결산
기준 증가율	2008년~2011년(4년간) 건물대여료 평균증가율	2010년~2012년(3년간)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가 적용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0.7%)은 실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1.65%)의 절반 이하이다.

[표 4] 오피스빌딩 평균 임대료 추이

	2010	2011	2012	(단위: 천원/m ² , %) 연평균증가율
오피스빌딩 평균 임대료	15.0	15.2	15.5	1.65
(증가율)	(-1.32)	(1.33)	(1.97)	

자료: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연간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 각 년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예산안 산출 방법에 실제 동 세입의 2013년 징수결정액과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2015년 예산안은 29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5] 건물대여료 예산안 재산정안

	예산안 (미래창조과학부)	재산정안 (국회예산정책처)
2013(가)결산 (A)	27,004백만원	28,758백만원
2010~2012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 (B)	0.7%	1.65%
{A × (1+B)}	27,193백만원	29,233백만원

자료: 국토해양부·한국감정원, 「연간 상업용 부동산 임대사례 조사」, 각 년도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세입의 예산안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조사 및 적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오피스빌딩 임대료 추이 등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여 건물대여료 세입 예산안의 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3.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 벤처투자 지원의 필요성 및 지원 방식에 대한 검토

-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인재의 창업 마인드 함양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교류·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102억 6,600만원 편성
- 예비 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자)에게 벤처투자 실습용 투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조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

가. 현황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일반회계, 2015~, 민간보조)은 지역의 창조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인재의 창업 마인드 함양과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교류·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10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민간보조금으로 집행될 계획이다.

[표 1]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일반회계)	-	-	10,266	10,266	순증
-아이디어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1,408	1,408	순증
-네트워킹 등 교류·협업 프로그램 운영	-	-	3,662	3,662	순증
-지역 엑셀러레이터 발굴·육성 지원	-	-	5,196	5,196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보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지원 부적절

동 사업에 포함된 지역 엑셀러레이터 발굴·육성 지원 세사업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엔젤⁴⁾이 엑셀러레이터⁵⁾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비 엑셀러레이터 교육 프로그램, 투자전문가 세미나, 창업자 경진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동 세사업 중 21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 투자지원은 예비 엑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 실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즉,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예비 엑셀러레이터에게 벤처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면, 예비 엑셀러레이터는 자기자금 등을 매칭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해당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실습을 수행하게 된다.

[표 2] 지역 엑셀러레이터 발굴·육성 지원 세사업의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내역
지역 엔젤 등 대상 예비 엑셀러레이터 육성 교육프로그램	563	(40백만원×10개)+(40백만원×7개×7/12)
글로벌 트렌드 투자전문가 세미나 개최	141	(10백만원×10개)+(10백만원×7개×7/12)
예비엑셀러레이터를 위한 교류협력프로그램 운영	282	(20백만원×10개)+(20백만원×7개×7/12)
초기창업자 경진대회 개최	689	(48.9백만원×10개)+(48.9백만원×7개×7/12)
엑셀러레이터 투자지원	2,113	(150백만원×10개)+(150백만원×7개×7/12)
오프라인 아이디어 컨셉 증명 지원	1,408	(100백만원×10개)+(100백만원×7개×7/12)
합 계	5,196	

주: 산출내역에서 10개는 2014년에 출범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수이며, 7개는 2015년에 출범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수이다. 7/12는 2015년에 출범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계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결과적으로 예비 엑셀러레이터의 벤처기업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게 된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벤처기업의 지분 중 일부를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예산 중

4) 엔젤(Angel): 벤처기업 등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5)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아이디어 발굴, 초기투자, 멘토링·네트워킹, 해외진출 등을 전주기적으로 밀착 지원하는 민간 전문기관 또는 기업으로 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고 성장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엑셀러레이터 투자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은 보조금이 아니라 출자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 엑셀러레이터로 육성하기 위한 대상이 지역에서 활동중인 엔젤임을 감안하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에게 정부가 투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예비 엑셀러레이터의 투자실습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선정 등에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엑셀러레이터 투자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예산은 보조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법적 근거 미흡에 따른 사업 재검토

- 선진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307억 8,300만원을 편성
- 동 사업에 포함된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 세사업은 창조경제밸리 내 벤처·창업기업 및 지식기반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나, 이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있는 기금의 용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가. 현황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방송통신발전기금, 2015~2016, 출자·출연·보조)은 선진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307억 8,300만원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표 1]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A)	2015 계획안(B)	증 감	
				(B-A)	(B-A)/A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	-	30,783	30,783	순증
-창조경제밸리 입주 지원	-	-	5,338	5,338	순증
-장비 지원	-	-	5,445	5,445	순증
-R&D 지원	-	-	10,000	10,000	순증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	-	-	10,000	10,0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의 법적 근거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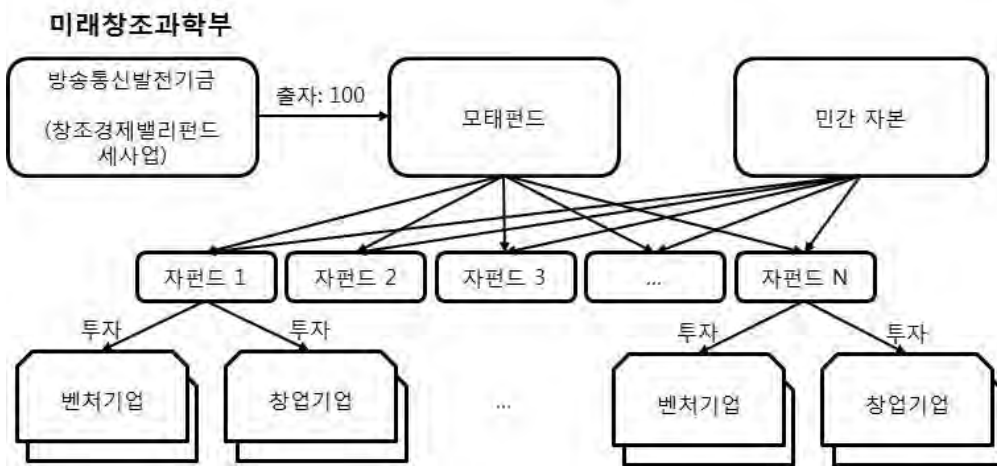
100억원이 편성된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 세사업은 창조경제밸리 내 벤처·창업기업 및 지식기반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모태펀드⁶⁾에 100억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5년에 조성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관리하고 있다.

원을 출자한 후 민간의 투자금을 포함하여 결성되는 자(子)펀드를 통하여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게 된다.

[그림 1] 창조경제밸리펀드의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 방식

(단위: 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러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에서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동 기금의 조성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7)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동법 제26조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표준의 개발·제정·보급, 인력양성,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한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표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주: 제1항제15조가 2014년 6월 3일에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은 2014년 12월 4일임

즉,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가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 사업에 포함된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 세사업은 창조경제밸리 내 벤처·창업기업 및 지식기반 혁신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므로, 기금의 용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 세사업은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5.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필요

-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범부처 협업 정책 추진 및 사업 발굴 등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Delta 9.1\%$) 감소한 10억원 편성
- 동 사업에서 수행한 사전기획연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다부처 공동 기획사업은 각 부처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가. 현황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일반회계, 2014~, 출연)은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범부처 협업 정책 추진 및 사업 발굴 등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억원($\Delta 9.1\%$) 감소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일반회계)		1,100	1,000	-100	-9.1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공동기획연구 결과의 예산안 반영 미흡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특정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한다.⁸⁾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의 경우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기술 및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보유 역량의 결집을 이루기 위하여 다부처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⁹⁾

8)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2013. 7.

9)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2011. 1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초원천기술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와 응용·개발 및 사업화를 담당하는 부처간의 연구성과 상호 연계 및 활용 확대를 통하여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공동기획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2]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관련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복돋우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민·군 간의 협동연구개발을 장려하고 민·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과제의 협동·융합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협동·융합연구개발 관련 기관 간에 과학기술인이 서로 교류하는 것을 권고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신기술 상호간 또는 신기술과 학문·문화·예술 및 산업 간의 융합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이 필요한 사업(이하 “공동기획사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동기획사업에 대하여 사업추진계획을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사전조사 및 기획)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부터 중앙행정기관 간 공동기획의 필요성이 제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기획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부터 실증까지 지속가능한 범부처 협력시스템 정착을 목표로 2013년 7월에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를 구성¹⁰⁾하였다. 다부처공동기술협력 특별위원회는 2013년 10월에 28개의 다부처 공동기획 후보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8개를 선정하여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표 3]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선정 경과

2013. 4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활성화 방안(안) 마련
2013. 6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 지침 제정·고시
2013. 7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설치 및 1차 회의 개최
2013. 8~11	다부처공동기획 후보사업 발굴 및 선정
2013. 12	20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4. 1~3	사전기획연구 추진
2014. 4	다부처특위 사전기획연구 결과 보고
2014. 6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결과 다부처특위 보고
2014. 7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사업을 통하여 사전기획연구를 수행¹¹⁾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7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3개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선정하였다.¹²⁾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소관 부처별로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된 3개 과제는 2015년 예산안에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세사업 또는 과제 형태로 예산안에 반영되었다.

10) 위원장: 미래부 1차관

위원: 10개 R&D 부처 실장급, 민간위원 등 20인

11) 각 부처가 직접 제안한 사업은 참여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전기획연구를 수행하였다.

12)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2015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안건, 2014. 7.

[표 4] 사전기획연구 결과 선정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주요내용		
	참여부처	2015예산안	세부사업명
고신뢰도 다개체 무인 이동체계 네트워크 연구개발 및 기술 검증 (270억원, 2015~2020)	다수 무인선 또는 이종 무인시스템(무인선-무인기)간 협업운용 기술의 개발, 인증/운용기준 수립, 운용기반 구축, 시범운용		
	미래부	3,000	IT·SW융합산업원천기술개발
	국토부	750	무인항공기실용화기술개발
	해수부	800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실감 미디어를 위한 개방형 조립식 콘텐츠 저작 플랫폼 개발 (400억원, 2015~2019)	맞춤형 문화 IT 융합 콘텐츠 서비스를 위해 개방형 유통 환경을 구축하고, 레고 블록형 SW 기반 협업형 실감 콘텐츠 저작 도구 개발		
	미래부	1,875	첨단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
	문화부	500	문화기술연구개발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 시스템 구축 (120억원, 2015~2017)	국내 EEZ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해 원거리에서 조업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식별 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미래부	1,985	USN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해수부	-	-

자료: 1.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2015년 다부처공동
기획사업 공동기획연구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안건, 2014. 7.

2. 미래창조과학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은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투자규모 및 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산출되는 자료를 종합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도록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경우에도 각 부처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2015년 예산안에 포함된 3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각 부처가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 사업의 세사업 또는 과제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6. 우주개발 관련 투자: 차세대중형위성 발사 시기 재검토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주개발 관련 투자는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 9개 사업이 해당되며, 전년 대비 648억원(15.4%) 증가한 4,855억원 편성
- 신규로 편성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우주개발 투자 관련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발사 시기를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현황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주개발 관련 투자는 한국형발사체 개발 등 9개 사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48억원(15.4%) 증가한 4,85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우주개발 관련 사업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발사체 개발	122,700	235,000	255,500	20,500	8.7
-한국형발사체 개발	122,700	235,000	255,500	20,500	8.7
위성 개발	62,914	59,042	92,604	33,562	56.8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41,810	43,040	70,858	27,818	64.6
-다목적실용위성개발	13,124	8,022	9,066	1,044	13.0
-차세대중형위성개발	-	-	3,000	3,000	순증
-소형위성개발	7,980	7,980	9,680	1,700	21.3
우주기술 등	135,613	126,629	137,388	10,759	8.5
-우주핵심기술개발	20,000	23,000	23,857	857	3.7
-우주국제협력지원	112	100	130	30	30.0
-우주기술연구기획심사평가	666	900	800	-100	-11.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	114,835	102,629	112,601	9,972	9.7
합 계	321,227	420,671	485,492	64,821	15.4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안은 전년대비 6.9% 증액된 6조 5,044억원이다. 우주개발 관련 예산안은 전년대비 15.4% 증액된 규모이므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 중 우주개발 관련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에서 7.5%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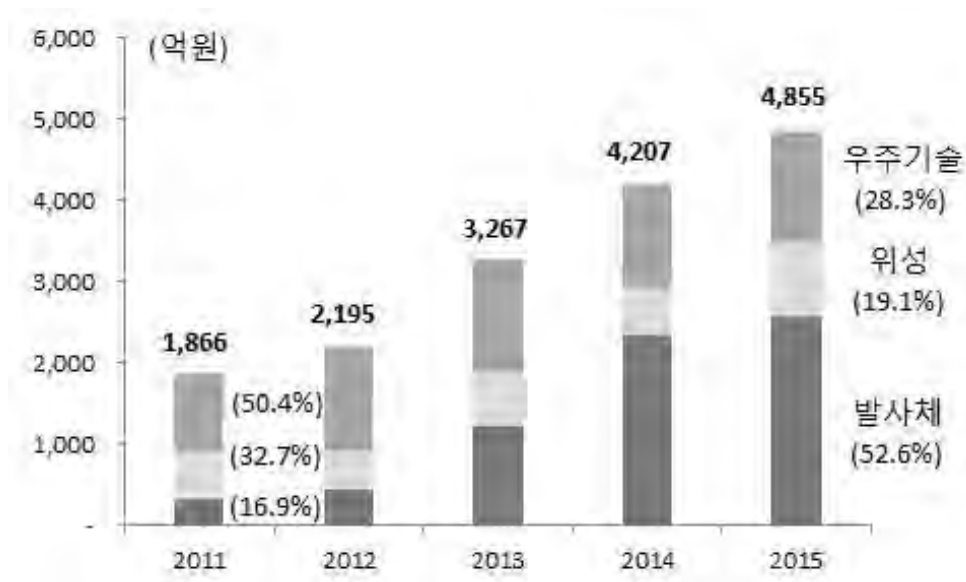
[표 2]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에서 우주개발 관련 투자의 비중
(단위: 억원, %)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미래창조과학부 총지출	136,537	143,136	6,599	4.8
-R&D 예산 (A)	60,874	65,044	4,170	6.9
-우주개발 투자 (B)	4,207	4,855	648	15.4
(B/A)	(6.9)	(7.5)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미래창조과학부의 우주개발 관련 투자는 2011년 1,866억원에서 2015년 4,855억원으로 연평균 27.0%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2011년 16.9%이던 발사체 개발의 비중이 2015년 52.6%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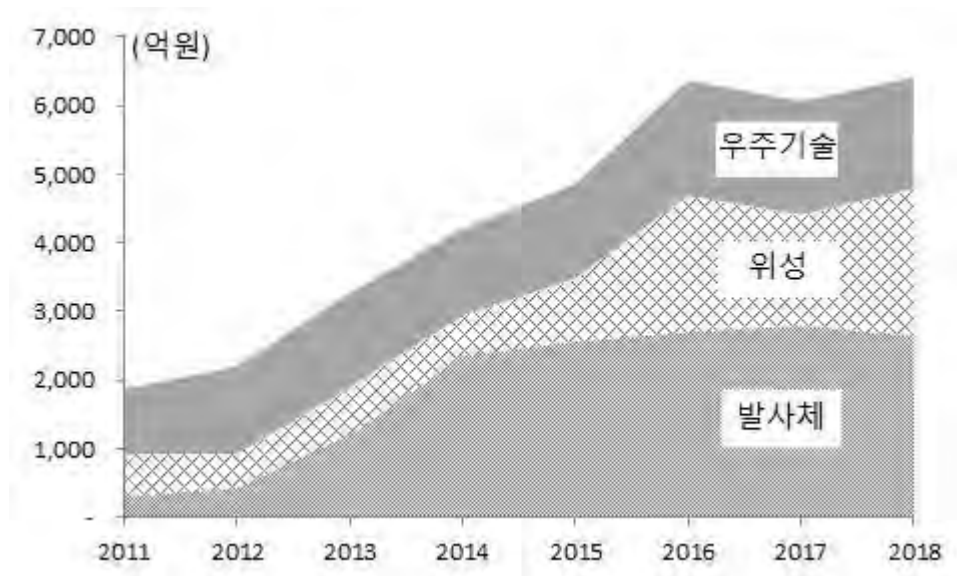
[그림 1] 우주개발 관련 투자의 구성



나. 차세대중형위성 발사 시기 재검토 필요

우주개발 개발 관련 9개 사업의 2011년 이후 예산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예산액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과 2014년에는 발사체 개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는 위성 개발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우주개발 관련 투자의 중기재정계획 현황



주: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예산액(2013년은 추경 기준)이며, 2015년은 예산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기재정계획 기준이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2016년 이후 위성 개발 예산이 증가하는 것은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사업의 예산이 2017년 이후 감소하는 반면, 다목적실용위성개발 사업과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의 예산은 2016년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일반회계, 2015~2019, 출연)은 2015년 예산안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2015년 예산안에는 30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2016년 484억원, 2017년 712억원, 2018년 1,038억원으로 매년 소요예산이 늘어날 계획이다.

[표 3] 위성 개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	4,069	16,200	44,470	43,040	70,858	85,002	34,721	29,650
다목적 실용위성개발	52,029	30,000	14,200	8,022	9,066	51,534	44,700	66,700
차세대 중형위성개발	-	-	-	-	3,000	48,400	71,200	103,800
소형위성개발	4,900	2,000	7,980	7,980	9,680	14,060	10,600	13,500
합 계	60,998	48,200	66,650	59,042	92,604	198,996	161,221	213,650

주: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예산액(2013년은 추경 기준)이며, 2015년은 예산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기재정계획 기준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정부는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산을 투입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기씩 총 2기의 위성을 외국에 의뢰하여 발사할 계획이다. 이후에 개발될 차세대중형위성은 한국형발사체와 연계하여 위성과 발사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수출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한국형발사체는 2020년 시험발사¹³⁾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및 2차레에 걸친 발사가 완료된 이후에 발사체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이 2기의 위성을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을 감안하면, 한국형발사체는 차세대중형위성의 후속 사업과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형발사체가 차세대 중형위성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1, 2호기의 발사 일정을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2019년과 2020년에 차세대 중형위성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개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세대중형위성의 한국형발사체와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3) 2019년 12월 1차 발사(예비시험), 2020년 6월 2차 발사(본시험)를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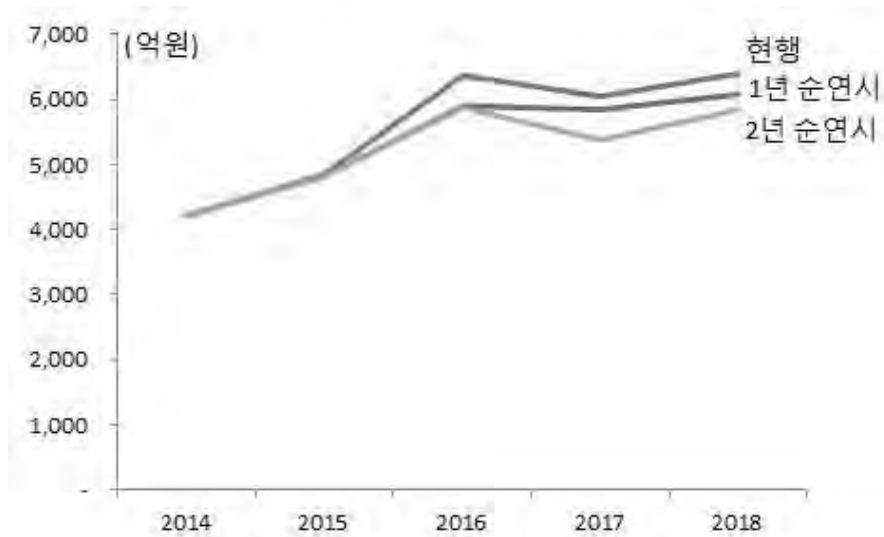
[표 4]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시기와 한국형발사체의 관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세대 중형위성	현재 계획	개발			1호 발사	2호 발사		
	발사 순연		개발			1호 발사	2호 발사	
한국형발사체		개발				1차 발사 (예비시험)	2차 발사 (본시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특히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이 1년씩 순연되면,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시기에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예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우주개발 관련 투자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계획 순연시 중기재정계획



주: 2014년은 예산액이며, 2015년은 예산안,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기재정계획 기준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따라서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사업은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우주개발 투자 관련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발사 일정을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집행가능성 낮은 건설공사비의 감액 검토

- 최신 연구로 핵심기술의 실증과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공급 안정화 및 수출을 위해 연구용 원자로를 설계·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9억 7,000만원(19.9%) 증가한 599억 7,000만원이 편성
- 2014년 11월에 건설허가를 신청하여 2015년 10월에 건설공사비를 집행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원자력안전법」의 건설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비의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

가. 현황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지역발전특별회계, 2012~2017, 출연)은 최신 연구로 핵심기술의 실증과 의료·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공급 안정화 및 수출을 위해 연구용 원자로를 설계·구축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9억 7,000만원(19.9%) 증가한 59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지역발전특별회계)	30,000	50,000	59,970	9,970	19.9
-설계	26,460	15,810	690	-15,120	-95.6
-기자재구매	3,000	22,000	18,300	-3,700	-16.8
-건설공사	1,190	8,890	35,280	26,390	296.9
-인허가 및 시운전	2,350	3,300	5,700	2,400	72.7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인허가 기간 고려시 건설공사비 집행가능성 낮음

동 사업은 신형 연구용 원자로(이하 “신형연구로”라 한다)를 2017년까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500억원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출연되어 집행된다. 2010년 8월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2018년 4월 정상운전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 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

< 추진경과 >	
2010. 3 :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先 후보부지 선정 조건)
2010. 7 :	후보부지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선정
2010. 8 :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B/C ratio : 0.96, AHP : 0.511)
2012. 4 :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착수
2012.12 :	대통령 공약사업(부산 5 : 방사선 의·과학 산업벨트 구축 추진)
2013. 3 :	사업부지 매입 및 확보 완료
2013. 4 :	연구로 개념설계 완료, 기본설계 및 부대시설 종합설계 착수
2013.12 :	사업부지 상세조사 완료 및 지반 안전성해석 완료
2014. 2 :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승인
2014. 4 :	사업부지 조성공사 착수(부지정지 및 진입로)
< 향후계획 >	
2014.11 :	연구로 건설허가 신청
2015. 4 :	사업부지 조성공사 완료(부지정지 및 진입로)
2015.10 :	연구로 건설허가 취득
2015.10 :	연구로 건설공사 착수
2017. 1 :	연구로 운영허가 신청
2017.12 :	연구로 운영허가 취득 및 핵연료 장전
2018. 3 :	연구로 성능시험 및 사용전 검사
2018. 4 :	수출용 신형연구로 정상운전 착수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용원자로의 건설허가는 「원자력안전법」 제30조¹⁴⁾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법은 연구용원자로의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었으며, 2014년 11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2014년 11월 이후에 신형연구로의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14) 개정전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허가)는 개정후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와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영허가)로 분리되었다.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설공사비(352억 8,000만원)는 건설허가를 취득한 후에 집행 가능한데,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11월에 건설허가를 신청하면 11개월 후인 2015년 10월에 건설허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법」 제19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르면 연구용원자로 건설허가의 처리기간은 24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¹⁵⁾에 따르면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등은 허가 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형연구로의 건설허가 신청 후 11개월만에 건설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건설공사비는 신형연구로의 건설허가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⁶⁾

1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9조(허가의 처리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수정에 드는 기간

2. 그 밖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

16)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동 사업의 2014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설공사비 88억 9,000만원 역시 건설공사 명목으로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비를 기자재 구매 등에 집행할 계획이다.

8.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기술개발 이전에 실증단지 구축 추진 부적절

-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융·복합을 통해 일정규모의 타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자체생산 및 거래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51억원을 편성
- 관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단지를 우선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실증단지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가. 현황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15~2018, 출연)은 여러 신재생에너지원 간의 융·복합을 통해 일정규모의 타운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자체생산 및 거래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51억원이다.

[표 1]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5,100	5,1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기술개발 이전에 실증단지 구축 추진 부적절

동 사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구성·운영된 ‘기후변화 대응 TF’의 활동 결과로 도출되었다. 2014년 5월에 동 TF는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3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구축 후보지와 시범사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미래창조과학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표 2]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현황

	미래부	환경부	산업부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융복합) 시스템 개발(연구) 및 실증 - 전기와 열에너지 생산	바이오 연료와 퇴비 생산시설 설치 - 전기와 퇴비 생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전기생산
대상 지역	충북 진천	강원 홍천	광주광역시
에너지원	태양전지, 태양열, 연료전지, 계간축열, 하수폐열, 지열 등 6개	가축분뇨 → 바이오에너지	태양전지
적용 지역	신규 계획도시 및 아파트 단지	바이오자원이 풍부한 농촌 지역	대규모 유희부지 존재 지역
파급력	여러 신재생에너지간 융복합 (신산업 창출 및 기술 수출)	단일 에너지원 (기존기술 활용 활성화)	단일 에너지원 (기존기술 활용 활성화)
사업비	135억원	125억원	355억원
수익	약 5억원/연간	약 1.5억원/연간	약 10억원/연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사업을 통하여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하수처리장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설치 및 실증 대상 기술로는 태양전지, 태양열, 연료전지, 하수폐열, 지열, 계간축열¹⁷⁾ 등 6개 에너지원의 융·복합적 활용 기술이다.

[표 3]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사업내용

	사업내용
신재생 에너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을 통한 안정적 에너지수급 체계 구축 ○ 전기: 태양광(950kW), 연료전지발전(10kW) 등 신재생 발전설비 설치 → 생산전력(1,224Mwh/년)판매를 통해 수익 창출 ○ 열: 봄~가을 동안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에서 생산된 열을 계간축열조에 저장하여 겨울철 인근 수요처에 난방 공급 → 열에너지 자립 및 가스 사용량 절감
에너지 절감	신규 공공건물에 에너지 절감기술을 적용 ○ 건물외벽 태양광 패널 설치, 창호·단열재 등 패시브(에너지부하절감) 요소 및 스마트그리드 기술 등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7) 계간축열은 봄부터 가을까지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에서 생산된 열을 저장한 후 겨울철에 난방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 사업의 주 내용은 사업대상 지역에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기와 열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계간축열 시스템을 이용하여 활용하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4개의 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 2개는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에 해당한다.

[표 4] 친환경에너지 타운 관련 향후 추진방향

- 신재생에너지간 열원통합(블럭히팅)기술 및 제어기술 개발과 실증
: 2개 과제 × 평균 350백만원 = 700백만원
- 계간축열 시스템 개발 및 실증
: 2개 과제 × 평균 350백만원 = 700백만원
- 신재생 융복합 단지 최적화 및 설치
: 2개 과제 × 평균 1,550백만원 = 3,100백만원
- 제로에너지 커뮤니티 구축
: 2개 과제 × 평균 300백만원 = 600백만원

그러나, 동 기술개발 및 실증을 제안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열원통합 또는 계간축열 관련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동 사업을 통하여 관련 기술 개발 및 실증에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관련 기술의 개발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단지를 우선 구축하는 것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물론, 기술개발 실패시 실증단지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완료된 이후 실증단지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9. 사이언스 빌리지: 기업 출연금 활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퇴직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합 복지환경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16억 8,000만원을 편성
- 기업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활용방안과 연계한 추진계획 수립 필요

가. 현황

사이언스 빌리지(일반회계, 2015~2016, 민간자본보조)는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퇴직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합 복지환경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16억 8,000만원이다.

[표 1] 사이언스 빌리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사이언스 빌리지 (일반회계)	-	-	1,680	1,68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활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동 사업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종합복지관¹⁸⁾을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의 과학기술인 실버타운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¹⁹⁾(이하 “과총”이라 한다)로 하여금 동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동 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8) 2층 건물로 현재 대덕어린이집과 대덕복지센터 등으로 사용중이다.

19) 과학기술단체 육성·지원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총사업비는 570억원이며, 국비 270억원, 민간기부 220억원, 자부담 8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국비 중 110억원은 국유지인 사업대상 부지의 가액이며, 민간기부자는 SK Telecom(이하 “SKT”라 한다)이다. 자부담은 사이언스 빌리지 입주자가 과충에 예치하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표 2] 사이언스 빌리지 총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국비	민간기부	자부담	합 계
부지비	110	-	-	110
공사비	160	220	80	460
합 계	270	220	80	57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국유재산법」 제18조²⁰⁾에 따르면 기부를 조건으로 건축하는 경우 등 외에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과충은 사이언스 빌리지를 건축한 후 이를 국가에 기부하고 운영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과충은 SKT로부터 250억원²¹⁾을 출연받기로 하는 협약²²⁾을 2014년 6월에 체결하였으며, 과학기술인 실버타운의 U-healthcare²³⁾ 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권을 SKT에 부여하기로 하였다.

20) 「국유재산법」 제18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2의2.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1) 250억원을 한도로 하며, 220억원은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건립비, 30억원은 u-Healthcare 시스템 구축비로 예상하고 있다.

22)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SK텔레콤,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건립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2014. 6.

23) Ubiquitous healthcare

[표 3]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관련 과총과 SKT의 협약서 중 협력사항 조항

제2조(협력사항) 과총과 SKT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1. 과총은 대전광역시 일원에 과학기술인 실버타운을 건립한다. 2. SKT는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51%에 해당하는 금원(U-healthcare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250억원을 한도로 함)을 과총에 출연한다. 3. 제2호에 규정된 출연금의 구체적인 출연시기는 양당사자의 재원조달계획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한다. 4. 과총은 제1호에 따라 건립된 실버타운에서 U-healthcare 시스템 관련 사업추진 시 SKT에게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한다.

자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SK텔레콤,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건립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2014. 6.

U-healthcare는 인터넷·휴대폰·쌍방향 케이블TV 등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환자와 의사를 연결해 실시간으로 진단·치료·예방 등의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와 연계되어 있다.

과학기술인 실버타운이 퇴직 과학기술인을 위한 복합 복지환경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U-healthcare 시스템의 구축을 검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과 연계 필요

동 사업의 대상부지 인근에는 공동관리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공동관리아파트는 1979년 대덕 연구단지 입주와 함께 유치과학자들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3만 7,648㎡의 부지에 4층짜리 아파트 10개 동 174세대 규모이다. 공동관리아파트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관리아파트는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12년 6월말에 입주자가 모두 퇴거한 상태이며,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또는 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당초 공동관리아파트를 건립한 취지가 과학기술인에 대한 복지환경 제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사업은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림 1] 과학기술인 실버타운 사업부지와 공동관리아파트 위치



10. SW전문인력역량강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통합 추진 검토

- 글로벌 역량을 갖춘 SW고급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8억 4,000만원(19.6%) 증가한 234억 4,000만원 편성
- 세사업인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과 부처 내 또 다른 세부사업인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 목적이 유사하므로 통합 추진 검토 필요

가. 현황

SW전문인력역량강화(일반회계, 2014~, 출연)는 SW 관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8억 4,000만원(19.6%) 증가한 234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SW전문인력역량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SW전문인력역량강화 (일반회계)	-	19,600	23,440	3,840	19.6
-창의·혁신적인 SW산업 리더 양성	-	6,000	6,000	-	-
-기업수요맞춤형 SW 고급인재양성	-	11,000	12,220	1,220	11.1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	-	2,600	3,220	620	23.8
-실전적 SW교육		-	2,000	2,0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정보보호 인력개발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 검토 필요

동 사업은 창의·혁신적인 SW산업 리더 양성, 기업수요맞춤형 SW고급인재양성,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실전적 SW교육으로 구성되며, 이 중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세사업은 정보보호 분야의 실무능력을 갖춘 석사 연구 개발인력의 양성을 위한 사업이다. SW전문인력역량강화 사업 내에 있는 모든 내역사업이 SW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인 반면,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사업은 정보보호 산업 분야의 실무 능력을 갖춘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표 2] 정보보호 연구개발인력 양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	-	2,600	3,220	620	23.8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	2,260	2,260	3,220	960	42.4
-최고정보보호 전문가과정	340	340	-	-340	-1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보호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일반회계, 2014~, 출연)을 별도로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 정보보호 관련 전문기술과 실무적인 능력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SW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내에 있는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세사업의 경우 석사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두 사업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니는바,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세사업을 SW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에서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⁴⁾

[표 3] SW전문역량강화사업과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사업 비교

세부사업	SW전문인력 역량강화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대상	대학원(석사과정)	재직자, 고등학교, 대학생, 일반 국민 등
주요 사업 내용	· 고용계약형 <u>정보보호 석사과정 운영</u> · 기업 수요 맞춤형 <u>고급 정보보호 기술개발 인력 양성</u>을 통한 채용 연계형으로 중소기업 인력공급(2년 교육과정)	· <u>최정예 사이버보안</u> 인력(K-Shield) 양성 · 정보보안업무관련 재직자 대상으로 <u>사이버공격에 즉시대응 할 수 있는 고급인력양성</u>(6개월 교육과정) · 차세대 <u>보안리더 양성고급인력양성</u>(6개월 교육과정) · 고등학교, 대학생, 미취업자 대상으로 정보보안 분야의 최고전문가의 멘토링 교육을 통해 <u>최고 정보보안 인력양성</u>(8개월 교육과정)
기대효과	<u>사이버 침해 사고와 국가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IT Security 산업 발전에 기여</u>	<u>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최정예 정보보안 전문가 양성</u>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4)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SW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에 있는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은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반면,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고용계약형 정보보호 석사과정은 고급SW기술인력양성을 목표로 R&D이나 정보보호 전문인력양성사업은 비R&D로 운영되고 있어 두 사업 간 통합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11. 정보격차해소지원: 고령층 IT창업지원교육 확대 편성 검토

- 정보소외계층에게 실용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200만원(1.3%) 증가한 153억 6,000만원 편성
- 고령층 정보화교육 내에 있는 IT창업지원교육은 전년대비 78.4% 증액 되었는데, 2014년 처음 실시되어 아직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증액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황

정보격차해소지원(일반회계, 1997~, 보조/출연)은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용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억 200만원(1.3%) 증가한 15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정보격차해소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정보격차해소지원 (일반회계)	14,950	15,158	15,360	202	1.3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고령층 IT창업지원교육 확대 편성 재검토 필요

동 사업의 정보화 교육 관련 예산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되어 사업이 추진되며, 사업대상자별로 장애인 54억 4,800만원, 고령층 6억 5,000만원, 신정보소외계층 9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2] 정보격차해소지원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정보격차해소지원	14,950	15,158	15,360	202	1.3
-정보통신보조기기개발·보급	2,695	2,970	3,145	175	5.9
-웹정보접근성제고	874	874	874	0	0.0
-사랑의 그린PC보급	1,974	2,174	2,274	100	4.6
-정보격차실태조사	600	600	600	0	0.0
-장애인 정보화교육	5,675	5,673	5,448	-225	-4.0
-고령층 정보화교육	397	522	650	128	24.5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1,135	955	979	24	2.5
-정보화교육강사지원단	600	600	600	0	0.0
-온라인 정보화교육	1,00	790	790	0	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는 고령층 정보화교육사업을 통하여 창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경륜과 노하우에 IT를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을 지원한다. 동 사업의 교육 대상은 IT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55세(1959년 출생자) 이상인 자로, IT를 활용한 창업능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PC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스마트폰 수리 창업, 쇼핑몰 운영과 SNS 마케팅, IT융합비즈니스 창업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나 해당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에게 요구되는 IT 능력 수준이 자격증 보유 여부, 블로그·홈페이지·클럽 운영 여부, 카카오톡 친구·페이스북 친구·트위터 Follower 수 등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²⁵⁾

25)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화교육을 이수한 고령층이 은퇴 전 직업능력과 IT를 결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선정하였기에 때문에 높은 수준의 IT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향후 전문적인 IT 능력을 요구하는 기술창업(예: 앱·SW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과정과 같은 분야에도 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 3] 정보격차해소지원 내역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고령층 정보화교육	-	522	650	128	24.5
-운영관리	-	98	98	0	0.0
-Senior Smart Life 활동단	-	124	124	0	0.0
-어르신 정보화 제전	-	50	50	0	0.0
-창업교육	-	125	223	98	78.4
-집합교육	-	125	155	30	24.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특히 동 교육과정은 2014년 처음 실시되어 아직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800만원(78.4%) 증가한 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따라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예산을 확대 편성하기 보다는 향후 추진될²⁶⁾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²⁷⁾

26) 사업결과보고 : 2014년 12월 예정

27)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예산의 제약으로 시범사업의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니어가 IT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한 반면, 2014년은 시범사업의 특성상 일부 과정 밖에 운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2015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니어 IT 창업모델을 발굴 및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사업 수행 방안 마련

- 서민·소외계층이 이용하는 장소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6.2%) 증가한 43억 6,200만원 편성
- 이동통신사의 상용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가 보완될 수 있도록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사업 수행 필요

가. 현황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방송통신발전기금, 2013~, 출연)은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서민과 소외계층이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무선인터넷 확산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억 5,500만원(6.2%) 증가한 4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방송통신발전기금)	1,000	4,107	4,362	255	6.2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900	3,387	3,642	255	7.5
-와이파이 확산 여건 조성	100	293	293	-	-
-와이파이 통합관리	-	427	427	-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상용와이파이 현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수행 필요

동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정부·지자체·통신사가 공동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2015년까지 6천개소)하는 사업이다. 또한 통신사가 자사 고객에게만 제공하던 기존 와이파이를 개방(2017년까지 4천개소)함으로써 구축된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표 2] 공공 와이파이 구축·확산 추진계획

(단위: 개)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서민·소외계층 와이파이 구축	1,000	2,500	2,500	-	-	6,000
공공장소 와이파이 개방	1,000	500	500	1,000	1,000	4,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공공 와이파이(Wi-Fi) 확산 계획」, 2013.7.12.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사업의 예산이 2013년에는 지역별로 균등 배분되었으나, 2014년에는 지역의 구축희망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차등 지원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별 예산내역을 보면, 상용 와이파이 수준이 서울의 약 1/10에 불과한 전북에 서울과 같은 수준의 예산이 배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지역도 이와 유사하여 상용 와이파이의 구축 수준이 상이한 경기·경북·서울·전북·충남·충북에 모두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표 3]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지역별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3년도 예산 내역				2014년도 예산 내역			
	정부 (25%)	지자체 (25%)	사업자 (50%)	합계	정부 (25%)	지자체 (25%)	사업자 (50%)	합계
강원	53	53	106	212	252.3	252.3	504.6	1,009.2
경기	53	53	106	212	235.3	235.3	470.6	941.2
경남	53	53	106	212	235.4	235.4	470.8	941.6
경북	53	53	106	212	235.3	235.3	470.6	941.2
광주	53	53	106	212	147.4	147.4	294.8	589.6
대구	53	53	106	212	53.0	53.0	106.0	212.0
대전	53	53	106	212	200.0	200.0	400.0	800.0
부산	53	53	106	212	254.0	254.0	508.0	1,016.0
서울	53	53	106	212	235.3	235.3	470.6	941.2
세종	52	52	104	208	60.6	60.6	121.2	242.4
울산	53	53	106	212	60.6	60.6	121.2	242.4
인천	53	53	106	212	150.0	150.0	300.0	600.0
전남	53	53	106	212	335.3	335.3	670.6	1,341.2
전북	53	53	106	212	235.3	235.3	470.6	941.2
제주	53	53	106	212	147.4	147.4	294.8	589.6
충남	53	53	106	212	235.3	235.3	470.6	941.2
충북	53	53	106	212	235.3	235.3	470.6	941.2
합계	900	900	1,800	3,600	3,307.8	3,307.8	6,615.6	13,231.2

주: 읍영은 2014년 기준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된 지자체를 의미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따라서 동 사업은 와이파이 신규 구축과 통신사 시설 개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공공 와이파이 확산 계획」에서 상용 와이파이 시설이 많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주로 추진하되 예산 투자가 어려운 지역을 우선 배려하겠다고 밝힌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의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가 보완 될 수 있도록 상용 와이파이의 Zone수와 AP수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13년도 와이파이 신규 구축장소가 복지시설 47%, 보건시설 23%, 전통시장 16%, 공공기관 민원실 9%, 기타 5%로 구성되어 있어, 서민 및 소외계층의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버스정류장 등 서민과 소외계층의 이용이 많은 다양한 장소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표 4] 시도별 이동통신사 상용 와이파이 구축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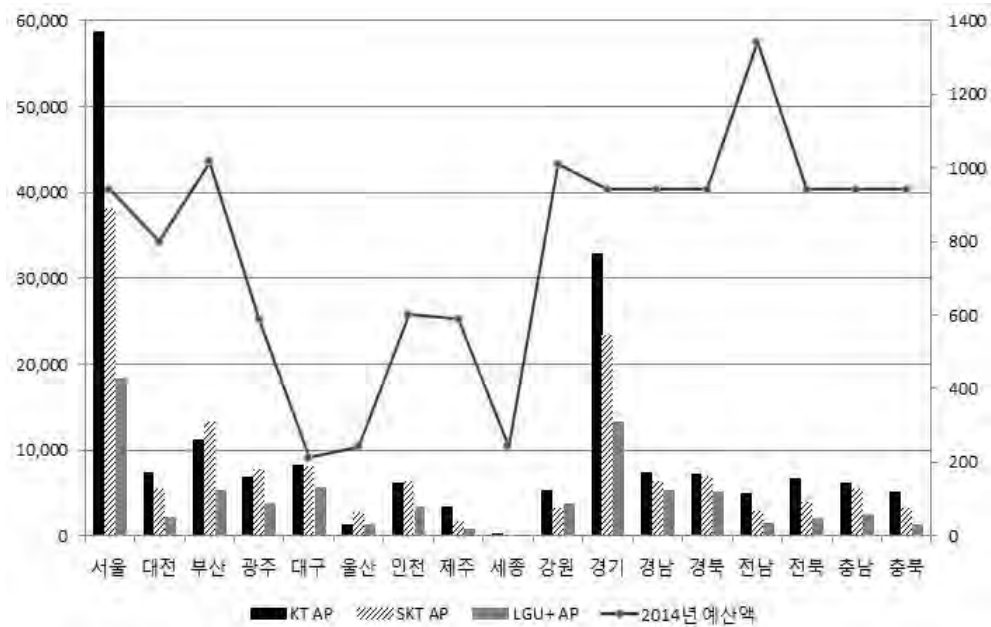
구 분	KT		SKT		LGU+	
	Zone수	AP 수	Zone수	AP 수	Zone수	AP 수
서울특별시	33,444	58,674	26,507	38,160	11,316	18,329
대전광역시	4,184	7,341	3,286	5,513	1,318	2,134
부산광역시	6,372	11,179	9,421	13,300	3,288	5,325
광주광역시	3,909	6,858	5,150	7,857	2,321	3,759
대구광역시	4,717	8,275	5,489	8,144	3,546	5,744
울산광역시	2,304	1,313	2,215	2,707	819	1,327
인천광역시	3,532	6,197	4,742	6,394	2,074	3,360
제주특별도	1,945	3,413	833	1,680	541	877
세종특별시	135	237	119	199	0	0
강원도	3,073	5,392	2,158	3,274	2,366	3,832
경기도	18,747	32,889	16,324	23,484	8,263	13,383
경상남도	4,184	7,341	4,231	6,452	3,320	5,378
경상북도	4,087	7,170	3,620	6,842	3,198	5,180
전라남도	2,812	4,933	1,796	2,945	905	1,466
전라북도	3,779	6,630	2,649	4,044	1,220	1,976
충청남도	3,563	6,251	2,967	5,609	1,533	2,483
충청북도	2,951	5,178	1,839	3,341	826	1,338

주: LGU+의 와이파이 Zone수는 타 통신사의 Zone당 평균 AP수를 이용한 추정치이며, LGU+는 세종시 와이파이를 충남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중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그림 10] 시도별 이동통신사 AP와 공공 와이파이 예산액

(단위: 개, 백만원)



주: LGU+의 와이파이 Zone수는 타 통신사의 Zone당 평균 AP수를 이용한 추정치이며, LGU+는 세종시 와이파이를 충남으로 통합하여 운영·관리 중임

13.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정 필요

-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구매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 신규 10억원 편성
- 전체 예산의 88.7%가 전화상담 센터인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의 운영에 편성되었고, A/S 관련 인력의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10.0%에 불과하므로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정 필요

가. 현황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신규, 보조)은 소외계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	-	1,000	1,000	순증
-지원센터 운영	-	-	887	887	순증
-홍보, 조사비	-	-	113	113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정 필요

동 사업은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보조(100%)하여 수행되며,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에 대한 홍보 및 신청접수를 위한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구매지원 사업이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2013년 종료된 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사업은²⁸⁾ ①정부가 디지털TV의

구매에 대해 100,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차액인 89,000원을 개인이 부담하거나, ②구매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²⁹⁾ 무상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반면, 새롭게 시작하는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에 대한 구매 홍보 및 신청을 독려하여 시중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TV의 구매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TV 가격은 219,000원~642,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따라서 가구당 89,000원을 부담하면 디지털TV를 구매할 수 있었던 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사업(중전사업)과 비교하면 신규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액이 증가하여 중전사업과 신규사업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된다.³⁰⁾

[표 2] 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사업과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사업의 비교

	중전사업	신규사업
사업명	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사업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
실제 사업 수혜 가구(예상)	[디지털TV]: 7.5만 가구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지원]: 41.7만 가구	-
사업기간	2011~2013	2015~2019
사업시행주체	한국전파진흥협회, 디지털TV코리아	한국전파진흥협회
신청기관	지자체 및 우체국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신청(124), 우편신청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둘째, 중전 사업으로 인해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는 7.5만 가구이고, 24.1만 가구³¹⁾에게는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가 보급되었다. 따라서 실제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가 7.5만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저소득계층의 구매 능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³²⁾

28) 사업대상: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됨에 따라 TV시청에 영향을 받는 직접수신가구 중 유료 케이블 TV 등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및 일반가구

29) 아날로그 TV를 디지털로 전환해서 시청할 수 있는 기기를 의미함

30)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89,000원은 지상파 디지털 전환 당시 최소 본인부담액이며, 실제 부담액은 선택한 제품별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제품별 본인 부담액: 89,000원~590,000원)

31)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는 41.7만 가구에 지원되었으며, 이 중 저소득층은 24.1만 가구임

32) 이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는 저소득층 84.6만가구가 아날로그 TV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상황

다.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에 대한 A/S 강화 필요

종료된 디지털전환취약계층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4.1만대의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보급하였고, 새롭게 편성된 저소득층디지털TV보급지원사업은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를 통해 컨버터의 A/S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를 위해 2014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으며, 5개 권역별로 1명의 A/S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 보급된 컨버터의 분포를 보면, 서울(14.6%)을 비롯한 경북(13.8%), 충남(13.0%), 전북(16.5%)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였지만, 2015년 예산안은 지방에 A/S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불편이 우려된다.

[표 3] 컨버터 보급 분포율

(단위: 대)

구 분	취약계층				일반가구	합계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소 계	비율(%)		
서울	7,887	27,557	35,444	14.6	34,767	70,211
경기	5,621	16,644	22,265	9.2	29,786	52,051
인천	1,347	3,253	4,600	1.9	5,865	10,465
부산	2,113	4,648	6,761	2.8	4,774	11,535
경남	2,403	8,358	10,761	4.4	5,899	16,660
대구	1,837	5,093	6,930	2.9	6,899	13,829
경북	5,266	28,115	33,381	13.8	15,786	49,167
광주	1,333	3,203	4,536	1.9	3,684	8,220
전남	4,710	19,149	23,859	9.9	10,179	34,038
대전	1,129	2,245	3,374	1.4	2,936	6,310
충남	4,630	26,744	31,374	13.0	18,996	50,370
강원	2,094	5,116	7,210	3.0	5,937	13,147
전북	9,871	30,158	40,029	16.5	20,735	60,764
울산	265	701	966	0.4	1,111	2,077
충북	2,412	8,073	10,485	4.3	7,667	18,152
합 계	52,918	189,057	241,975	100	175,021	416,996

이며, 아날로그 TV는 2009년 국내 판매가 금지되었으므로 교체 주기가 된 저소득층의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조금(10만원) 지원은 못하더라도, 정부가 선정한 저가의 디지털 TV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전화상담 센터인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의 운영에 전체 예산의 88.7%가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권 A/S 관련 인력의 인건비는 4,800만원으로, 이는 전체 인건비의 10.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디지털TV 구매능력이 없는 가구를 위해 기 지급된 컨버터에 대한 A/S 인력의 인건비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4]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계획안 세부 현황

(단위: 백만원)

				2015 계획안
지원센터	서울	인건비	전화 상담원	336
			홍보 및 대외협력 등	96
			A/S 인력	48
		소계		480
		센터 운영비(임대료, 사무용품 등)		407
	지방	인건비	콜센터 운영인력	-
			A/S 등 전문가	-
		센터 운영비(임대료, 사무용품 등)		-
홍보, 조사비			113	
합계액			1,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4.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공인전자주소 이용 확대 방안 마련

-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9,200만원($\Delta 16.1\%$) 감소한 35억 9,500만원 편성
- 실제 이용량이 당초 추정된 유통량에 비해 저조하므로 공인전자주소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일반회계, 2006~, 출연)은 전자문서의 이용과 유통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억 9,200만원($\Delta 16.1\%$) 감소한 3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전자문서 이용 기반 조성 (일반회계)	6,000	4,287	3,595	-692	-16.1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 구축	3,300	945	250	-695	-73.5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675	1,310	1,690	380	29.0
-전자문서·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 조성	2,025	2,032	1,655	-377	-18.6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공인전자주소 이용 확대 방안 모색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자문서 유통 인프라 구축은 공인전자주소 중계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성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센터의 보안장비를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되어 수행한다.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³³⁾을 근거로 공인전자문

서중계자(등록대행기관)를 통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공인전자주소를 등록한 후 사용하는 제도이다. 공인전자주소는 2014년 8월 말 기준 14만 4,983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송·수신된 공인전자주소는 관련 유통정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보관하고,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통해 메일 내용에 대한 법적효력을 확보할 수 있다.

[표 2] 공인전자주소 등록 현황

(단위: 개)

	2012	2013	2014	합계
사업자	3,135	1,532	2,050	6,717
개 인	4,775	16,029	117,462	138,266
합 계	7,910	17,561	119,512	144,983

주: 2014년 8월 31일 기준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전자주소 관련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2012년 3억 8,300만원, 2013년 28억 6,000만원, 2014년 9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고, 2015년에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공인전자주소의 유통량을 보면, 사업 초기 추정된 유통량은 2013년 2억 3,600만건, 2014년 3억 5,780만건이었으나 실제 이용량은 12만 3,000건과 35만 1,000건으로 당초 계획에 비해 저조하다.

따라서 공인전자주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인전자주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 공인전자주소 유통량

(단위: 천건)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통량 추정	-	236,000	3,548,000	6,322,000	8,935,000	10,854,000
유통량 현황	15	123	351	-	-	-

주: 유통량 현황의 2014년 자료는 8월 28일 기준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3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정의), 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 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 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15. 3D프린팅 산업육성기반구축: 기술확산지원사업 내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과 유기적 연계 검토

- 3D프린팅 관련 초기시장 창출과 콘텐츠산업 활성화 및 국민들의 창조경제에 대한 직접 참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20억원이 편성
- 동 사업은 기술확산지원사업 내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두 사업의 사업 목표와 추진 주체 등이 동일하므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유기적 연계 검토 필요

가. 현황

3D 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정보통신진흥기금, 신규, 출연)은 국민 참여 체험 환경을 조성하여 3D프린팅 관련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2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3D 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구축 (정보통신진흥기금)	-	-	2,000	2,000	순증
-국민 참여 환경 조성	-	-	500	500	순증
-3D프린트 인력 양성	-	-	900	900	순증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	-	600	6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무한상상실개설·운영 사업과 유사중복으로 차별화 필요

(1) 국민 참여 환경 조성 무한상상실 개설·운영과 차별화 필요

동 사업은 국민 참여 환경 조성 3D프린트 인력 양성,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국민 참여 환경 조성은 국민이 3D프린팅에 참여할 수 있는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세부사업인 창조경제 기반구축(일반회계, 2014~, 직접/출연)에서 설치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³⁴⁾ 중 7개 지역에 3D프린터 관련 체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표 2] 국민 참여 환경 조성 예산안 산출 근거

국민 참여 네트워크 구축·운영(총 7개) : 71.4백만원 × 7개
- 전문가형 프린터 : 182백만원(1대 × 26백만원 × 7개소)
- 운영인력(원급) : 280백만원(1명 × 40백만원 × 7개소)
- 소재 등 운영비 지원 : 38백만원(5.42백만원 × 7개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나 부처 내 또 다른 세부사업인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일반회계, 2014~, 출연/매칭)을 통해 이미 많은 지역에 3D프린터가 배치되어 있다.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무한상상실 운영방안」을 통해 모든 무한상상실에 3D프린터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³⁵⁾ 이에 과학관, 대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에 42개를 설치하고, 3D프린터를 비롯한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10월 현재 총 41개를 운영 중(1개 준비 중)이다.

무한상상실에는 3D프린터 이외에 레이저커터기, 레이저프린트, 노트북 및 데스크탑 등 다양한 설비가 구축되어 있어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표를 충분히 구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34)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 지역 인재의 창업 도전,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 등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고 지역경제 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단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금년 4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17개 시·도에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5) 미래창조과학부, 「무한상상실 운영기관 워크숍 자료집」, 2014

- 거점 무한상상실 200~5,500만원 규모, 소규모 150~200만원 규모의 3D프린터

(2)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교육 실시 무한상상실 개설·운영과 차별화 필요

동 사업의 또 다른 세사업인 3D프린트 인력양성은 교육과정개발 교육 실시와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교육 실시, 전문인력양성으로 구성된다. 이 중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교육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56개 교육(일반인 대상 39개, 예비창업자 대상 17개)을 실시할 계획으로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3] 3D프린팅 인력양성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3D프린팅 인력양성	-	-	900	900	순증
-교육과정개발 교육 실시	-	-	100	100	순증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교육 실시	-	-	400	400	순증
-전문인력양성	-	-	400	4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그러나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교육의 경우 이미 무한상상실에 최소 4인 이상의 관련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므로(거점 기준³⁶⁾), 기 구축된 무한상상실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3D프린터 체험 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창업교육도 ‘청년 아이디어 클럽’과 같은 무한상상실 내의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창업을 위한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전문가의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업 및 사업화에 연계시키는 것으로, 실제 2014년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사업은 창업컨설팅 1건을 포함한 6건의 특허를 출원하였다.

36) 거점 무한상상실: 공방시설을 구비한 종합형 무한상상실로 소관 지역(해당 시도)의 소규모 무한상상실 관리, 소관 지역 내 프로그램·인력·장비지원 등 총괄 기능
소규모 무한상상실: 스토리텔링, 아이디어클럽 등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는 생활 속 공간형 무한상상실

따라서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사업 내의 프로그램을 통해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 및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 사업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표 4]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무한상상실 비교

구분	창조경제혁신센터	무한상상실	
		거점	소규모
세부사업	-창조경제 기반구축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목적 및 역할	-연구소·대학,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대기업 등의 네트워크 허브 및 사업 연계 활동을 통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밀착 지원	-공방설비가 구비된 종합형 무한상상실로 창의·상상 공간의 거점 역할 수행 -거점 내 소규모 무한상상실 관리·운영	-프로그램 단위로 운영되는 생활 속 공간형 무한상상실 -공방형, 스토리텔링, 아이디어클럽 등
위치	-17개 광역 시·도	-17개 광역 시·도	-17개 광역 시·도
장소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비교적 높고, 유관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한 곳	-국·공립 과학관, 대학,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역SW진흥센터 등	-도서관, 주민센터, 대학, 연구소 등 접근이 용이한 생활 속 시설
규모	-아이디어룸·멘토링 및 컨설팅·회의실(660㎡), FAB-LAB 등(240㎡) 등	-400㎡ ² (공작실 300+아이디어회의실 10)	-아이디어 회의실 100㎡ ²
시설	-FAB-LAB(3D 프린터), 앱 테스트 베드	-3D프린터, 레이저커파기, CNC 조각기, CNC 라우터 등 공방장비	-3D프린터, 스크린 등 회의시설 구비 필수

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10월 현재 대전과 대구 개소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 교육의 주된 목적은 교육과 체험을 병행하는 것이므로 무한상상실의 설치 장소를 고려하여 두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상호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³⁷⁾

다. 기술확산지원사업 내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과 유기적 연계 검토 필요

동 사업(3D 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의 세사업인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은 응용분야별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유통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이다.

[표 5]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	-	600	600	순증
-3D프린팅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시범확산	-	-	400	400	순증
-전략포럼, 경진대회,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	-	200	2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반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확산지원(정보통신진흥기금, 1996~, 출연)의 세사업인 정보통신기업 R&D 역량강화는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3D프린팅 지재권 인식확산 지원과 3D프린팅 관련 핵심 기술의 개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37) 거점형 무한상상실은 예비창업자에 대해 3D프린팅 등의 교육을 실시하지만, 일반인 대상 소규모 모형의 경우 일반적인 교육·시연(이용자의 직접 체험·실습이 불가)의 용도로 활용되므로 무한상상실과 3D프린팅 체험 및 창업 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표 6] 정보통신기업 R&D 역량강화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정보통신기업 R&D 역량강화	5,749	5,174	9,266	4,092	79.1
-선진기술특허대응시스템 구축·운영	3,031	2,728	2,456	-272	-10.0
-3D프린팅 지재권 인식확산 지원	-	-	300	300	순증
-3D프린팅 SW핵심기술개발	-	-	-	6,000	순증
-3D프린팅 SW콘텐츠 원천 및 응 용기술 개발	-	-	-	3,000	순증
-디지털 저작물 관리 SW기술 개발	-	-	-	2,000	순증
- 보급형 핵심 SW기술개발	-	-	-	1,0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그 결과 동 사업 내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과 기술확산지원사업 내 3D프린팅 핵심기술개발은 모두 2015년 새롭게 도입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으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을 토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수행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두 사업 모두 국내 3D프린팅 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고, 사업 목표와 추진 주체가 동일하므로 3D프린팅 산업의 육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시범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7] 3D프린팅 산업육성기반구축사업과 비교

구 분	기술확산지원사업 (3D프린팅 핵심기술개발)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사업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소관부처	<u>미래창조과학부</u>	<u>미래창조과학부</u>
사업주체	<u>정보통신산업진흥원</u>	<u>정보통신산업진흥원</u>
사업기간	<u>'15~계속</u>	<u>'15~계속</u>

구 분	기술확산지원사업 (3D프린팅 핵심기술개발)	3D프린팅산업육성기반구축사업 (3D프린팅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 선도국에 비해 취약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초·원천, 응용 기술 및 사업화 기술적 문제해결 등 3D프린팅 SW핵심기술개발	○ 3D프린팅 관련 인력양성 및 국민 참여 환경 조성 등 기반조성
사업내역	○ 일반 국민들이 3D프린팅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기반의 보급형 3D프린팅 콘텐츠 및 다양한 <u>응용기술 개발</u> ○ 3D프린팅 상용화의 기술적 문제 (속도, 정밀도, 해상도 등) 해결을 위한 <u>SW 기술개발</u> ○ 3D프린팅 사업화 지원을 위한 주요 3D디자인/SW 등 저작물 <u>보호기술과 설비·유통 기술개발</u>	○ <u>신비즈니스 모델 개발·보급</u> 및 정책포럼·세미나 등 개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6.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고려 방안 마련

-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무선 Giga인터넷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5.0%) 감소한 47억 6,900만원 편성
- 특별·광역시와 일반시의 커버리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완화 필요

가. 현황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정보통신진흥기금, 2009~, 출연)은 통신 트래픽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Giga인터넷 기반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억 5,100만원(△5.0%) 감소한 47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Giga인터넷서비스 기반구축 (정보통신진흥기금)	4,750	5,020	4,769	-251	5
-Giga인터넷활성화	3,300	3,315	3,315	-	-
-차세대인터넷망 구축 및 시험 검증	370	1,278	1,027	251	19.6
-Giga 인터넷 품질 강화	1,000	427	427	-	-
-정보지도시스템 운영	80	-	-	-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고려 필요

2009년 도입된 동 사업은 국정과제 「혁신적인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무선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출연하여 추진된다. 동 사업은 Giga인터넷 커버리지를³⁸⁾ 2014년 25%, 2015년 40%에서 2017년 90%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38) 커버리지는 Giga인터넷 이용 가능한 가구 수/전체 가구 수를 의미

[표 2] Giga인터넷 연도별 커버리지 확대 계획

(단위: %)

연도	2014	2015	2016	2017
커버리지 목표	25	40	60	9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동 사업의 세사업인 Giga인터넷 활성화는 Giga인터넷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 용인, 광주, 서울, 부산 4개 지역의 신규단지를 중심으로 시범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천안, 공주, 나주, 안동, 춘천, 원주, 영천, 진주 등 23개 지역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였다.

기 구축된 지역의 지역별 커버리지를 보면, 서울시(31.3%)가 가장 높고, 광역·자치시(22.2%), 일반시(15.9%) 순서로 나타났다. 개별 시 단위로는 김포시(77.6%)가 가장 높고, 논산시(55.5%), 통영시(50.5%) 등의 순이며, 오산시(2.8%)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간 커버리지의 격차가 74.8%p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지역별 커버리지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대상 가구(A)	이용가능 가구(B)	커버리지(B/A, %)
서울특별시(1개)	3,569,070	1,117,279	31.3
광역·자치시(7개)	4,697,033	1,044,380	22.2
일반시(77개)	8,306,521	1,326,326	15.9
합계(85개)	16,572,624	3,487,985	21.05

주: 2014. 6 기준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Giga인터넷 활성화의 2015년 예산안은 3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지만, 해당 재원이 지역별로 구분되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동 사업은 Giga인터넷 커버리지 90% 달성을 위한 거점 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므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국 시·도별로 커버리지 격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17.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 여부 검토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인 무한상상실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5억 9,500만원 (129.8%) 증가한 45억 9,500만원 편성
- 2014년 개소한 42개 무한상상실이 내년 초에 성과평가를 받을 계획이므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수립 필요

가. 현황

무한상상실 개설·운영(일반회계, 2014~, 출연)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인 무한상상실의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5억 9,500만원(129.8%) 증가한 4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일반회계)	-	2,000	4,595	2,595	129.8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	2,000	3,995	1,995	99.8
-무한상상실 성과확산	-	-	600	6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기존 설치 지역에 대한 성과평가 후 확대 추진 여부 검토 필요

동 사업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인 무한상상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출연하여 운영된다.

2014년 처음 설치되어 10월 현재 총 41개가 운영 중이며,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10억 9,8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되었다. 이 밖에 중앙·과천·광주·대구과학관 및 서초3동 우체국 등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표 2] 무한상상실 운영 현황

(단위: 명, 천원)

개소수	참여인원	국고지원액	운영비용
42	35,284	10,980,000	649,558

주: 1. 참여인원과 운영비용은 2014년 1월~8월 기준

2. 국고지원액은 대부분 시설비로 인건비, 임대비 등은 제외

3. 중앙과학관, 과천과학관, 우정사업본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자체 예산을 통해 운영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무한상상실의 운영비용은 32개 기관에서 6억 4,956만원이 소요되었고,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5개 기관의 비용³⁹⁾을 합하면 총 14억 3,056만원⁴⁰⁾이 소요되어 기관 당 평균 3,866만원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동 사업을 지역 사업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위해서는 운영비용 및 지원 규모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4년 신규사업인 동 사업에 대한 중간 및 최종평가는 2014년 10월과 2015년 초에 각각 실시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23개를 새롭게 개소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9억 9,500만원(99.8%) 증가한 39억 9,500만원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동 사업에 대해 10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 및 서류 심사를 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차등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운영 준비 중인 1개소를 포함한 42개 무한상상실이 내년 초에

39) 5개 기관의 7억 8,100만원

40) 특허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강원지식재산센터는 제외

성과평가를 받을 계획인바, 기존 설치된 무한상상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무한상상실 설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3]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2015년 예산안

(단위: 수, 백만원, %)

		개소수	예산안	비중
신규	거점	7	1,225	30.7
	소규모	16	422	10.6
기존	거점	8	1,200	30.0
	소규모	29	1,148	28.7
합 계		60	3,995	100.0

주: 42개 기존 무한상상실 중 5개 기관은 자체예산으로 운영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8.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 보완 검토

- 스마트 홈 관련 기기·제품·서비스 간 안정성, 호환성, 등을 점검하고 연동할 수 있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을 개발 및 실증하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신규로 28억원 편성
- 스마트 홈 모델 실증,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관련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현황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정보통신진흥기금, 신규, 출연)은 스마트 홈 관련 기기·제품·서비스 간 안정성, 호환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을 개발 및 실증하고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 사업으로 28억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으로는 스마트 홈 관리시스템의 개발 20억원, 모델하우스 구축 및 실증 5억원,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3억원이다.

[표 1]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 개발 및 실증 (정보통신진흥기금)	-	-	2,800	2,800	순증
-통합형 스마트 홈 관리시스템 개발	-	-	2,000	2,000	순증
-스마트 홈 모델 하우스 구축 및 실증	-	-	500	500	순증
-스마트 홈 기기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	-	300	300	순증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나. 스마트 홈 모델 실증,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관련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 보완 필요

동 사업은 가정 내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호환·연동되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과 스마트 홈 관련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운영하려는 사업이다.

스마트 홈 시장의 확대 및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는 홈 네트워크 기기 간의 자유로운 상호연동 여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하지만 현재 업계의 동향을 보면, 각 기업이 자사 제품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통된 시스템이 개발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로 인해 스마트 홈 관련 연구 및 제품 개발이 각 가전사별로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표 2] 국내 기업의 스마트 홈 표준화 동향

업체명	플랫폼	현황
삼성전자	Smart-Home	- 가전·조명·에너지·보안 등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스마트홈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어하는 삼성스마트홈 출시
LG전자	Home-Chat	- 스마트폰의 메신저(라인)를 통해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LG홈챗 출시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따라서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인 기업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대형가전사·중소가전사·홈 네트워크 업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스마트홈표준화협의체’를 발족·운영하여 실증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므로, 스마트 홈 모델 실증, 가이드라인 및 표준화 관련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도출된 합의를 토대로 연구·개발→모델 하우스 구축 및 실증→표준화에 이르기까지의 예산이 순서대로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안 분석 총 18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필요성·공익성 결여 3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예산 과다 편성 3건, 예산 과소 편성 1건, 사업계획 부실 8건, 법·제도 미비 1건, 기타 1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필요성·공익성 결여]						
일반회계	창조경제 기반조성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조성	-	-	10,266	○ 예비 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자)에게 벤처투자 실습용 투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도 보조금이 아닌 출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
일반회계	인공위성 개발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	-	3,000	○ 한국형발사체 개발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우주개발 투자 관련 중기재정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발사 시기를 1년씩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정보통신 진흥기금	3D프린팅 산업육성	3D프린팅 산업육성 기반구축	-	-	2,000	○ 기술확산지원사업 내 3D프린팅 기술개발 사업과 함께 새롭게 도입된 사업으로, 두 사업의 사업 목표와 추진 주체 등이 동일하므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유기적 연계 검토 필요
[사업의 유사·중복]						
일반회계	인력양성	SW전문 인력역량 강화	-	19,600	23,440	○ 세사업인 정보보호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 부처 내 또 다른 세부사업인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사업 목적이 유사하므로 통합 추진 검토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예산 과다 편성]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247,885	283,650	286,448	○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세입 예산액의 감액 편성 필요
일반회계	생산적 정보문화 조성	정보격차 해소지원	14,950	15,158	15,360	○ 고령층 정보화교육 내에 있는 IT 창업지원교육은 2014년 처음 실시되어 아직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지 않았으므로 예산 조정 필요
일반회계	무한상상실 운영	무한상상실 개설·운영	-	2,000	4,595	○ 2014년 개소한 42개 무한상상실이 내년 초에 성과평가를 받을 계획이므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확대 추진 여부 검토 필요
[예산 과소 편성]						
우편사업 특별회계	건물대여료		27,862	24,996	27,193	○ 오피스빌딩 임대료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방법을 변경하였으나, 예산안이 과소 편성되었으므로 정확한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세입 예산액의 증액 조정 필요
[사업계획 부실]						
지역발전 특별회계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및실증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및실증	30,000	50,000	59,970	○ 「원자력안전법」의 건설허가 처리기간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비의 집행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너지환경 기술개발	친환경 에너지타운	-	-	5,100	○ 관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단지를 우선 구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일반회계	과학기술인 복지향상	사이언스 빌리지	-	-	1,680	○ 사업우선권 부여를 전제로 민간기부금을 지원받아 사이언스 빌리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사업부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활용방안과 연계하여 사업 추진여부 재검토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정보통신 진흥기금	ICT확산 환경조성	Giga인터넷 서비스 기반구축	4,750	5,020	4,769	○ 특별·광역시와 일반시의 커버리 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 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 으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 완화 필요
정보통신 진흥기금	스마트챌린지 프로젝트	개방형 스마트 홈 기술개발 및 실증	-	-	2,800	○ 스마트 홈 모델 실증, 가이드라 인 및 표준화 관련 사업의 실효 성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 보완 필요
일반회계	IT활용 촉진	전자문서 이용기반 조성	6,000	4,287	3,595	○ 실제 이용량이 당초 추정된 유통 량에 비해 저조하므로 공인전자주 소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방송통신 발전기금	디지털 방송전환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지원	-	-	1,000	○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 운영 예 산 조정 필요
방송통신 발전기금	인터넷 이용환경 고도화	무선인터넷 확산기반 조성	1,000	4,107	4,518	○ 이동통신사의 상용 와이파이와 공공 와이파이가 보완 될 수 있 도록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사업 수행 필요
[법·제도 미비]						
방송통신 발전기금	ICT 확산 환경 조성	창조경제 밸리육성 지원	-	-	30,783	○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 세사업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기타]						
일반회계	과학기술 종합조정 지원	다부처 공동기획 연구지원	-	1,100	1,000	○ 사전기획연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은 각 부처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808억원(7.2%) 증액된 1조 2,021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427억원에서 2015년 539억원으로 26.2% 증가하였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조 785억원에서 1조 1,482억원으로 6.5% 증가하였다.

[표 1]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93,227	42,747	53,945	11,198	26.2
-일반회계	93,227	42,747	53,945	11,198	26.2
기 금	1,141,382	1,078,542	1,148,186	69,644	6.5
-방송통신발전기금	1,141,382	1,078,542	1,148,186	69,644	6.5
총 계	1,234,609	1,121,289	1,202,131	80,842	7.2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746억원(6.6%) 증액된 1조 2,038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507억원에서 2015년 556억원으로 9.7% 증가하였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1조 785억원에서 1조 1,482억원으로 6.5% 증가하였다.

[표 2]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49,255	50,699	55,607	4,908	9.7
-일반회계	49,255	50,699	55,607	4,908	9.7
기 금	1,141,382	1,078,542	1,148,186	69,644	6.5
-방송통신발전기금 ¹⁾	1,141,382	1,078,542	1,148,186	69,644	6.5
총 계	1,190,637	1,129,241	1,203,793	74,552	6.6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총계는 방통위(1,637억원), 미래부(6,229억원), 내부거래(1,800억원), 보전지출(1,816억원)을 포함한 금액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2,193억원으로 2014년 1,963억원 대비 231억원(11.8%)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5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637억원이다.

[표 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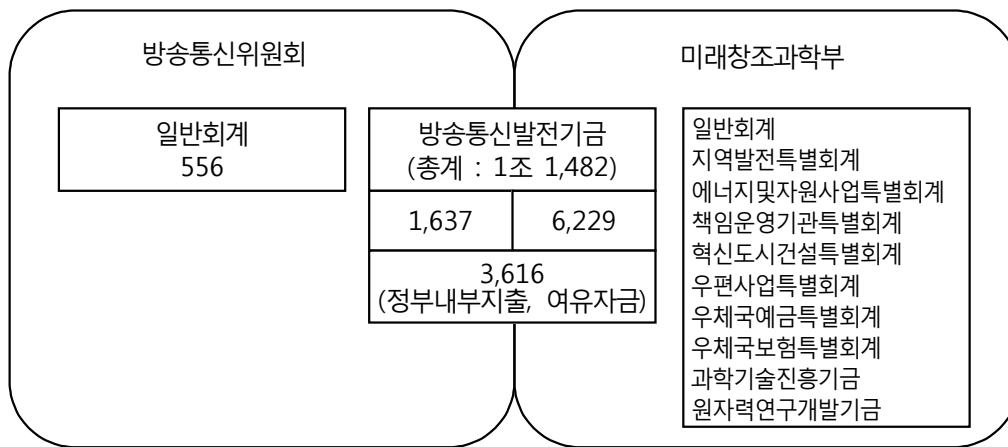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9,255	50,699	55,607	4,908	9.7
방송통신발전기금	144,955	145,557	163,733	18,176	12.5
합 계	194,210	196,256	219,340	23,084	11.8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이 없다. 2015년 총계 기준 예산액 1조 2,038억원은 일반회계 556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1조 1,482억원이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방송통신발전기금 총계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비 6,229억원과 미래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정부 내부지출 1,800억원, 여유자금 1,81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 신규 및 주요 중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29억원 규모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중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 2의 개정 에 따라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 확보를 위한 재난방송 중계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것이다.

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은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이 있으나 비용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향상 및 매출 확대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표 4] 방송통신위원회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방송통신발전기금 (2개)	재난방송 수신용 방송중계설비 지원	915
	TV/라디오 중소기업 광고 활성화 지원	2,000
총 2개 사업		2,915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환경조성 14억원,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10억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98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환경조성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시행에 따라 시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존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되었다.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은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 편성되었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는 EBS의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되었다.

[표 5]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방송재난관리	176	276	100	56.8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환경조성	1,804	3,201	1,397	77.4
	방송통신시장환경조사분석	160	222	62	38.8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75	275	100	57.1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1,500	2,500	1,000	66.7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2,305	12,110	9,805	425.4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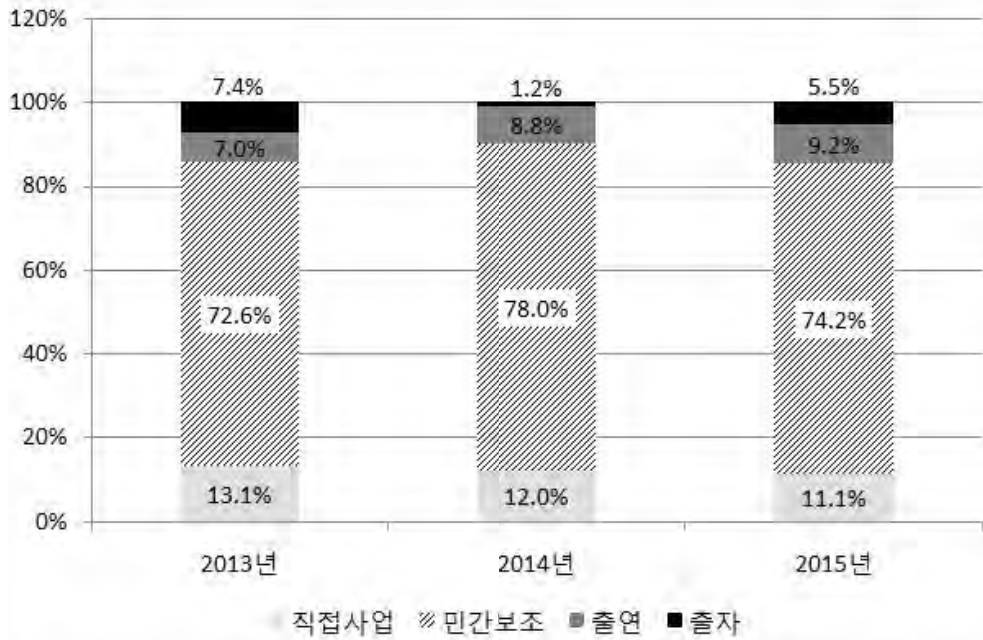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5년 예산안은 ① 방송 인프라 지원 및 미디어 다양성 증진, ②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 환경조성, ③ 방송기반 구축 및 시청자 권익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예산안은 방송 통신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지원 및 방송기반 구축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이를 위해 공공·공익 목적의 방송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지역 및 중소 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한 97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익광고 활성화 지원 등에 전년대비 7.8% 증가한 361억원을 편성하였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구조를 살펴보면 2015년 전체 예산액 2,193억원 중 직접 수행사업의 비중은 11.1%이고, 대부분이 민간보조(74.2%)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으며, 그 외 출연금(9.2%), 출자금(5.5%)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보조와 출연 및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2014년도의 경우 88.0%였으나 2015년도는 88.9%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0.9%p 증가하였다. 따라서 보조사업이나 출연금 등을 통한 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관리가 중요한 바,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내실있는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

[그림 1] 방송통신위원회 사업구조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셋째, 정부의 재난 관련 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KBS 재난방송시스템 지원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10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예산안 분석 결과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경우 기 구축된 재난방송시스템이 재난 관련 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그래픽 표출 시스템, CCTV 송출 시스템, 기사 자동변환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는바,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교육방송출자는 공사 지연을 감안한 2015년 출자 계획이 121억 1,000만원인 반면, 2015년 계획현액은 158억 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 검토

- 지역방송국과 재난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 구축 등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원(66.7%) 증가한 25억원 편성
- 기 구축된 재난방송시스템이 재난 관련 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그래픽 표출 시스템, CCTV 송출 시스템, 기사 자동변환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는바,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 재검토

가. 현황

KBS 재난방송시스템 지원(방송통신발전기금, 2014~2015, 보조)은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에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와 HD CCTV를 설치하고, 지역국과 재난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억원(66.7%) 증가한 2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방송통신발전기금)	-	1,500	2,500	1,000	66.7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	-	884	830	-54	-61.3
-재난방송 HD CCTV 추가 설치	-	460	900	440	95.6
-지역국과 재난방송 기반 네트워킹	-	156	270	114	73.0
-사회 재난 대비 재난방송시스템	-	-	500	500	순증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 재검토 필요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의 세사업 중 사회적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 구축은 사회적 재난 관련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신규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향후 신설될 ‘국가안전처(가칭)’ 등과 실시간 자동화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KBS는 동 사업을 통해 공유하게 될 정보가 전국의 화재 발생 상황, 구조구급 상황, 해양/항만사고, 철도/도로 사고, 항공 사고, 유해물 산업단지 사고 등 사회 재난 정보이며, 현재 구축된 재난방송시스템은 자연 재난에 최적화된 시스템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구축된 재난방송시스템이 13개 유관기관으로부터 30여종의 재난정보와 6,000여개의 CCTV영상을 실시간으로 연계 및 수집하고 있고, 재난방송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재난정보 통합 DB에 분류되어 저장되며, 방송에 활용되고 있다.

[표 2] 재난정보 연계 상황

연계 기관(13개)	연계자료 목록
기상청	기상특보, 태풍정보, 지진/지진해일, 기상예보, 국내지상시간자료, 위성영상, 레이더 영상, 생활기상지수 등
홍수통제소	수위(원시, 수정) 정보, 우량(원시, 수정)정보, 댐수위 정보, 수위/우량 관측소 정보, 홍수 예경보 발령정보 등
산림청	산사태 예측 정보, 산사태 위험지구 정보, 산불 실시간 발생정보, 산불 위험지수, 산불 위험예보 정보 등
경찰청	전국 도로 소통정보, 돌발정보, 노드/링크 정보 등, 전국 시내도로 CCTV영상(1,500여개)
소방방재청	지자체 수위정보 · 지자체 우량정보 등,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CCTV영상(2,100여개)
국토교통부	전국 고속도로/국도 CCTV영상(2,100여개)
서울지방항공청	공항별 상태 정보, 비정상 운항보고 정보 등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실시간 환경방사선량률, 감시망 주소/좌표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전국 정전발생 및 복구현황 정보
서울시	시내 하천 수위와 홍수 예경보 현황, CCTV 영상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대기질 정보
한국수자원공사	전국 댐 수위와 방류량 정보, CCTV 영상
한국전력거래소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 정보

자료: KBS

신설될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주요 연계기관은 국가안전처이나 이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에 계류 중¹⁾이다.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을 총괄·조정하고,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기능과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 및 오염방제 기능 등에 대한 통합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설립되더라도 소방방재청 등이 일부 흡수·통합될 예정이며, 이들 기관의 재난 정보는 이미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표 3] 재난방송시스템과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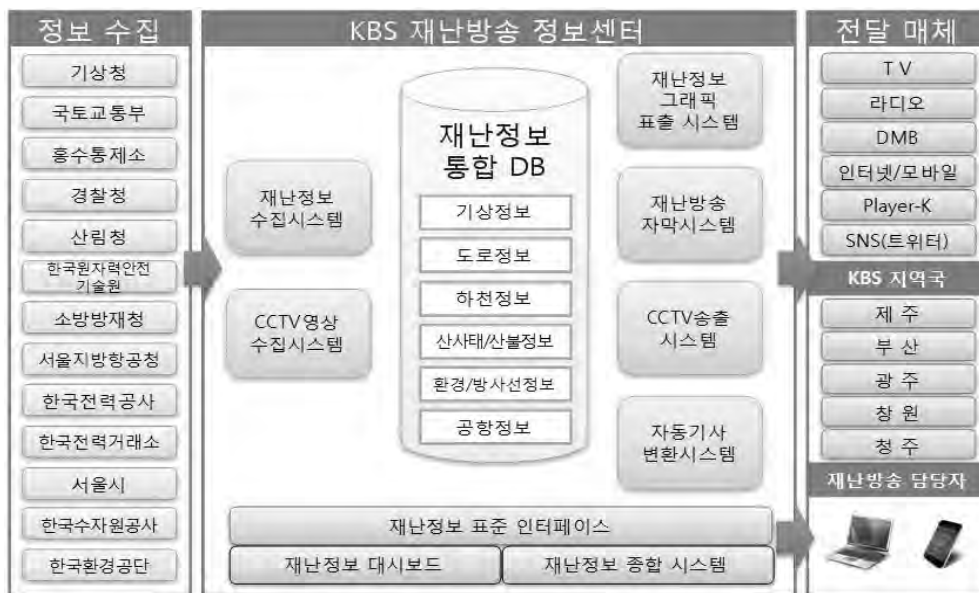
	재난방송시스템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
수집정보	<u>자연재해</u>	<u>사회재난</u>
사업내용	자연 재해로 발생하는 <u>예측 및 피해 정보의 신속한 전달</u>	대형 화재 등 사회 재난 발생 시 <u>신속한 상황 인지 및 전파체계 구현</u>
정보 유형	기상특보, 태풍정보, 산사태 예측 및 위험지구 정보, 도로 및 지자체 CCTV, KBS HD CCTV, 공항별 상태, 실시간 환경방사선량률, 정전발생 복구현황 등	화재 발생 상황, 구조구급 상황, 해양 항만사고, 철도/도로 사고, 항공 사고, 유해물 산업단지 사고 등
사업기간	2011~2014	신규
연계기관	기상청, 홍수통제소, 산림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거래소	- 국가안전처(가칭)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방송기기	- <u>자동 그래픽 템플릿 생성(CG)</u> · 날씨 방송용 · 재난 특보용 - <u>현장 CCTV 영상</u>	- <u>자동 그래픽 템플릿 생성(CG)</u> · 사회재난 특보용 - <u>모바일 중계영상, CCTV영상 등</u>
정보활용 방안	- 웹, 모바일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 실시간 재난정보 통합상황판	- 기관-KBS 간 핫라인시스템 구축 - 지도기반 재난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취재진 상황전파 시스템 구축 - 재난 상황별 대응지식DB 구축 (대피소정보, 행동요령, 취재매뉴얼 등)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또한, 기 구축된 재난방송시스템이 재난 관련 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그래픽 표출 시스템, CCTV 송출 시스템, 기사 자동변환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는 바, 기존 시스템의 연계 기관과 수집 정보의 범위를 사회적 재난까지 확대하여 기 구축된 방송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²⁾

[그림 1] KBS 재난방송 정보센터 개요



자료: KBS

다.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에 대한 평상시 활용 계획 모색 필요

동 사업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³⁾에 따른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HD급 CCTV를 활용한 과학적인 재난방송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 2) 방송통신위원회는 KBS가 정보를 제공받는 13개 재난유관기관에 해양경찰청이 없으며, 경찰청에서 제공받는 재난정보는 도로교통정보, 돌발정보 관련 CCTV인 반면, 향후 해양경찰청에서 제공할 정보는 지자체 수위정보, 우량정보 관련 CCTV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재난방송에서 필요한 정보는 화재발생, 구조구급, 해양항만사고 등으로 현재 수집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③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표 4] KBS재난방송시스템 지원 2015년 예산안 현황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	HD CCTV 시스템	지역국 재난 시스템	사회 재난 대비 재난방송시스템
예산안	8.3억원	9억원	2.7억원	5억
내용	국내 최초 재난방송 전용스튜디오	재난상황 모니터링· 재난방송용 HD CCTV	지역별 재난방송 시스템 구축	‘사회 재난’ 대비 시스템 구축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KBS는 동 사업을 통해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를 KBS 뉴스 스튜디오 수준의 생방송 환경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S는 재난방송 스튜디오의 평상시 활용 계획과 관련하여 기상뉴스의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상뉴스의 경우 기존의 뉴스 스튜디오를 이용하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난방송 전용 스튜디오는 폭우, 태풍, 폭설 등의 기상
에 따라 활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평상시 활용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바, 향후 재난방송스튜디오를 평상시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률 강화 방안을 모
색할 필요가 있다.

[표 5] 현재 스튜디오별 기상뉴스 스케줄

	기상 뉴스								
	05시	뉴스 광장	뉴스 타임	09시 30분	12시	14시	15시	17시	19시
1TV뉴스 스튜디오	○	○		○	○		○	○	○
2TV뉴스 스튜디오			○			○			

주: 녹화방송인 21시 뉴스와 뉴스라인 기상뉴스는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

자료: KBS

2.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집행 관리 방안 마련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지원을 위하여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8억 5백만원(425.4%) 증가한 121억 1,000만원 편성
- 공사 지연을 감안한 2015년 출자 계획이 121억 1,000만원인 반면, 2015년 계획현액은 158억 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출자(방송통신발전기금, 2012~2016, 출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8억 5백만원(425.4%) 증가한 12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방송통신발전기금)	15,000	2,305	12,110	9,805	425.4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정부는 EBS의 디지털 통합사옥 건립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14년 편성된 정부 출자 예산 23억 5백만원의 경우 2014년 9월 현재 전액 미집행 되었으며, 향후 건립 공정 등을 점검한 후 출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표 2]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관련 출자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한국교육방송공사						
	계획액	집행액 (A)	출자액 (A)	전년도 집행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률 (C/B)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2,305	-	-	12,970	12,970	2,884	22.2

주: 2014년 8월 말 기준

자료: EBS(한국교육방송공사)

2015년 편성된 계획안은 121억 1,000만원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기본계획(2013. 9. 25)」의 추진일정보다 실제 추진일정이 약 3개월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인 161억 4,700만원의 9개월 분량이 편성되었다.

[표 3]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중기재정계획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13~'17년 계획	15,000	2,305	17,190	15,105	-	49,600
'14년 지원계획 (4월 이전)	15,000	2,305	16,147	16,148	-	49,600
'14년 지원계획 (예산 심의)	15,000	2,305	12,110	20,185	-	49,600

자료: 기획재정부 중기재정계획

그 결과 2014년 출자액을 포함한 이월액은 총 37억 2,700만원으로 이를 감안한 2015년 계획현액은 158억 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된다. 지연된 공사 일정을 감안하여 2015년 출자금은 당초 계획보다 감액된 12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이월된 금액을 고려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 4] 한국교육방송공사 출자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출자금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집행예정)	이월액	비고
2013	15,000	2,030	12,970	- CM비,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시설 부대비 등 집행
2014	2,305 (12,970)	2,884 (8,664)	12,391 (3,727)	- 9월 현재 2,884백만원 집행 (CM비, 건축인허가비, 건축공사비 등)
2015	12,110 (3,727)	-	-	-

주: 2014년 9월 16일 기준

자료: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체계적인 차입금 상환계획 수립 필요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디지털통합사옥의 건설을 위해 약 673억원을 차입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차입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 20억원의 이자와 20억원 이상의 원금을 매년 자구노력 등을 통해 부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예산의 증액 확보는 물론 자체수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표 5] 디지털통합사옥 건설로 인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차입액 조달 계획

(단위: 억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차입금	-	-	-	-	157	574	-

주: 2017년에는 58억원을 상환하여 차입금 규모 축소 전망

자료: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주요 자체수입 확대 계획의 세부 내역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콘텐츠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판매 및 공급(국내·해외)과 광고수입 등이다. 그러나 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출판사업은 향후 학령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에 따라 악화될 예정이며, 광고 규제¹⁾ 완화를 통한 수익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입장과 달리 어린이에 대한 교육방송의 파급력과 공사의 공영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의 완화 또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방송프로그램시간(광고시간 포함)의 100분의 10 초과금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 FM 라디오 상업 광고 규제 완화 등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추정한 2014년 대비 2021년 자체수입 증가액은 총 151억 7,400만원으로 전체 차입액(673억원)의 22.5%에 불과한바, 체계적인 상환 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표 6] 자체수입 확대 계획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4~2021 자체수입 증가액(추정)
출판사업	99,099	102,697	105,421	-17,237
방송광고	35,260	40,008	43,000	5,720
콘텐츠판매	5,041	7,607	9,939	3,369
해외채널공급 등	-	-	100	700
애니메이션	4,761	5,113	5,415	1,485
합 계	164,250	177,314	186,848	15,174

주: 출판사업의 수치는 정가인상을 고려하지 않음

자료: EBS(한국교육방송공사)

3.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저소득층 중심의 사업 계획 정비 필요

- 장애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지원과 수신기 보급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94억 4,400만원 편성
- 자막방송수신기의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률은 26.6%이며, 화면해설방송수신기와 난청노인용수신기도 각각 32.5%와 64.2%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신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정비 필요

가. 현황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방송통신발전기금, 2000~, 보조)은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TV시청을 돕기 위해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 해설)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시청할 수 있는 수신기 보급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94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방송통신발전기금)	7,244	9,444	9,444	-	-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842	3,042	3,042	-	-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4,402	5,182	5,182	-	-
- 스마트 수화방송 서비스 기반 구축	-	1,220	1,220	-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저소득층 중심으로 수신기 보급기가 보급되도록 사업 계획 정비 필요

동 사업의 세사업인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은 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등을 보급함으로써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보조하여 수행되며, 2015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0억 2,000만원(수신기활용 실태조사 제외)이 편성되었다.

[표 2]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829	3,042	3,042	0	0.0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1,094	1,409	1,409	0	0.0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1,552	1,409	1,409	0	0.0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143	184	184	0	0.0
-수신기활용 실태조사	40	40	40	0	0.0

주: 2014년 8월 말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0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의 보급을 시작으로 2001년 난청노인용수신기, 2002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보급하였다. 2009년에는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에게 수신기를 100% 보급하고, 저소득층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 수신기 50% 보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¹⁾ 이러한 취지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막방송수신기 3만 8,978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만 6,504대, 난청노인수신기 5만 164대가 보급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급된 저소득층 대상 방송수신기는 자막방송수신기 9,390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6,485대, 난청노인수신기 1만 880대에 불과하며, 2013년에 보급한 기기를 합산하더라도 자막방송수신기 1만 784대, 화면해설방송수신기 8,813대, 난청노인수신기 1만 2,529대에 불과하다.

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소외계층 지원 종합계획(요약)」, 2009. 3. 24.

[표 3] 저소득층 방송수신기 보급현황

(단위: 대, %)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자막방송 수신기	전체보급대수(A)	7,373	7,505	8,134	9,175	5,247	37,434
	저소득층 대상 연간 보급대수(B)	1,887	2,360	2,092	3,051	1,394	10,784
	연간 저소득층 보급률(B/A)	25.6	31.4	25.7	33.3	26.6	28.8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전체보급대수(A)	4,000	4,000	4,300	7,500	7,083	26,883
	저소득층 대상 연간 보급대수(B)	237	1,704	2,043	2,501	2,328	8,813
	연간 저소득층 보급률(B/A)	5.9	42.6	47.5	33.3	32.5	32.8
난청노인 수신기	전체보급대수(A)	5,276	5,672	3,000	3,084	2,568	19,600
	저소득층 대상 연간 보급대수(B)	3,607	4,370	1,702	1,201	1,649	12,529
	연간 저소득층 보급률(B/A)	68.4	77.0	56.7	38.9	64.2	63.9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안은 자막방송수신기 14억 900만원,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4억 900만원, 난청노인수신기 1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3년 보급한 자막방송수신기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급된 기기는 26.6%에 불과하고, 화면해설방송수신기와 난청노인용수신기도 각각 32.5%와 64.2%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수신기를 저소득층에 우선 보급하고 있으나 신청 저소득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이 아닌 계층도 보급하는 상황이다.²⁾ 그러나 동 사업의 법적 근거인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³⁾는 방송통신기금은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저소득층 우선의 수신기 보급 목표 제시한 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당 재원이 배분되도록 사업 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 2) 자막방송수신기: (1순위)저소득층 청각장애인, (2순위)1~3급 청각장애인, (3순위)4~6급 청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수신기: (1순위)저소득층 시각장애인, (2순위)1~3급 시각장애인, (3순위)4~6급 시각장애인
난청노인용수신기: (1순위)저소득층 난청노인, (2순위)독거노인 등 난청노인, (3순위)기타 일반 난청노인
3)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4.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계층별 인적 구성과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보호활동을 통해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 9,700만원(77.4%) 증가한 32억 100만원 편성
- 세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의 2015년 예산안은 교육 대상별 인원 및 재원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된바, 계층별 인적 구성과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가. 현황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일반회계, 2009~, 보조)은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예방과 관련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3억 9,700만원(77.4%) 증가한 32억 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일반회계)	1,354	1,804	3,201	1,397	77.4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300	600	1,613	1,013	168.8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644	804	1,089	285	35.4
-모바일 앱 결제 피해 예방 및 보호	300	400	499	99	24.8
-회계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50	-	-	-	-
-ARS 운용실태 분석 평가	60	-	-	-	-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나. 계층별 인적 구성과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동 사업의 세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활용 및 피해예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중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은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를 업데이트 및 제작하고,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이란,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강사단을 구성하여 교육하는 사업으로, 교육대상은 정보취약 계층(노령층, 외국인, 장애인, 농어민)과 주부, 청소년 등 일반인이 해당한다.

[표 2]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예산안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액	예산현액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644	644	804	804	1,089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380	380	544	544	789
-계층별 방송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콘텐츠 업데이트	-	-	78	78	40
-계층 활용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피해예방 매뉴얼 제작	100	100	100	100	30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280	280	366	366	719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교육은 2013년 10,9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4년의 경우 13,3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표 3] 2010~2014년 피해 예방 교육 실적

(단위: 명, 수)

구분		노인 및 돌보미	농어민	청소년	주부	일반인	소비자 단체 상담원	소비자 학과 대학생	외국인	장애인	계
2010	인원	165	-	370	285	120	-	-	-	-	940
	횟수	4	-	2	4	1	-	-	-	-	11
2011	인원	1,070	-	-	-	-	430	854	-	-	2,354
	횟수	13	-	-	-	-	8	11	-	-	32
2012	인원	7,785	-	22	-	-	20	-	296	-	8,123
	횟수	197	-	1	-	-	1	-	97	-	296
2013	인원	9,806	-	-	-	-	-	-	902	209	10,917
	횟수	264	-	-	-	-	-	-	299	35	598
2014.8	인원	4,603	214	35	45	-	-	-	576	438	5,911
	횟수	183	12	2	2	-	-	-	230	85	514
계	인원	23,429	214	427	330	120	450	854	1,774	647	28,245
	횟수	661	12	5	6	1	9	11	626	120	1,45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동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교육 대상을 다르게 구성하고 있다. 교육대상별 교육 현황을 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전체의 77.9%를 차지한 반면, 농어민 대상 교육은 3.6%에 불과한 수준이고, 7.4%를 차지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은 전액 청각장애인에게 사용되고 있어 교육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동 사업의 교육대상을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3억 5,300만원(96.4%)이 증가한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계층별 정보화 수준을 보면, 일반국민을 100으로 가정할 때, 장애인, 고령층, 신정보소외계층⁵⁾이 각각 83.8%, 72.6%, 81.2%⁶⁾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2015년 계층별로 강사단 120명을 육성하여 노령층·외국인·장애인·농어민 등 정보취약 계층과 주부·청소년 등 2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라고만

4)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농어민 대상 교육은 교육시행 시기가 늦어져 2014년 8월 처음 시행되어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은 이동이 불편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책자가 개발되지 않아 교육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2015년도 점자책자 개발 예정)

5) 결혼이민자 및 북한이탈주민을 의미함

6) 결혼이민자와 북한이탈주민의 일반정보화수준을 산술 평균한 값임

밝히고 있을 뿐, 계층별 교육대상, 인원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계층별 특징 및 인적 구성과 정보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수립 후 예산의 증액 편성이 필요하다.⁷⁾

[표 4] 2014년 피해 예방 교육 실적

수행기관	대상	목표인원	교육인원 (8월 기준)	주요교육내용
노인종합복지관	노령층	10,000	4,603	○ 방송통신 가입시 유의사항, 실버요금제 안내 ○ 스마트폰 기초 이용법 및 어플 활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글로벌센터	외국인	1,000	576	○ 소액결제·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예방법 ○ 스마트폰 설정법 및 어플 활용법
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	400	438	○ 소액결제·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예방법 ○ 복지요금제안내, 스마트폰 설정법 및 어플 활용법
경기도주부강사단	청소년	250	35	○ 소액결제·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예방법 ○ 스마트폰중독예방법,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
농어촌희망재단	농어민	1,000	214	○ 소액결제·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해예방법 ○ 스마트폰 설정법 및 어플 활용법
주부강사단	학부모	250	30	
경기도강사단	경기도민	400	15	
합계	-	13,300	5,911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7)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부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계층별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 제약으로 연도별 중점교육대상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층별 인구구성, 정보화수준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여 교육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분석 총 4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필요성·공익성 부족 1건, 집행실적 부진 1건, 사업계획 부실 2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필요성·공익성 부족]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인프라 지원	KBS재난방송 시스템 지원	-	1,500	2,500	○ 기 구축된 재난방송시스템이 재난 관련 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필요한 그래픽 표출 시스템, CCTV 송출 시스템, 기사 자동변환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는바, 사회 재난 대비 방송시스템의 필요성 재검토
[집행실적 부진]						
방송통신 발전기금	방송인프라 지원	한국 교육방송 공사 출자	15,000	2,305	12,110	○ 공사 지연을 감안한 2015년 출자 계획이 121억 1,000만원인 반면, 2015년 계획현액은 158억 3,7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바, 철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한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사업계획 부실]						
일반회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환경 조성	1,354	1,804	3,201	○ 세사업인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의 2015년 예산안은 교육 대상의 유형에 대한 인원과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편성된바, 계층별 인적 구성과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방송통신 발전기금	시청자 권익증진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7,244	9,444	9,444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신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정비 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세입은 2014년 5억 5,500만원에서 2015년 53억 9,600만원으로 872.3% 증가하였다.

[표 1]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1,296	555	5,396	4,841	872.3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은 2014년 976억원에서 2015년 1,015억원으로 4.0% 증가하였다. 총지출은 총계와 동일하다.

[표 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88,801	97,569	101,455	3,886	4.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5년도에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세입 중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전년대비 20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은 9억원, 방재환경기반구축 41.4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다.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증액된 것은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상요율이 2015년 1월부터 변경될 예정¹⁾이기 때문이다.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은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50% 증액되었으며, 안전관련 예산으로 볼 수 있는 방재환경기반구축 사업은 국가방사능방재체계 강화를 위하여 전년대비 93% 증액되었다.

[표 3]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세입)	243	5,066	4,823	1,984.8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600	1,500	900	150.0
	방재환경기반구축	4,450	8,590	4,140	93.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임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10월에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2013년 3월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15년도 예산안은 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 ② 원전비리 척결을 위한 원전관리시스템 재정비, ③ 원자력안전, 핵안보 및 핵비확산 분야 국제협력 강화, ④ 실생활 방사능 안전관리 및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안전예산 확대 방침에 따라 원자력안전연구개발(전년대비 28.5% 증액), 원전비리 방지(전년대비 150.0% 증액) 및 국가방사능방재체제 강화(전년대비 93.0% 증액)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둘째,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²⁾)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³⁾)에 지원되는 출연금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건설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비 감액(KINS △50억원, KINAC △65억원)보다 출연금 감액 규모(KINS △20억원, KINAC △53억원)가 작게 편성되어, 대부분의 사업비 예산은 소폭 증액되었다.

셋째,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안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영구 가동중단 및 해체에 대한 기술 확보가 미흡하므로, 관련 연구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3)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III. 주요 사업 분석

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업무 범위 명확화 필요

-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원전기기 성능검증 국가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원(150.0%) 증가한 15억원 편성
- 원전기기 성능검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인데, 성능검증 기관의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관리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가. 현황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일반회계, 2014~, 출연)은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원전기기 성능검증 국가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억원(150.0%) 증가한 1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원전기기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일반회계)	-	600	1,500	900	150.0
-원전기기 성능검증 국가관리체계 구축	-	200	88	-112	-56.0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 역량 강화	-	100	120	20	20.0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 인증관리 강화	-	100	72	-28	-28.0
-원전기기 성능검증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200	100	-100	-50.0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 선진화 지원	-	-	120	120	순증
-원전기기 해석검증 인증관리 기반구축	-	-	500	500	순증
-성능검증기관 설비개선 지원	-	-	500	50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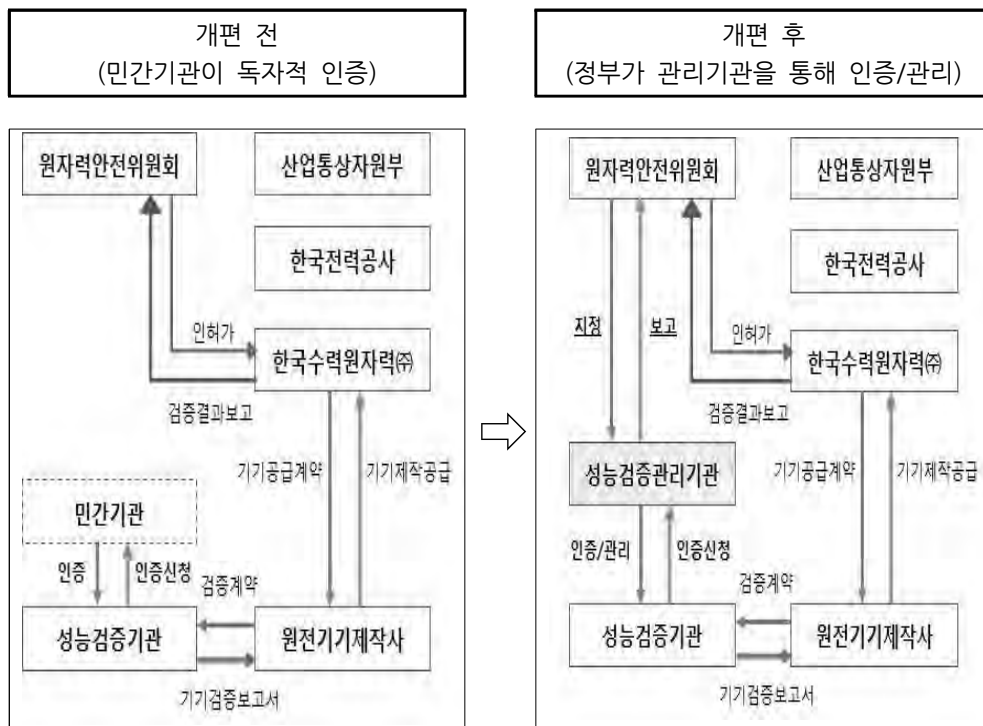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인증 대상인 성능검증기관에 지원금 지급 부적절

2013년에 적발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관련하여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우려가 높아졌었다. 이에 정부는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⁴⁾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는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을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동 대책에 따라,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 업무가 민간기관에서 정부가 지정하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업무는 2014년 5월에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이 시행되는 2014년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그림 1] 성능검증관리기관에 의한 원전기기 성능검증 개선 현황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4) 관계부처 합동, 「원전비리관련 후속조치 및 종합개선대책」, 국가정책조정회의, 2013. 6. 7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안에는 관리기관의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 외에 성능검증기관을 직접 지원하는 2개의 세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 선진화 지원 세사업은 성능검증기관의 종사자 교육 및 교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며, 성능검증기관 설비개선 지원 세사업은 성능검증기관의 시험시설 유지·보수 및 설비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2] 성능검증기관 지원을 위하여 신규로 편성된 세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내용	2015 예산안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 선진화 지원	성능검증 인증심사원 및 전문인력 교육 및 교재개발	120
성능검증기관 설비개선 지원	성능검증기관의 시험시설 유지·보수 및 설비 개선비용 지원	500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제6항⁵⁾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사업은 관리기관을 통하여 성능검증기관을 지원하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 사업의 취지가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성능검증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기기제작사 종사자에 대한 지원 재검토 필요

원전기기 해석검증 인증관리 기반구축 세사업은 2015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세사업을 통하여 원전기기제작사의 해석검증 인증관리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해석검증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5)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⑥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표 3] 원전기기 해석검증 인증관리 기반구축 세사업의 산출내역

해석검증 인증관리 기준 개발: 30백만원
해석검증 인증심사 및 발급 지원: 350백만원 - (인증심사) 5백만원/업체 × 70개 업체 = 350백만원
현장점검 실태조사: 70백만원
성능검증 교육 지원: 40백만원 - 해석검증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 (10백만원) - 해석검증 분야 전문인력 교육 실시 (30백만원): 3백만원/회 × 10회 = 30백만원
성능검증 이해도 제고: 10백만원 - 제도 관련 이해도 자료 제작·보급 (10백만원)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석검증은 성능검증기관이 아닌 원전기기제작사의 자체 해석에 의한 검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3년 1월부터 수행된 원전 품질서류 전수조사 당시 성능검증의 4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⁶⁾에 따르면 관리기관의 관리 대상은 성능검증기관이며, 기기제작사⁷⁾는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세사업의

6)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4(성능검증관리기관 지정 등) ① 위원회는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11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관리기관(이하 “성능검증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성능검증관리기관은 성능검증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성능검증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지정기준, 업무범위(성능검증기관 인증업무를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성능검증관리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 제3호에서는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와 제작자를 “공급자”로 규정하고 있다.

인증관리 대상은 기기제작사가 아닌 기기제작사의 성능검증수행조직⁸⁾이며, 이 경우 기기제작사의 성능검증수행조직을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⁹⁾제4호에서 규정한 “성능검증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기기제작사의 해석검증을 넓은 범위의 성능검증으로 해석하여 기기제작사의 성능검증수행조직을 성능검증기관으로 볼 경우에도, 동 세사업에 포함된 성능검증 교육 지원, 성능검증 이해도 제고 등 기기제작사의 종사자를 지원하는 것은 인증 대상에 대한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기제작사의 성능검증수행조직 종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8) 예: OO주식회사 부설연구소, OO기업 성능검증팀 등

9)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부적합사항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련 설비에서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발견하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
2. 발전용원자로설치자
3.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설계자·제작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4.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련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자(이하 “성능검증기관”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4.5.21]

2.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전 해체 및 오염제거 기술개발 비중 확대 필요

-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안전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억원(28.5%) 증가한 203억원 편성
-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폐로에 대비하여 연구개발 과제 중 제염·해체 관련 연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가. 현황

원자력안전연구개발(일반회계, 2009~, 출연)은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 안전 구현을 위한 기술·시스템·역량 강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5억원(28.5%) 증가한 203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일반회계)	11,782	15,800	20,300	4,500	28.5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	7,600	11,600	14,100	2,500	21.6
-방사선안전규제 기술개발	3,130	3,100	3,800	700	22.6
-생활방사선안전 기술개발	1,052	1,100	1,400	300	27.3
-방사능방재 및 비상대응 기술개발	-	-	1,000	1,000	신규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나. 원전 해체 및 오염제거 기술개발 비중 확대 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14

년 9월말을 기준으로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11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이 완료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장운영 또는 폐로 여부가 결정된다. 고리 1호기의 경우 발전 개시 후 30년이 경과하였으나 10년간 수명이 연장되었으며, 1982년 11월에 발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이 완료되어 연장 운영을 위한 심사를 받고 있다.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4기의 설계수명이 완료될 예정이며, 수명연장 여부에 따라 2030년까지 2기~1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폐로될 예정이다.

[표 2] 운영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완료

	수명연장이 없는 경우		10년 수명연장의 경우	
	설비용량(MW)	폐로(기)	설비용량(MW)	폐로(기)
2030년 이전	9,716	12	1,266	2
2035년 이전	2,000	2	3,500	4
합 계	11,716	14	4,776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2014. 3.

원자력발전소의 폐로가 결정될 경우 발전시설에 대한 해체 및 방사능 오염제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1기를 폐로 및 해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6,03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원자력발전소 폐로 및 방사능 오염제거 경험이 부족하며, 관련 기술도 미흡한 상태이다.¹¹⁾ 더구나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및 제염·해체와 관련된 규제기준과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자력안전법」 제3조제1항¹²⁾에 따라 2012년 10월에 수립된 「원자력안전종합

10) 현재 시점에서 해체할 때의 비용으로 실제로는 해체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2014. 3.)

1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199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2년에 걸쳐 연구용원자로 1호기와 2호기를 제염·해체한 경험이 있으며, 2001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9년에 걸쳐 우라늄변환시설을 해체한 경험이 있다.

12) 「원자력안전법」

제3조(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자력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

계획」¹³⁾에서는 중점과제의 하나로 ‘원전 영구 가동중단 이후 해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원전 해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

[비전]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 [중장기 정책목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달성 세계 선도적 수준의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구축 세계 일류의 원자력안전·핵안보 인프라 확충 [7대 추진전략] 1.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반영한 원전 안전성 강화 1-4. 장기가동 원전 및 미래 안전규제현안 대응 강화 □ 원전 영구 가동중단 이후 해체에 대한 대비책 마련 ○ 전 가동원전에 대해 예비해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신규건설 원전은 건설허가 신청시 예비해체계획을 제출토록 규제 요건화 ○ 해체 안전성 감증을 위한 규제기준·지침 및 해체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심·검사 지침 완비 2. 안전문화 확산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3. 통합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구축 4.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확립 5.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원자력 안전규제역량 강화 6. 국제 원자력 안전체제에 대한 기여 확대 7. 국가 원자력 안전 법·제도 혁신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차 (2012~2016) 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2. 10.

그러나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에서 원전의 제염·해체와 관련된 과제는 2013년에 선정된 1개 과제가 유일하다. 동 과제에는 2018년까지 5년간 매년 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2013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7.6%, 2015년 예산안의 4.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안전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차 (2012~2016) 원자력안전종합계획」, 2012. 10.

[표 4]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염해체 관련 연구비 비중

(단위: 백만원, %)

	2012	2013	2014	2015안
원자력안전연구개발(A)	2,730	11,782	15,800	20,300
-제염·해체 관련 (B)	-	900	900	900
(비중, B/A)	(0.0)	(7.6)	(5.7)	(4.4)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발전소의 설계수명 완료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연장운영을 고려하더라도 원자력발전소의 영구 가동중단 및 해체와 관련한 기술은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예산 중 제염·해체 관련 연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분석 총 2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법·제도 미비 1건, 사업성과 미흡 1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법·제도 미비]						
일반회계	원자력안전 기반구축	원전기기 성능검증 관리기반 구축	-	600	1,500	○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능 검증관리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성능검증기관의 종사자 교육 및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직접 지원 하는 것은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업성과 미흡]						
일반회계	원자력 안전연구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11,782	15,800	20,300	○ 연구개발 과제 중 제염·해체 관련 투자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제 2 장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조 4,537억원(12.9%) 증액된 12조 7,095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3,218억원에서 2015년 1조 6,891억원으로 424.8%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29억원에서 73억원으로 147.8% 증가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0조 4,955억원에서 10조 5,236억원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사학진흥기금은 4,355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2.4% 증가하였다.

[표 1] 교육부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338,943	324,773	1,696,320	1,371,547	422.3
- 일반회계	326,746	321,847	1,689,070	1,367,223	424.8
- 지역발전특별회계	12,197	2,926	7,250	4,324	147.8
기 금	7,374,034	10,931,032	11,013,168	82,136	0.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036,874	10,495,544	10,523,582	28,038	0.3
- 사학진흥기금	337,160	435,488	489,586	54,098	12.4
총 계	7,712,977	11,255,805	12,709,488	1,453,683	12.9

자료: 교육부

정민주 예산분석관(jmj0711@assembly.go.kr, 788-4633)

- 1) 국립대학 기성회비(1,314,247백만원)를 수업료와 통합 징수함에 따라 “수업료” 예산이 증가(681.1%)한 데 주로 기인한다.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7,033억원(1.1%) 증액된 62조 4,697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49조 9,865억원에서 2015년 50조 5,580억원으로 1.1% 증가하였고,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가 141억원에서 318억원으로 126.1% 증가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가 8,348억원에서 8,667억원으로 3.8% 증가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0조 4,955억원에서 10조 5,236억원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사학진흥기금은 4,355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2.4% 증가하였다.

[표 2] 교육부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48,816,998	50,835,377	51,456,525	621,148	1.2
- 일반회계	47,969,689	49,986,534	50,557,996	571,462	1.1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1,312	14,069	31,809	17,740	126.1
- 지역발전특별회계	805,997	834,774	866,720	31,946	3.8
기 금	7,374,034	10,931,032	11,013,168	82,136	0.8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036,874	10,495,544	10,523,582	28,038	0.3
- 사학진흥기금	337,160	435,488	489,586	54,098	12.4
총 계	56,191,032	61,766,409	62,469,693	703,284	1.1

자료: 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55조 1,322억원으로 2014년 54조 2,481억원 대비 8,841억원(1.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49조 9,00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18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8,667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4조 1,044억원, 사학진흥기금 2,292억원이다.

[표 3] 교육부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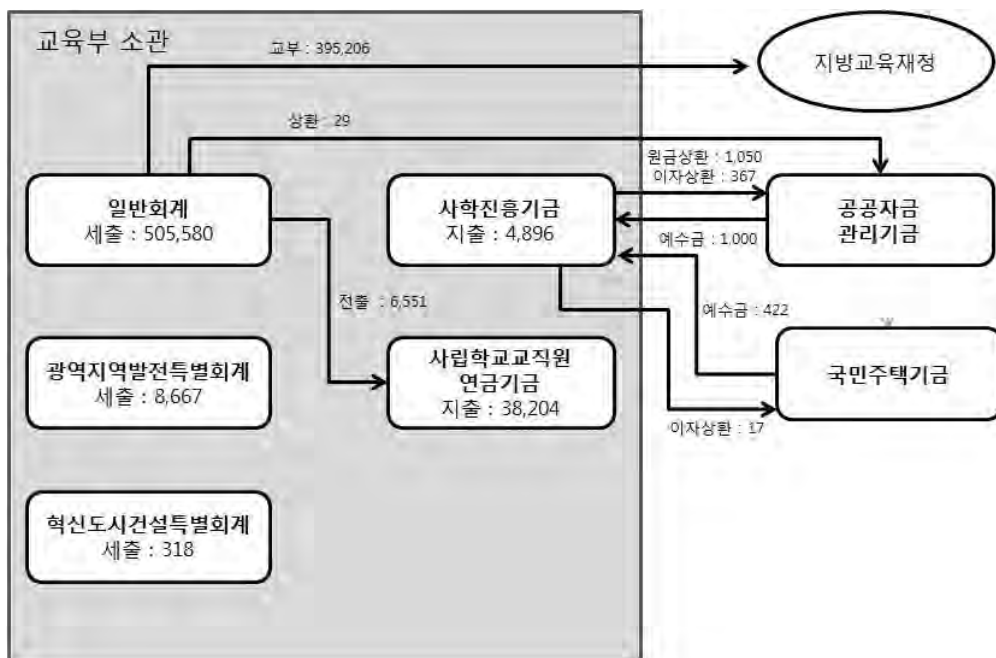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7,539,790	49,344,552	49,900,009	555,457	1.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1,312	14,069	31,809	17,740	126.1
지역발전특별회계	805,997	834,774	866,720	31,946	3.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3,711,754	3,820,388	4,104,419	284,031	7.4
사학진흥기금	235,278	234,311	229,231	-5,080	-2.2
합 계	52,334,131	54,248,094	55,132,188	884,094	1.6

자료: 교육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9억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으로 6,551억원이 전출되었으며, 사학진흥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주택기금 간 예수 및 원리금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림 1] 교육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1조 5,804억원 규모로, 모두 일반회계 사업이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개별급여체계 전환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되어 온 것이고, 국립대학 운영지원은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최종 패소를 대비한 운영경비 지원 예산이며,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국립대학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 및 실습 안전환경 조성 등을 위한 것이다.

[표 4] 교육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일반회계 (3개)	교육급여	116,201
	국립대학 운영지원	1,314,247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150,000
총 3개 사업		1,580,448

자료: 교육부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과정개정 및 후속지원 20억원,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117억원,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구축 27억원, 제주영어교육센터지원 4억원, 창의적인재육성 7억원, 고등교육의 국제화 지원 49억원, 대학구조개혁지원 97억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334억원, 인천대학교 법인화 성과관리 62억원,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시스템 40억원,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0억원, 한국사연구 편찬 및 이해증진 21억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10억원, 한국장학재단 출연 1,439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881억원, UNESCO 저개발국 교육발전기금 18억원, 행정업무정보화지원 14억원,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 177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73억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연금급여 1,769억원, 퇴직수당급여 1,133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표 5] 교육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교육과정개정및후속지원	1,197	3,154	1,957	163.5
	국립부설학교학력증진지원	36,297	48,042	11,745	32.4
	특수교육내실화기반구축	3,069	5,723	2,654	86.5
	제주영어교육센터지원	877	1,235	358	40.8
	창의적인재육성	2,300	2,990	690	30.0
	고등교육의국제화지원	3,827	8,760	4,933	128.9
	대학구조개혁지원	5,766	15,451	9,685	168.0
	서울대학교출연지원	408,346	441,716	33,370	8.2
	인천대학교법인화성과관리	4,000	10,200	6,200	155.0
	국립대학자원관리선진화시스템	4,000	8,000	4,000	100.0
	대학정보공시통합정보시스템구축	2,254	3,230	976	43.3
	한국사연구편찬및이해증진	2,882	4,988	2,106	73.1
	한국사능력검정시험운영	2,477	3,438	961	38.8
	한국장학재단출연	191,425	335,326	143,901	75.2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457,500	3,845,630	388,130	11.2
	UNESCO저개발국교육발전기금	3,635	5,430	1,795	49.4
	행정업무정보화지원	1,354	2,788	1,434	105.9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중앙교육연수원 지방이전	14,069	31,809	17,740	126.1
지역발전 특별회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269,575	296,924	27,349	10.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연금급여	1,893,063	2,069,914	176,851	9.3
	퇴직수당급여	335,583	448,896	113,313	33.8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교육부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교육부는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에 관한 사무와 학술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5년도 예산안은 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유아 및 초·중등 학교교육 정상화, ②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연구여건 개선, ③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직업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교육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6% 증가²⁾하여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 예산의 큰 부분(총지출 중 72.9%)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3.3%(40조 8,681억원 → 39조 5,206억원, 1조 3,475억원 감) 감소한 영향이 크다. 교육부 소관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5%(3.8 → 4.2조원, 0.4조원 증) 증가하였는데, 이는 교육급여 사업의 보건복지부로부터의 이관 편성에 따른 순증(1,162억원), 사학연금급여 및 퇴직수당급여 증가 예상에 따른 사학연금기금 증가(전년 대비 7.4%, 3.8 → 4.1조원)로 인한 것이다. 그 외에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소송 최종 패소에 대비한 국립대학 운영지원 예산(1.3조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이 2015년에도 확대되는 기조가 지속되었으며(3.7 → 3.8조원), 안전과 관련하여 국립대학 실험실습실 안전환경 기반조성 예산(1,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교육부 총지출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다만, 신규사업 중 국립대학 운영지원(1.3조원)은 기존 기성회비 수입액만큼을 국고로 세입조치한 후 곧바로 국립대학에 지출하는 사업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볼 경우 교육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다.

[표 6] 교육부 분야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총지출	542,481	551,322	8,841	1.6
- 예산	501,934	507,985	6,051	1.2
- 기금	40,547	43,337	2,790	6.9
◦ 교육분야	504,277	509,116	4,839	1.0
◦ 사회복지분야	38,204	42,206	4,002	10.5
- 기초생활보장	-	1,162	1,162	순증
- 공적연금	38,204	41,044	2,840	7.4

자료: 교육부

둘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2013년 세입결손분 정산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40조 8,680억원 → 39조 5,206억원)하였다.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증가(3조 6,753억원 → 3조 8,456억원)하여 전체 정부재원 장학금(3.9조원)과 대학 자체노력(3.1조원)을 합산한 금액이 총 7조원에 이르러, 2011년 등록금 총액(14.0조원) 대비 등록금 부담이 50%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³⁾

고등교육 및 연구여건 개선을 위한 대학교육 역량강화(단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3%(1조 5,843억원 → 1조 6,369억원) 증가하였다. 수도권 및 지방대학 특성화(2,587 → 2,599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2,467억원, 전년 동), BK21 플러스(2,974 → 2,982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된 데 따른 것으로, 대학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는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4.6%(5,384 → 5,633억원) 증가하였는데, 교육과정 재편의 기반이 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141 → 166억원), 전문대학을 평생교육 중심대학 등으로 특성화하려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2,696 → 2,969억원)

3) 미래부 소관 장학금을 제외하면, 정부 장학금 지원액(3.8조원)과 대학 자체노력 합산액은 6조 9,461억원으로 등록금 부담이 49.5%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등 평생·직업교육 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증가하였다.

셋째, 교육급여의 경우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면서 산출기준이 되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비 학생수 비율을 실제값보다 높게 적용한 결과 수급예산인원이 과다 추계되었고,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은 실제 사업 수행기간이 예산 편성 연도에 비해 약 1년 늦게 실시되고 있는 바,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지원기준이 불명확한 사업이 있다. 국립대학 조교 성과금 지급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은 국립대 법인에 대한 총액 지원시 운영성과 평가와 연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대학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기관별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예산 집행 이전에 법령 등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교육급여: 수급인원 과다 추계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필요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초·중·고교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62억원 신규 편성(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 수급기준 상향조정(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 이하)에 따른 수급 예상인원 추계시 전체 기초수급자 대비 학생수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과다 추계분 감액 필요

가. 현황

교육급여(일반회계, 1979~, 의무지출, 보조)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려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2015년 예산안부터 교육부 소관으로 이관 편성되었다. 2015년 1,162억 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편성되었던 2014년과 비교하면 51억 4,800만원(4.6%) 증가한 수준이다.

[표 1] 교육급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교육급여 (일반회계)	- (109,481)	- (111,053)	116,201	116,201 (5,148)	순증 (4.6)

주: ()안은 보건복지부 소관 교육급여사업 예·결산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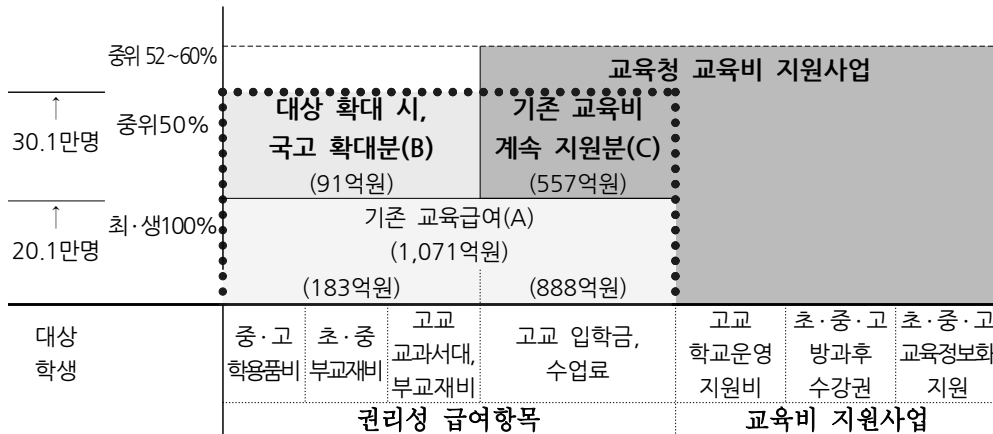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나. 수급인원 과다 추계에 따른 일부 예산 감액 조정 필요

동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2015년 3월부터 교육급여 수급기준선을 현행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약 124%)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인 바, 교육급여 수급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소요재원은 현행은 국고(평균 79.78%)와 지방비(평균 20.22%)로 분담하나, 2015년부터는 국고, 지방비(시·도 및 시·군·구) 및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시·도 교육청)로 분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소요액 중 시·도 교육청이 자체 사업인 기존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사업⁴⁾을 통해 지원해 왔던 대상(최저생계비 100%~124%)에 대한 소요액을 계속 부담하고, 나머지 소요액을 현행 국고보조율에 따라 국고와 지방비로 분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5년 총 소요예산액 2,014억 원 중에서 국고 1,162억원, 지방비 295억원,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557억원씩 분담하게 된다.

[그림 1] 2015년 교육급여 자원 구조



주: 1. 점선(...)은 개편 후 교육급여 항목 및 수급범위

2. 교육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의 예산사업(교특회계)으로 시도별·항목별 지원 범위가 다름

3. 기존 교육급여(A)는 현행 교육급여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 국고 부담예산액임
자료: 교육부

4)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저소득층인 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기준선 상향 조정으로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대상 중 일부는 교육급여 수급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고교학비 지원 소득기준의 상한선은 최저생계비의 130~150% 이하 범위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총 소요예산액 2,014억원의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수를 30.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규모에 대한 가장 최근 조사결과인 「2011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2011년 중위소득 50% 이하인 전체 인구수를 추정한 후(207.0만명), “2013년 전체 기초수급자수 대비 교육급여 수급학생수 비율(초등학생 4.44%, 중학생 4.71%, 고등학생 6.50%)”을 곱하여 2013년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수를 추정하고, 여기에 연간 학생수 감소율(최근 3년간 평균 -3.6%)을 적용하여 2015년 수급학생수를 구하였다.

[표 2] 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수급학생수 추계

(단위: 명)

2011년 중위소득 50%이하 전체 수급자수(추정) (A)	2013년 수급자 수 대비 학생 비율 (B)		중위소득 50%이하 학생 수급자		
			2013 학생(추정) (C=A×B)	2014 학생 (D=C×-3.6%)	2015 학생 (E=D×-3.6%)
2,070,466 = 1,550,000(기초수급자) + 520,466(최저생계비 100~124%)	초등학생	4.44%	91,929	88,620	85,429
	중학생	4.71%	97,519	94,008	90,630
	고등학생	6.50%	134,580	129,735	125,065
	합계	-	324,028	312,363	301,124

자료: 교육부

한편, 위와 같은 산출방식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11년 빈곤실태조사」 결과인 전체 기초수급자수(155.0만명)에, 위에서 구한 “2013년 전체 기초수급자수 대비 교육급여 수급학생수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2013년 교육급여 수급학생수를 추정하면 총 24.3만명으로, 이는 실제 2013년 교육급여 수급학생수인 21.0만명보다 3.1만명(15.5%) 과다 추계된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 빈곤실태조사」 결과인 전체 기초수급자수(155.0만명)와 실제 기초수급자수(145.9만명) 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3] 최저생계비 100%이하 교육급여 수급학생수 추계와 실제 수급자수 비교

(단위: 명)

최저생계비 100%이하 학생 수급자수 추계			2013 실제 수급학생수 (D)	2013 수급학생수 비율(추정) (E=D/A×100)
2011년 전체 수급자수(A)	2013년 수급자 수 대비 학생 비율(B)	2013 학생 (추정) (C=A×B)		
1,550,000	초등학생	4.44%	68,820	3.95%
	중학생	4.71%	73,005	3.98%
	고등학생	6.50%	100,750	5.62%
	합계	-	242,575	-

주 1. “2011년 최저생계비 100%이하 전체 수급자수(A)”는 「2011년 빈곤실태조사」 결과로, 실제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수(146.9만명)과 차이가 있음

2. “2013년 수급자 수 대비 학생 비율(B)”은 [표 2]에서 구한 값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따라서, “2013년 수급학생수 비율”을 「2011년 빈곤실태조사」의 전체 기초수급자수(155.0만명) 대비 실제 교육급여 수급학생수 비율(초등학생 3.95%, 중학생 3.98%, 고등학생 5.62%)로 수정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육급여 예산의 과다 편성분을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⁵⁾

5) 2013년 수급학생수 비율을 조정하여 산출할 경우, 2015년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학생수는 총 26.6만명(초등 7.8만명, 중등 7.8만명, 고등 11.0만명)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1,777억원이고 이 중 국고부담액은 973억원(단, 시도교육청 부담분을 577억원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으로 정부안(1,162억원) 대비 189억원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다.

2.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계층별 지원단가 조정 검토

- 소득연계, 저소득층 근로연계, 성적 우수자, 중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03억원(4.6%) 증가한 3조 8,456억원 편성
-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450만원이나, 2014년 대학 평균등록금(571만원) 대비 78.8%에 불과하여 소득 최하위계층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는 바,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황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일반회계, 2009~, 출연)은 소득연계, 저소득층 근로연계, 성적 우수자, 중소기업 취업 희망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별도로 편성되었던 4개 세부사업(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이 통합된 것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703억원(4.6%) 증가한 3조 8,456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일반회계)	2,786,071	3,675,299	3,845,630	170,331	4.6
- 국가장학금	2,619,153	3,457,500	3,600,000	142,500	4.1
- 근로장학금	143,070	194,273	209,482	15,209	7.8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3,848	13,526	16,148	2,622	19.4
-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10,000	10,000	20,000	10,000	100.0

자료: 교육부

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정부는 각 년도 정부 장학금 및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의 총 규모를 합산하여 2011년 등록금 총액(14.0조원)과 대비한 비중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률을 산출한다.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액 3.6조원을 포함한 정부 장학금 지원액은 총 3.9조원이며, 여기에 대학의 자체노력 3.1조원을 합산하면 7.0조원이다. 이는 2011년 등록금 총액 대비 50.0%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2015년에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50.0%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⁶⁾

[표 2]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

(단위: 억원)

		2012	2013	2014	2015
등록금 총액(2011 기준)		140,299			
정 부	○ 국가장학금	17,500	27,750	34,575	36,000
	○ 근로장학금	810	1,431	1,943	2,095
	○ 우수장학금(인문·예체능계 등)	199	138	135	161
	○ 희망사다리장학금	-	100	100	200
	○ 미래부 소관 대통령과학장학금, 우수장학금(이공계)	730	752	664	664
	정부 장학금 합계(A)	19,239	30,171	37,417	39,120
대 학	○ 교내외장학금(a)	23,037	23,709	24,008	24,008
	- 추가 자체노력(당해년도)		(672)	(299)	
	○ 대학자체노력(등록금 인하)(b)	6,051	6,598	6,997	6,997
	- 신규(당해년도)	(6,051)	(547)	(399)	
대학 장학금 및 자체노력 합계(B=a+b)		29,088	30,307	31,005	31,005
전 체	총합계(A+B)	48,327	60,478	68,422	70,125
	등록금 부담 경감률(2011년 등록금 대비)	34.4%	43.1%	48.8%	50.0%

주: 1. 2011년 등록금 총액은 2011년말 대학이 제출한 자체노력계획서에 따른 대학별 등록금 총액을 합산한 것임.

2. 각 년도 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6) 미래부 소관 장학금을 제외하면, 정부 장학금 지원액과 대학 자체노력 합산액은 6조 9,461억원으로 등록금 부담이 49.5%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 국가장학금 I 유형 저소득층 지원한도액 상향 등 소득계층별 지원단가 조정 검토 필요

국가장학금 I 유형(소득연계형)은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연간 45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소득분위별로 지원한도액 대비 지급률을 0~25%p(기초~3분위 전년동, 4분위 55 → 75%, 5분위 35 → 50%, 6분위 25 → 50%, 7분위 15 → 25%, 8분위 15 → 25%) 인상하기 위하여 3조 417억원을 계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원한도액을 전년과 동일한 450만원으로 책정한 상태에서, 소득 4분위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90만원(지급률 20%p), 5분위는 67.5만원(15%p), 6분위는 112.5만원(25%p), 7·8분위는 45만원(10%p)씩 각각 인상하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학금 예산 증가의 혜택이 중위 이상의 소득계층(소득 4~8분위)에게 돌아가게 된다.

[표 3] 국가장학금 I 유형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단위: 만원)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2014(A)	한도액	450	450	450	337.5	247.5	157.5	112.5	67.5	67.5
	(지원비율)	(100%)	(100%)	(100%)	(75%)	(55%)	(35%)	(25%)	(15%)	(15%)
2015(B)	한도액	450	450	450	337.5	337.5	225	225	112.5	112.5
	(지원비율)	(100%)	(100%)	(100%)	(75%)	(75%)	(50%)	(50%)	(25%)	(25%)
증감(B-A)	한도액	-	-	-	-	90	67.5	112.5	45	45

자료: 교육부

한편, 2014년 대학(4년제)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409만원, 사립 734만원으로, 사립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450만원이 등록금의 61.3%에 불과하다. 국공립 및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단순평균값인 571만원에 대비하면 78.8% 수준으로, 소득 최하위계층(기초~2분위)에 해당하여 지원한도액의 100%를 지원받더라도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대학 평균등록금 대비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 비율

(단위: 만원, %)

	국공립(a)	사립(b)	평균 $\{(a+b)/2\}$
4년제 대학 평균등록금(A)	409	734	571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B)	450		
비율(B/A)	110.0	61.3	78.8

주: 대학 등록금은 2014년 기준

자료: 교육부

따라서, 등록금 부담 완화를 통한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실제 대학 등록금 수준에 못미치는 지급한도액(450만원)을 인상하여 소득 최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단가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지급률을 조정하는 등 전년 대비 증가한 예산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원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금 확충 필요

-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조 3,475억원(3.3%) 감소한 39조 5,206억원 편성
- 집행상 제 문제가 지적되어 온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1%p 축소(4 → 3%, 2015년 3,479억원)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교육 일반 재원 확충 필요

가. 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일반회계, 1971~, 자치단체교부금)은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을 위한 재원을 시·도 교육청에 교부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조 3,475억원(3.3%) 감소한 39조 5,206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반회계)	40,061,919	40,868,077	39,520,615	-1,347,462	-3.3

자료: 교육부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와 지방교육재정예의 영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되는데,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세입액 전액으로 구성된다. 내국세분 교부금은 총 34조 7,906억원이며, 이 중 96%인 33조 3,990억원과 교육세분 교부금 4조 7,300억원을 합한 금액인 38조 1,290억원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되고, 내국세분 교부금의 4%인 1조 3,916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다.

[표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성

(단위: 억원, %)

		2013결산	2014예산 (A)	2015예산안 (B)	증 감	
					(B-A)	(B-A)/A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27%)	보통교부금(a)	400,619	349,528	333,990	-15,538	-4.4
	특별교부금(B)		14,564	13,916	-648	-4.4
	소계(a+B)		364,092	347,906	-16,186	-4.4
교육세분 교부금(b)			44,589	47,300	2,711	6.1
보통교부금(A=a+b)			394,117	381,290	-12,827	-3.3
합 계		400,619	408,681	395,206	-13,475	-3.3

자료: 교육부

2015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3%(1조 3,475억원) 감소한 39조 5,20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국세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5조 1,23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법정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교부금분은 증가되나, 2013년 세입 결손에 따른 감액 정산분(△2조 6,733억원⁷⁾)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표 3] 내국세 예산안(추정액) 현황

(단위: 억원, %)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추정액)(B)	증 감	
			B-A	(B-A)/A
내국세	1,796,210	1,847,442	51,232	2.9

자료: 기획재정부

시·도 교육재정 수입 중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결산 기준 71.4%(54.9조원 중 39.2조원), 2013년 최종예산 기준 74.3%(55.1조원 중 40.9조원) 등 70% 이상을 차지한다.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전년 대비 감소액(△1.3조원)은 2013년 최종예산(55.1조원)을 기준으로 한 전체 시·도 교육재정 중 2.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7) 2013년 정산분(△2,673,334백만원) = △2,923,334백만원(세입결손액) - 250,000백만원(불용액)

[표 4] 시·도 교육재정 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중

(단위: 조원, %)

	2012 결산	2013		2014 본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시·도 교육재정 수입(A)	54.9	51.4	55.1	5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39.2	39.2	40.9	39.7
비중(B/A)	71.4	76.1	74.3	75.1

주: 시·도 교육재정 수입(A)은 시·도에서 편성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세입재원은 국가지원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자체 일반회계 전입금(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 자체수입(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학생납입금 등), 차입(지방교육채)으로 구성됨.

자료: 교육부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중 지방세(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배분 비율 축소(38.5→32.2%) 및 담배소비량 감소 예상(△34%⁸⁾)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예의 전입금(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규모가 2013년 결산 대비 96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표 5] 담뱃값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영향

(단위: 억원)

	교부금 (A)	자치단체 전입금				합계 (A+B)
		담 배 소비세	지 방 교육세	시도세 전입금	소계 (B)	
현행(a)	1,777	5,424	13,912	1,524	20,860	22,637
인상안(b)	5,554	5,624	12,692	1,580	19,896	25,450
증감(b-a)	3,777	200	-1,220	56	-964	2,813

주: 현행은 2013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3조원이 감소하는 반면, 지출은 인건비 1.9조원, 누리과정(3~5세 누리과정 소요비용 전부를 교부금으로 충당) 0.5조원, 채무상환 0.2조원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2015년에는 부족재원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2014년 1.8조원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 정부가 발표한 추정치이다.

다.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를 통한 보통교부금 확충 필요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사업, 재해대책수요로 구분된다. ①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의 60%)은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② 지역교육현안수요(특별교부금의 30%)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을 때, ③ 재해대책수요(특별교부금의 10%)는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사용하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이 우수한 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원할 수 있다.

2015년 특별교부금은 전년 대비 648억원(4.4%) 감소한 1조 3,916억원으로, 이중 국가시책사업은 8,350억원, 지역교육현안수요는 4,175억원, 재해대책수요는 1,391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표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액

(단위: 억원, %)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감	
			(B-A)	(B-A)/A
국가시책사업(60%)	8,739	8,350	-389	-4.4
지역교육현안수요(30%)	4,369	4,175	-194	-4.4
재해대책수요(10%)	1,456	1,391	-65	-4.4
합 계(100%)	14,564	13,916	-648	-4.4

자료: 교육부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및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을 통하여 ①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②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국고 사업과의 중복지원 및 연말 교부로 인한 집행부진, ③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재해복구 목적의 집행실적 저조 문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줄이고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⁹⁾

9)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2013. 11), pp. 113~123, 「2013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II」(2014. 7), pp. 110~121

이와 더불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도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2014년 9월말 현재까지 교부액(3,018억원) 중 84.4%(2,548억원)가 시설비로 교부되는 등 연례적으로 시설비로 편중되어 사용되는 실정이다.

보통교부금에서도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2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시설비로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별도로 책정·교부되고 있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실제 교부사업 선정시 보통교부금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

[표 7]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교부액	(비중)	주요 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	301,796	(100.0)	
- 시설비	254,815	(84.4)	여름철 취약시설 보수공사, 경북체고 본관동 개축공사 등
- 기타	46,981	(15.6)	Wee센터 및 Wee클래스 구축 등

주: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

자료: 교육부

현재,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내국세 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하고, 특별교부금 내에서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축소(특별교부금의 30 → 20%)하는 대신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용도에 재해예방을 포함하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확대(특별교부금의 10 → 20%)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표 8] 특별교부금 제도개선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법안명	법률안 주요내용	진행상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4.29, 정부)	○ 특별교부금 규모 축소(내국세 교부금의 4%→3%)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재해예방 사용 ○ 특별교부금 집행내역 등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교문위 회부 (2014.4.3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7.15, 김학용의원)	○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재해예방 사용 ○ 지역교육현안수요 축소(특별교부금의 30%→20%) 및 재해대책수요 확대(특별교부금의 10%→20%) ○ 지방교육행정 및 재정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을 재해대책 사용 잔액에서 국가시책 재원으로 조정	교문위 회부 (2014.7.16)

자료: 교육부

위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1%p(4→3%) 축소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할 경우, 2015년에는 3,479억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추가 교부되어 지방교육 일반 재원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9] 특별교부금 배분비율 축소시 2015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현행		제도변경시		증감	
	배분비율	2015 예산 (A)	배분비율	2015 예산 (B)	B-A	(B-A)/A
보통교부금	내국세 교부금의 96% +교육세분	381,290	97% +교육세분	384,769	3,479	0.9
특별교부금	내국세 교부금의 4%	13,916	3%	10,437	-3,479	-25.0
-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의 60%	8,350	60%	6,263	-2,087	-25.0
-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의 30%	4,175	20%	2,087	-2,088	-50.0
-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의 10%	1,391	20%	2,087	696	50.0

자료: 교육부

4.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수입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 국립대학 입시전형 지원자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수료 등의 수입(수입대체경비)으로, 전년 대비 6억원(2.2%) 감소한 264억원 편성
- 수입대체경비의 확정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수수료 수입예산 편성시 응시 예상인원을 적정 반영 필요

가. 현황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는 국립대학 입시전형 지원자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 수수료 등의 수입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실시,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출한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억원(2.2%) 감소한 264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면허료 및 수수료(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34,371	26,982	26,384	-598	-2.2

자료: 교육부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수입 규모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수입의 2015년 예산액은 전년(24억 6,000만원) 대비 9억 7,800만원(39.8%) 증액한 34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예상 수입액 48억 5,100만원 중에서 70.9%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액을 초과한 수입 및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예상 수입액

(단위: 원, 백만원, %)

급수별 응시료		예상응시자	예상 수입
고급	18,000	147,000	2,646
중급	15,000	135,000	2,025
초급	10,000	18,000	180
합 계		300,000	4,851

자료: 교육부

또한, 2015년 응시 예상인원은 30만명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8월 말 실적(30.4만명)보다도 적고, 2013년 실적(38.8만명) 및 2014년말 예상 실적(37.4만명)에 비해 크게 미달하고 있는 바, 과소 추계된 것으로 보인다.

[표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계획인원 대비 지원인원 현황

(단위: 명, %)

		계획인원(A)	지원인원(B)	계획인원 대비 지원인원(B/A)
2010		45,385	89,295	196.8
2011		80,000	132,386	165.5
2012		90,000	179,755	199.7
2013		180,000	388,173	215.7
2014	8월말	250,000	303,801	121.5
	연말(예상)		373,801	149.5

자료: 교육부

최근 5년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을 살펴 보면, 매년 148.2%~351.8%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수납률이 이미 219.0%로 나타나 예산액 대비 초과 수납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A)	수납액(B)	예산액 대비 수납액(B/A)
2010	800	1,499	187.4
2011	1,600	2,371	148.2
2012	1,600	3,302	206.4
2013	2,005	7,054	351.8
2014. 8월 현재	2,460	5,388	219.0

자료: 교육부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 제53조에 근거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초과수입 발생에 따른 초과지출은 당초 편성된 예산 외로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집행이 가능하고, 부처의 확정예산 외로 운영되어 실질적으로 확정예산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확정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수수료 수입예산 편성시 응시 예상인원을 적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

5.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예산 실행 시기를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교육기부 자원 발굴, 학교와의 연계,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6.8%) 증가한 47억원 편성
-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의 실제 사업 수행기간이 예산 편성 연도에 비해 약 1년 늦게 실시되고 있는 바,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예산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황

교육기부 활성화(일반회계, 2011~, 출연)는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의 수준 높고 다양한 사회자원을 초·중등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자원 발굴, 학교와의 연계,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억원(6.8%) 증가한 4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교육기부 활성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교육기부 활성화 (일반회계)	4,900	4,414	4,714	300	6.8
- 교육기부기관 발굴	1,550	720	720	-	-
- 체계적 지원 강화	400	978	978	-	-
- 교육기부 홍보	1,450	1,216	1,216	-	-
- 대학생 교육기부 활성화	1,500	1,500	1,800	300	20.0

자료: 교육부

나.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 예산 편성과 실집행 주기 일치를 위한 예산 조정 필요

세사업 중 교육기부기관 발굴은 ①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과 ② 우수 교육기부 기관·단체 인증제 심사·운영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은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교육기부 참여 기관의 현장 적용을 컨설팅하기 위한 컨설팅단을 선정·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전년도 동일한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컨설팅단 선정 및 관리업무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과학기술, 인문사회, 문화예술 등 3~5개 분야별로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하반기에 공모를 거쳐 실제 컨설팅단의 사업 수행 기간은 당해 연도 10월 이후부터 차년도 10월 이후까지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9월말 기준으로 5개의 컨설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 운영 예산은 2013회계연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위탁기관에 출연되어 다음연도로 이월 집행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연도와 수행기관 단계의 실집행 연도 간에 1년 가까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표 2] 교육기부 컨설팅단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분야	수행기관	운영기간	예산
2011	과학기술	이화여대	2011.11~2012.11	200
	인문사회	경인교대	2011.12~2012.12	100
	문화예술	춘천교대	2011.10~2012.10	100
2012	과학기술	서울교대	2012.11~2013.10	150
	인문사회	연세대	2012.11~2013.10	100
	문화예술	이화여대	2012.11~2013.10	100
	브랜드전략	경성대	2012.11~2013.10	100
	과학기술	포항공대	2013.11~2014.11	100
2013	인문사회	명지대	2013.11~2014.11	100
	문화예술	국민대	2013.11~2014.11	100
	진로탐색	공주대	2013.11~2014.11	150
	기획·홍보	서강대	2013.11~2014.11	200
	정보통신·소프트웨어	9월 중 공모·선정	협약체결일~2015.10	150
2014	보건·안전	9월 중 공모·선정	협약체결일~2015.10	150
	스포츠·레저	9월 중 공모·선정	협약체결일~2015.10	150
	홍보·운영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9~2015.10	165
	컨설팅단 관리	한국과학창의재단	2014.9~2015.10	35

자료: 교육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 수행기간과 예산 편성 연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2015년에 실제 운영될 컨설팅단 사업비는 2014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될 예정인 바,¹⁰⁾ 2015회계연도 예산에서는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10) 2014년 예산은 교육부에서 위탁기관(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기교부(집행)되었다.

6.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출연금 총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 마련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4억원(8.2%) 증가한 4,417억원 편성
- 출연금 산정시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성과평가결과 등의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바, 국립대 법인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 필요

가. 현황

서울대학교 출연지원(일반회계, 2012~, 출연)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교육·연구 선도대학으로 도약하도록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34억원(8.2%) 증가한 4,41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일반회계)	369,738	408,346	441,716	33,370	8.2
- 본교 운영	369,738	386,710	409,874	23,164	6.0
- 부설학교 운영	-	21,636	31,842	10,206	47.2

자료: 교육부

나. 출연금 총액의 구체적 산정 기준 마련 필요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1년말 법인화되었으며, 2014년도부터 서울대학교에 대한 출연금은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총액으로 편성·교부되고 있다.

2015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본교 운영에 4,099억원, 부설학교 운영에

318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본교 운영의 경우 인건비는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3.8% 증가한 2,193억원을 편성하였고, 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한 414억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413억원, 성과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23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금(입학료 및 수업료) 153억원을 차감하였다.

[표 2]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안 편성 내역

○ 본교 운영: 409,874백만원(6.0% 증액)
- 인건비: 219,320백만원(3.8% 증액, 정부 공통기준 적용)
- 운영비: 41,378백만원(동결, 정부 공통기준 적용)
- 사업비: 141,341백만원(전년대비 12% 증액)
- 성과사업비: 23,100백만원(전년과 동결)
- 자체수입금(입학금 및 수업료): -15,265백만원
○ 부설학교 운영: 31,842백만원(47.2% 증액)
- 부설학교 인건비: 14,408백만원(1개월분 증액 및 처우개선 3.8%, 정부 공통기준 적용)
- 부설학교 기본경비: 2,159백만원(동결, 정부 공통기준 적용)
- 부설학교 사업비: 3,886백만원(부설학교 학력증진 등 증액)
- 부설학교 시설비: 12,884백만원(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 신·증축 사업비 반영)
- 자체수입금(입학금 및 수업료): -1,495백만원

출연금 산정시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및 제32조제2항¹¹⁾에 따라 종전의 서울대학교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대학운영계획 운영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 산정시 전년 대비 2015년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
- 1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및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출연(出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종전의 서울대학교의 예산,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
 ③ · ④ (생략)
 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평가 및 국가의 지원) ① 총장은 4년 단위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학운영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대학운영성과목표를 반영한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대학운영계획의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공표하고, 그 결과를 행정 및 재정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평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모두 고등교육부문 예산 증가율과 서울대학교 출연 지원 예산 증가율 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률상 산정기준인 고등교육부문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다. 특히, 2015년에는 사업비는 12.0% 증가하였으나 성과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되는 등, 항목별 예산 편성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 고등교육부문 예산 및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 규모 및 증가율 비교

(단위: 백만원, %)

	2014 예산	2015 예산안
○ 고등교육부문 예산 규모	8,652,036 (14.4)	10,534,089 (21.8)
○ 국가장학금 및 국립대학 운영지원 제외한 고등교육부문 예산 규모	4,976,737 (13.1)	5,374,212 (8.0)
○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 규모	408,346 (5.5)	441,716 (8.2)
- 본교 운영	386,710 (4.6)	409,874 (6.0)
· 사업비	126,206 (6.6)	141,341 (12.0)
· 성과사업비	23,100 (5.5)	23,100 (0.0)
- 부설학교 운영	21,636 (25.9)	31,842 (47.2)

- 주 1. ()안은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의미
 2. 국립대학 운영지원은 2015년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기존 기성회비 수입액만큼을 국고로 세입조치하고, 그만큼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것임(1.3조원 규모)
 3. 사범대학 부설학교 예산은 '14년 법인화됨에 따라 '14년부터 「서울대 출연지원」에 포함하여 편성되었으며, 2014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부설학교 예산을 포함하여 산출한 증감률임

자료: 교육부

또한, 대학운영계획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2015년 예산안 산정시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즉, 2012년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2013년 10월에 공표되었으며, 교육, 연구, 사회공헌,

법인운영의 4대 영역별 평가 점수를 종합한 결과 우수(B)로 최종 평가된 바 있으나, 이러한 평가결과가 출연금 산정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취지가 자율적 재정집행과 성과에 기반한 책무성 강화에 있고, 법률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실제 출연금 총액 편성시 적용할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성과평가결과의 반영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¹²⁾¹³⁾

12)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본교 운영예산 총액에 대하여 고등교육 예산 증가율을 기초로 대학 운영 계획 운영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또는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고 사업비 및 성과사업비의 경우 고등교육예산 증가율을 기초로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유사 사례 조사 및 연구를 거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3) 참고로, 싱가포르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법인화와 함께 정부는 명확한 책무성 체제를 마련한 바 있다. 대학은 성과계약서에 교육, 연구, 서비스, 조직발전과 관련된 5개년 계획을 설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하여 동의 절차를 거친다. 국립대학들을 매해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5년간 현장 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성과계약 마지막 연도에는 국제자문패널이 성과계약의 이행여부를 검토하며, 그 결과는 정부 재정지원에 영향을 주게 된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012년도 운영성과 평가보고서」, 교육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운영성과 평가위원회, 2013. 10, p.111)

7. 대학평가 및 운영: 미인정 평가인증기관 지원 지속여부 재검토 및 기관별 지원기준 명확화

-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비용, 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 측정 및 진단도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19.4%) 증가한 21억 2,500만원 편성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은 기관별 자부담률이 상이하고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장관 인정을 받지 않은 미인정기관 3개에 대한 국고보조 실시 여부의 재검토 필요

가. 현황

대학평가 및 운영사업(일반회계, 1999~, 출연·보조)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한 기관 및 프로그램 평가인증비용, 고등교육 학습성과평가 측정 및 진단도구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억 4,500만원(19.4%) 증가한 2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대학평가 및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대학평가 및 운영 (일반회계)	1,460	1,780	2,125	345	19.4
- 평가인증기관 역량 강화 지원	1,100	1,100	1,545	445	40.5
-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지원	300	300	100	-200	-66.7
- 국립대학법인 운영 성과평가	60	80	80	-	-
-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역량 인증	-	300	400	100	33.3

자료: 교육부

나. 미인정 평가인증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 미비와 기관별 지원기준 불명확

세사업 중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은 ①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과 ② 인정기관 지정조사 연구로 구분된다. 이 중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은 대학의 각 학문분야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전년 대비 275.0% 증액한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이공학교육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공학교육인증원 지원(2015년 10억 7,500만원)이 이관되어 옴에 따른 것이며, 공학교육인증원을 제외한 경영교육인증원, 간호교육평가원 등 7개 기관에 대한 지원액은 총 3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액되었다.

[표 2]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	1,100	1,505	405	36.8
· 기관 평가인증기관 지원	640	0	-640	순감
·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지원	380	1,425	1,045	275.0
· 인정기관 지정심의 조사연구	80	80	-	-

자료: 교육부

한편, 2015년 예산안에서 공학교육인증원을 제외한 7개 기관별로는 구체적인 보조금액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과거 연도의 경우 2013년은 기관당 4,500만원~1억원, 2014년은 3,200만원~7,200만원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원되는 기관별로 자부담율이 60.0%(의학교육평가원, 치의학교육평가원)~92.2%(간호교육평가원) 수준으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부담율을 60% 이상으로 설정한 것 외에는 국고보조와 자부담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다.

[표 3] 프로그램 평가인증사업 기관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 건)

	프로그램 평가·인증							
	간호교육 평가원	건축학교육 인증원	경영교육 인증원	수의학교육 인증원	의학교육 평가원	치의학교육 평가원	한의학교육 평가원	공학교육 인증원
국고 지원	72	72	72	35	65	32	32	2,000
자부 담액	856	120	430	72.9	97.5	48	50	2,250
매칭 비율	92.2	62.5	85.7	67.6	60	60	61.0	52.9
심사 건수	34	8	5	1	13	1	-	54
인정 기관 여부	○ (2011.11)	○ (2012.5)	○ (2013.9)	×	○ (2014.5)	×	×	○ (2013.1)

주: 1. 한의학교육평가원의 경우 '14년 하반기 2개교 심사예정

2. 공학교육인증원 심사건수는 54개 대학, 337개 프로그램

자료: 교육부

또한, 현재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7개소 중 수의학교육인증원, 치의학교육평가원, 한의학교육평가원 등 3개소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미인정기관인 바, 평가인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¹⁴⁾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인정기관에 대하여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제고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인정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따라서, 평가인증기관별 자부담 및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미인정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흡한 만큼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후 재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인정기관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 프로그램 개발 등 평가·인증의 체계화와 품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 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 국립대학 조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86억 9,000만원(93.6%) 감소한 19억 6,400만원 편성
-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국립대학 조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가. 현황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일반회계, 2012~, 보조)은 국립대학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조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86억 9,000만원(93.6%) 감소한 19억 6,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 (일반회계)	31,698	30,654	1,964	-28,690	-93.6

자료: 교육부

나. 성과급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은 39개 국립대학 조교 개인별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교육·연구 및 봉사활동 등의 실적과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책정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4년까지는 조교 뿐 아니라 교원도 지원대상이었으나, 교원의 경우 2015년 성과급적 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동 사업의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와 동 법률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의2¹⁵⁾ 및 별표 2의2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교육공무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 조교는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령 상 국립대학 조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지급할 수 없다.¹⁶⁾

[표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이며, 같은 규정 별표 12는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임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회계연도 결산 보고서」 및 「2013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동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결산심사 결과 2년 연속으로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처럼 현행 법 체계에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공무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법령상 근거 없이 조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육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소관 부처인 안전행정부 등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1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16) 동 사업은 1994년 성과급 예산이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다. 1998년 12월 3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교육공무원을 교장, 교감, 교사,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하였다.

9. 인문학 진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과 유사·중복 등

- 인문학 연구체계 확립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지원, 저술출판지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보급, 인문학 대중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원(3.3%) 증가한 619억원 편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과 유사·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두 사업을 통합하거나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우수학술도서지원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도서 배부기관 선정 필요

가. 현황

인문학 진흥(일반회계, 2007~, 출연)은 인문학 연구체계 확립 및 연구성과 확산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지원, 저술출판지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및 보급, 인문학 대중화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억원(3.3%) 증가한 619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인문학 진흥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인문학 진흥 (일반회계)	52,100	59,904	61,904	2,000	3.3

자료: 교육부

나. 문제부 소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동 사업은 인문학 연구기능 강화 및 학술성과 확산을 통한 인문학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인문학의 학문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우수학술도서 선정·보급, 인문학 대중화를 위한 인문강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은 인문학 부흥 및 독서문화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우수도서 선정·구입, 인문독서아카데미, 인문

학 주제의 강연 및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길 위의 인문학’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인문학진흥사업 및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사업 비교

	인문학진흥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소관 부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목적	인문학 연구체계 확립 및 연구성과 확산	인문학 부흥 및 독서문화 향상 지원
2015 예산안	61,904백만원	33,920백만원
내역사업	○ 인문학한국지원(44,104백만원) ○ 저술출판지원(6,300백만원) ○ 우수학술도서(3,650백만원) ○ 인문학대중화: 시민인문강좌, 석학인문강좌, 홍보 및 성과확산(6,700백만원) ○ 기초교양교육강화(1,150백만원)	○ ‘길 위의 인문학’(8,100백만원) ○ 우수도서 선정구입 지원(14,204백만원) ○ 국민독서문화진흥지원: 인문독서 아카데미, 국민독서활성화지원(2,907백만원) ○ 병영독서활성화지원(2,644백만원) ○ 인문정신문화자원봉사 온라인시스템(1,000백만원) ○ 문화자원봉사 사회확산지원(500백만원) ○ 인생나눔교실 운영(3,565백만원) ○ 인문예술캠프(1,000백만원)
수행기관	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학술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공공도서관, 국공립 박물관 등

자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두 사업은 인문학 보급 및 대중화라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같고, 사업내용상으로도 매년 우수학술도서를 선정·구입하여 대학 또는 도서관 등에 배부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강연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소관 사업은 주로 대학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은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 등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겠으나, 사업목적 및 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개 부처에서 추진되어야 할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바, 두 사업을 통합하거나 부처간에 실질적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 우수학술도서지원 우선 순위를 고려한 도서 배부기관 선정 필요

세사업 중 우수학술도서지원은 기초학문분야의 우수학술도서를 선정하여 대학, 연구소 등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른 도서구입단가 증가 예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6.0%(11억 5,000만원) 증가한 36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최근 2년간 우수학술도서 선정·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은 총 300종이 선정되어 대학교 등 359개 기관에 11.9만권이 배부되었으며, 2014년은 총 316종이 선정되어 346개 기관에 10.7만권이 배부되었다.

그러나, 도서를 배부 받은 기관 중에 대학 외에도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서울대학교규장각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기관 들은 설립목적에 따라 별도의 사업 및 운영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별도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받아야 할 우선 순위나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기관고유 사업으로 학술성과보급을 실시하여야 할 기관도 존재한다.

[표 3] 우수학술도서의 대학 외 배부처 현황

(단위: 종, 권, 백만원)

	기관명	종수	권수	금액
2013	국사편찬위원회	249	297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247	263	6.0
	한국고전번역원	70	163	4.7
	한국학중앙연구원	244	321	6.2
2014	국사편찬위원회	178	247	5.0
	서울대학교 규장각	167	246	5.0
	한국고전번역원	70	112	3.1
	한국학중앙연구원	172	270	5.3
	교육부 자료실	63	82	1.8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따라서, 우수학술도서 지원시 인문학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도서 구입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기관에는 배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10. 학술단체지원: 기존 학술대회 개최예산 활용을 통한 세계화학대회 개최예산 적정 수준 반영

-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5,400만원(22.2%) 증가한 57억 9,900만원 편성
- 2015년 세계화학대회 개최 지원 예산(10억 5,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기존 ‘학술대회 개최지원’ 및 ‘이공계학술활동지원’의 국제대회 개최지원 예산 등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편성액을 최소화할 필요

가. 현황

학술단체지원(일반회계, 1991~, 출연)은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억 5,400만원(22.2%) 증가한 5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학술단체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학술단체지원 (일반회계)	5,265	4,745	5,799	1,054	22.2
- 학술대회 개최 지원	2,403	2,630	2,630	-	-
- 학술지 발행 지원	2,376	1,815	1,815	-	-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템 보급	486	300	300	-	-
- 2015년 세계화학대회 (IUPAC)	-	-	1,054	1,054	순증

자료: 교육부

나. 기존 학술대회 개최예산 활용을 통한 세계화학대회 개최예산 신규 편성액 최소화 필요

세사업 중 학술대회 개최 지원은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국내 또는 국제대회 개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2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신규 세사업으로 2015년 세계화학대회(IUPAC) 개최¹⁷⁾ 지원을 위해 10억 5,400만원이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은 총 36억 8,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1% 증가한 규모이다.

학술대회 개최 지원의 실제 집행 양상을 살펴보면, 매년 신규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지원하는 구조이며, 2013년의 경우 지원 신청 과제 중 60.6%(477과제 중 289과제)가 선정되어 지원받은 바 있다. 2013년 예산액 29억 5,000만원 중 18.5%(5억 4,700만원)를 다른 세사업(학술지 지원)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당해 연도의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지원건수 및 지원액 등은 재량적으로 집행하여 온 특징이 있다.

또한, 이공계 분야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공계학술활동지원’¹⁸⁾ 사업이 별도로 실시되고 있으며, 세사업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대회 운영지원 예산(5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바, 이공계 분야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예산이 존재한다.

따라서, 학술대회 개최 지원예산을 통한 구체적인 지원내역은 당해 연도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집행 가능하며, 이공계 분야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사업예산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세계화학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신규 세사업을 편성하기 보다는 기존 학술대회 개최지원 예산의 조정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17) ○ 2015년 세계화학대회(IUPAC) 개요

- 구성: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화학 관련 분야 국제 학술행사로 총회와 학술 발표회로 구성
- 일시 및 장소: 2015. 8. 6. ~ 2015. 8. 14(9일), 부산 BEXCO
- 주최 및 후원: (주최) 대한화학회,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 정부지원: 총 개최비용 36억원 중 29%(10억 5,400만원) 지원

18) ○ 이공계학술활동지원(일반회계, 2012~, 민간경상보조)

- 소관 부처: 교육부
- 사업시행주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2015 예산안: 4,169백만원
 - 학술지 발행·육성 지원: 3,370백만원
 - 국제학술대회 운영 지원: 549백만원
 - 학술활동 기반확충 및 고도화: 250백만원

1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비 적정 반영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등 평생교육 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6,400만원(27.1%) 증가한 73억 3,200만원 편성
-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 중 학점은행제 운영사업에 지출되는 비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한 바, 동 수입이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적정 반영 필요

가.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일반회계, 2008~, 출연)은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등 평생교육 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5억 6,400만원(27.1%) 증가한 7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 (일반회계)	4,845	5,768	7,332	1,564	27.1
- 인건비	3,999	4,569	4,833	264	5.8
- 경상운영비	2,684	3,103	3,103	-	-
- 사업비	10,181	11,905	13,205	1,300	10.9
· 학점은행제운영	5,210	5,690	5,690	-	-
· 독학학위제운영	2,824	3,099	3,099	-	-
· 평생교육진흥지원조사	452	285	285	-	-
· 평생교육양성연수	257	230	230	-	-
· 평생교육연계체제구축	663	576	576	-	-
· 평생교육정보시스템구축운영	775	725	793	68	9.4
· 온라인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	1,300	2,532	1,232	94.8
- 자체세입	-13,434	-13,809	-13,809	-	-
· 학점은행제수수료	-10,974	-11,542	-11,542	-	-
· 독학학위제수수료	-600	-640	-640	-	-
· 전년도 이월금	-1,410	-1,415	-1,415	-	-
· 기타수입	-450	-212	-212	-	-

자료: 교육부

나.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비 적정 반영 필요

동 사업 예산액은 총 세출에서 자체세입을 차감한 부족액을 출연하는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편성되며, 2015년 자체세입액은 전년과 동일한 138억 900만원이다. 자체세입은 학점은행제 수수료, 독학학위제 수수료, 전년도 이월금,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학점은행제 수수료가 115억 4,200만원으로 자체세입액의 83.6%를 차지하는 구조이다.

한편,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에 비해 학점은행제 사업비로의 지출액이 크게 저조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2015년 예산안은 학점은행제 사업비(56억 9,000만원)가 수수료 수입(115억 4,200만원) 대비 58억 5,200만원 저조하여, 수수료 수입 중 해당 사업에 지출되는 비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표 2]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 및 사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수료 수입(A)		9,114	10,188	10,974	11,542	11,542
사업예산 ¹⁾ (B)		4,670	4,135	5,440	5,690	5,690
순수사업예산 ²⁾ (C)		3,242	3,145	3,840	4,090	4,090
차액	(A-B)	4,444	6,053	5,534	5,852	5,852
	(A-C)	5,872	7,043	7,134	7,452	7,452

주: 1)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직 인건비(11~12년은 결산기준)를 포함한 사업예산

2) 학점은행제 운영 계약직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예산

자료: 교육부

특히,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으며, 동 수수료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독학학위제 운영 등 타 사업, 기관 경상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국회는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이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나, 2015년 예산안에서는 동 시정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14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온 바, 학점은행제 사업 예산을 수수료 수입액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

12. 대학 특성화사업: 대학 학과별 특성화에 집중된 사업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 필요

-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학과 또는 학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억원(1.2%) 증가한 2,617억원 편성
- 사업성과 평가시 특성화 이외의 고등교육 정책목표(국가장학금, 대학 거버넌스 개선 등)와의 연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컨설팅단 운영시 현장 심사를 강화하도록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

가. 현황

대학 특성화(일반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 2014~, 출연)는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있는 분야(학과 또는 학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려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수도권대학 특성화(일반회계)와 지방대학 육성(지역발전특별회계)로 분리 편성되어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0억원(1.2%) 증가한 2,61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대학 특성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수도권대학 특성화 (일반회계)	55,394	55,600	54,200	-1,400	-2.5
지방대학 육성 (지역발전특별회계)	198,360	203,140	207,540	4,400	2.2
합계	253,754	258,740	261,740	3,000	1.2

주: 지방대학 육성사업의 세사업으로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외에 2014년부터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및 사업관리비가 포함

자료: 교육부

나. 대학 학과별 특성화에 집중된 사업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 필요

동 사업은 기존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종료하고 2014년부터 추진된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으로, 기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학 단위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것과 달리, 대학별로 차별화된 특성화 학과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대학이 아닌 학과 중심으로 편성된 사업단 단위로 신청하며, 선정평가시 대학 평가 30%, 사업단 평가 70%로 합산하고, 정량지표가 높았던 과거와 달리 정성지표 비중(53%)을 높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표 2] 대학 특성화와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비교

	대학 특성화 사업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사업기간	2014~	2009~2013
예 산	2,577억원(2014년)	2,020억원(2013년)
대학 규모에 따른 자원배분 여부 및 기준	·규모에 따른 신청사업단수 제한 ·재학생 기준 3유형 1만 이상/5천~1만/5천 미만	·설립별 및 재학생 기준 9개 유형 ·재학생 기준 3유형 1만 이상/5천~1만/5천 미만
권역별 구분 기준	·6개 권역 (충청, 대경·강원, 호남·제주, 동남, 서울, 경기·인천) ·학교수 및 재학생수 고려한 권역 구분	·해당 없음 ·수도권/지방
사업 세부유형	·대학 자율/국가지원/진역전략	·분야별 구분 없음
지원 대학 수	·전체 108개교(265개 사업단)	·82개교(53개교)
평가 단계	·1단계 : 대학 + 사업단 정량 ·2단계 : 사업단 정성 ⇒ 1단계+2단계 점수 합산 지원 결정	·1단계 : 서면평가(정량) ·2단계 : 서면평가(정성) ·3단계 : 종합평가
사업위탁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 교육부

이처럼 대학들이 유사한 학과 체계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 대학별 대표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달성하는 것이 동 사업의 핵심 목표이며, 더불어 정원감축 정도를 평가지표상 가산점으로 부여하여 대학 구조개혁이 평가에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된 지표(장학금 지급률,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국가장학금 II 유형 참여 여부)와 대학 거버넌스 개선(국립대 총장직선제 개선, 사립대 평의회 구성)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어 특성화 정책목표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표도 존재한다.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대학 거버넌스의 개선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는 있겠으나, 향후 특성화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차, 단계평가 등 성과관리에서는 해당 지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 학과별로 차별화된 학과 체계와 교육과정을 운영을 전제하여 선정한 결과, 사업단별로 특성화 계획이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일률적인 사업관리가 어려운 구조이다. 교육부는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별 계획의 타당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도록 자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사업단별 사업계획서는 학과 개편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정집행계획을 상세한 수준으로 담고 있어, 사업계획서 확정이 향후 집행내역과 성과, 성과평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컨설팅단 운영 실정을 살펴보면, 사업비 집행계획과 성과목표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9월 서면 및 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사업단별 특성화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고 사업단수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단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사업성과 점검을 위한 연차평가, 단계평가에서 특성화 목적 이외에 고등교육 정책과의 연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컨설팅단 운영 시 현장심사 등을 강화하도록 보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분석 총 12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예산 과다편성 3건, 예산 과소편성 1건, 사업계획 부실 2건, 법·제도 미비 3건, 결산과의 연계 2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의 유사·중복]						
일반회계	인문사회 학술연구 구성	인문학 진흥	52,100	59,904	61,904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인문정신 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과 유사·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부처간 협 업체계 구축 필요
[예산 과다 편성]						
일반회계	교육급여	교육급여	-	-	116,201	○ 수급기준 상향조정(최저생계비 100% → 중위소득 50% 이하)에 따른 수급예상인원 추계시 전체 기초수급자 대비 학생수 비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과다 추계분 감액 필요
일반회계	교육기부 활성화	교육기부 활성화	4,900	4,414	4,714	○ 교육기부 컨설팅단 구성·운영의 실제 사업 수행기간이 예산 편성 연도에 비해 약 1년 늦게 실시되 고 있는 바, 실질행 시기를 고려 한 예산 조정 필요
일반회계	학술단체 지원	학술단체 지원	5,265	4,745	5,799	○ 신규 편성된 세계화학대회 개최 지원 예산(10억 5,400만원)은 기 존 ‘학술대회 개최지원’ 및 ‘이공 계학술활동지원’의 국제대회 개 최지원 예산 등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편성액 최소화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예산 과소 편성]						
일반회계	면허료 및 수수료 (수입대체경비)		34,371	26,982	26,384	○ 수입대체경비의 확정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수수료 수입예산 편성시 응시 예상인원을 적정 반영 필요
[사업계획 부실]						
일반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78,071	367,299	384,630	○ 국가장학금 지원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450만원이나, 2014년 대학 평균등록금(571만원) 대비 78.8%에 불과하여 소득 최하위 계층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는 바,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일반회계	수도권대학 특성화	수도권대학 특성화	55,394	55,600	54,200	○ 사업성과 평가시 특성화 이외의 고등교육 정책목표(국가장학금, 대학 거버넌스 개선 등)와의 연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컨설팅단 운영시 현장 심사를 강화하도록 보완 필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지방대학 육성	지방대학 육성	198,360	203,140	207,540	
[법·제도 미비]						
일반회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406,919	408,077	392,015	○ 집행상 제 문제가 지적되어 온 특별교부금의 배분비율을 1%p 축소(4 → 3%, 2015년 3,479억원) 하고 이를 보통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지방교육 일반 재원 확충 필요
일반회계	국립대학 법인 운영 지원	서울대학교 출연지원	369,738	408,346	441,716	○ 출연금 산정시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증가율, 성과평가결과 등의 구체적인 반영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바, 국립대 법인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일반회계	대학정보공시 및 평가	대학평가 및 운영	1,460	1,780	2,125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 역량강화 지원은 기관별 자부담률이 상이하고 지원기준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장관 인정을 받지 않은 미인정 기관 3개에 대한 국고보조 실시 여부 재검토 필요
[결산과의 연계]						
일반회계	국립대학 교육 기반조성	국립대학 조교 연구성과금 지급	31,698	30,654	1,964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국립대학 조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없으므로, 조속히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일반회계	국가평생 교육 진흥원 출연	국가평생 교육 진흥원 출연	4,845	5,768	7,332	학점은행제 수수료 수입 중 학점은행제 운영사업에 지출되는 비율이 절반 이하에 불과한 바, 동수입이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 적정 반영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및 6개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53억원($\Delta 0.5\%$) 감액된 3조 3,579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477억원에서 2015년 463억원으로 3.0% 감소하였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가 1,811억원에서 931억원으로 48.5% 감소하였다. 영화발전기금은 3,653억원에서 3,494억원으로 4.3% 감소하였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은 8,930억원에서 9,508억원으로 6.5% 증가하였다.

[표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183,258	234,391	147,519	-86,872	-37.1
- 일반회계	36,681	47,677	46,253	-1,424	-3.0
- 지역발전특별회계	10,284	5,636	8,136	2,500	44.4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36,293	181,078	93,130	-87,948	-48.5
기 금	2,657,563	3,138,714	3,210,336	71,622	2.3
- 문화예술진흥기금	264,050	614,724	609,225	-5,499	-0.9
- 영화발전기금	306,677	365,277	349,392	-15,885	-4.3
- 지역신문발전기금	17,864	13,118	12,763	-355	-2.7
- 언론진흥기금	64,834	51,233	41,277	-9,956	-19.4
- 관광진흥개발기금	907,349	893,038	950,803	57,765	6.5
- 국민체육진흥기금	1,096,789	1,201,324	1,246,876	45,552	3.8
총 계	2,840,821	3,373,105	3,357,855	-15,250	-0.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395억원(2.5%) 증액된 5조 7,851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1조 6,589억원에서 2015년 1조 7,827억원으로 7.5% 증가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6,669억원에서 6,989억원으로 4.8% 증가하였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가 1,811억원에서 880억원이 감소한 931억원(△48.6%)이다. 기금은 3조 1,387억원에서 3조 2,103억원으로 2.3% 증가하였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6,147억원에서 6,092억원으로 0.9%가 감소하였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8,930억원에서 9,508억원으로 6.5% 증가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조 2,013억원에서 1조 2,469억원으로 3.8%가 증가하였다.

[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2,316,023	2,506,899	2,574,806	67,907	2.7
- 일반회계	1,652,058	1,658,883	1,782,729	123,846	7.5
- 지역발전특별회계	526,187	666,938	698,947	32,009	4.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37,778	181,078	93,130	-87,948	-48.6
기 금	2,662,116	3,138,714	3,210,336	71,622	2.3
- 문화예술진흥기금	268,602	614,724	609,225	-5,499	-0.9
- 영화발전기금	306,677	365,277	349,392	-15,885	-4.3
- 지역신문발전기금	17,864	13,118	12,763	-355	-2.7
- 언론진흥기금	64,834	51,233	41,277	-9,956	-19.4
- 관광진흥개발기금	907,349	893,038	950,803	57,765	6.5
- 국민체육진흥기금	1,096,789	1,201,324	1,246,876	45,552	3.8
총 계	4,978,139	5,645,613	5,785,142	139,529	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4조 8,752억원으로 2014년 4조 4,224억원 대비 4,528억원(10.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6,846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6,989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31억원고, 문화예술진흥기금 1,639억원, 영화발전기금 888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101억원, 언론진흥기금 237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9,256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1,865억원이다.

[표 3]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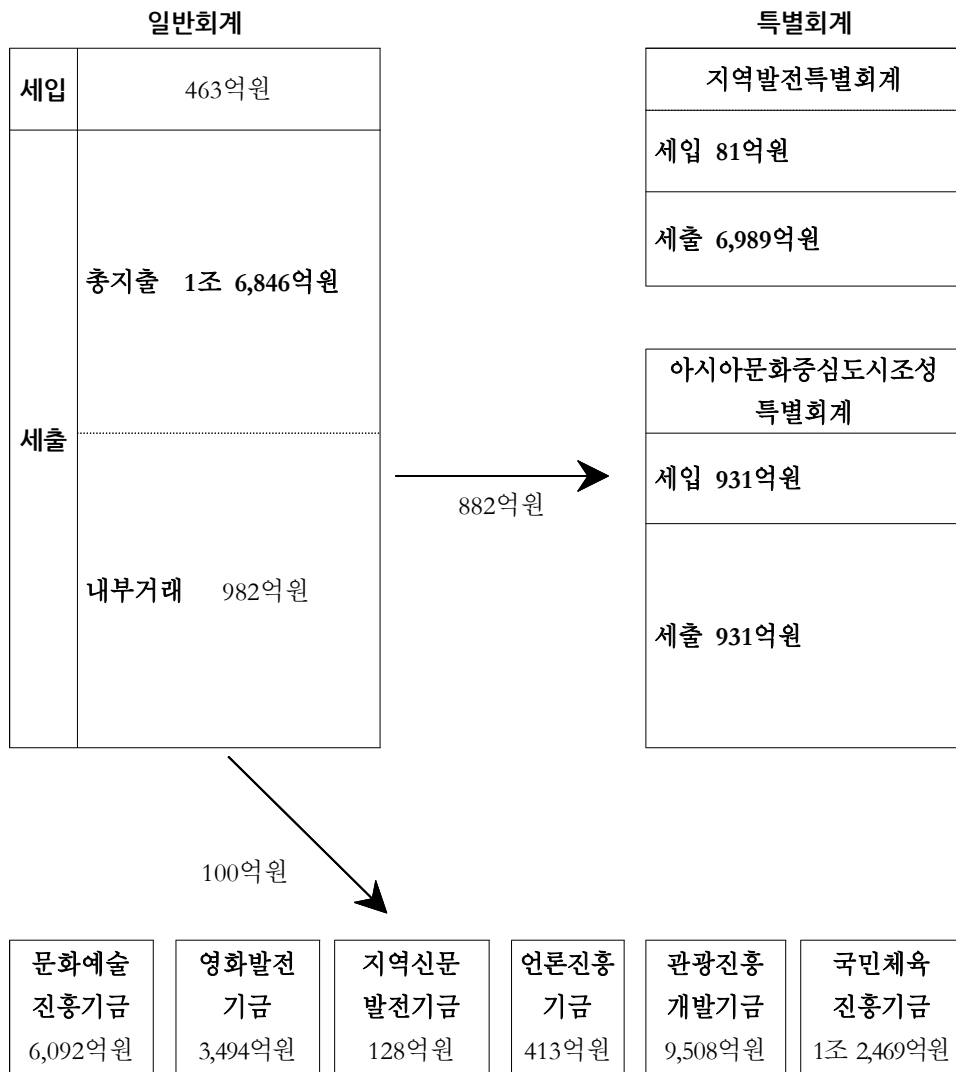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2,149,730	2,320,821	2,476,644	155,823	6.7
- 일반회계	1,485,765	1,472,805	1,684,567	211,762	14.4
- 지역발전특별회계	526,187	666,938	698,947	32,009	4.8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37,778	181,078	93,130	-87,948	-48.6
기 금	1,869,853	2,101,581	2,398,566	296,985	14.1
- 문화예술진흥기금	135,583	186,764	163,900	-22,864	-12.2
- 영화발전기금	85,881	102,528	88,790	-13,738	-13.4
- 지역신문발전기금	10,859	10,831	10,115	-716	-6.6
- 언론진흥기금	22,670	22,875	23,681	806	3.5
- 관광진흥개발기금	695,849	855,553	925,568	70,015	8.2
- 국민체육진흥기금	919,009	923,030	1,186,512	263,482	28.5
합 계	4,019,582	4,422,402	4,875,210	452,808	1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로 882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이 진출되었다.

[그림 1] 문화체육관광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신규 및 주요 중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36개 사업, 3,294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광복 70주년 기념사업과 2015-2016 한-불 상호 교류의 해 사업은 일반적인 행사성 사업이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및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은 국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를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신규 사업은 세종계정 신설에 따른 문화시설 확충사업과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등이며, 산업단지 폐산업 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사업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 중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은 폐광지역의 자연자원과 석탄산업 유산을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중 문화체육사업 지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주최단체 지원 사업 등은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 일부를 통하여 그동안 지원해왔던 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예산 사업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표 4]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일반회계 (21개)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15,000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801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운영	3,437
	문화가 있는 날 운영	10,000
	광복70주년 기념사업	2,000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2,000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	1,000
	아리랑 핵심콘텐츠개발 및 세계화	2,500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6,000
	미술진흥 기반 구축	7,500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자원화	2,000
	서계동 부지 매입	19,000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 지원	1,044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1,000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1,364
	박물관 소장유물 통합 DB구축	834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9,000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	2,637
	국립한글박물관 인건비	2,227
	정책연구개발	2,886
	10.27법난기념관 건립 지원	20,000
지역발전특별회계 (5개)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세종특별자치계정)	80
	문화시설확충및운영(세종특별자치계정)	80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생활)	9,330
	산업단지,폐산업시설문화재생사업(제주)	2,545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특별자치계정)	990
관광진흥개발기금 (4개)	폐광지역관광상품개발	2,700
	코리아 모빌리티 구축	1,000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	6,000
	스마트관광 활성화	1,000
국민체육진흥기금 (6개)	체육·문화사업의지원	47,156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	43,527
	체육인재육성	5,291
	주최단체 지원	94,311
	지역스포츠과학 거점 운영	3,000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국제스포츠 역량강화 사업	200
총 36개 사업		329,4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153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400억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174억원, 해외문화원 운영 105억원,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332억원, 창조 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186억원,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억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지원 1,528억원, 스포츠산업 융자 227억원, 스포츠산업 활성화지원 293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표 5]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조성	4,900	20,171	15,271	311.7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2,777	5,589	2,812	101.3
	문화콘텐츠 인재양성	7,224	9,910	2,686	37.2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	1,000	4,450	3,450	345.0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10,163	13,570	3,407	33.5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20,000	60,000	40,000	200.0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1,280	1,890	610	47.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프라 지원	10,317	27,702	17,385	168.5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16,059	23,213	7,154	44.5
	전자출판산업 육성 지원	1,403	2,032	629	44.8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950	1,550	600	63.2
	한글의 가치 확산	10,179	13,905	3,726	36.6
	국어진흥기반 조성	1,105	1,750	645	58.4
	지역문화 진흥	3,917	5,887	1,970	50.3
	전통문화 진흥	2,094	3,444	1,350	64.5
	해외문화원 운영	31,217	41,717	10,500	33.6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400	6,000	5,600	1,400
	함께누리 지원	11,300	21,600	10,300	91.2
	홍보기획 지원	795	2,755	1,960	246.5
	홍보협력 및 분석 지원	917	2,031	1,114	121.5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25,071	33,920	8,849	35.3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2,694	5,741	3,047	113.1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4,047	10,036	5,989	148.0
	도서관 자료확충	2,614	8,026	5,412	207.0
	도서관 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2,690	12,426	9,736	361.9
	다국어포털 시스템 운영(정보화)	665	1,075	410	61.7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4,307	6,608	2,301	53.4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11,300	17,070	5,770	51.1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291	761	470	161.5
	생활문화 학술조사연구	1,370	1,918	548	4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및 자료수집	4,641	6,476	1,835	39.5
	한글박물관 운영	8,554	11,952	3,398	39.7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68	122	54	79.4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1,200	3,500	2,300	191.7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지역발전 특별회계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3,082	5,902	2,820	91.5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100,929	134,100	33,171	32.9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4,900	10,000	5,100	104.1
	레고랜드 코리아 기반시설 조성	3,000	14,920	11,920	397.3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조성	4,479	6,579	2,100	46.9
	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	100	2,164	2,064	2,064
영화발전 기금	영화제작 지원	5,240	10,240	5,000	95.4
관광진흥 개발기금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098	1,600	502	45.7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3,800	22,400	18,600	489.5
	지역관광 활성화 및 조사연구	2,416	3,235	819	33.9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2,558	3,890	1,332	52.1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2,000	44,000	22,000	100.0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18,028	27,172	9,144	50.7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민체력인증	5,611	8,007	2,396	42.7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11,300	25,360	14,060	124.4
	전략종목활성화 지원	2,354	4,904	2,550	108.3
	한국동계스포츠육성	11,862	15,874	4,012	33.8
	전국체전시설 건립	14,043	18,367	4,324	30.8
	태권도 진흥	6,805	9,020	2,215	32.5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	134,550	287,361	152,811	113.6
	스포츠산업융자	7,334	30,000	22,666	309.1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2,467	31,802	29,335	1,189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5년도 예산안은 ① 생활 속 문화 참여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의 일상화, ② 콘텐츠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킬리콘텐츠 집중 육성, ③ 창조 관광산업 육성 및 국내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④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균형 발전 및 스포츠산업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산총량의 측면에서 총지출 기준으로 4조 8,752억원(전년대비 4,528억원, 10.2% 증가)이 편성되어, 문화재정 2%의 2015년 목표인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1.3%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¹⁾. 문화예술 부문이 1조 9,40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부문 1조 3,413억원, 체육부문 1조 2,947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2,989억원이다. 지출형태별로는 보조사업이 6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6]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지출형태별 지출액

(단위: 억원, %)

	직접	보조	출연	출자	응자	합 계
문화예술	6,148	11,943	666	630	15	19,402
관광	737	7,676	0	200	4,800	13,413
체육	231	12,416	0	0	300	12,947
문화 및 관광일반	2,730	259	0	0	0	2,989
합 계	9,846	32,294	666	830	5,115	48,751
총액 대비 비중	20.2	66.2	1.4	1.7	10.5	100.0

주: 총지출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1) 국정과제인 문화재정 2%는 2017년까지 문화 분야 총지출이 정부 총지출의 2%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정 외에 미래창조과학부 예산 일부를 포함한다. 문화재정 2% 계획은 2015년까지는 완만한 예산 증가로도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 있으나, 2016년 이후 급격한 예산 증가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달성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이다. 2014년까지는 수익금의 78%만 기금으로 전입되고 나머지 22%는 예산 외 사업으로 운영되었는데, 2015년 예산안에는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되었다²⁾. 이 경우 예산 증가액은 약 2,200억원 수준이다.

둘째,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는 사업들이 편성되었다. 문화가 있는 날 운영(100억원, 기획공연 1,000회), 방방곡곡 문화공감(80억원, 공연 400회),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60억원, 공연 120회) 등과 소외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540억원, 개인당 5만원)이 신규로 추진되거나 규모가 확대되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843억원, 강사 7천명 파견), 토요문화학교(207억원, 500개소)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유희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20억원)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계획이 부실한 경우가 있어 국민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에 기여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연례적으로 집행(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집행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종교문화시설건립(94억원),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1,341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147억원) 및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253.6억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집행을 제고 방안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예산 조정 및 대책 마련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보조사업 비중이 60%이상으로 높은 편인데, 보조사업은 각종 행정절차 지연, 지방비·자부담 미확보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한 경우가 많으므로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관련 부처와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 다수 분석되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20억원)은 우즈베키스탄과 외교부의 MOU 체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데 부처간 사전 협의가 부족하여 사업계획이 미흡한 상황이다. 문화생태탐방로 조성(25.4억원)은 탐방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외에 안전행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관련 법률 제정 및 업무 협조가 요구된다.

2) 기존 예산 외 사업(22%)은 공익사업적립금(7%),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5%), 경기주최단체 지원(10%)로 운영되었다. 2015년 기금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

관광경찰 지원(1억원)은 경찰청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 이관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체육시설 개방(51억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127.8억원)은 교육부와 협조 강화를 통해 사업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600억원, 전년대비 200% 증액) 외에 스포츠산업 펀드(200억원, 신규), 창조관광기업 펀드(200억원, 신규)가 신규로 편성되었다.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투자는 취약 분야 투자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수익금 확보가 가능하나, 적정 출자 규모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로 안전예산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100억원), 공연장 안전선진화 시스템 구축(10억원),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36억원), 국립중앙도서관 시설물 안전보강(62억원) 등 총 341억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144억원(73.0%) 증가하였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신규 반영된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 지역문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누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0억원 편성
- 콘텐츠누림터(50억원)는 지역특화 콘텐츠가 일정 수준 확보된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 보다는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등 유관 시설을 이용하여 임차료 및 장비 구축비용 등을 절감할 필요

가. 현황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일반회계, 신규, 보조)은 지역문화 고유의 특성을 가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콘텐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콘텐츠누림터³⁾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은 민간보조(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이며, 내역사업 중 콘텐츠누림터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고보조를 50%)이다. 2015년에는 15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일반회계)	-	-	15,000	15,000	순증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	-	10,000	10,000	순증
- 콘텐츠누림터 조성	-	-	5,000	5,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콘텐츠누림터는 지역생산 콘텐츠를 지역민이 향유, 소비, 홍보 및 테스트 할 수 있는 콘텐츠 복합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나. 콘텐츠누림터 조성사업의 별도 추진 재검토 필요

콘텐츠누림터 조성은 지역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생산 콘텐츠를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콘텐츠 홍보 및 테스트베드의 장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 공모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선정하여 콘텐츠누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표 2] 콘텐츠누림터 조성 2015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국비	지방비 (민자포함)	합계
인프라 구축	공간리모델링(콘텐츠체험장, 전시장, 전기, 카페테리아, 미디어도서관, 오감체험 미술관, 간이공연장, 유아휴게실 등 시설구축비)	5,000	-	5,000
	장소매입 또는 임대, 장비 구축(랜선, 영상장비, 3D프린터 등)	-	4,500	4,500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향유(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사업유지비 등	-	500	500
합 계		5,000	5,000	10,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누림터 조성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향유할 만한 지역콘텐츠가 충분히 구비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일정한 성과를 거둔 지역특화콘텐츠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⁴⁾ 따라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일정한 결과물을 확보한 후, 추후 콘텐츠누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콘텐츠 향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공간을 확보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역 콘텐츠코리아 랩, 콘텐츠 향유 시설(콘텐츠진흥원 본원,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등)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시설 임차료, 각종 장비 구축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⁵⁾

4) 국내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사례로 제주도의 숨비소리(제주해녀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 청도의 변신싸움소 바우(청도 소싸움을 소재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5) 콘텐츠코리아 랩은 콘텐츠 창작·창업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각종 콘텐츠 향유 및 체험, 청소년 아이디어 캠프 등의 향유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콘텐츠

그러므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콘텐츠 개발이 최소한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콘텐츠누림터 사업을 연기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별도의 공간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콘텐츠 향유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흥원 본원 등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각종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투자가 미흡한 장르에 대한 투자확대 방안 마련

- 콘텐츠 산업 사업자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정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억원(200%) 증가한 600억원 편성
- ①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가 영화에 집중(53.4%)되어 있고, ② 신규 출자인 한·중 글로벌 콘텐츠 합작펀드의 경우에도 한·중 합작 영화 위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한 장르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현황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일반회계, 계속, 출자)는 콘텐츠 산업의 성장잠재 분야 및 초기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모태펀드는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는 펀드로 민간의 개별 투자조합에 자금을 출자하고, 해당 투자조합에서 개별 기업에 투자한 후 성과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00억원(200%) 증가한 60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일반회계)	-	20,000	60,000	40,000	200.0
-일반출자금	-	20,000	60,000	40,000	2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가 특정 장르에 집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

콘텐츠 산업은 창조경제 및 서비스산업의 핵심 성장분야이나 업체 대부분이 영세사업자로 사업 초기 투자 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 및 성장잠재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투자자원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15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개발펀드(콘텐츠 기획단계에 대한 투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억원이 편성되었고, 한·중 글로벌 콘텐츠 합작펀드 조성에 400억원이 편성되었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는 2014년 신규사업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구)문화산업진흥기금 출자, 글로벌콘텐츠코리아 펀드 사업 등을 통해 2006년부터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꾸준히 출자하여 왔다. 2014년까지 총 출자액은 4,120억원이다. 이러한 출자를 통해 47개 투자조합, 9,734억원이 결성되어 영화, 게임, 공연 등의 장르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현재까지의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수익성 등의 이유로 인해 문화계정 내에서 영화로의 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4%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모태펀드에 영화계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고, 영화발전기금 등을 통해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수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투자가 특정 장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펀드의 공공성 측면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 현황

(단위: 건, 억원, %)

장르	영화	공연	게임	음원	전시	애니/ 캐릭터	드라마	인터넷/ 모바일	기타	합계
건수	1,102	255	151	107	33	100	78	34	62	1,922
금액	6,708	1,415	1,465	289	194	845	976	194	466	12,552
비율	53.4	11.3	11.7	2.3	1.5	6.7	7.8	1.6	3.7	100.0

주: 2014년 8월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한·중 글로벌 콘텐츠 합작펀드는 한·중 공동제작물에 양국이 동일비율로 투자하는 펀드로, 완성된 제작물에 대해서는 수입쿼터와 관계없이 중국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해당 펀드가 결성되면 한·중 합작영화 제작에 주로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⁶⁾.

이처럼 동 사업의 혜택이 영화 제작사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므로 출자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상대적으로 민간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공연, 전시 등의 장르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주목적 투자 비율 상향 및 투자제한 조건 강화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해당 펀드는 ‘한·중 영화공동제작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대중음악 장르별 제작지원 사업의 중소형 제작사 중심 지원체계 구축 필요

- 애니메이션산업, 음악산업, 패션문화산업, 캐릭터산업, 만화산업, 이야기산업, 대중문화 등 분야별 문화콘텐츠의 제작,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8억원(24.7%) 증가한 545억원 편성
- 음악산업 육성 내역사업 중 대중음악 장르별 우수 프로젝트 제작지원(15억원)은 2013~2014년 중 중소형 제작사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회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일반회계, 계속, 직접/보조)은 애니메이션산업, 음악산업, 패션문화산업, 캐릭터산업, 만화산업, 이야기산업, 대중문화 등 분야별 문화콘텐츠의 제작, 창작기반 강화 및 활성화 지원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8억원(24.7%) 증가한 54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일반회계)	51,6330	43,687	54,457	10,770	24.7
- 음악산업 육성	6,500	6,460	7,560	1,100	17.0
· 대중음악 장르별 우수 프로젝트 제작지원	1,500	1,500	1,500	0	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대중음악 장르별 우수프로젝트 제작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필요

음악산업 육성(75.6억원)의 2015년 예산안은 한국 대중음악 홍보 활성화 지원(16.3억원), 인디음악 활성화 및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63.3억원), 한국 대중음악 인프라 구축 지원(4.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디음악 활성화 및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 내역사업 중에는 ‘대중음악 장르별 우수프로젝트 제작지원’(15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대중음악 장르별 우수프로젝트 제작지원 편성내역

편성내역
○ 대중음악 장르별 우수 프로젝트 지원: 1,500백만원 - 대중음악 음반제작 지원: 20백만원 × 25개 프로젝트 = 500백만원 - 대중음악 공연 지원: 10백만원 × 50개 프로젝트 = 500백만원 - 뮤즈라이브 대중음악 공연 지원: 100백만원 (연 50회 공연) - 젊은 뮤지션 글로벌 교류 활성화 지원: 400백만원(50백만 × 8개 뮤지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지난 2년간 소위 아이돌가수⁷⁾의 음반 제작을 지원한 사례가 많다⁸⁾. 동 사업의 기본 취지는 인지도가 부족한 가수의 음반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인지도가 높은 가수의 음반까지 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2013년 결산심사에서 “중소형 제작사에 국고가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원 대상을 재설정할 것”으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더 많은 중소형 제작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 마련이 미흡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계획 재수립 및 공모조건 제한 등을 통해 사업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아이돌가수 여부를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다른 계층에 비해 청소년층에게 인지도가 월등히 높고 TV 쇼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20대 이하 가수를 아이돌가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8) 2013년 제작지원된 “기획형” 7개 음반 중 5개가 아이돌가수의 음반이며 나머지 2개는 TV 오디션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가수의 음반임. 지원방식이 다소 변경된 2014년에도 4개 이상의 음반이 아이돌가수의 음반이다.

4.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시스템 체계화 및 현황 조사 후 추진

-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및 전체 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 등 보존지원과 종교문화 원형 보존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원(△2.5%) 감소한 259억원 편성
-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100억원)은 ① 시스템 표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어 표준 설정 이후 재설치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고, ② 사찰별로 도입 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성이 큰 사찰을 중심으로 예산을 차등지원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

가. 현황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일반회계, 계속, 보조)은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등의 보존지원과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종교문화 원형 보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6억 5,000만원(△2.5%) 감소한 259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일반회계)	25,362	26,503	25,853	-650	-2.5
-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	11,000	10,000	10,000	0	0.0
- 전통사찰 전수조사	100	600	800	200	33.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예산절감을 위해 선별적인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⁹⁾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사찰과

9) 낙산사 화재 이후 전통사찰의 화재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2012년 국회에서 신규로 추진이 결정된 사업이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통합관제시스템¹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전예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사찰 941개¹¹⁾를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2021년, 총사업비는 2,500억원(국비 1,000억원, 지방비 1,000억원, 민간 500억원)이다. 사찰별로 약 1억원 정도의 국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표 2]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현황

(단위: 개, 백만원)

	지원사찰 수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2012	98	10,000	9,883	9,815
2013	123	11,000	11,000	9,110
2014.8	106	10,000	10,000	3,503
2015(계획)	110	10,000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전통사찰에 대해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방재시스템의 핵심요소인 아크차단기와 관련한 국내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크차단기 성능의 평가·인증에 한계가 있고, 향후 결정될 국내 표준의 내용에 따라 기 구축된 시스템의 재구축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 현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아크차단기에 대해 한국산업표준(KS)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국내 표준 설정 경과를 검토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사찰 중에서도 사찰의 노후화 정도, 지리적 특성, 방문객의 수 등에 따라 방재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차이가 있는데, 동 내역사업은 필요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 사찰을 대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 사찰 1개 당 평균적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큰 사찰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사찰별 차등지원 등)하여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¹²⁾

10)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은 전기화재의 직접적 원인인 아크를 사전에 검출하여 차단 및 통보하는 시스템이며, 통합관제 시스템은 CCTV 영상분석, 재난센서 감지, 출입경계 등을 상시 감시·분석하여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11) 2014년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사찰 수는 941개(조계종 751개, 태고종 101개 등)이다.

12)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전통사찰 전수조사 사업(사업기간: 2014~2017년, 총사업비: 40억원,

5. 종교문화시설건립: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복원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6억원(△37.4%) 감소한 94억원 편성
- ①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종교시설에 대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성이 있으며, ② 건립 신청 및 총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전체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필요

가. 현황

종교문화시설건립(일반회계, 계속, 보조)은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 유적지 복원,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교단체에서 국고와 자부담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민간 자본보조로 수행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수행된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6억원(△37.4%) 감소한 94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종교문화시설건립 (일반회계)	15,730	15,009	9,400	-5,609	-37.4
- 민간자본보조	7,700	2,300	1,300	-1,000	-43.5
- 자치단체자본보조	8,030	12,709	8,100	-4,609	-3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내용: 전통사찰 전수조사를 통해 사찰별 지원기준 마련)의 내용에 사찰의 방재시스템 구축 필요성 항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나. 집행부진 해소방안 및 사업비 분담 기준, 신청 지침 등 마련 필요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된 10개 내역사업의 현황, 총사업비, 공정률, 집행부진 사유는 다음 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업기간 대비 공정률이 낮은 편이며, 지방자치단체 행정절차 지연과 같은 통상적인 집행부진사유 외에 종교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도 나타나고 있다.

[표 2] 2015년 종교문화시설 내역사업 현황

(단위: 억원, %)

시설명	사업기간	2015 예산안	총사업비		공정률	집행부진사유
원불교 국제마음 훈련원 (전남영광)	2012~2015	22	176	국고 88 지방 44 민간 44	19.5	전남도 투융자 심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등 행정절차로 당초계획대비 지연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2012~2016	11	121	국고 605 지방 605	23	천주교 대구대교구와의 주요 사항 협의 및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사업 추진 지연
배티 세계순례성지	당초: 2012~2016 변경: 2012~2015	2.5	100	국고 25 지방 25 민간 50	70	-
안동 종교타운	2012~2015	3	73	국고 365 지방 365	0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도 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추 진, 손실보상협의 부진으 로 사업 추진 지연
진각문화 국제체험관	당초: 2012.7~ 2014.8 변경: 2012.7~ 2016	10	70	국고 30 민간 40	0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 정절차 지연 (2014.8 건축허가 완료)
도산서원 선비문화 수련원 제2원사	2013~2015	18.5	80	국고 40 지방 40	6.3	도시계획 변경으로 일부 지연되었으나, 현재 조달 청 입찰의뢰 중
호국불교 의승군 기념관	2014~2016	3	30	국고 9 민간 21	0	2014년도 수시배정 사업

시설명	사업기간	2015 예산안	총사업비		공정률	집행부진사유
레지오마리아 나눔봉사 기념관	2014~2015	13	102	국고 255 지방 255 민간 51	0	천주교광주대교구의 사업 계획 수정으로 당초계획 대비 사업추진 지연
충청유교 문화원	2014~2018	2	280	국고 84 지방 196	0	2014.12 설계용역 예정
순천선비 문화체험관	2015~2016	9	30	국비 9 지방 21	-	신규사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9개 계속사업 중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 사업을 제외한 8개 사업은 모두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¹³⁾ 종교시설 건립사업의 집행부진 문제는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구체적인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 종교문화시설건립 연도별 실집행률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8
실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20.9	59.3	49.5	40.2	53.4	21.4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건립사업의 신청과 관련하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교별·종단별로 갈등 발생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 그리고 총사업비 분담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내역사업마다 국고, 지방비, 민간의 비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2015년 예산안은 내역사업별로 예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종교시설 건립 신청지침 및 사업비 분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 예를 들어,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은 2013년 5.9%, 2014년 8월 현재 6.6%이며, 안동종교타운의 경우 실집행률은 2012년 0%, 2013년 10.7%, 2014년 8월 현재 21.3%이다.

6. 해외문화원 운영: 임차료·일반수용비간 비목 조정 및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 사업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재외 해외문화원을 신설·운영하고 우즈베키스탄에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5억원(33.6%) 증가한 417억원 편성
- ① 최근 5년간 매년 일반수용비로 해외문화원 임차료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수용비를 일부 감액하여 임차료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②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은 사전 검토가 부족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할 필요

가. 현황

해외문화원 운영(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재외 28개 해외문화원의 운영 및 신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5억원(33.6%) 증가한 417억원이 편성되었다. 기존 28개소 해외문화원의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원(3.8%) 증가한 324억원이며, 이 외에 해외문화원 신설(싱가포르, 이탈리아, UAE), 해외문화원 리모델링,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으로 총 93억원이 증액되었다.

[표 1] 해외문화원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해외문화원 운영 (일반회계)	28,097	31,217	41,717	10,500	33.6
- 해외문화원 운영	28,097	31,217	32,417	1,200	3.8
- 해외문화원 신설	-	-	3,600	3,600	순증
- 해외문화원 리모델링	-	-	3,700	3,700	순증
-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	-	-	2,000	2,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최근 5년간 실집행액을 고려한 비목별 적정 예산 반영 필요

해외문화원 운영 사업의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비목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최근 5년간 매년 일반수용비를 사업조정하여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집행하여 왔다. 특히 임차료 비목으로의 사업조정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표 2] 해외문화원 운영 임차료 및 일반수용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금액	내용		
2010	일반수용비	5,308	-994	임차료 265 시설장비유지비 729	4,314	4,314
	임차료	4,943	265		5,208	5,208
2011	일반수용비	6,221	-476	임차료 476	5,745	5,745
	임차료	6,403	476		6,879	6,878
2012	일반수용비	8,232	-2,547	임차료 1,807 시설장비유지비 610 국외여비 130	5,686	5,684
	임차료	7,500	1,807		9,307	9,307
2013	일반수용비	9,761	-3,504	임차료 2,713 시설장비유지비 732 연구용역 등 59	6,257	5,548
	임차료	7,700	2,713		10,413	10,203
2014	일반수용비	9,901	-965	임차료 450 시설장비유지비 515	8,936	6,224
	임차료	9,564	450		10,014	8,970
2015 (계획)	일반수용비	9,901				
	임차료	10,139				

주: 2014년 실집행액은 8월말 기준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일반수용비 사업조정을 통한 임차료 집행이 꾸준히 반복되고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감안하여 2015년 예산안을 합리적으로 편성했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8개 해외문화원의 2014년 계약내용, 현지국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2015년 임차료 필요액은 약 105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표 3] 해외문화원 임차료 산정액

(단위: 천원, %)

	2014년 계약액			2015년 소요액			인상률	증감사유
	건물	기타	합계	건물	기타	합계		
일본	-	23,400	23,400	-	2,184	2,184	-90.7	자체 소유 건물
오사카	174,720	20,094	194,814	174,720	16,126	190,846	-2.0	
북경	-	4,000	4,000	-	4,000	4,000	0.0	자체 소유 건물
상해	-	-	-	-	-	-	-	자체 소유 건물
태국	438,522	3,666	442,188	454,966	3,666	458,632	3.7	
인도네시아	307,722	183,749	491,471	307,722	183,749	491,471	0.0	
필리핀	255,196	12,116	267,312	272,236	13,711	285,947	7.0	
베트남	112,953	3,180	116,133	112,953	3,180	116,133	0.0	
시드니	672,161	10,354	682,515	697,368	10,743	708,111	3.8	연3.8%인상 계약
인도	610,560	6,360	616,920	610,560	6,360	616,920	0.0	
워싱턴	-	-	-	-	-	-	-	공관 소유 건물
뉴욕	907,732	38,923	946,655	953,119	40,869	993,988	5.0	2014. 12월 재계약
LA	-	50,095	50,095	-	52,600	52,600	5.0	자체 소유 건물
상파울루	315,424	67,807	383,231	342,235	73,570	415,805	8.5	계약 조건 이행
아르헨티나	281,112	-	281,112	337,334	-	337,334	20.0	물가상승률 반영 조건 계약
멕시코	221,328	5,593	226,921	221,328	6,320	227,648	0.3	
영국	630,000	36,000	666,000	630,000	36,000	666,000	0.0	
프랑스	-	24,496	24,496	-	24,990	24,990	2.0	자체 소유 건물
독일	661,623	36,750	698,373	677,670	41,160	718,830	2.9	
러시아	972,525	300	972,825	1,011,426	300	1,011,726	3.9	
벨기에	305,992	-	305,992	369,010	-	369,010	20.6	2014년은 3~12월 까지 계약액임
폴란드	340,846	-	340,846	357,888	20,000	387,888	13.8	
스페인	586,176	-	586,176	603,761	-	586,176	2.6	물가상승률 반영 조건 계약
헝가리	399,279	-	399,279	419,243	20,000	439,243	10.0	
카자흐스탄	372,590	10,048	382,638	391,219	10,048	401,267	4.9	
터키	300,000	82,300	382,300	300,000	82,300	382,300	0.0	
이집트	238,690	-	238,690	238,690	3,180	241,870	1.3	
나이지리아	296,486	-	296,486	340,938	-	340,938	15.0	연15%인상 계약
합계	9,401,637	619,231	10,020,868	9,824,386	655,056	10,471,857	4.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에도 임차료는 101억원, 일반수용비는 99억원을 편성하여 임차료 과소편성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2015년에도 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일반수용비를 감액하고 임차료를 증액하는 비목별 예산조정이 요구된다.

다.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전계획 수립 후 추진 필요

한국문화예술의 집은 2014년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양국 간 우호증진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의 민족문화 보존 등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5~2017년, 총사업비 75억원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외교부와 MOU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소요되지 않는다.

[표 4] 한국문화예술의 집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2015	2016	2017	합 계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	2,000	3,000	2,500	7,500
- 연구용역	300	-	-	300
- 건물 설계	1,700	-	-	1,700
- 건립 공사	-	3,000	2,500	5,5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려인 동포 약 18만명(CIS내 최다) 외에도 교민 약 2,500명이 거주하고 있어 한국문화예술의 집을 건립하면 문화교류 증진 및 민족문화 보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동 사업은 중기계획 등을 통해 사전에 논의된 바가 없고¹⁴⁾, 해당 시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연구가 부족하여 사업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4)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존 연도별 해외문화원 신설계획에서는 2017년 우즈베키스탄에 해외문화원을 증설할 예정이었다. 한국문화예술의 집이 건립될 경우 해당 시설이 해외문화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별도로 해외문화원을 건립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

7.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지역문예회관 공연 지원의 적정 수준 예산 반영 필요

-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작품을 지역문예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대관료, 홍보·마케팅, 공연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억원 편성
- 비수도권 지역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장 가동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며, 대관료가 저렴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필요

가. 현황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일반회계, 신규, 보조)은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예술단체의 우수공연작품을 지역문예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대관료, 홍보·마케팅, 공연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2015년에는 60억원이 편성되었다. 60억원 중 59억 9,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전액보조)이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를 통해 수행된다.

[표 1]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일반회계)	-	-	6,000	6,000	순증
-민간경상보조	-	-	5,995	5,995	순증
-일반수용비	-	-	5	5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지역문예회관 공연 지원 편성이 과다하므로 적정 수준 예산 반영 필요

동 사업은 지역문예회관 공모를 통해 지역문예회관에서 국립예술단체 우수 공연작품을 공연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사업이다. 2015년 전국 지역문예회관에서 120회의 국립예술단체 초청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문예회관 대관료 지원 12억원, 홍보·마케팅 지원 3.6억원, 국립예술단체에 대한 공연투어비용 지원 40.8억원, 사업운영비 4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표 2]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편성내역

편성내역
○ 국립예술단체 우수작품 지방문예회관 공연 지원: 5,640백만원 - 지역문예회관 대관료 지원: 1,200백만원 (120회 × 2일 × 5백만원) * 전국 문예회관 214개 중 50%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지원 - 지역문예회관 홍보·마케팅 지원: 360백만원 (120개 문예회관 × 3백만원) - 공연투어비용 지원: 4,080백만원 (120개 문예회관 × 34백만원) * 음향·조명장비 임대료, 화물운송비, 공연료, 스태프비용 등 ○ 사업운영비: 360백만원 - 공모진행, 사업 운영 점검 및 평가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편성내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 사업은 지역문예회관 대관료로 공연 1회당 5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대관료에는 공연대관료 외에 공연을 위한 준비대관료, 철수대관료, 기타 추가비용(무대, 음향, 조명, 기계시설, 냉·난방 등)이 소요된다.

실제 지역문예회관의 대관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여부와 건립 시기(공연장 시설의 우수성 정도) 등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비(非)수도권 소재 지역문예회관의 경우 대공연장 기준으로 대부분 5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지역문예회관의 대관료에 관한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참고로 대관료(준비, 철수, 기타 비용 포함)가 높은 문예회관으로 성남 아트센터(1,945만원), 고양 아람누리(1,743만원), 대전 예술의 전당(1,125만원) 등은 1천만원을 상회하나, 대구 수성아트피아(489만원), 경주 예술의 전당(495만원), 청주 문화예술체육회관(340만원), 당진 문예의 전당(192만원), 광주 문화예술회관(143만원) 등은 5백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⁵⁾

또한 지역문예회관의 가동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면 지역문예회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대관료를 절감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⁶⁾

동 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의 우수 공연을 접하기 힘든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대관료 실태를 감안하면 실제 대관료는 5백만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대관료 예산 등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지역문예회관에 실제 소요되는 수준 이상의 대관료 지급을 통해 문예회관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 문예회관을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문예회관의 자생력 강화는 대관료 과다지급이 아닌 다른 방식(별도의 지원 사업 등)으로 투명하게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15) 위의 대관료는 정가(定價)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공연 규모 및 문예회관 사정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6) 문화체육관광부의 2012~2013 공연예술실태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공연장 가동률은 서울 85.9%, 제주 75.7%, 충청 68.1% 등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경상 58.6%, 전라 56.6%, 경기/인천 48.5%, 강원 47.4% 등은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과다편성된 연구용역비 적정 수준 반영 필요

- 구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유휴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억원 편성
- 연구용역 추진 외에 해당 공간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연구용역비 산출근거가 미흡하며, 이미 유사 연구용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필요

가. 현황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일반회계, 신규, 직접)는 대규모 유휴공공시설을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사업대상은 구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이다. 2015년에는 20억원이 편성되었다. 20억원은 모두 연구개발비이다.

[표 1]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일반회계)	-	-	2,000	2,000	순증
- 연구개발비	-	-	2,000	2,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예산 산출근거 미흡 및 세부 사업계획 미비를 고려한 적정 수준 예산 반영 필요

동 사업은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대규모 유휴공공시설을 문화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재생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2015년부터 신규로 추진 예정인 사업이다.

2015년 예산안은 도청의 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 경북도청 및 충남도청 유휴부지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현 경북도청은 2015년 7월 이전예정이며,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 충남도청은 2012년 11월 이전이 완료되었다. 예산안은 2개 지역에 대해 연구용역비 10억원씩 편성하고 있다.

[표 2] 유휴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편성내역

편성내역
○ 구 경북도청 문화공간 활용방안 연구용역 1식: 10억원 * 대구 북구 소재, 본청연면적 28,691m² ○ 구 충남도청 문화공간 활용방안 연구용역 1식: 10억원 * 대전 중구 소재, 부지 40,600m², * 시설물: 구 도청본관(등록문화재 18호), 구 경찰청사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동 사업은 2개 시설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 외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시설별 연구용역 소요액에 대해서도 산정근거가 미흡하다. 또한 해당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대구시 및 대전시에서 이미 연구용역을 발주¹⁷⁾한 점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17) 대구광역시는 「경북도청 이전터 활용방안 기본계획 연구」(2013.8~2014.9, 한국개발연구원), 대전광역시는 「한밭문화예술복합단지조성연구」(2011.2~2011.12, 대전발전연구원)를 수행한 바 있으며 또한 대전광역시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보고서로 「(구)충남도청사 중장기 활용방안 연구」(2014.1~2014.9, 대전발전연구원)를 수행하고 있다.

9.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여 기념관 건립 예산 일부 조정 검토

- 불교계를 탄압한 1980년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난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억원 편성
- ① 2010년 이후 국방부를 주무부처로 예산이 매년 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 미비로 인해 전액 미집행되다가 2013년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된 점, ② 2015년 4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건립 예산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

가. 현황

10·27법난 기념관 건립(일반회계, 신규, 보조)은 10·27법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 치유시설이 포함된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현재 1,687억원(국고 1,534억원, 민간 153억원)이다. 2015년에는 200억원이 편성되었다. 비목별로는 민간자본보조 195억원, 연구개발비 5억원이다.

[표 1]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일반회계)	-	-	20,000	20,000	순증
- 연구개발비	-	-	500	500	순증
- 민간자본보조	-	-	19,500	19,5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임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 필요

10·27법난¹⁸⁾과 관련하여 정부는 1988년 당시 국무총리의 공식 사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으며 2008년 「10·27 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2항에 서는 피해자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의료지원금, 기념관 건립을 규정하고 있다.¹⁹⁾

동 사업은 2010~2013년 국방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예산이 편성²⁰⁾되었으나 사업계획 미비로 인하여 전혀 집행되지 못하다가, 불교계에서 종무(宗務)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부처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여 201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로 주무부처가 이관되었다. 기념관 건립 사업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 10·27법난 기념관 건립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5~2018년(4년) ○ 총사업비: 168,750백만원(국고 153,407백만원, 민간 15,341백만원) ○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일원 ○ 부지면적/연면적: 4,500㎡/21,518㎡			
	부지면적	연면적	부지 소유
법난기념관 1동	3,574㎡	20,100㎡	사유지: 75.5% 시유지: 7.0% 조계종: 17.5%
법난기념관 2동 (피해자 치유시설)	926㎡	1,418㎡	사유지: 100%
합 계	4,500㎡	21,518㎡	
○ 공간배치계획 - 기념관 1동(지상 6층, 지하 5층): 전시시설, 불교문화체험실, 교육시설, 도서관, 강당, 주차장 - 기념관 2동(지상 3층, 지하 1층): 치유시설, 물리치료실, 법당			

자료: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18) 10·27법난은 1980년 10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이다. 1,929명이 검거되어 피해를 입었고, 전국 사찰 및 암자 5,731개소가 수색되었다.

19) 별도의 보상비 지급 등은 입법과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기념관 건립이 법난피해자 명예회복의 핵심 사업으로 볼 수 있다.

20) 2014년의 경우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216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2015년 예산안 200억 중 5억원은 시설 콘텐츠 개발 및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용이며, 195억원은 기본설계비 1.7억원, 지구단위 계획변경 2.1억원, 토지매입비 189.7억원, 토지매입수수료 1.3억원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표 3] 10·27법안 기념관 건립 2015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천원)

용도		금액	201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기본 설계비		169,400	3,031,000(건축설계비) × 0.08 × 70% = 169,400
지구단위 계획변경		210,000	300,000(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의 70% = 210,000
토지 관련 비용	토지매입비	18,970,580	72,290,000(전체 토지매입비) 의 26.24% = 18,970,580
	토지매입 수수료	134,680	518,000(전체 토지매입수수료)의 26% = 134,680
문화재 시굴조사		15,340	59,000(전체 문화재 시굴조사비)의 26% = 15,340

자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동 사업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며, 2014년 10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다.²¹⁾ 적정성 검토에는 6개월이 소요되므로 현재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보조금 지급은 2015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사업의 그 동안의 추진 경과에 있어 주무부처의 변경 및 예산의 전액 미집행이 3년간 발생하였던 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안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²²⁾

21)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기획재정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참조.) 문화체육관광부는 10·27법안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이 종료(2016년 6월 예정)되기 전에 기념관 건립을 일정 수준 이상 시행하기 위해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22) 다만 총사업비 중 약 773억원이 부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의 경우 기간이 오래 소요될수록 소요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연도(2016년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추진 방식 개선 검토

- 대구·경북권의 유교, 신라, 가야 등 역사문화 자산을 연계 개발하는 관광 개발 및 진흥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2억원(32.9%) 증가한 1,341억원 편성
- 사업 시작 연도인 2010년부터 매년 실행률이 40% 미만으로 부진하고 개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가. 현황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광지역발전특별회계, 2010~2019, 보조)은 대구·경북권의 유교, 신라, 가야 등 역사문화 자산을 연계 개발하는 관광개발 및 진흥 사업이다. 전액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이며 국고보조율은 70%이다. 총사업비는 3조 275억원(국고 1조 6,477억원, 지방비 1조 375억원, 민간 3,423억원)이며, 6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32억원(32.9%) 증가한 1,341억원이 편성되었다. 2015년 추진예정인 사업은 모두 34개 사업이다.

[표 1]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	95,843	100,929	134,100	33,171	32.9
-지자체자본보조	95,843	100,929	134,100	33,171	32.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사업 추진 개선방안 마련 및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개시 이후 지방자치단체 실행률 부진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부진한 경우가 일부 있으나, 동 사업은 매년 실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연도별 실집행률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8
실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0.1	18.7	39.5	33.8	0.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사업지연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추진방침 지연 및 기본계획 구체화 지연, 사업계획 변경, 지역 및 이해관계자 갈등, 사업준비 미흡(토지 및 지방비 확보 지연),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주요 지연 사유별 사업 현황

지연 사유	해당 사업
지자체 추진방침 지연 및 기본계획 구체화 지연	동의 참 누리원(대구), 달성습지 탐방나루(대구),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대구),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안동), 선성현 문화단지(안동), 동해안 연안녹색길(포항, 영덕), 산촌문화 누림터(영양), 솔누리 느림보 세상(청송)
사업계획 변경 (입지 및 사업내용 변경)	거꾸로 옛 이야기나라 숲(상주), 동의 참 누리원(경산), 세계유교선비 문화공원(봉화), 금강송 에코리움(울진)
지역 및 이해관계자 갈등	팔공역사공원- 지역 종교계 반발로 지자체 자체 포기 달성역사공원- 동물원 이전에 대한 지역내 이견
사업준비 미흡 (토지 및 지방비 확보 지연)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문경), 신라금속공예지국(경주), 무흘구곡 경관가도(김천, 성주), 비봉산 푸른문화길(의성)
행정절차 이행 지연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세계유교선비 문화공원(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안동, 영주), 삼국유사가온누리(군위), 유림문학유토피아(안동), 무섬지리문화경관(영주), 녹색문화상생벨트(문경, 예천), 신화랑풍류체험벨트(경주, 영천, 청도), 황악산 하야로비공원(김천), 동의 참 누리원(영천), 초전지 역사로드(구미), 낙동강 역사너울길(구미, 칠곡), 신라문화 탐방 바닷길(포항),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영덕), 신라분역사지움(의성),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상주)
기타 (감사 지적 등)	낙동강 이야기나라(상주), 서라벌연희테마단지(경주), 음식디미방(영양),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 개발(고령)

자료: 한국관광개발연구원,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사업 중간평가 연구」, 2014.8

동 사업은 또한 내역사업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한 사업 축소 및 폐지,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 개발’과 같은 유사 목적 사업 및 타 부처의 지역 개발 사업과 중복으로 추진된 경우가 많다.

[표 4]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문제점 지적 사례

사업명	지적 내용	조치사항 및 계획
서라벌연희테마단지(경주), 신화랑 풍류체험벨트(경주)	사업 내 유사·중복	서라벌연희테마단지 조성사업 폐지 및 기 지원된 국고보조금 14억원 환수
음식디미방(영양) 두들마을 정비사업(문체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음식디미방 조성 규모 및 사업비 35억원 감액 조정
가야국 역사루트재현과 연계자원개발(고령)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농림부), 대가야 역사문화 테마관광지(문체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규모 축소 및 사업비 404억원 감액조정하고, 국고보조금(토지매입비 사용액) 21.8억원 환수
낙동강 역사이야기존(상주)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환경부)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 및 보조금 부적정 집행	환경부 사업 폐지 및 부적정 집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사용) 보조금 중 과다집행 28억원 환수 예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업의 유사·중복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조성사업 중간평가 연구용역(2013.9~2014.8)을 수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및 추진곤란 사업 5개를 폐지하여 사업수를 62개에서 57개로 축소하였고, 총사업비는 당초 3조 275억원에서 2조 3,283억원으로 6,992억원 감축 조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장관리 및 점검, 준공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안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집행을 부진에 대해서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등의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1.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통합문화이용권 수요를 반영한 예산 규모 검토 필요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을 발급하는 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18억원(3.0%) 증가한 631억원 편성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안 540억원은 집행률을 63%로 계상한 것으로, 타 바우처 집행률 및 기존 유사 사업의 집행률을 감안하면 실제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은 63%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을 검토할 필요

가. 현황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문화예술진흥기금, 계속, 보조)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전용 카드(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과 공연나눔, 창작나눔²³⁾ 사업으로 구성된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8억원(3.0%) 증가한 631억원이 편성되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7:3으로 분담하는 매칭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동 사업 뿐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예산을 일부 분담하고 있다.

[표 1]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58,163	61,300	63,121	1,821	3.0
- 통합문화이용권	35,013	40,866	42,643	1,777	4.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3) 공연나눔은 소외계층문화순회공연, 사랑티켓 지원, 방방곡곡문화공감 사업으로 수행되며, 창작나눔은 지역별 생활문화공동체를 지원한다.

나.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증액 검토 필요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은 2013년까지 문화·여행·스포츠로 별도로 운영되던 바우처 사업을 2014년부터 통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동 사업 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이전 이용권제도가 별도로 운영되어 온 것에 기인한다. 2015년 예산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426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06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7억원 등 총 540억원이다.

문화이용권의 제도 변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2014년에는 세대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청소년 1인당 추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개인당 5만원으로 기준을 단일화하였다.²⁴⁾

[표 2] 통합문화이용권 제도 변경 내용

		2013 이전	2014	2015(안)
이용범위		문화·여행·스포츠관람이용권 별 이용 범위 제한	통합이용권으로 3개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가능	좌·동
카드 발 급 기 준	문화	○ 세대당 5만원+청소년 추가발급 － 세대내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추가발급 (최대6명까지) * 세대발급 최대금액: 35만원	○ 세대당 10만원+청소년 추가발급 － 세대내 청소년 1인당 5만원씩 추가발급 (최대 5명까지) * 세대발급 최대금액: 35만원	개인당 5만원 (세대 기준 삭제)
	여행	개인당 15만원 (가구당 2인 이내)		
	스포츠 관람	가구당 12만원	○ 시설거주자: 개인당 5만원	
청소년 대상		만10세 ~ 19세	만6세 ~ 만19세	만6세 이상 (청소년 별도 지급기준없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4) 제도 변경 과정에서 1인 가구의 경우 2014년까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5년은 5만원으로 축소된다. 전문가·지자체·지역주관처 관계자 회의(2014.5.20~21)에서는 문화는 개인의 성향과 취향별로 향유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종 이용자는 세대가 아닌 개인이므로 개인발급이 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체적으로 계상한 2015년 소요 예산은 714억원(운영비 12억원 별도)으로 산출된다. 대상인원 240만명, 1인당 5만원 지급, 집행률 85% 산정, 국비 비중 70%를 곱한 결과이다.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통합문화이용권 소요금액 산출근거(문화체육관광부 계상)

대상자 240만명 × 5만원 × 85%(집행률) × 70%(국비:지방비 7:3매칭) = 714억원				
○ 대상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망)에 등록된 기초 및 차상위 계층 249만명 중 만 6세 이상인원 240만명(2014. 4.30일 현재 기준)				
○ 집행률: 보건복지부 각종 바우처 집행률 고려하여 85%로 산정				
－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 2013년 집행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85.4%,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8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9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예산안은 528억원(운영비 12억원 별도)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계상과 비교하여 186억원이 부족하다. 정부안인 528억원은 집행률을 약 63%로 산정한 결과이다. 그런데 위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 바우처의 집행률은 80~92%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3년 이전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각각의 집행률도 94.5~99.5%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5년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은 6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²⁵⁾

[표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이용권 사업 집행률 현황

(단위: %)

바우처 구분	2013			2014. 8
	문화	여행	스포츠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	94.5	99.5	97.2	58.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5) 기존 사업의 경우 대상자 전원에게 바우처를 발급한 것은 아니므로, 대상자 전원 발급을 목표로 하는 2015년 사업은 기존 사업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발급 업무만 제대로 수행되면 집행에 있어서는 고령층 대상 기획상품 제공 등으로 소진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63%보다는 높은 집행률이 예상된다.

만약 정부의 예산안대로 528억원으로 사업이 시작될 경우, 전체 대상 인원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이용권을 발급하거나, 1인당 바우처 금액을 삭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소외계층 전체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합문화이용권 예상 집행률에 따른 증액 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 통합문화이용권 예상 집행률 별 추가 소요재원

(단위: 억원)

예상 집행률	70%	85%	90%
추가 소요재원	60	186	22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집행률이 70%일 경우 60억원, 85%일 경우 186억원의 증액이 요구된다. 만약 집행률이 90%를 상회할 경우 228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12.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탐방로 조성사업 통합관리 필요

○ 생태녹색관광 육성,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화 등 3개 내역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6억원(△28.2%) 감소한 92억원 편성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화(25.4억원)와 관련하여 6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탐방로(걷기여행길, 걷는 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면 정비 미흡 및 프로그램 부재, 안내표지 혼란 가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탐방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

가. 현황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 보조)은 생태녹색관광 육성,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화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6억원(△28.2%) 감소한 92억원이 편성되었다.

생태녹색관광 육성에는 생태관광 10대 모델 사업지 지원, 야생화 군락지원 관광자원화, 유희자원(폐선 철로) 관광상품화 등이 포함된다.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는 슬로시티²⁶⁾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은 종합안내 정보망 운영, 홍보·마케팅 지원, 걷기행사 지원,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 1]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관광진흥개발기금)	17,241	12,860	9,230	-3,630	-28.2
- 이야기가 있는 문화 생태 탐방로 사업화	3,824	3,230	2,535	-695	-21.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6) 슬로시티 인증지역은 담양, 완도, 하동, 예산, 남양주, 전주, 상주, 청송, 제천, 영월이다.

나.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탐방로 조성·운영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화(25.4억원)는 탐방로 관련 운영비, 관리·홍보, 탐방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조성 및 안내체계 정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탐방로 신규 조성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소재 우수 탐방로의 유지·보수 및 안내체계 정비, 탐방로 관리 및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기반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탐방로(걷기여행길, 걷는 길) 조성 사업은 2008년 이후 여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탐방로의 명칭도 각기 차이가 있다. 2013년 9월 현재 탐방로 수 595개, 코스 1,689개, 총 연장 17,671km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전국 탐방로(걷기여행길) 현황

(단위: 개, km)

부처 등	탐방로 명칭	탐방로 수	코스 수	총 연장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생태탐방로	48	180	2,370	지자체
산림청	숲길	55	170	1,758	산림청
환경부	국가생태탐방로, 녹색길, 둘레길	58	133	2,829	지자체
국토교통부	누리길, 관동팔경녹색경관길	52	69	752	지자체
안전행정부	명품녹색길	125	241	2,031	지자체
해양수산부	해안누리길	52	52	505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196	773	6,559	지자체
기타(민간)		9	71	866	민간
합 계		595	1,689	17,67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도보여행길 현황조사

중앙부처만 살펴보더라도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모두 6개 부처이다. 6개 부처의 관련 사업명, 추진 방식, 보조율, 특징, 법·제도적 근거 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중앙부처별 탐방로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사업 명칭	추진 방식	보조율	사업 특징	법·제도적 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지자체 공모	50:50	지자체 소재 우수 탐방로 유지, 보수 및 안내체계 정비, 탐방로 관리 및 활성화(운영 프로그램) 기반 구축 중심 추진	「관광진흥법」,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산림청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지자체 자체요구 (지역계정)	50:50	등산, 트레킹, 레저·스포츠, 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정비와 조성을 병행추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숲길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 자체요구 (광역계정)	50:50 (산림청 시행시 전액)		
환경부	국가생태 문화 탐방로	지자체 공모	50:50	전국 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근거로 국가급으로 인증받는 탐방로를 목적으로 추진	「자연환경 보전법」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지자체 공모	70~90: 30~10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기존 길 중심으로 정비 차원에서 추진	환경부 예규인 녹색길 조성사업 지침에 의해 조성
해양수산부	해안누리길	해안누리길 지정	지원 사업 아님	기존 조성된 길을 해양관광진흥을 위해 걷기여행에 좋은 해안길로 선정	없음
안전행정부	명품녹색길	지자체 공모	50:50	2012년 탐방로 사업 종료	「자연공원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탐방로 조성 사업이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노면 정비 미흡, 지역 주민의 참여의식 부재 및 프로그램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탐방로가 교차하는 구간의 경우 조성주체마다 다른 명칭과 이질적인 안내표지 등으로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탐방로 관리체계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중복투자 등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²⁷⁾, 관광레저 주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탐방로 종합안내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유사·중복 등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전국의 탐방로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²⁸⁾

27) 이와 관련하여 2013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에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걷기여행길 조성 및 관리체계 정비,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내체계 확충, 지속적인 걷기여행 활성화 여건 조성 등의 추진과제가 제시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28) 탐방로 및 걷는길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걷는 길의 조성 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안전행정위원회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계류되어 있다.

13.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관광경찰 사업 경찰청으로 이관 검토

- 관광호텔 체인화(베니키아) 기반조성, 코리아스테이 등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도 운영, 호텔 등급제도 운영, 관광경찰 운영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억원(△1.6%) 감소한 75억원 편성
- 2013년 출범한 관광경찰 사업 예산을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업무분담 협의를 통해 예산 이관 및 역할 조정 검토 필요

가. 현황

관광활성화 기반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 보조)은 관광호텔 체인화(베니키아 브랜드) 기반조성, 코리아스테이 등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도 운영, 관광안내전화 및 안내소 운영, 관광산업 정책개발, 호텔 등급제도 운영, 관광경찰 운영, 영화의 거리 및 영화촬영소 관광지화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 중 관광경찰 협업, 영화의 거리 조성 용역 및 영화촬영소 관광지화 용역²⁹⁾ 내역사업은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3억원(△1.6%) 감소한 7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관광진흥개발기금)	7,122	7,639	7,514	-125	-1.6
- 관광경찰 협업	-	-	100	1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9) 파주 통일동산과 헤이리 예술마을을 연계하여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관광지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연구용역 2건이 편성되었다.

나. 관광경찰에 대한 경찰청과 유사·중복 지원 예산 이관 및 조정 필요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 1,217만명에 이르는 등 관광산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 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2013년 10월 서울을 시작으로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관광경찰은 직업 경찰 및 의경 중 외국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현재는 서울(101명) 외에 부산(35명), 인천(24명)에서 총 160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광경찰 운영(2013.10~2014.8)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외국인 관광객 불편 신고가 7.6% 감소하였으며, 불법 게스트하우스·환전업·택시 부당요금 등을 단속·수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2] 관광경찰대 활동 실적

(단위: 건)

소계	단속·적발									관광 안내	불편 처리	총계
	무자격 가이드	택시 (콜밴)	상표법	관광 버스	가격 표시	원산지 표시	외환 관리법	무허가 숙박업	기타 (호객 행위 등)			
1,299	309	212	15	134	182	35	69	114	229	37,563	306	39,168

주: 2013.10.16~2014.9.31. 기간의 활동 실적임

자료: 경찰청

2015년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경찰 협업’ 1억원³⁰⁾, 경찰청 ‘관광경찰 운영’ 9.6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경찰의 운영과 관련하여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양측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³¹⁾ 중복우려가 있다.

실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내용 중 근무복 지원, 시설유지 및 피복세탁 등은 경찰청의 피복비(복장교체), 시설 개·보수, 피복세탁비 등과 유사한 면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집행에 있어서 근무복은 춘추복 지원과 하복지원, 시설은 시설위치의 차이 등이 있다고 하나, 이런 경우 하나의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30)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안으로 18억원(숙영지 임차료, 홍보 및 역량 강화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1억원으로 삭감되어 2014년 9월 현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청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관광경찰대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피복비, 외국어 교육, 운영비(피복세탁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홍보비 등)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31)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인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정비’ 사업 3.5억원을 조정하여 집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관광경찰 운영’ 내역사업으로 15.5억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관광경찰대는 경찰청에서 경찰청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경찰청에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광경찰 관련 예산 내역을 상호 검토하고 이관 및 역할조정을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14.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방자치단체 캠핑장 조성사업 실적행 제고 대책 마련

-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캠핑장의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억원(8.9%) 증가한 147억원 편성
- 캠핑장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지연(지방비 미확보, 실시 설계 용역 등)으로 인하여 2011년 이후 평균 실적행률이 46.6%로 부진하므로 지방자치단체 캠핑장 조성사업의 실적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관광진흥개발기금, 계속, 보조)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의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캠핑장의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2억원(8.9%) 증가한 147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	15,000	13,500	14,700	1,200	8.9
- 지자체 캠핑장 조성	9,500	10,750	10,000	-750	-7.0
- 국립공원 캠핑장 조성	5,450	2,500	2,500	-	-
- 캠핑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	-	2,000	2,0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지자체 캠핑장 조성 사업의 경우 매칭사업으로 수행되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국립공원 내 야영장 정비 및 확충은 정액 보조로 수행된다. 2015년에는 지자체 캠핑장 21개소(계속 13개소, 신규 8개소), 국립공원 6개소(월악산 2, 치악산 2, 덕유산, 지리산 야영장)를 지원할 예정이다.³²⁾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액(실집행률)이 저조한데, 2010년 이후 매년 실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42.9%를 나타내고 있다.

[표 2]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연도별 실집행률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10	7,000	7,000	4,724	11,724	9,390	80.1
2011	6,650	6,650	2,334	8,984	6,048	67.3
2012	10,418	10,418	2,779	13,197	7,825	59.3
2013	15,000	15,000	4,358	19,358	8,306	42.9
2014.8	13,500	9,650	-	13,500	3,450	25.6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예산액 전체를 교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설계 지연, 관련 인허가 절차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공모선정시기 조정, 상·하반기 사업 수행상황보고 제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뚜렷한 집행을 제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5년 예산안의 경우도 집행률이 높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제고 대책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32) 2014년 9월 현재 전국의 캠핑장은 2,000개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된 캠핑장은 2014년까지 모두 86개소(지자체 70, 국립공원 16)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은 이를 포함하여 약 359개소 수준이다.

15.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학교체육시설개방 사업 시범운영 후 사업 지속여부 결정 필요

-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학교체육시설 개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억원 (19.5%) 증가한 362억원 편성
-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51억원, 340개소 개방)은 ① 학교장의 책임 문제, 소음 등으로 인하여 학교 측에서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②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역주민 이용률 제고 효과가 불분명하므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

가. 현황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계속, 보조)은 일반 국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과 소외계층생활체육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9억원(19.5%) 증가한 362억원이 편성되었다. 생애주기별 체육활동 지원(303억원)은 유청소년 61억원, 성인 45억원, 어르신 48억원, 전연령 15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전연령에는 생활체육광장 운영 11억원, 종합형스포츠클럽 육성 88억원,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51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계층생활체육 지원(59억원)은 행복나눔스포츠교실 47억원, 자원봉사단 6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1]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3,825	30,323	36,245	5,922	19.5
- 학교체육시설개방 지원	-	-	5,100	5,10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학교체육시설 개방 시범운영 후 사업 지속여부 결정 필요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접근성이 높은 체육시설인 학교 체육시설을 일반 국민에게 개방하여 생활체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체육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국 340개 학교에 1,5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표 2] 학교체육시설 개방 편성내역

산출내역: 15백만원 × 340개소(17개 시도 × 20개 학교) = 5,100백만원
15백만원 단가 산정 근거
○ 관리자 수당: 12,768천원
- (주중) 7천원×4시간×22일×12개월×1명=7,392천원
- (주말) 7천원×8시간×8일×12개월×1명=5,376천원
* 지급은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의 125% 반영
○ 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2,232천원
-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비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학교체육시설은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³³⁾, 학교 내 외부인 출입에 따른 범죄 우려, 쓰레기 발생, 시설 관리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아 시설 개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시설 위탁을 받고, 전문성을 갖춘 시설 관리자를 고용하는 것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의 전제조건으로 판단된다.³⁴⁾ 동 내역사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생활체육회를 계약주체로 하여 개방에 따른 시설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권 위탁을 통해 학교 측의 체육시설 이용 관련 책임 문제가 완화될 수는 있겠으나 소음 문제, 학생의 체육시설 이용 방해 우려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므로 사업 시작 연도부터 340개소를 개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33) 참고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에게 승인권을 주고 있어(제5조 참조) 학교장에게 일정 부분 재량이 인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방시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34) 서울, 충북, 경북 교육청 담당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체육시설 이용률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개방대상인 기존 교육부 지원을 통해 체육시설을 건립한 초·중·고등학교 외에,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시설의 개방을 조건으로 2009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건립을 지원한 체육시설이 있다.³⁵⁾ 이러한 개방형 체육관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동 사업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013년 말 완공된 개방형 체육관 60개 가운데 27곳이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³⁶⁾ 학교시설 개방의 이용률 제고 효과도 다소 의문이 있다.

따라서 2015년에는 사업 대상 학교를 축소하여 접근성이 우수하고 시설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도시 초등학교 위주로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성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5)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을 통해 건립비의 30%를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전국에 118개의 개방형 체육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36) 2014.9.14. 보도 참조(<http://news.kbs.co.kr/news/>)

16.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집행부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초등학교에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상근강사를 11개월 계약으로 배치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전공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원(△2.5%) 감소한 128억원 편성 ○ 동 사업은 사업의 주무부처 불명확, 교육부의 체육전담교사 확대 기조와 상충, 교육청 매칭예산 미확보로 인한 집행부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가. 현황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계속, 보조)은 초등학교에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상근강사를 11개월 계약으로 배치하여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전공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도 교육청 보조사업(국비:교육청=20:80)이다.³⁷⁾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억원(△2.5%) 감소한 128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	20,138	13,104	12,776	-328	-2.5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20,138	13,104	12,776	-328	-2.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7) 2013년까지는 계약기간이 10개월이었으며, 국비 보조율은 30%로 운영되었다.

나. 사업 주무부처 불명확, 집행부진 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에 대한 우선적 협력을 합의한 후³⁸⁾ 2009년부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전체 초등학교(2013년 말 기준 6,075개교)에 학교당 스포츠 강사 1인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스포츠강사를 상근직(단년계약)으로 배치하고 있다. 2015년에는 3,000개 학교에 3,00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초등학교에 배치될 수 있는 스포츠강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격 요건³⁹⁾을 요구하고 있다.

[표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편성내역

-
- 인건비 12,236백만원
 - 3,000명×1,854천원×11개월×20%=12,236백만원
 - 강사연수비 540백만원
 - 3,000명×30천원×6일=540백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2014~2018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교육부로 이관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 2015년 예산안 편성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편성 과정에서 교육청의 예산 확보 어려움에 대한 우려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주무부처가 불명확한 상황이다.

또한 교육부의 국정과제인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 확대 배치 추진과 상충되

38) 문화예술·체육 교육 진흥을 위한 MOU 체결

39)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를 참조하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는 측면⁴⁰⁾이 있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교육청 매칭비율이 70%였던 2013년 이전에도 교육청 예산미확보로 인한 집행부진이 발생한 바 있다.⁴¹⁾ 2014년부터는 교육청 매칭비율이 80%로 상승하였으므로 집행이 더욱 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종합하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은 사업의 주무부처 불명확, 체육전담교사 확대시 스포츠강사 고용 문제, 집행 부진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0)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자기 학급을 대상으로 전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담교사는 특정과목에 한하여 자기 학급 뿐 아니라 다른 학급도 지도하는 방식이다. 체육전담교사가 늘어날 경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률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41) 2013년 예산은 119억원이 불용되었는데(집행률 62.8%), 이는 교육청 예산 미확보에 따른 것이다. 2010년, 2014년의 경우에도 교육청 예산 미확보로 인한 미집행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분석 총 16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예산 과다 편성 3건, 예산 과소 편성 1건, 사업계획 부실 3건, 법·제도 미비 3건, 집행실적 부진 3건, 결산과의 연계 1건, 기타 1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의 유사·중복]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7,122	7,639	7,514	○ 관광경찰 사업 예산을 문화체육 관광부와 경찰청에서 중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부처간 업무 분담 협의를 통해 예산 이관 및 역할조정 필요
[예산 과다 편성]						
일반회계	공연 및 전통예술의 활성화	국립예술 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	-	-	6,000	○ 비수도권 지역문예회관의 경우 공연장 가동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며, 대관료가 저렴한 점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필요
일반회계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유휴 공공시설 문화공간 자원화	-	-	2,000	○ 연구용역비 산출근거가 미흡하 며, 이미 유사 연구용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반영 필요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23,825	30,323	36,245	○ 체육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체육시설 개방(51억원)은 학 교 측의 기피 가능성이 높고, 지 역주민 이용률 제고 효과도 불분 명하므로 시범 운영한 후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할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예산 과소 편성]						
문화예술 진흥기금	생활속의 예술 활성화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58,163	61,300	63,121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안(540억원)은 집행률을 63%로 계상한 것으로, 기존 유사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할 때, 통합문화이용권 집행률은 63%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사업계획 부실]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환경 조성	지역콘텐츠 산업 균형발전 지원	-	-	15,000	○ 콘텐츠누림터(50억원)는 지역특화 콘텐츠가 일정 수준 확보된 이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별도 시설을 구축하기 보다는 유관 시설을 이용하여 임차료 및 장비 구축비용 등을 절감할 필요
일반회계	종교문화 활동 및 보존지원	전통종교 문화유산 보존	25,362	26,503	25,853	○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100억원)은 사찰별 도입 필요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필요성이 큰 사찰을 중심으로 차등지원할 필요
일반회계	종합정책 연구	10·27법난 기념관 건립	-	-	20,000	○ 2010년 이후 국방부에서 매년 예산편성되었으나 사업계획 미비로 미집행되다가 2013년 주무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된 점, 2015년 4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필요
[법·제도 미비]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환경 조성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	-	20,000	60,000	○ 모태펀드 문화계정 투자가 영화에 집중(53.4%)되고 있고 신규출자인 한·중 글로벌 콘텐츠 합작펀드도 한·중 합작 영화 위주로 투자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가 미흡한 장르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자원 활성화	한국형 생태녹색 관광 육성	17,241	12,860	9,230	○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화(25억원)와 관련하여 6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각각 탐방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면 정비 미흡, 안내표지 혼란 가중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탐방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
국민체육 진흥기금	학교체육 육성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20,138	13,104	12,776	○ 사업의 주무부처 불명확, 체육전담교사 확대 기조와 상충, 집행부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집행실적 부진]

일반회계	종교문화 활동 및 보존지원	종교문화 시설 건립	15,730	15,009	9,400	○ 연례적 집행부진 시설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신청 및 총사업비 분담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
지역발전 특별회계	관광기반 구축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95,843	100,929	134,100	○ 사업 시작 연도(2010년)부터 매년 실집행률이 40% 미만으로 부진하고 개별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관광진흥 개발기금	관광인프라 조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15,000	13,500	14,700	○ 캠핑장 조성은 지자체의 사전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인해 2011년 이후 평균 실집행률이 46.6%로 부진하므로 지자체 캠핑장 조성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결산과의 연계]						
일반회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대중문화 콘텐츠산업 육성	51,630	43,687	54,457	음악산업 육성 내역사업 중 대중 음악 장르별 우수 프로젝트 제작 지원(15억원)은 중소형 제작사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 결산심사에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
[기타]						
일반회계	국제문화 교류	해외문화원 운영	28,097	31,217	41,717	최근 5년간 매년 일반수용비로 임차료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일반수용비를 일부 감액하여 임차료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의 집 건립은 사전 검토가 부족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후 추진 필요

[문화재청]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22억원(7.6%) 증액된 1,740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311억원에서 2015년 320억원으로 2.9% 증가하였으며, 문화재보호기금은 1,306억원에서 1,420억원으로 8.7% 증가하였다.

[표 1] 문화재청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22,079	31,101	31,998	897	2.9
-일반회계	22,079	31,101	31,998	897	2.9
기 금	130,007	130,631	141,964	11,333	8.7
-문화재보호기금	130,007	130,631	141,964	11,333	8.7
총 계	152,086	161,732	173,962	12,230	7.6

자료: 문화재청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644억원(9.4%) 증액된 7,491억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5,443억원에서 2015년 5,943억원으로 9.2% 증가하였으며, 지역특별회계가 98억원에서 129억원으로 30.9% 증가하였다. 문화재보호기금은 1,306억원에서 1,420억원으로 8.7% 증가하였다.

[표 2] 문화재청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532,030	554,109	607,179	53,070	9.6
-일반회계	519,261	544,281	594,313	50,032	9.2
-지역발전특별회계	12,769	9,828	12,866	3,038	30.9
기 금	130,007	130,631	141,964	11,333	8.7
-문화재보호기금	130,007	130,631	141,964	11,333	8.7
총 계	662,037	684,740	749,143	64,403	9.4

자료: 문화재청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750억원으로 2014년 6,199억원 대비 551억원 (8.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572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29억원, 문화재보호기금 1,050억원이다.

[표 3] 문화재청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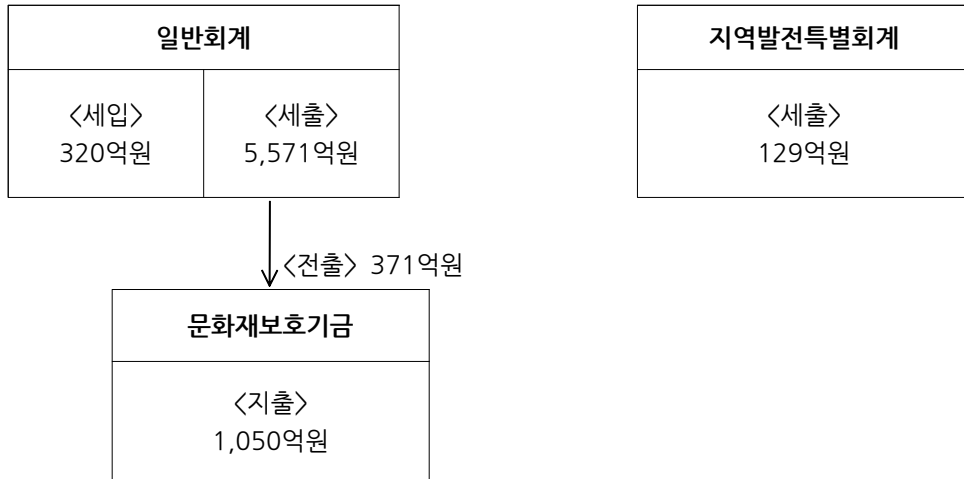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491,113	507,133	557,165	50,032	9.9
지역발전특별회계	12,769	9,828	12,866	3,038	30.9
문화재보호기금	100,314	102,948	105,018	2,070	2.0
합 계	604,196	619,909	675,049	55,140	8.9

자료: 문화재청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문화재보호기금으로 371억원이 전출되었으며, 복권기금에서 696억원이 전입될 계획이다.

[그림 1]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총지출 기준 6,750억원)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은 412억원, 고도 보존 및 육성 81억원,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46억원,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35억원이 전년대비 증액되었다.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는 지난 해 문화재 보존관리 논란으로 특별종합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증액한 것이며, 고도 보존 및 육성은 4개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의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이다.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및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은 연차별 소요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증액되었다.

[표 4] 문화재청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233,800	275,000	41,200	17.6
	고도 보존 및 육성	222	8,275	8,053	3,627.5
	전통건축부재보관센터 건립	2,358	7,000	4,642	196.9
	칠백의총 시설관리운영	501	1,026	525	104.8
	문화재 행정효율성 증진 및 성과관리	336	536	200	59.5
	기획재정관리	345	481	136	39.4
지특회계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9,828	12,866	3,038	30.9
문화재보호 기금	일반문화재 조사·연구	1,650	2,160	510	30.9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1,706	3,080	1,374	80.5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	3,500	7,000	3,500	100.0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문화재청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 및 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이다. 2015년도 예산안은 ① 문화재특별종합점검에 따른 문화재 보수정비 등 후속조치 지원, ② 재난으로부터 문화유산의 예방적 보호, ③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청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전년대비 551억원(8.9%) 증가한 6,75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문화재보수정비(전년대비 412억원 증액), 고도 보존 및 육성(80억원) 등 주요 증액사업과 전통건축부채보관센터 건립(46억원 증액), 서해수중유물보관동 건립(35억원 증액) 등 시설비 증액 외의 대부분의 사업들은 전년과 유사하거나 삭감된 수준으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둘째, 문화재특별종합점검¹⁾에 따른 후속 대책 추진으로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이 2,750억원으로 전년대비 17.6% 증가하였고, 공능방재시스템 구축 94억원, 승례문 복구 2.7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 확보, 집행률 제고 등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보수정비는 문화재 보존관리의 핵심사업이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관리가 요구된다.

셋째, 문화재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80억원)이 추진되고, 소규모·긴급 발굴조사 지원(130억원, 전년대비 8.3% 증가)이 증액되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의 주거환경 및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479억원이 소요된다.

다만 일부 고도보존사업이 여전히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편성되고 있어 예산이관이 필요하다. 고도보존사업은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의해 사전에 내역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예산 내역의 확정이 어려워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는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문화재청은 6개월간(2013.12~2014.5) 야외에 노출된 지정·등록문화재 및 사찰·서원 등 유물 다량 소장처 47개소를 대상으로 총 문화재 7,393건에 대한 종합실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넷째,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 사업 등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내외에 제공하는 사업들의 경우 관람자 수, 시청률 등의 성과가 저조하므로 사업 추진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제작의 경우 연간 2~3건의 3D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작하여 임시영상관에서 상영하고 있는데, 관람실적이 저조하므로 정식영상관이 개관할 때까지 콘텐츠 제작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헤리티지채널 구축·운영은 문화유산채널(구 헤리티지 채널, www.k-heritage.tv)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인데 웹사이트 활성화, 콘텐츠 제공 외부 플랫폼 확대 등을 위한 성과 제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보조): 집행률 제고 및 문화재수리업 관리·감독 강화 등

-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지원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전년 대비 412억원(17.6%) 증가한 2,750억원 편성
- ① 보수정비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미흡하고, 실집행률도 연례적으로 저조한 편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②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력양성 활성화 필요

가. 현황

문화재보수정비(일반회계, 계속, 보조)는 국가지정문화재¹⁾와 등록문화재²⁾의 보수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총액계상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는 7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는 5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12억원(17.6%) 증가한 2,75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문화재보수정비 (일반회계)	243,000	233,800	275,000	41,200	17.6
- 자치단체 보조	243,000	233,800	275,000	41,200	17.6

자료: 문화재청

1)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2)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 주로 근대문화유산이 대상이 되고 있다.

나. 제도개선 고도화 및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1) 정부의 문화재보수정비 제도개선 고도화 필요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의 공정성·객관성이 미흡하며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원 대상의 선정에 대해서는 사업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등급(A~C등급)³⁾과 관계없이 문화재 자체의 보수정비(전체 보수정비 사업의 22.8%)보다는 주변경관 정비 사업에 더 큰 지원(51.7%)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⁴⁾

또한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은 거의 매년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은 62.0%로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은 발굴, 원형고증,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도 등 문화재 보수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총액계상사업으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후 세부내역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기간(1~2개월)이 추가로 소요되어 사업 착수 시점 자체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다.

[표 2] 문화재보수정비 연도별 실집행률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실집행률	50.1	67.5	70.1	68.1	69.5	62.0

자료: 문화재청

위와 같은 지원대상 선정의 적절성 문제 및 집행부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4년부터는 지원기준 등급 세분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2014년부터는 A~E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

4) 2014.5 감사원 문화재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 참조

[표 3] 문화재 보수정비 제도개선 주요 내용

	개 선 사 항
2003 ~ 2008	○ 설계승인 절차 간소화(5단계 → 3단계, 처리기한 10일 단축) ○ 정부 보조금 예산안 사전통지제도 도입(2005년) 및 확대(2008년) ○ 전자적 업무처리 개발·시행
2009	○ 지방비 확보 전 국비 우선 사용지침 시행 * 추후 지방비 미확보시 보조금 전액 반납 또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감액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집행제고 추진지침 시행 - 토지매입, 발굴, 고증, 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 지원
2010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실집행 제고방안 마련·시행
2011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전면 시행 ○ 보수정비 집행률 제고방안 검토 - 보수정비 설계검토·승인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 설계심사위원회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현상변경 기한단축 방안 ○ 집행제고를 위하여 매월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집행독려
2012	○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보수정비사업 추진실적 반영(안전행정부)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한 집행실태 실시간 점검
2013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 검토강화 - 이월액(국비기준)이 30%이상인 사업은 특별관리 - 2013년도 예산 실집행 부진 및 전자행정입력지연 지자체 페널티 부여 - 부지확보, 인·허가절차, 주민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확인 ○ 집행부진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반 운영
2014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원기준 세분화 - 기존 A~C, F등급 → 변경 A~E, F등급, 예산배분 우선순위 재정립 ○ 설계 및 시공 분리대상 사업 구체화 및 연차별 지원 ○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객관적 평가시스템 구축

자료: 문화재청

이와 같은 제도개선 내용 중 지원기준 세분화, 평가위원회 구성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지원기준 등급이 A~C에서 A~E로 세분화되었으나, 등급이 높은 보수사업 순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방식이 아니고 문화재 종류별로 정해진 배분액 중에서 등급 순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⁵⁾ 등급 분류가 공정하더라도 지원 대상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5) 문화재청은 문화재 종류별로 지원액을 배분한 후 등급 순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적 중 A등급을 받았으나 예산을 받지 못하는 문화재가 있을 수 있고, 보물 중 D등급을 받더라도 예산을 배분받는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집행방식을 유지할 경우, 등급분류의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표 4]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기준 등급 세분화

당 초(A~C 등급)	변 경(A~E 등급)
(A등급) 훼손이 심각하고 보수가 시급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지정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시설물 보수·설치, 연차 사업 등	(A등급) 훼손이 심각하고 보수가 시급한 당해 문화재(보호물 포함) 보수정비, 연차사업 등
(B등급) 문화재지정구역 사유지 매입, 유구조사·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문화재 보존 보호시설(석축, 배수로 등) 설치 등	(B등급) 고증에 의한 멸실된 문화재 복원, 문화재지정(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 유구·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C등급) 지정문화재 주변 경관정비 및 고증에 의한 건축물 복원, 관람객 편의시설 및 활용시설(화장실, 안내판 등) 개선 등	(C등급) 지정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한 보호시설물(석축, 배수로 등) 설치, 지정(보호)구역 내 문화재 관련 시설, 기존 전시관 시설보완 등
	(D등급) 관람객 편의제공 및 활용시설(화장실, 안내판 등) 개선
	(E등급) 보수정비를 위한 타당성은 인정되나 예산규모를 고려, 추후반영 검토 대상사업

자료: 문화재청

둘째, 외부전문가(50%)가 참여하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의 경우 예산 편성 시에만 1회 회의가 열리고 있어 보수사업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집행을 점검 효과가 미약하다. 외부전문가가 자세한 내역을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급과 예산배분이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등급제도를 설계하고,⁶⁾ 평가위원회의 회의 횟수도 늘려서 외부전문가가 사업 현황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정부 내 제도개선과 함께 문화재 수리를 직접 수행하는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체계 개선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문화재 수리업을 활성화·투명화하고, 음성화된 관행(면허 대여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6) 문화재청은 등급과 무관하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에 대해, 예컨대 3,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유형문화재 보수가 A등급을 받은 경우 이를 우선 추진하게 되면 예산 제약상 다른 문화재보수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문화재 보수의 경우 보수과정을 세분화하여 공정별/구성물별로 각각 등급을 분류하면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보수사업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서만 매년 1,000건 이상의 문화재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개별적으로 문화재 수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많은데, 2014년 8월말 기준 종합·전문수리업은 8개 업종 331개로 나타나고 있어 문화재 보수 수요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표 5]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

수리기술자	수리기능자	수리업자		
		종합·전문 수리업	실측설계	감리
6개 직종 1,660명	20개 직종 7,289명	8개 업종 331개	60개	27개

주: 2014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송례문 복구 등에서 드러난 고질적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4월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추진과제는 ① 감독기능 강화(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기준 강화 등), ②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수리업 등록요건 개선, 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 하도급 계약 정상화, 표준품셈 개선·보완, 직무능력표준 개발 등), ③ 정보공개(현장 공개 및 수리실명제, 정보 관리 등), ④ 예산편성 합리화(설계와 시공의 분리 등), ⑤ 시험 및 교육제도 개선(자격시험제도 개선, 소양 교육 의무화 등), ⑥ 전통 기법 및 재료 연구이다.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대책」 추진과제에는 문화재 수리체계 개선에 필수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화재청은 이러한 추진과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운영 내실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관리 등을 통해 문화재 수리 관련 인력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고도 보존 및 육성: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중 고도 보존 관련 예산 분리 편성 필요

- 과거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 4곳(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육성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억원(3,627.5%) 증가한 83억원 편성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에 편성된 고도보존사업은 고도보존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내역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총액계상사업에서 제외하여 동 사업으로 이관하여 반영할 필요

가. 현황

고도 보존 및 육성(일반회계, 계속, 직접/보조)는 과거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 4곳(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육성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81억원(3,627.5%) 증가한 83억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 중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80억원)이 신규로 추진되면서 전년대비 큰 증가 폭을 보이고 있다.

[표 1] 고도 보존 및 육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고도 보존 및 육성 (일반회계)	207	222	8,275	8,053	3,627.5
- 고도보존심의위원회운영 및 고도보존관리	207	222	275	53	23.9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	-	8,000	8,000	순증

자료: 문화재청

나.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고도보존사업 분리 및 동 사업으로 이관 필요

그 동안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고도보존육성 사업은 사전에 세부내용 확정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내역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액만으로 국회의 심의를 받는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정부의 예산안은 고도 이미지 찾기 신규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이 아닌 동 사업에 편성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표 2] 고도 보존 및 육성 관련사업 편성 현황 및 개선방안

사업 목적	내역사업 명	2015년 편성 현황	개선방안	예산액
고도보존	고도보존사업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내에 편성	⇒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내에 편성	326억원 (2014년 기준)
고도육성	고도 이미지 찾기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 내에 편성		80억원

자료: 문화재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러나 기존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각종 고도 보존사업은 여전히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분리·이관이 요구된다. 참고로, 2014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내 고도보존사업비로 지원된 예산은 4개 지역 합계 약 326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2014년 문화재보수정비 중 고도보존사업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경주	공주	부여	익산	합계
21,083	2,152	5,763	3,509	32,588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2015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중 고도보존사업비로 소요될 금액을 계상하여 동 사업으로 이관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관람실적 부진을 고려한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3D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콘텐츠를 제작하여 2018년 이후 세종시에 조성예정인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에서 상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18.8%) 감소한 6억 4,200만원 편성
- 임시영상관 1일 평균 관람객이 8.5명으로 관람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매년 소량의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기보다는 영상관 개관에 맞추어 다량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성과 제고 측면에서 효율적이므로, 2015년 콘텐츠 제작 예산을 조정할 필요

가. 현황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제작(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3D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콘텐츠를 제작하여 2018년 이후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조성예정인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에서 상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에 임시상영관을 마련하여 상영하고 있으며 2014년 11월 이후에는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홍보동으로 이전하여 상영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억 4,900만원(△18.8%) 감소한 6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일반회계)	756	791	642	-149	-18.8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685	731	579	-152	-20.8
- 디지털 문화유산 임시 영상관 운영	-	60	63	3	5.0

자료: 문화재청

나. 관람실적이 부진하므로 콘텐츠 제작 예산 순연 필요

동 사업은 3D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를 제작하여 2018년 이후 세종시에 조성예정인 예정인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에서 상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주관하여 건설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7개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2014년에는 2개 콘텐츠 제작업체를 선정 중이다.⁷⁾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개관 이전인 현재는 세종시 한솔동 주민센터 일부를 임시상영관으로 하여 1일 4회 기 제작된 콘텐츠를 방영하고 있다. 회당 관람가능인원은 30명이다. 따라서 1일 120명 정도 관람이 가능한데, 상영이 시작된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1일 평균 관람객이 10명이 채 되지 않는 등 관람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⁸⁾

[표 2] 디지털문화유산 임시상영관 관람실적

(단위: 명)

	2012	2013	2014	기간 전체 평균
1일 평균 관람객	9.3	7.8	9.0	8.5

주: 2012년은 8~12월 평균값이며, 2014년은 1~8월 평균값임
자료: 문화재청

임시영상관 관람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임시영상관은 기 제작된 콘텐츠를 상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신규 콘텐츠는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개관⁹⁾에 맞추어 추후에 제작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편이므로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합하면, 관람실적 고려 및 콘텐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콘텐츠 제작 비용을 조정하여 추후에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 2011년 석굴암, 팔만대장경, 승무, 2012년 용릉·건릉, 2013년 창덕궁, 줄타기, 하회별신굿놀이 제작했으며, 2014년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조선의 서원을 제작 추진 중이다.

8) 문화재청은 관람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11월부터는 세종시 행정지원센터 홍보동으로 임시상영관을 이전하고자 하고 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므로 상영실적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관람객이 어느 수준까지 늘어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9)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은 당초 2017년 개관 예정이었으나 현재 계획상 2018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영상관을 포함한 전체 박물관 단지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2014년 12월말 종료 예정)으로,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실제 영상관 조성은 2019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문화재청 소관 예산안 분석 총 3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법·제도 미비 1건, 사업성과 미흡 1건, 기타 1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법·제도 미비]						
일반회계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보수정비	243,000	233,800	275,000	○ 보수정비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미흡하고, 실집행률도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인력양성 활성화 필요
[사업성과 미흡]						
일반회계	문화재보존 행정기반 조성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756	791	642	○ 임시영상관 1일 평균 관람객이 8.5명으로 관람실적이 부진하므로 2015년 콘텐츠 제작 예산을 조정할 필요
[기타]						
일반회계	기념물 문화재 보존강화	고도 보존 및 육성	207	222	8,275	○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에 편성된 고도보존사업은 고도보존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전에 내역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이관하여 반영할 필요

제 3 장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 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221억원(△7.6%) 감액된 2,687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014년 1,812억원에서 2015년 1,978억원으로 9.2% 증가하였으나, 국제교류기금은 1,096억원에서 708억원으로 35.4% 감소하였다.

[표 1] 외교부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185,358	181,222	197,843	16,621	9.2
-일반회계	185,358	181,222	197,843	16,621	9.2
기 금	145,803	109,565	70,826	-38,739	-35.4
-국제교류기금	145,803	109,565	70,826	-38,739	-35.4
총 계	331,161	290,787	268,669	-22,118	-7.6

자료: 외교부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84억원(0.9%) 증액된 2조 1,203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014년 1조 9,924억원에서 2015년 2조 495억원으로 2.9% 증가하였으나, 국제교류기금은 1,096억원에서 708억원으로 35.4% 감소하였다.

[표 2] 외교부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1,860,380	1,992,360	2,049,500	57,140	2.9
-일반회계	1,860,380	1,992,360	2,049,500	57,140	2.9
기 금	145,803	109,565	70,826	-38,739	-35.4
-국제교류기금	145,803	109,565	70,826	-38,739	-35.4
총 계	2,006,183	2,101,925	2,120,326	18,401	0.9

자료: 외교부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2조 763억원으로 2014년 2조 240억원 대비 523억원(2.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조 278억원, 국제교류기금 485억원이다.

[표 3] 외교부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1,827,560	1,965,851	2,027,758	61,907	3.1
국제교류기금	62,756	58,139	48,495	-9,644	-16.6
합 계	1,890,316	2,023,990	2,076,253	52,263	2.6

자료: 외교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 5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은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에너지망 구축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고,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은 동포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통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외교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일반회계(5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3,100
	한-EU 통상분쟁 예방 및 현안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450
	MIKTA 중견국 외교	500
	재외동포사회와의 파트너십 사업	625
	북극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	300
국제교류기금	아시아정당국제회의지원	800
총 6개 사업		5,775

자료: 외교부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협력(ODA) 181억원, 아프리카 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114억원,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03억원 등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재외동포재단 출연은 국제교류기금 보조를 중단하고,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것과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등 신규사업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35억원(37.0%) 증액되었다.

[표 5] 외교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865	1,196	331	38.3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846	1,996	1,150	135.9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782	12,126	10,344	580.5
	동티모르(ODA)	2,145	3,600	1,455	67.8
	아시아 비중점 국가그룹(ODA)	16,979	26,232	9,253	54.5
	나이지리아(ODA)	1,777	3,079	1,302	73.3
	모잠비크(ODA)	1,700	2,650	950	55.9
	르완다(ODA)	6,600	9,863	3,263	49.4
	아프리카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54,426	65,791	11,365	20.9
	아제르바이잔(ODA)	3,850	5,458	1,608	41.8
	중동CS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	12,045	19,858	7,813	64.9
	국제기구협력(ODA)	23,343	41,402	18,059	77.4
	ODA 선진화	951	1,791	840	88.3
	해외긴급구호지원(ODA)	30,701	40,296	9,595	31.3
	외교관계 수립 기념 사업	2,444	3,545	1,101	45.0
	공공외교 역량강화	9,000	13,100	4,100	45.6
	재외국민 보호	5,085	9,863	4,778	94.0
	재외국민영사서비스 지원 (수입대체경비)	3,430	5,771	2,341	68.3
	재외동포재단 출연	36,581	50,128	13,547	37.0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1,187	1,609	422	35.6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외교부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외교부는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5년도 예산안은 ①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②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③외교 인프라 강화, ④신규 외교수요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외교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간 외교부 총지출 기준 예산(안)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증가폭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3.1%로 상승하였다. 2011년, 2012년 예산 증가율이 전년보다 14.7%, 13.1%로 높았던 것은 ODA 예산 확대 편성에 기인한다. 2015년 예산안 증가는 해외긴급구호지원(ODA) 96억원, 공공외교 역량강화 41억원 등이 증가한 결과이다.

[표 6] 외교부 소관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예산(안)	17,090	19,324	19,481	19,659	20,278
전년 대비 증가액	2,185	2,234	157	178	619
(증가율)	(14.7%)	(13.1%)	(0.8%)	(0.9%)	(3.1%)

자료: 외교부

둘째, 해외긴급구호지원, 재외국민보호 등 안전예산이 2014년 358억원보다 144억원(40.2%) 증가한 502억원 편성되었다. 해외긴급구호지원은 전년보다 96억원(31.3%) 증가한 40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해외 자연재난 및 만성적인 분쟁 지역 등에 대한 구호지원금이다. 재외국민보호는 재외국민 안전 정보센터 신설 예산 40억원 등 48억원(94.0%) 증가한 99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7] 외교부 안전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해외긴급구호지원	26,326	30,701	40,296	9,595	31.3
재외국민보호	4,386	5,085	9,863	4,778	94.0
합 계	30,712	35,786	50,159	14,373	40.2

자료: 외교부

셋째,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다.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동남아문화원 건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설계비, 감리비, 건설비 등 총사업비 전체를 반영하였는 바,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관련 법안 제정이나 예산 집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 관련 법안 제정 및 예산집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5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동남아 문화원 건립 적정 예산 반영 필요

○ 신아시아외교 협력대상인 남아시아, ASEAN, 대양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실질적,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03억 4,400만원(580.5%) 증가한 121억 2,600만원 편성
○ 동남아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2015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한 해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반영할 수 없고, 동 문화원의 지위나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바,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황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일반회계, 계속, 직접/보조)는 신아시아외교 협력대상인 남아시아, ASEAN, 대양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03억 4,400만원(580.5%) 증가한 121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 동남아문화원 건립은 2015년 신규사업으로, 100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ASEAN 및 남아태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ASEAN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일반회계)	1,837	1,782	12,126	10,344	580.5
-동남아문화원 건립	-	-	10,000	10,000	순증

자료: 외교부

나. 동남아 문화원 건립 예산을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

동남아문화원 건립은 미래지향적 한-동남아 관계 발전 도모를 위하여 동남아 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5년에 모두 편성되었다. 부지는 부산시에서 제공할 예정으로, 대지면적 600평, 연면적 1,20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표 2] 동남아문화원 건립 세부 계획

구 분	내 용
위치	부산시
부지	대지면적 600평, 연면적 1,200평(지상 4층, 지하 1층) 부산시 제공 예정
총사업비	100억원
공간 구성(안)	○ 지하 1층: 주차장 ○ 1층: 인포센터, 공연장, 특별전시관 ○ 2층: 상설 전시관(대륙 동남아 5개국), 강의실 ○ 3층: 상설 전시관(해양 동남아 5개국) ○ 4층: 도서 및 열람실, 사무실

주: 설계용역 의뢰 후 보다 구체화할 예정임.

자료: 외교부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한 설계비 5억원, 감리비 2억원, 시설부대비 3억원, 건설비 88억원을 편성하였다.

[표 3] 동남아 문화원 사업비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건설비	총사업비
500		200	300	8,800	10,000

자료: 외교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

상 비목을 동시 계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사용목적에 부합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외교부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후에 진행되는 건설비까지 모두 포함한 총사업비 전액을 2015년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동남아문화원을 설립하기 위해 외교부가 2013년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¹⁾에 따르면, 해당 문화원이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될 것인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될 것인지 등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원의 운영주체, 운영 방향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는 상태이다.

결혼이민자의 증가, 한류 확산 등 동남아와의 사회적·문화적 교류 확대는 한국 사회를 개방된 다문화 사회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동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다만, 설계 및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할 때 예산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문화원의 지위, 운영 주체, 운영 방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동남아문화원(가칭) 설립 추진 연구보고서」, 2013. 7, (사)한국동남아연구소

2.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근거법령 제정, 예산집행상황을 고려하여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사업 검토

- 고위급 교류 강화를 통한 아중동 외교기반 강화, 아중동 국가와의 경제외교 강화, 대아프리카 외교 기반 확대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8,100만원(△20.2%) 감소한 38억 8,000만원 편성
- 2014년 예산 집행 실적이 상당부분 저조한데 이는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

가. 현황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일반회계, 계속, 직접)는 고위급 교류 강화를 통한 아중동 외교기반 강화, 아중동 국가와의 경제외교 강화 및 다각화 추진, 대아프리카 외교 기반 확대 등을 하는 사업이다. 2015년 예산안은 9억 8,100만원(△20.2%) 감소한 38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내역사업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은 전년 대비 4억 7,000만원(△18.9%) 감소한 20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아중동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일반회계)	943	4,861	3,880	-981	-20.2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	2,490	2,020	-470	-18.9

자료: 외교부

나.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 관련 법안 제정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한

검토 필요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의 아프리카 진출 및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4년부터 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고, 2015년에는 20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법(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동 센터 설립 계획 미비를 이유로 2014년 예산을 수시배정 하였다. 2014년 배정 현황을 보면, 24억 9,000만원 중 12억 7,600만원(51.2%)가 배정되었다.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및 지부 수립의 예산은 14억 8,500만원으로 이 중 35%인 5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다. 아프리카와의 경제교류 확대는 아프리카 고위인사 방한, 아프리카 진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 사업 예산 5억 5,500만원 중 73.2%인 4억 600만원이 배정되었다. 아프리카 미래전략 및 중장기 비전 수립의 경우 예산 4억 5,000만원의 77.8%인 3억 5,000만원이 배정된 상태이다.

[표 2]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 예산(안) 및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4년 예산(A)	2014년 배정액				2015년 예산안
		1차	2차	소계 (B)	배정률 (B/A)	
아프리카 미래전략센터 및 지부 수립	1,485	0	520	520	35.0	1,440
아프리카와의 경제교류 확대	555	155	251	406	73.2	431
아프리카 미래전략 및 중장기 비전 수립	450	200	150	350	77.8	150
합 계	2,490	355	921	1,276	51.2	2,021

주: 2014년 1차 배정은 3월, 2차 배정은 9월 25일에 이루어졌음.

자료: 외교부

집행액을 살펴보면, 9월말 기준 배정액 12억 7,600만원 중 1억원만 집행되었다. 외교부는 10월 중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6억원 가량 추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예산은 상당 부분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5년 예산안

은 직접 수행을 전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외교부가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위탁방식과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은 2014년 예산의 일부가 불용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률안 통과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2015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공공외교 역량강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관별 역점사업 개발 필요

- 문화, 지식, 정책 등 소프트파워 자산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증진시켜 국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1억원(45.6%) 증가한 131억원 편성
- 사업 선정 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다수의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관별 역점사업을 개발할 필요

가. 현황

공공외교 역량강화(일반회계, 계속, 직접)는 문화, 지식, 정책 등 소프트파워 자산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와 호감을 증진시켜 국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 예산안은 41억원(45.6%)이 증가한 131억원이 편성되었다.

내역사업별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는 20억원(33.9%),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은 18억원(90.6%),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는 3억원(28.6%)이다.

[표 1]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공공외교 역량강화 (일반회계)	6,055	9,000	13,100	4,100	45.6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4,305	5,956	7,974	2,018	33.9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1,750	1,955	3,726	1,771	90.6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외교	-	1,089	1,400	311	28.6

자료: 외교부

나. 공관별 사업 선정 시 타 부처와 협의하고 각 공관별 역점사업을 개발할 필요

공공외교 역량강화는 2013년 신규사업으로, 재외공관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지 맞춤형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지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각 내역사업별로 공관별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공관별 역점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외교부는 공공외교란 타국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의 전통, 문화, 예술, 가치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며, 아울러 자국 국민도 공공외교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공공외교의 개념 자체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교류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각 공관별 사업 기획도 포괄적인 범위로 이루어지므로 외교부 내 다른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도 있다.

2013년 결산에서 매력한국 알리기 사업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태권도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문화원을 통해 시행하는 태권도 관련 사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¹⁾

또한 각 내역사업별로 행사를 구분하여 공관별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 행사별 예산은 매력한국 알리기 2,000만원, 문화교류 세미나 2,800만원, 스포츠 공공외교협력 700만원 등으로, 각 공관별로 단순 행사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현지 맞춤형 역점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교부는 각 공관별 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재외공관이 많은 행사를 개최하기보다는 국가 브랜드 제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공관별 역점사업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201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외교통일위원회, pp. 96~99.

[표 2]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구분	행사명	산출근거	2015 예산안
콘텐츠 활용 공공 외교	문화 공공 외교	외교관계취약국	2개국×100	200
		스포츠공공외교협력	70개국×7	492
		K-Pop World Festival	지역예선지원5x80개공관, 홍보등기타38	438
	지식 공공 외교	매력한국 알리기	178개공관×20(178개 전채외공관대상 매력한국알리기사업전개)	3,516
		외국교과서내 한국발전상 확대	공관별 선별 집중지원(10개×39)	388
		코리아코너	신규코너개설10개×38 기존코너신간지원29개×4	500
		퀴즈 온 코리아	30개국×11.3	340
		동영상 콘테스트	초청비8명×3 홍보비28	50
		대일 공공외교	문화교류세미나,지자체교류사업 9개 공관×28	250
	정책 공공 외교	통일 공공외교	주요 50개 공관×20	1,000
		대미 공공외교	10개 공관×55	550
		대중 공공외교	8개 공관×31	250
공공 외교 인프라 구축	국제 네트워크 강화	공공외교 포럼	공공외교포럼개최3회×100 한-중 녹색봉사단500	800
		공공외교학술그룹	학술그룹 주관사업10개×20	200
		공공외교캠프	2회×36명×5	359
	현지 네트워크 강화	친한외국인기반구축	83개공관×6	497
		공공외교 친선대사	11개국×23	255
		Remember You 프로젝트	기존14개사업추진공관심화추진(18×14개)	247
		대일 공공외교	9개 공관×28	250
		대중 공공외교	8개 공관×31	250
	공공 외교 통합 관리 체제	공공외교 전략개발	공공외교 전략 개발 연구 용역 377	377
		대미 공공외교 전략	미국내홍보전문자문회사고용:300 일본문제관련대미외교TF구성및운영비:150	450
		홈페이지	위탁관리29 유지보수7 민간외교단체커뮤니티홈피제작및유지보수5	41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 외교	대국민 공공외교 홍보	대국민 순회 홍보 10회×10	100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	53×8	400
		시니어공공외교단	10개 행사×10	100
		국민 모두가 공공외교관	10개팀×40	400
		청년공공외교단	20팀×10	200
		개도국 문화꿈나무	10개국×20	200

자료: 외교부

4. 재외국민보호: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확대 제공에 대한 검토

- 해외 재난 및 범죄로부터 우리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국민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억 7,800만원(94.0%) 증가한 98억 6,300만원 편성
- 영사콜센터를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기능 변화가 없는 바, 사용실적이 미흡한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확대는 충분한 검토 필요

가. 현황

재외국민보호(일반회계, 계속, 직접)는 해외 재난 및 범죄로부터 우리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7억 7,800만원(94.0%) 증가한 98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내역사업 영사콜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1억원(278.3%) 증가한 55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재외국민보호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재외국민보호(일반회계)	4,386	5,085	9,863	4,778	94.0
-영사콜센터 운영	1,501	1,473	5,573	4,100	278.3

자료: 외교부

나. 사용실적이 미흡한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확대의 효과성 검토 필요

영사콜센터는 우리국민의 해외 사건·사고 및 자연재해 등 위급 상황에 대한 24시간 긴급대응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2015년부터 이를 확대·개편하여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기능을 모두 갖춘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2015년 예산안은 센터 확장 이전 12억 8,000만원, 안전정보 공지서비스 16억 5,600만원,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10억 6,400만원 등 전년보다 41억원이 증가한 56억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센터 이전은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외교부 직원의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양재에 위치한 콜센터를 외교부와 인접한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안전정보 공지서비스는 현재 통신사 협조를 통해 여행금지, 여행주의 국가에 주 1회 제공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도착 시와 사건·사고 발생 시 안전정보를 즉시 발송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긴급상황 통역서비스는 현재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에 대한 통역서비스도 추가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표 2] 재외국민 안전정보센터 신설 계획(안)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 콜센터(2014)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2015)	
	내용	예산	내용	예산안
영사콜센터 운영 관련	○ 상담업무 위탁	1,470	○ 상담업무 위탁	1,573
	○ -	-	○ 센터 확장 이전	1,280
안전정보 공지서비스	○ 통신사 협조 ○ 여행금지, 여행주의국가 에 주 1회 제공	-	○ 통신사에 개발비 제공 ○ 위탁운영 예정 ○ 해외 도착 시 안전정보 즉시 제공 ○ 사건·사고 발생 시 문자 수신	1,656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 한국관광공사와 협업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서비스 지원	-	○ 상담인력관리 등 위탁 예정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 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확 대 제공	1,064
합 계		1,470		5,573

자료: 외교부

이와 관련하여 긴급상황 통역서비스 확대 개편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긴급상황 통역서비스가 확대되면, 해외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므로, 우리 국민의 대응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동 서비스의 제공 실적을 보면, 서비스가 시작된 2013년 4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총 822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이다. 이 중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제외한 언어 통역 요청은 9건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긴급상황통역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3	-	-	-	32	50	50	30	39	27	21	34	18	301
2014	31	31	45	28	30	62	85	110	99	-	-	-	521
합 계													822

주: 2014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해당 서비스는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서비스 확대에 1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영사콜센터가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개편되면서 긴급상황 통역서비스의 대상 언어를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프랑스어 2건, 베트남어 2건, 태국어 1건, 이탈리아어 2건, 미확인 2건.

5.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일용직에 대한 법정부담금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할 필요

- 한·미간의 정상회의, 장·차관급 회담 등을 통해 양국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등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5년 전년 대비 3억 9,000만원(△14.3%) 감소한 23억 4,500만원 편성
-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을 일용임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금지급금으로 조정할 필요

가. 현황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일반회계, 계속, 직접/보조)는 한·미간 정상회의, 장·차관급 회담, 기타 고위급 정책협의를 통해 양국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 분과위 등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억 9,000만원(△14.3%) 감소한 2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일반회계)	2,354	2,735	2,345	-390	-14.3
-일용임금	72	130	110	-20	-15.4

자료: 외교부

나.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 등 각종 부담금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할 필요

동 사업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및 개선과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일용임금 1억 1,053만원이 편성되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및 개선은 관련 일용직에 대한 보수, 시간외 근무수당,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금 등이 일용임금 비목으로 편성되었다.

[표 2] 일용임금 편성(안) 세부 내역

(단위: 천원)

비목	내역사업	세부내역	2015년 예산안
일용임금 (110-03)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및 개선	가. 보수: 14,400 나. 시간외 근무수당: 2,880 다. 고용보험료: 456 라. 국민연금보험료: 780 마. 건강보험료: 210 바.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1,800	110,526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운영	가. 법률상담 변호사: 55,000 나. 상담 및 연구직원: 35,000	

자료: 외교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직에 대한 퇴직금 및 각종 법정 부담금은 연금지급금(320-03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및 개선의 일용임금에 편성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금은 연금지급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금지급금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외교부 소관 예산안 분석 총 5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예산 과다편성 2건, 사업계획 부실 2건, 기타 1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	------	------	-------------	-------------	--------------	------

[예산 과다 편성]

일반회계	지역외교 교류협력강화	ASEAN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1,837	1,782	12,126	○ 동남아문화원 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를 2015년 예산안에 편성 하였으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한 해에 기본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를 반영할 수 없고, 동 문화원의 지위나 운영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 되어 있지 않는 바,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조정 필요
일반회계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지원	재외국민보호	4,386	5,085	9,863	○ 영사콜센터를 재외국민안전정보 센터로 확대·개편할 예정이지만 실질적인 기능 변화가 없는 바, 사용실적이 미흡한 긴급상황 통역 서비스 확대 실시를 검토할 필요

[사업계획 부실]

일반회계	아중동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아중동국가 와의 교류 협력 강화	943	4,861	3,880	○ 2014년 예산 집행 실적이 상당부분 저조한데 이는 아프리카미래전략 재단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 기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할 필요
------	-------------------------	-------------------------	-----	-------	-------	---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일반회계	공공문화 외교 강화	공공외교 역량강화	6,055	9,000	13,100	○ 사업 선정 시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 편, 다수의 행사를 개최하기보다 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 관별 역점사업을 개발할 필요

[기타]

일반회계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 강화	2,354	2,735	2,345	○ 임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 각 종 법정부담금과 퇴직금을 일용 임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연금지급금으 로 조정할 필요
------	--------------------------------------	--------------------------------------	-------	-------	-------	---

[통일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754억원($\triangle 4.7\%$) 감액된 1조 5,239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014년 21억원에서 2015년 26억원으로 25.7% 증가하였으나, 남북협력기금이 1조 5,973억원에서 1조 5,213억원으로 4.8% 감소하였다.

[표 1] 통일부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2,104	2,065	2,597	532	25.7
-일반회계	2,104	2,065	2,597	532	25.7
기 금	1,743,854	1,597,314	1,521,346	-75,968	-4.8
-남북협력기금	1,743,854	1,597,314	1,521,346	-75,968	-4.8
총 계	1,745,958	1,599,379	1,523,943	-75,436	-4.7

자료: 통일부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633억원($\triangle 3.3\%$) 감액된 1조 8,714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014년 3,374억원에서 2015년 3,501억원으로 3.8% 증가하였다. 남북협력기금은 2014년 1조 5,973억원에서 2015년 1조 5,213억원으로 4.8%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2014년에 완공되고($\triangle 112$ 억원) 공자기금 원리금상환금이 감소($\triangle 1,787$ 억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통일부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303,883	337,420	350,085	12,665	3.8
-일반회계	303,883	337,420	350,085	12,665	3.8
기 금	1,743,854	1,597,314	1,521,346	-75,968	-4.8
-남북협력기금	1,743,854	1,597,314	1,521,346	-75,968	-4.8
총 계	2,047,737	1,934,734	1,871,431	-63,303	-3.3

자료: 통일부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1조 4,751억원으로 2014년 1조 3,358억원 대비 1,393억원(10.4%)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 증가액은 일반회계 127억원(5.8%), 남북협력기금 1,267억원(11.3%)이다.

[표 3] 통일부 소관 총지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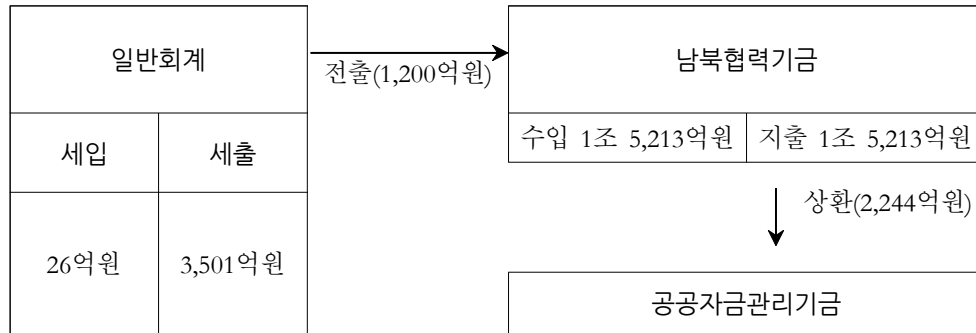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198,383	217,420	230,085	12,665	5.8
남북협력기금	298,791	1,118,352	1,245,031	126,679	11.3
합 계	497,174	1,335,772	1,475,116	139,344	10.4

자료: 통일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200억원이 전출되며, 동 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에 대한 원금(905억원)과 이자(1,339억원) 등 총 2,244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그림 1] 통일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2개 사업, 51억원 규모이다. 평화통일역사자료 수집·활용은 통일사료를 체계적·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통일준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고,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은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설립된 통일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통일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일반회계(2개)	평화통일역사자료 수집·활용	500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4,565
총 2개 사업		5,065

자료: 통일부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국내통일기반조성 16억원, 전시남북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25억원,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26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중점 인도적지원 725억원, 교역·경협자금(융자) 440억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다.

[표 5] 통일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국내통일기반조성	2,433	4,027	1,594	65.5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	76	838	762	1002.6
	전시납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3,885	6,434	2,549	65.6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99	239	140	141.4
	개성공단 상시 전자출입체계 운영	135	207	72	53.3
	사회통일교육 내실화	6,061	8,626	2,565	42.3
	사이버통일교육센터 운영	294	880	586	199.3
남북협력 기금	인적왕래지원	1,440	2,800	1,360	94.4
	사회문화교류지원	5,600	11,200	5,600	100.0
	중점 인도적지원	46,080	118,600	72,520	157.4
	교역·경협자금(용자)	87,000	131,000	44,000	50.6
	DMZ세계평화공원조성	30,200	39,400	9,200	30.5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통일부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부처이다. 2015년도 예산안은 ①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②미래세대 통일인식 제고, ③통일준비 내실화, ④탈북민 맞춤형 정착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통일부 소관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5년간 통일부 소관 총지출 예산(안) 추이를 보면, 일반회계는 2014년에 감소하였다가 2015년에 다시 증가하였고, 남북협력기금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이 2014년에 급감한 것은 탈북자 감소에 따라 정착금 및 지원 예산이 감소한데 기인하고, 2013년부터 남북협력기금이 증가한 것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핵문제 해결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표 6] 통일부 소관 총지출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일반회계	2,056	2,129	2,222	2,174	2,301
전년 대비 증감액	514	73	93	-48	127
(증감률)	33.3	3.5	4.4	-2.1	5.8
남북협력기금	10,209	10,116	11,032	11,184	12,450
전년 대비 증감액	-1,015	-93	916	151	1,267
(증감률)	-9.0	-0.9	9.1	1.4	11.3

자료: 통일부

둘째, 드레스덴 구상이 반영되어 있는 중점인도적 지원, 교역·경협자금(융자) 등이 증액 편성되었다. 중점인도적 지원은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270억원 증가, 농축산·환경협력사업 307억원 신규 편성 등 1,186억원이 반영되었다. 교역·경협자금(융자)은 경협자금(융자) 140억원 증가, 국제협력사업 300억원 신규편성 등 1,310억원이 반영되었다.

[표 7]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주요 증액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중점인도적 지원	13,251	46,180	118,600	72,420	156.8
교역·경협자금(융자)	-	87,000	131,000	44,000	50.6

자료: 통일부

셋째, 사업 계획이 부실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다.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은 통일 자료의 수집 방향, 범위 등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범위가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전문강사 중 관련 전공자가 55.2%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학교통일교육의 성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여 통일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 평화통일 역사자료에 대한 사전조사 부족

- 통일사료를 체계적·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통일준비 인프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신규로 5억원이 편성
- 평화통일 역사자료의 범위, 수집 가능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사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필요

가. 현황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일반회계, 신규, 직접)은 통일사료를 체계적·포괄적으로 수집하여 통일준비 인프라로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일반회계)	-	-	500	500	순증
-연구개발비	-	-	500	500	순증

자료: 통일부

나. 자료수집 현황 조사, 자료수집 범위 설정 등 사전계획을 수립할 필요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은 정치, 경제, 생활, 문화 수준으로 다양한 통일사료를 수집하고, 유관기관·단체 등과 자료 수집·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당초 통일부는 동 사업을 통해 평화통일 역사문화 재단

을 설립하여 평화통일 역사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역사박물관을 건립하여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전시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평화통일역사문화 재단 설립·운영 사업비 41억원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 평화통일 역사자료 관리사업만 평화통일 역사 자료 수집·활용을 위한 방안마련으로 통합되어 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2]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평화통일역사문화 재단 설립·운영(최초안)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편성안)	
내역사업	요구안	내역사업	예산안
평화통일역사기록 수집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5	-	-
평화통일역사기록수집 관련 워크숍 개최	8	-	-
평화통일역사기록 수집 관련 기초자료 및 사례조사	2	-	-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	1,630	평화통일 역사 자료 수집·활용을 위한 방안마련	500
평화통일 역사자료 관리	1,130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	360	-	-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문화사업	400	-	-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500	-	-
평화통일역사박물관 건립 준비	100	-	-
합 계	4,135	합 계	500

자료: 통일부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의 2015년 예산안 5억원은 전액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었고, 연구용역을 통해 ①평화통일 역사자료를 수집하고, ② 평화통일 역사자료 관리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표 3]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활용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비목	2015년 예산안	산출근거
연구개발비	500	○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 － 분단에서 통일까지의 정부·민간·국제자료를 정치·경제 수준에서 생활·문화 수준에 이르기까지 포괄적 수집
		○ 평화통일 역사자료 관리 － 자료 관리 네트워크 및 웹 기반 「지식 맵(map)」 구축을 위한 S/W 개발, 웹페이지 구축, DB구축

자료: 통일부

정부·민간·국제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할 계획이지만 수집 대상 자료의 범위나 존재 현황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수집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2014년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사전 준비를 하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통일부가 2014년에 수행한 「통일자료 수집·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¹⁾는 평화통일역사재단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용역으로, 통일자료 수집 범위나 현재 수집 가능한 통일자료 현황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집 가능한 통일 자료의 구체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평화통일역사자료의 범위, 수집 가능한 자료의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는 점과 동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통일자료 수집·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4.8, 카톨릭대학교.

2. 학교 통일교육 강화: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내실화하기 위해 전문강사 인프라 구축 필요

-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제고 및 통일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와 동일한 41억 9,700만원 편성
-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성과가 저조할 수 있는 바, 선발과정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여 통일교육을 내실화할 필요

가. 현황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일반회계, 계속, 직접/보조)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대보다 9,800만원(3.0%) 증가한 33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학교 통일교육 강화(일반회계, 계속, 직접/보조)는 각급 학교의 통일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여 통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통일추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대와 동일한 4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학교 통일교육 강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일반회계)	2,396	3,247	3,345	98	3.0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98	188	188	0	0.0
학교 통일교육 강화 (일반회계)	3,207	4,197	4,197	0	0.0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309	368	368	0	0.0

자료: 통일부

나.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통일교육 전문강사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일선 학교·사회 현장에서 북한·통일 문제에 대해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중 선발된 강사들이 초·중·고교를 찾아가서 통일교육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4년, 2015년 3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2]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	2011	2012	2013	2014	2015(안)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	186	188	188	188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77	348	352	368	368
합 계	77	534	540	556	556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의 목적은 전문강사를 직접 양성하고 그 중 우수강사를 선발하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지만, 실제 강사 선발 과정이 다소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은 3개의 과정으로 구분되는데,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하면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사회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하면 사회통일교육 강사로, 북한이탈주민 전문과정을 수료하면 탈북 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다.²⁾

학교통일교육 전문과정은 신청자가 대부분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여름방학을 이용해 4주(20일)간 운영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³⁾에 해당하

2) 2014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과정은 눈높이 강사 1인, 탈북 강사 1인이 1조가 되어 실시하고 있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지 않으면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표 3] 통일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공고

	내 용
교육기간	2014년 7월 7일~ 8월 1일(4주, 월~금, 총 20일)
교육내용	통일 및 북한문제 과목 수강, 강의 실기·실습, 토론, 현장견학 등
지원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를 갖춘 자 ○ 북한·국민윤리·정치외교학과 등 북한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또는 대학원 재학 이상자 ○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자 ○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고, 통일부 관련 사업에 참여한 자

자료: 통일부

하지만 2014년 현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통일교육 전문강사 58명 중 북한, 통일 등 관련 전공자는 32명(55.2%)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사례비가 1회 평균 31만원(사례비 21만원, 여비 10만원)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 중에서 선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청소년 통일의식 향상 및 통일미래 비전 확산을 위하여 통일교육 전문 강사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초, 중, 고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가 전문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부는 향후 초·중·고교생의 통일인식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므로,⁴⁾ 통일교육 강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일부 나타나고 있어 동 교육의 성과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향후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통일부는 2014년 7월 교육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초·중등 학생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3.5%,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7%로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

3.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기본경비성 예산을 동사업 내로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

- 이산가족 교류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6,500만원(1002.6%) 증가한 8억 3,800만원 편성
- 이산가족 자료정리 기간제 급여, 민원상담실 소모품 구입 예산은 기본행정 경비에 해당하는 바,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통일정책실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

가. 현황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이산가족 교류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7억 6,500만원(1002.6%) 증가한 8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일반회계)	119	76	838	765	1002.6

자료: 통일부

나. 정보화 예산에 포함된 기본경비성 예산은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의 세부 내역을 보면, 이산가족 자료 정리 기간제 급여, 민원상담실 소모품 구입, 시스템 유지 보수·개발 용역 등, 유전자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된다.

2015년에는 이산가족 자료 정리 기간제 급여 4,000만원, 민원상담실 소모품 구입 600만원, 시스템 유지 보수·개발 용역 등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유전자정보시스템 구축 7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표 2]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운영(정보화) 예·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이산가족 자료 정리 기간제 급여	38	38	34	34	37	36	40	18	40
민원상담실 소모품 구입	10	10	10	10	10	8	6	3	6
시스템 유지 보수· 개발 용역 등	95	95	91	91	85	75	30	13	30
유전자정보시스템 구축	-	-	-	-	-	-	-	-	762
합 계	143	143	135	135	132	119	76	34	838

자료: 통일부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⁵⁾ 또한 정보화사업은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⁶⁾

동 사업 내역 중 이산가족 자료 정리 기간제 급여는 이산가족 민원상담실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고, 민원상담실 소모품 구입은 민원상담실에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기본행정경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통일부는 기본경비에 해당하는 이산가족 자료 정리 기간제 급여, 민원상담실 소모품 구입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통일정책실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5)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p.18~21.

6)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44.

4. DMZ세계평화공원조성: 남·북 간 합의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 DMZ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억원(30.5%) 증가한 394억원 편성
- DMZ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동력이 강화되고,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남·북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

가. 현황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남북협력기금, 2014~2016, 직접)은 DMZ 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92억원(30.5%)이 증가한 394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계획 (A)	2015 계획안 (B)	증 감	
				B-A	(B-A)/A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남북협력기금)	-	30,200	39,400	9,200	30.5

자료: 통일부

나. 남·북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필요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6·25 전쟁 정전 협정의 산물로, 남한과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 2km 이내를 DMZ로 설정하고, 이를 군사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명칭과는 달리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로 인해 각종 군사시설, 중화기, 지뢰 등이 밀집한 중무장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1971년 유엔군사령부 수석대표(B.Rogers 소장)가 북한에 비무장지대 내 무기·지뢰 제거, 비무장지대 민간 개방 등

을 제의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무장 지대 내 평화 시 건설 제의, 1997년 김영삼 전대통령의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 제의, 2007년 노무현 전대통령 당시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평화지대화 및 생태공원 조성 제안 등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DMZ세계평화공원은 이러한 평화적 노력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이와 같은 협력을 토대로 남과 북이 군사·경제·환경·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도모한다면, DMZ는 냉전과 갈등의 유산에서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되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동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가 조성되고 한반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제고될 경우, 새로운 경제협력모델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 사업은 2014년에 신규 편성되었고, 2015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92억원 증가한 394억원이 편성되었다. 예산안 편성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원부지 매입지(토지매입비) 40억원, 지뢰 제거비(시설비) 272억원, 기본조사 등 설계추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80억원 등이다.

[표 2]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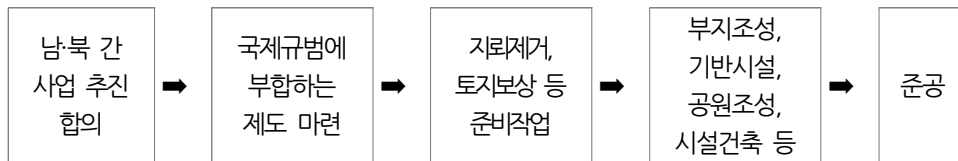
내역사업	비목	2014		2015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구상구체화(용역)	연구개발비	700	20	200
공원기반조성	토지매입비	4,000	0	4,000
	기본조사설계비	5,000	0	3,000
	실시설계비	0	0	5,000
	시설비	20,500	0	27,200
	소 계	29,500	0	39,200
합 계		30,200	20	39,400

주: 2014년 9월말 기준.

자료: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남과 북이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하여야 한다. 이후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지뢰제거 등 준비 작업을 거친 후 부지조성, 기반시설 조성 등 실제 공원 조성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추진 절차



자료: 통일부

2015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은 연구용역을 제외하면 공원부지 매입과 지뢰제거 추진비용으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남과 북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은 남·북 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통일부 소관 예산안 분석 총 4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타 3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계획 부실]						
일반회계	평화통일 기반조성	평화통일 역사자료 수집 및 활용	-	-	500	○ 평화통일 역사자료의 범위, 수집 가능 현황 등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사 전에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예산 반영 필요
[기타]						
일반회계	통일교육 추진	학교통일 교육 강화	3,207	4,197	4,197	○ 통일교육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 하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성 과가 저조할 수 있는 바, 선발과 정에서부터 전문성을 갖춘 강사 를 양성하여 통일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
일반회계	이산가족 및 남북 피해자지원	이산가족 정보통합 시스템 운영 (정보화)	119	76	838	○ 이산가족 자료정리 기간제 급여, 민원상담실 소모품 구입 예산은 기본행정경비에 해당하는 바, 예 산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통일 정책실 기본경비로 편성할 필요
남북협력 기금	남북경제 협력기반 조성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	30,200	39,400	○ DMZ세계평화공원의 조성을 통 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추진 동력이 강화되고, 한반도에 실질 적인 평화가 조성되는 계기가 마 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남· 북 간의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추 진할 필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고, 세입은 2014년 예산 대비 100만원(25.0%) 증액된 500만원이다.

[표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5	4	5	1	25.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 예산안은 2014년 예산 대비 16억 5,700만원(6.9%) 증액된 255억 4,000만원이이고, 총지출은 총계와 동일하다.

[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5,035	23,883	25,540	1,657	6.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은 없다.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헌법」 제92조¹⁾에 따라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이다.

2015년 예산안은 ①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실효적 자문·건의를 위한 여론 수렴 강화, ②자문위원 역량강화를 통해 정책 건의 성과 제고 및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예산(안)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예산(안) 변화를 살펴보면, 16기 자문위원이 출범한 2013년은 전년대비 21억원(9.0%)이 증액된 250억원이 편성되었고, 17기 자문위원 출범이 예정된 2015년은 전년대비 17억원(6.9%) 증액된 255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	2012	2013	2014	2015(안)
예산(안)	24,317	22,968	25,035	23,883	25,540
전년대비 증감액	-	-1,349	2,067	-1,152	1,657
(증감률)	-	(-5.6)	(9.0)	(-4.6)	(6.9)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둘째, 2015년은 17기 자문위원이 출범하는 해로,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국내·해외 지역회의 예산 23억이 삭감되었고, 국내·해외 출범회의 21억원, 자문위원 구성 3억원이 편성되고 지역통일준비 역량강화 3억원이 증액되었다.

셋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주요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회의 운영은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기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바, 동 보고서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대한민국헌법」 제92조 ①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자문회의 운영: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활용 계획 부실

- 통일환경 변화와 지역별·직능별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통일·대북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5,200만원(9.7%) 증가한 39억 8,500만원 편성
-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기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동 보고서의 내용,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

가. 현황

자문회의 운영(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통일환경 변화와 지역별·직능별 통일여론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통일·대북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3억 5,200만원(9.7%) 증가한 3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중 내역사업 통일여론 수렴·분석은 통일문제 현안에 대한 통일여론을 수렴하는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6,600만원(166.0%) 증가한 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자문회의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자문회의 운영(일반회계)	3,475	3,633	3,985	352	9.7
-통일여론 수렴·분석	85	100	266	166	166.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통일여론 분석보고서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통일여론 수렴·분석은 2014년까지 국민여론조사 및 통일문제 전문가 토론회를 수행하였다. 2015년에는 전문가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등을 신규로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예산안에는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7,400만원, 전문가 모니터링 3,100만원, 온라인 설문조사 1,2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통일문제 전문가 토론회는 개최 횟수 증가(2회→4회)를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표 2] 통일여론 수렴·분석 예산안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증감	비고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		-	74	74	신규
통일문제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52	53	1	-
	전문가 모니터링	-	31	31	신규
	온라인 설문조사	-	12	12	신규
	소 계	52	96	44	
통일문제 전문가 토론회		48	96	48	개최 횟수 증가
합 계		100	266	166	-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여론조사, 전문가 모니터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통일문제에 관한 여론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이를 통일여론분석 보고서에 정리하여 운영·상임위원회, 지역협의회,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존 국민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여론조사 결과 외에 북한 관련 사건·사고 정리, 유사 주요 여론조사 결과 요약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내용상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유관기관 배포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예산집행에 있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존재할 수 있는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예산안 분석은 사업계획 부실 1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계획 부실]						
일반회계	통일정책지원 통일여론조성	자문회의 운영	3,475	3,633	3,985	통일여론분석 보고서 발간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기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와 내용이 중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동 보고서의 내용,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

제 4 장

국방위원회

[국방부]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1. 예산안 현황

201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2개 기금(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된다.

세입 및 기금수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456억 800만원(2.8%) 증액된 5조 2,996억 2,100만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2,062억 400만원에서 2015년 1,457억 3,100만원으로 29.3% 감소하였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6,417억 7,800만원에서 8,005억 5,500만원으로 24.7% 증가하였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3,559억 6,100만원에서 3,555억 6,800만원으로 0.1%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1,015억 5,500만원에서 1,068억 6,500만원으로 5.2% 증가하였다. 군인연금기금은 2조 9,191억 3,800만원에서 2조 9,726억 8,100만원으로 1.8% 증가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은 9,293억 7,700만원에서 9,182억 2,100만원으로 1.2% 감소하였다.

[표 1] 국방부 소관 세입·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877,194	1,305,498	1,408,719	103,221	7.9
-일반회계	129,722	206,204	145,731	-60,473	-29.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69,296	641,778	800,555	158,777	24.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69,696	355,961	355,568	-393	-0.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8,480	101,555	106,865	5,310	5.2
기 금	3,851,186	3,848,515	3,890,902	42,387	1.1
-군인연금기금	2,767,423	2,919,138	2,972,681	53,543	1.8
-군인복지기금	1,083,763	929,377	918,221	-11,156	-1.2
총 계	4,728,380	5,154,013	5,299,621	145,608	2.8

자료: 국방부

세출 및 기금지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조 4,788억 5,400만원(4.9%) 증액된 31조 5,479억 7,600만원이다. 일반회계가 2014년 25조 1,959억 6,600만원에서 2015년 26조 3,942억 2,700만원으로 4.8% 증가하였으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가 6,417억 7,800만원에서 8,005억 5,500만원으로 24.7% 증가하였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3,559억 6,100만원에서 3,555억 6,800만원으로 0.1% 감소하였으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269억 200만원에서 1,067억 2,400만원으로 296.7% 증가하였다. 군인연금기금은 2조 9,191억 3,800만원에서 2조 9,726억 8,100만원으로 1.8% 증가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은 9,293억 7,700만원에서 9,182억 2,100만원으로 1.2% 감소하였다.

[표 2] 국방부 소관 세출·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 산	24,688,908	26,220,608	27,657,074	1,436,467	5.5
-일반회계	24,074,208	25,195,966	26,394,227	1,198,261	4.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19,175	641,778	800,555	158,777	24.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63,849	355,961	355,568	-393	-0.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1,676	26,902	106,724	79,822	296.7
기 금	3,851,186	3,848,515	3,890,902	42,387	1.1
-군인연금기금	2,767,423	2,919,138	2,972,681	53,543	1.8
-군인복지기금	1,083,763	929,377	918,221	-11,156	-1.2
총 계	28,540,094	30,069,122	31,547,976	1,478,854	4.9

자료: 국방부

2015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28조 3,428억 1,900만원으로 2014년 26조 8,367억 4,300만원 대비 1조 5,060억 7,700만원(5.6%)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23조 8,908억 100만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268억 4,500만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040억 5,700만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067억 2,400만원, 군인연금기금 2조 8,587억 5,200만원, 군인복지기금 5,556억 4,000만원이다.

[표 3] 국방부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1,682,774	22,677,188	23,890,801	1,213,613	5.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89,119	596,616	726,845	130,229	2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63,849	201,691	204,057	2,366	1.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1,676	26,902	106,724	79,822	296.7
군인연금기금	2,576,350	2,804,162	2,858,752	54,590	1.9
군인복지기금	489,977	530,183	555,640	25,457	4.8
합 계	25,333,745	26,836,743	28,342,819	1,506,077	5.6

자료: 국방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국방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조 3,942억 원에는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2조 3,327억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1,700억원, 군인복지기금으로의 전출금 7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국방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일반회계		군인연금기금
	8,006 억원	8,006 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1,457 억원	2조 9,727억원
			세출	26조 3,942 억원	
			병력운영 부문	15조 5,810억원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전출금	2조 3,327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	세출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금	1,700억원	9,182억원
			전력유지 부문	10조 8,132억원	
	3,556 억원	3,556 억원	군인복지기금 전출금	7억원	
	1,069 억원	1,067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2015년도 신규사업은 총 4개 사업, 527억 9,200만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인 제2군자녀기숙형고교 설립 사업은 군인의 헌신적 복무 전념여건 조성을 위해 제2군자녀 기숙형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사업이며,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에 편성된 17사단 101연대는 부대 이전을 위한 사업이다. 통화금융기관 예치금은 군인연금기금에 편성되어 있다.

[표 4] 국방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회계·기금	사업명	2015 예산안
일반회계	제2군자녀기숙형고교 설립	1,974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예비군훈련대	251
	17사단 101연대	567
군인연금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	50,000
총 4개 사업		52,792

자료: 국방부

2015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시설장비 임차료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사업이 전년대비 86억 2,200만원(211.4%) 증액된 127억원을, 병인건비 인상으로 924억 2,300만원(12.6%) 증액된 8,23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평택기지이전사업의 기지 이전 본격 착수에 따른 연부액 증가로 전년대비 914억 7,900만원(18.3%) 증액된 5,924억원을 편성하였다. 국방·군사시설특별회계에서는 5사단 공병대대/보수대대 이전 사업의 본격적인 시설공사 진행에 따라 잔여 사업비로 전년대비 82억 8,300만원(884.9%) 증액된 9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다.

[표 5] 국방부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장교인건비	3,741,457	3,896,726	155,269	4.1
	부사관인건비	4,189,064	4,524,419	335,355	8.0
	병인건비	730,944	823,367	92,423	12.6
	군무원인건비	1,403,154	1,472,731	69,577	5.0
	건강보험부담금	244,117	259,551	15,434	6.3
	기본급식	1,348,394	1,395,568	47,174	3.5
	특수피복	111,217	135,515	24,298	21.8
	공무원연금기금(대여장학금) 으로의 전출	17	25	8	47.1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정보화)	196,373	223,762	27,389	13.9
	정보체계개발유지(정보화)	51,965	75,356	23,391	45.0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정보화)	4,078	12,700	8,622	211.4
	의무물자확보	83,274	102,984	19,710	23.7
	항공장비	30,216	40,261	10,045	33.2
	함정장비	34,453	49,262	14,809	43.0
	특수장비	76	332	256	335.2
	기동장비	601,143	645,903	44,760	7.4
	항공장비	920,302	935,135	14,833	1.6
	함정장비	284,165	322,569	38,404	13.5
	특수장비	198,795	234,833	36,038	18.1
	장비연료	807,166	817,832	10,666	1.3
	함포교육용탄약	29,796	42,444	12,648	42.4
	자기계발교육	3,663	10,686	7,023	191.7
	과학화훈련	42,205	55,411	13,206	31.3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110,619	155,068	44,449	40.2
	병영생활관	179,013	223,916	44,903	25.1
	관사및간부숙소	62,027	155,886	93,859	151.3
	BTL정부지급금	386,402	446,777	60,375	15.6
	정비 및 보급시설	153,639	184,700	31,061	20.2
	일반지원시설	536,244	572,235	35,991	6.7
	시설유지관리	372,936	395,471	22,535	6.0
	공공요금	333,997	345,686	11,689	3.5
	해군보급창 사업 및 지원비	2,549	6,596	4,047	158.8

회계/ 기금	사업명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육군1보급단 기본경비	39	62	23	57.3
	군사시설개선	297,302	337,334	40,032	13.5
	주요기관 기본경비	150,534	161,183	10,649	7.1
	민간보상	6,607	10,143	3,536	53.5
	정책활동지원	75,015	107,184	32,169	42.9
	장애보상금	6,995	12,573	5,578	79.7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14,925	22,508	7,583	50.8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평택기지이전사업	500,980	592,459	91,479	18.3
	연합토지관리계획(LPP)	1,077	8,519	7,442	691.0
	기타이전지원	18,357	49,217	30,860	168.1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의 예수이자상환	45,162	73,710	28,548	63.2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5사단 공병대대/보수대대 이전	936	9,219	8,283	884.9
	66사단 연대 및 직할부대	5,520	18,115	12,595	228.2
	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	2,854	13,912	11,058	387.5
	청평병원이전	1,552	3,813	2,261	145.7
	2사단 17연대	1,357	8,128	6,771	499.0
	동석사업	13,918	36,159	22,241	159.8
	15보급대대	478	2,426	1,948	408.0
	제10방공여단	1,288	8,823	7,535	585.0
	657포병대대	666	2,859	2,193	329.3
혁신도시전 설특별회계	국방대학교 이전	26,902	106,724	79,822	296.7
군인복지 기금	복지시설운영	246,105	267,068	20,963	8.5
	복지시설확보	41,820	56,353	14,533	34.8
	취업활동지원	1,264	3,027	1,763	139.5
군인연금 기금	퇴직급여	2,429,657	2,481,931	52,274	2.2

주: 주요 증액사업은 2014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자료: 국방부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국방부는 국방과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2015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28조 3,428억 1,900만원으로 2014년 26조 8,367억 4,300만원 대비 1조 5,060억 7,700만원(5.6%) 증가하였으며, ①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② 장병인권보호를 위한 병영문화개선, ③ 장병근무여건 개선, ④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 ⑤ 대대급 전투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국방부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전투용 응급처치키트(GOP 사단급), 응급후송헬기(3대→6대), 방탄복 보급(GOP 사단급)을 확대하여 최근의 전방 총기사고 등 장병들의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장병 생존성 강화에 주력하였고, 소방차, 고속단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도 확충할 예정이다.

[표 1] 안전관련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주요 내역
			B-A	(B-A)/A	
군수지원 및 협력	393	720	327	83.2	소방차(23대), 구명정(270대), 폭발물처리기(69대) 등
시설건설 및 운영	515	922	407	79.0	노후 GP 시설보강 등
장병보건	501	582	81	17	구급차(24억원), 자동심실세동기(11억원 등)
합계	1,409	2,224	815	57.9	

자료: 국방부

둘째,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병영문화 개선에 예산을 증액하였다. 장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관심 병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권상담관(군법무관), ‘성고충상담관’을 신설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GOP 대대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노후 병영생활관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다.

[표 2] 인권/병영생활 여건 개선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4예산	2015예산안	증감		주요 내역
			B-A	(B-A)/A	
인권/문화개선	119	161	42	35.9	병영생활상담관(11억), 인권사각지대 CCTV 설치(16억원) 등
병영생활여건 개선	-	240	240	순증	실내 체력단련장 설치(15억원) 등
합계	119	401	282		

자료: 국방부

셋째, 1군지사 이전, 동석사업, 공공기금 위탁금 사업 등은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세입부족에 따른 과다 이·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세입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통신전자장비 획득, 방위비분담금 사업 등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상당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적정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위비분담금의 경우 제9차협정 이후 제도개선사항 중 군사건설 및 군수지원분야의 세부 이행합의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바, 이를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책연구활동(R&D), 국방홍보원사업 등은 사업성고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연구활동 사업의 정책연구성과 점검결과(안전행정부 주관)와 국방홍보원 제작사업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기획재정부)가 각각 ‘미흡’으로 나타난바,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국방·군사시설이전특회계의 17사단 101연대 이전사업은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이전 적절성 조사를 위한 연구결과가 미완료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의 무리한 추진은 집행부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전직지원교육,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예비군훈련대 사업의 경우, 지급근거 및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비군훈련대 사업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되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 전쟁수행에서의 정보우위 보장과 평시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기반 체계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3억 8,900만원(13.9%) 증가한 2,237억 6,200만원 편성
-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되는 전산장비 임차료에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가. 현황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국방정보의 공유 및 적시적 유통과 활용으로 전쟁수행에서의 정보우위 보장과 평시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화기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73억 8,900만원(13.9%) 증가한 2,237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일반회계)	187,981	196,373	223,762	27,389	13.9
-임차료	106,849	112,856	147,081	34,225	30.3
-시설장비유지비	27,415	31,144	27,073	-4,070	-13.1

주: 주요 비목만 제시

자료: 국방부

나. 임차료의 연례적인 이월 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국방부 및 각 군이 사용하는 PC, LAN, 전자식교환기 등 국방 전산장비는 대부분 리스 형태로 도입·운용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산장비 도입시 리스업체와 60개월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장비 도입 이후 5년간 리스예산 및 정비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하게 된다. 2015년도에 교체하거나 신규로 도입하는 장비의 경우 4/4분기에 리스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3개월분의 임차비용을 편성하게 되며,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에는 12개월분의 임차비용을 편성하게 된다.

[표 2] 국방 전산장비 임차료 예산 산출기준

비용	장비유형	산출근거
임차료	기보유 장비	실계약 금액 × 월 1.8% × 12개월분
	교체·신규장비	장비가격 × 월 1.8% × 3개월
정비료	기보유 장비	실계약 금액 × 월 0.48% × 12개월분
	교체·신규장비	장비가격 × 월 0.48% × 3개월

자료: 국방부

전산장비에 대한 임차계약은 각급 부대에서 별도로 체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진행된다. 그런데 일부 계약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지연 및 유찰 등의 사유로 임차계약이 4/4분기 초에 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표 3] 2013년도 전산장비 임차료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계약건명	계약액	이월액	이월사유
임 차 료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 이전통합사업	2,078	2,078	계약체결 지연
	합동군사대학 PC 도입	20	20	리스계약 유찰에 따른 계약 지연
합 계		2,098	2,098	

주: 4/4분기 신규사업

자료: 국방부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임차료 이월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1년과 2013년에는 임차료 예산 중 각각 11억 4,700만원, 20억 9,800만원의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 전산장비 중 신규·교체 소요는 입찰공고를 통하여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매년 다수의 신규계약이 각급부대에서 별도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이 중 일부의 계약에서 유찰 등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계약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이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당 연도에 신규·교체소요로 편성된 물량의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는 계속사업으로 분류되어 12개월분의 리스료가 편성된다.

[표 4]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사업 임차료(210-07)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1	158,785	1,651	-9,275	151,161	149,185	1,147	829
2012	158,236	1,147	-12,698	146,685	144,538	43	2,104
2013	119,234	43	-892	118,385	106,849	2,098	9,438

자료: 국방부

그런데 3개월분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경우 이를 다음연도 리스료 비용으로 충당하므로, 이월된 사업에서 실제로 필요한 리스료는 9개월분이 된다. 즉, 최초연도에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예산이 이월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다음연도에 3개월분의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신규·교체 소요에 대한 계약이 4/4분기에 체결되므로 예산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계약체결 지연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1년 이후 결산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10억원 이상의 임차료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다.¹⁾ 따라서 계약체결 지연 등에 따른 장비 임차도입사업의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 예산 이월로 다음연도 예산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와 같은 예산은 불용처리되거나 이·전용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2. 기본피복: 수의계약 비중 과다 개선 필요

- 현역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공통 기본피복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59억 800만원(1.8%) 증가한 3,359억 5,400만원 편성
- 공정한 경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경쟁전환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조달원 복수화 및 일반경쟁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가. 현황

기본피복(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현역병 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공통 기본피복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59억 800만원(1.8%) 증가한 3,359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기본피복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기본피복 (일반회계)	303,343	330,046	335,954	5,908	1.8
-전투복	56,331	51,995	47,023	-4,972	-9.5
-전투화	47,090	55,656	54,658	-998	-1.8
-개인방한피복류	33,297	35,256	33,150	-2,106	-5.9
-근무복/정복	28,087	24,355	32,284	7,929	32.5
-내의류	51,708	55,758	52,198	-3,560	-6.3
-신발류	15,509	21,966	21,884	-82	-0.3
-운동복	34,356	34,180	43,123	8,943	26.1
-모자류	2,884	4,565	4,945	380	8.3
-잡화류	21,458	22,962	22,101	-861	-3.7
-군장품	4,075	5,145	5,424	279	5.4
-특수신분별피복류	8,548	18,209	19,164	955	5.2

자료: 국방부

나. 수의 계약 비중 과다에 따른 단가 상승 및 품질 저하 우려

기본피복²⁾ 사업은 병사피복 부족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년 타 사업에서 이전 용(증)을 통하여 예산액 대비 초과 집행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복류 계약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³⁾ 비중이 2011년 48.4%, 2012년 52.6%, 2013년 60.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피복류 수의·경쟁 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비중(총괄)

(단위:건, 억원, %)

구분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의계약	83	1,295	73	1,554	91	1,763
경쟁계약	148	1,378	116	1,399	77	1,175
합 계	231	2,673	189	2,953	168	2,938
수의계약 비중	35.9	48.4	38.6	52.6	54.2	60.0

자료: 국방부

품목별로 수의계약 상황을 보면, 전투복은 2011년 5건에서 2013년 27건으로, 운동복은 2011년 8건에서 2013년 23건으로, 내의류는 2011년 3건에서 2013년 16건으로 증가하는 등 국회 등 외부의 지적⁴⁾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감축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2) 기본피복: 전투복, 전투화, 개인방한피복류, 근무복, 내의류, 신발류, 운동복, 모자류, 잠화류, 군장품, 특수신분별 피복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국회는 2010년 결산 심의 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피복 사업의 “수의계약 과다에 따른 예산 낭비와 피복 질 저하”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표 3] 기본피복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건, 억원)

구분	2011		2012		201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투복	5	263	7	285	27	432
운동복	8	204	13	287	23	311
내의류	3	275	9	315	16	365
기 타	67	553	44	667	25	655
합 계	83	1,295	73	1,554	91	1,763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수의계약 증가의 원인으로 일부 수의계약 품목의 조달물량 증가 및 경쟁계약 품목의 낮은 단가(가격저항) 등으로 유찰수의계약이 증가하고 있고, 장병 복무여건 개선 추진에 따른 피복류 품질개선 및 보급기준 강화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며, 특히 군용물자의 경우 관련 법령⁵⁾에 근거해 보훈단체 및 복지단체 등에 일반경쟁의 예외로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군용물자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의계약은 불량을 증가 및 단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공정한 경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경쟁전환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조달원 복수화 및 일반경쟁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차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3. 특수피복: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강화

- 특수 업무 수행자의 품위유지와 전투 효율화를 위한 특수피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전년 대비 242억 9,800만원(21.8%) 증가한 1,355억 1,500만원 편성
- 방탄복 확보사업은 업체투자 연구개발사업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 추진되는 불가피성이 있는 바,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의 철저한 관리, 특수분야에서의 생산업체 다양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

가. 현황

특수피복(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특수 업무 수행자의 품위유지와 전투 효율화를 위한 특수피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42억 9,800만원(21.8%) 증가한 1,355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특수피복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특수피복 (일반회계)	109,325	111,217	135,515	24,298	21.8
-군장품	4	-	-	-	-
-방한피복류	13,321	16,926	17,686	760	4.5
-침구	27,402	15,618	15,210	-408	-2.6
-개인장구류	41,966	42,562	67,968	25,406	59.7
-특수임무피복	27,439	36,110	34,652	-1,458	-4

자료: 국방부

나.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특수피복 중 각 군별 방탄복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군 전체 보유율은 47%이며, 육군의 경우 정수 대비 보유율은 31%로 전력화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급히 부대별로 보급을 정수대로 보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22·28사단 총기사건 등으로 2015년까지 접적부대인 GP 및 GOP 대대 등에 대해서 방탄복 보급을 100%로 계획하고, 2017년까지는 육군 전체로 100%의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표 2] 각 군별 방탄복 보유현황

(단위: 개)

구 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총 계
정 수	100,549	1,234	5,408	24,779	131,970
보 유	31,229	1,234	5,610	24,495	62,568
보유율	31%	100%	104%	99%	47%

주: 2013년말 기준

자료: 국방부

[표 3] 육군 방탄복 확보계획

(단위: 개)

구 분	정 수	보 유 (2013년 말)	2014	2015	2016	2017
방탄복 확보물량 (확보율)	100,549	31,229 (31%)	7,970 (39%)	19,070 (58%)	21,140 (79%)	21,140 (100%)

주: 2015년 예산안에는 육군 방탄복 19,070착 편성

자료: 국방부

특수피복⁶⁾의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2014년의 경우도 8월말 현재 예산현액 대비 36.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방탄복 제조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추진에 따른 계약 지연 등에 기인한다.

[표 4] 특수피복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1	81,055	2,938	-974	83,018	79,428	98.0	3,285	305
2012	96,658	3,285	-18,656	81,288	77,869	80.6	3,295	124
2013	122,261	2,813	-13,028	112,046	109,325	89.4	2,631	89
2014	111,217	2,631	-901	112,948	40,866	36.2	-	-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6) 특수피복: 방한복, 혹한복,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

그런데 방탄복 제조업체의 부정당제제 조치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감사원으로부터 방탄복 생산업체의 허위서류제출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와 관련자를 형사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 이에 국방부 등은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군수조달분과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군수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사안을 심사하였다. 실무위원회는 해당업체 외에는 조달원이 부재하다는 이유와 적기 조달 등의 사유로 감사원의 징계 통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와 2014년 12월까지 납품하는 조건으로 2014년 8월 15일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하였다. 그 후 제14·9차 계약심의 위원회(2014.9.2)에서 해당업체가 향후에도 계속 납품가능 하도록 하는 내용의 면책 결정을 하였다.

[표 5] 부정당 업체 제재조치 경과

<u>감사원</u>
• 감사원 감사: 전력지원체계 획득···관리실태 감사(2014.2.24) • 감사결과: 2010년도 다기능 방탄복 적격심사시 허위서류제출(○○○텍) • 감사처분요구: 부정당업자 제재 및 관련자 형사고발 조치
<u>방위사업청</u>
• 부정당 업자 제제건의(2014.5.27.) • 제14·8차 군수조달실무위원회 개최(2014.5.30) - 입찰참가자격 제한 예정 연구개발 업체와 수의계약체결 심의 • 제14·8차 군수조달실무위원회 결과보고(2014.6.10) - 전투긴요물자 적기조달, 소요군 전투력운영 유지, 연구개발 업체 이외 조달원 부재 등을 고려, 2014년도 조달에 한해 수의계약 체결 결정 • 방탄복 연구개발 수의계약(2014.8.5.) • 제14·9차 계약심의회 결과(2014.9.2.) - 심의결과: 부정당 업체 제재 ‘면책’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업체투자 연구개발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162조7)에 따라 5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5년후에 국방규격화하여 일반경쟁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결국 업체투자 연구개발이라는 특수성과 보급의 시급성으로 인해 동일업체가 계속 제품을 납품하게 되는 불가피성에서 그 원인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사업의 철저한 관리, 특수분야에서 생산업체의 다양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최근 4년간 방탄복 구매단가 현황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2014
방탄복	321	409	422	836

주: 방탄복 포함한 단가이며, 2013년까지는 일반경쟁, 2014년부터는 업체투자 연구개발 수의계약임

자료: 국방부

7)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162조(연구개발확인서 발급 및 수의계약) ② 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기간은 개발완료 후 계약년수를 기준하여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연구개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4. 통신전자장비 획득: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기 계약 추진 필요

-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유·무선 통신 장비 등의 획득을 통해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1,700만원(4.7%) 증가한 427억 9,300만원 편성
-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노후 장비 위주로 필수소요만 반영하는 등 사업 물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기에 계약을 체결할 필요

가. 현황

통신전자장비(일반회계, 계속, 직접)는 통신전자장비 중 전력지원체계로 분류된 유·무선 통신 장비, 음향탐지기, 감시 및 정찰장비 등의 획득을 통해 전·평시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9억 1,700만원(4.7%) 증가한 427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통신전자장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통신전자장비사업 (일반회계)	38,670	40,876	42,793	1,917	4.7
-자산취득비	38,670	40,876	42,793	1,917	4.7

자료: 국방부

나.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 개선 필요

통신전자장비 획득 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북한의 소형무인항공기 위협에 대비한 탐지레이더 및 전파교란장비 추가 획득에 따른 것이다.

[표 2] 2014년 예산내역 대비 2015년 주요 예산안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예산	2015년 예산안
□ 통신전자장비	40,876	42,793
- GPS 재밍 대응 신호처리장비	-	2,530
- 특정지 경계력 보강사업	5,600	796
- 교동도지역 근거리 감시레이더	3,800	1,328
- 무인항공기 위협대비 장비	5,160	8,440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이·전용(감) 및 이·불용이 일정 규모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재원으로 부서관 인건비, 연료비 등 타 사업의 부족분에 사용하고 있다. 2014년에도 8월말 현재 업체 납기 및 물량조정 등에 따른 계약지연과 단일업체 입찰가 초과에 따른 계약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31.7%에 그치고 있다.

[표 3] 최초 4년간 통신전자장비 획득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C)	집행률 (C/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11	28,131	2,338	-5,120	25,349	21,513	76.5	3,425	412
2012	33,276	3,425	-4,729	31,972	28,025	84.2	1,891	2,057
2013	46,887	1,891	-3,235	45,543	38,670	82.5	2,248	4,626
2014	40,876	2,248	3,134	45,258	14,349	31.7		

주: 2014. 8. 31. 기준

자료: 국방부

2014년 9월 이후 동 사업의 사업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국통사 차량용 전파차단장비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7억원), 해군 모사전송기(5억원), 기타 통신장비 획득(21억원) 등 약 33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약지연 등으로 이·불용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연말엔 집행잔액을 이전용을 통하여 타사업에 재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의 연례적인 이·전용(감) 발생사유에 대해 국방부는 주로 계약지연과 구매단가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연례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입찰잔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 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구매단가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노후 장비 위주로 필수소요만 반영하는 등 사업물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적기 계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4] 2014년 이·불용 예상사업 현황

군별	집행부진 사유	금액
국통사	국통사 차량용 전파차단장비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7개월)로 이월 예상	6.7억원
해군	해군 모사전송기 등 28종 계약잔액으로 불용 예상	5억원
육군	기타 통신장비 획득 사업 계약지연	21억원
합계		32.7억원

주: 2014. 8. 31. 기준

자료: 국방부

5. 민간위탁교육: 국외 전문학위과정 체제비 지급기준 개선 검토

- 미래 국방환경의 정보화·과학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억 8,400만원(△6.7%) 감소한 290억 2,900만원 편성
- 국외 박사과정 위탁생의 교육기간 연장 및 체제비 과다지출로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교육기간연장 및 체제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직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가. 현황

민간위탁교육(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미래 국방환경의 정보화·과학화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0억 8,400만원(△6.7%) 감소한 290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민간위탁교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민간위탁교육 (일반회계)	28,411	31,113	29,029	-2,084	-6.7
-자질향상교육	16,632	18,868	17,391	-1,477	-7.8
-전문요원양성	11,779	12,245	11,638	-607	-5.0

자료: 국방부

나. 국외 박사과정 교육기간 연장 과다 개선 검토 필요

민간위탁교육중 국외 전문학위 과정⁸⁾은 1956년부터 사관학교 교수요원 양성을 위해 전문요원양성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 사업은 장기복무 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하는

8) 국외 전문학위 과정: 고급학문지식을 요구하는 분야에 활용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국외 민간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석·박사 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의 평가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단위사업인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성과평가 부실 등에 의한 ‘미흡’판정으로 2015년 예산이 전년 대비 6.7% 감액 편성되었다. 한편, 동 사업 중 국외박사 과정 등의 최근 4년간 예산은 2012년 100억 2,000만원, 2013년 96억 2,800만원, 2014년 91억 8,500만원으로 감초추세에 있으나, 선발인원의 경우에는 2012년 10명, 2013년 9명, 2014년 14명 등 매년 꾸준히 박사과정 인력들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다.

[표 2] 국외 전문학위(박사)과정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예 산	11,521	10,020	9,628	9,185
신입생선발 (박사)	16	10	9	14

주: 2014. 8. 31 기준이며 예산은 석사과정도 포함됨
자료: 국방부

국외 전문학위 교육중 박사과정의 기간 연장은 「군위탁생 규정」 및 「군위탁생 규정」시행규칙의 위임으로 「군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⁹⁾에 따라 3년을 기준으로 하되, 파견 국가별로 학제를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기간 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2년 범위내에서 교육기간을 연장¹⁰⁾할 수 있다.

그런데 국방부의 국외 전문학위 과정(박사)의 최근 4년간 박사 인원 파견 중

- 9) 「군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교육기간 및 기간연장) ①전문학위교육의 교육기간은 당해 교육기간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2. 국외 과정은 석사의 경우 2년, 박사의 경우 3년을 기준으로 하되, 파견국가별 학제를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간 내 학위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승인을 얻어 박사에 한하여 2년 범위 내 교육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시는 6개월 단위 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학위 취득 확실시는 12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다.
10) 국외 박사과정 연장자의 체재비 지급 기준

연장기간	6월 미만	6월 ~1년 미만	1년 이상~1년6월 미만	1년6월 이상~2년 미만
지급비율	80%	60%	40%	미지급

체제기간 연장 현황을 보면, 2012년 45.6%, 2013년 44.5%, 2014년 7월말 현재 46.1%가 기준기간 3년을 초과하여 체제기간을 연장하였다.

이는 학업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 기간 내에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는 「군위탁교육 관리 훈령」 제14조에 비추어 볼 때 파견인원 대비 절반 가까운 인원이 과다하게 기간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3억 6,500만원, 2013년 3억 6,700만원, 2014년 7월 현재 3억 6,600만원의 체제비가 추가 지출되었다.

[표 3] 국외 전문학위(박사)과정 기간연장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국외박사인원	94	79	72	65
기간 연장인원	33 (35.1%)	36 (45.6%)	32 (44.5%)	30 (46.1%)
기간연장에 따른 체제 비용	375	365	367	366

주: 1. 국외박사인원은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합계(2014. 7.31 현재)

2. ()은 체제기간 연장 비율

자료: 국방부

또한 2013년 국외박사 과정 졸업자의 보직현황을 살펴보면, 「군위탁생 규정」 제13조의 2¹¹⁾에 따라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여야 함에도 총 16명의 졸업자중 4명(25%)이 전공과 관련성이 부족한 보직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국외 전문학위(박사과정) 위탁생의 교육기간 연장 및 체제비 과다지출로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교육기간연장 및 체제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직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1) 「군위탁생 규정」 제13조의2(교육이수자의 활용)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군위탁생에 대하여는 미리 계획된 활용예정부서 또는 교육이수분야와 관련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표 4] 국외 박사과정 졸업자 보직 현황(2013)

군	전 공	보 직	병과
육군	산업공학	국방대학교 교관	포병
육군	산업공학	3사관학교 교관(운영분석)	경리
육군	전자공학	신호정보연구단 기술연구장교	기갑
육군	전자공학	방위사업청 조직제도담당	보병
육군	물리학	육군사관학교 교관	보병
육군	전자공학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인사총괄담당	보병
육군	토목공학	3사관학교 교관	공병
육군	경영학	방사청 방산협력협정담당	보병
육군	전자공학 (무선통신)	사이버사 웹응용SW연구실장	통신
육군	군사사	육군사관학교 교관	보병
육군	기계공학	정보사 음원속성분석장교	병기
육군	경영학	국방대학교 교관	보병
해군	조선공학	전력분석시험평가단 함정설계관리TF체계담당	조함
공군	기상학	기상단 수치예보연구실장	기상
공군	항공우주공학	공군사관학교 교관	교수
공군	컴퓨터공학	83정보통신정보창 통합체계정비팀장	정보통신

자료: 국방부

6. 전직지원교육: 취업역량교육사업 국방부로 이관 필요

- 전역 예정 간부들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6억 8,500만원($\Delta 45.6\%$) 감소한 32억 500만원 편성
- 전역예정군인의 취업역량교육은 관련 법률 및 현역군인 관리의 일원화 측면에서 국방부에 편성할 필요

가. 현황

전직교육(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의무복무기간 이상 복무한 전역 예정 간부들에게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취·창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6억 8,500만원($\Delta 45.6\%$) 감소한 32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전직지원교육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전직교육 (일반회계)	4,210	5,890	3,205	-2,685	-45.6
-보상금	4,210	5,890	3,205	-2,685	-45.6

자료: 국방부

나. ‘국방전직교육원’ 사업 예산 편성 일원화 필요

국방부는 전역예정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통해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사회정착유도를 위해서 「국방전직교육원법」¹²⁾

12) 「국방전직교육원법」 제6조(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정보의 제공
3. 전역예정군인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관련 사업
4.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분석

을 제정(2014.6.11.)하고 2015년 1월에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방부 내 전직교육원의 부재로 그동안 국가보훈처 산하 보훈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전역예정 군인에 대한 기본교육을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으로 2015년부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을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표 2]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예산	2015 예산안
일반회계	전직지원교육		
	- 기본교육	-	1,200
군인복지기금	취업활동지원		
	- 교육원운영	-	2,350
	• 인건비	-	1,000
	• 기관운영	-	1,350

자료: 국방부

그런데 2015년 국방전직교육원 예산안을 살펴보면, 기본교육비는 ‘일반회계’의 전직지원교육 사업에, 교육운영(인건비, 기관운영)비는 ‘군인복지기금’의 취업활동지원 사업에 분리 편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단일 교육원 예산을 일반회계와 군인복지기금으로 예산을 분리 편성하는 것은 사업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동 교육원 예산을 일반회계의 전직지원교육 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다. 취업역량교육 사업 국방부로 이관 필요

전직지원교육사업의 내역사업은 2014년까지 ‘전직컨설팅’과 ‘취업역량교육’사업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전직컨설팅은 전역예정자에 대한 직업안내, 상담 등

5.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6.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취업역량교육은 기본교육의 심화교육차원에서 전역예정자들의 민간 학원비¹³⁾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방부는 전역예정자에 대해 민간 취업학원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들에게 민간 취업학원비를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표 3] 2014년 취업역량교육비(국방부, 국가보훈처)

	구 분	대 상	성 격	내 용	예 산	법적근거
국방부	취업역량 교육비	현역군인 2,600명	재직자 교육	학원수강비 150만원	40억원	「군인사법」
국가 보훈처	훈련비 바우처	제대군인 750명	실업자 교육	학원수강비 120만원	9억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

자료: 국방부

2015년 전직지원교육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국가보훈처 보훈교육원에서 실시하던 전역예정자의 기본교육비 12억 500만원이 국방부로 이관되었고, 국방부의 기존 ‘전직컨설팅’과 ‘취업역량교육’ 예산중 ‘취업역량교육’ 예산 40억원이 감액되어 국가보훈처로 이관되었다.

[표 4] 2015년 취업역량교육비(국방부, 국가보훈처)

(단위: 백만원)

구분		국방부	국가보훈처
일반 회계	전직지원교육	3,205	
	- 전직컨설팅	2,000	
	- 기본교육	1,205	←
	- 취업역량교육	→	4,000

자료: 국방부

그런데 취업역량교육은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역군인은 국방부, 제대군인은 국가보훈처가 전직지원교육(취업역량교육)을 주관하는 것이 「정부조직법」 및 「국군조직법」에 따른 업무분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역 군인에 대한

13) 1인당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개인이 학원에 선납후 수료시 지급함(10%는 개인부담이며 출석률 80%이상 수료 조건)

전직지원 교육은 「군인사법」 제46조의2¹⁴⁾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¹⁵⁾, 제60조의3¹⁶⁾에 따른 군인사의 일부이며, 교육기간중 교육생은 군인복무규율 등 각종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¹⁷⁾에 따라 국가보훈처가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국방부의 위탁의뢰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전직지원교육 위탁의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지원교육 예산을 국가보훈처에 편성하는 것은 동법 제13조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역군인의 입대와 전역까지의 전직지원교육(취업역량교육)은 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기하되, 관련 예산은 법적 근거와 현역군인 관리의 일원화 측면에서 국방부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표 5] 전직지원교육 추진 경과

- 1995년~: 「군인사법」에 따라 전역예정자 지급
 - 2014년 8월말 기준 약 3,000여명 대상, 42억원 편성
- 2009년 5월~: 국방부 시설부족으로 기본교육 국가보훈처에 위탁
- 2014년 10월: 전직교육원 완공 예정
- 2015년 예산안:
 - 기본교육: 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
 - 취업역량교육: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이관

자료: 국방부

- 14) 「군인사법」 제46조의2(전직지원교육)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교육(轉職支援教育)을 할 수 있다.
- 15)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전직지원교육 대상 등) ④ 전직지원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전직지원교육 관련 업무를 전직지원교육에 필요한 인력, 조직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시킬 수 있다.
- 16)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전직지원교육비의 지원) ① 제60조의 2에 따라 전직지원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보훈처장은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② 국방부장관은 중장기 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7. 과학화훈련: 합참 합동연습지원단 민간 전문인력(비상근) 감축 검토

- 과학화된 군사훈련을 위하여 CBT 교육, 위게임훈련, 전투지휘훈련을 진행하고 교육훈련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2억 600만원(31.3%) 증가한 554억 1,100만원 편성
- 전작권 전환이 2015년이후로 상당기간 재 연기될것으로 보이는바, 2014년부터 대폭 증원된 비상근 인력의 감축에 대한 검토 필요

가. 현황

과학화훈련(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과학화된 군사훈련을 위하여 CBT¹⁸⁾ 교육, 위게임훈련, 전투지휘훈련(BCTP)¹⁹⁾을 진행하고 교육훈련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32억 600만원(31.3%) 증가한 55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과학화훈련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 (B)	증 감	
				B-A	(B-A)/A
과학화훈련 (일반회계)	39,191	42,205	55,411	13,206	31.3
-CBT교육	16,330	13,961	11,302	-2,659	-19.0
-위게임훈련	9,092	11,707	13,788	2,081	17.8
-전투지휘훈련	5,970	7,414	7,169	-245	-3.3
-교육훈련장비	7,799	9,123	23,153	14,030	153.7

자료: 국방부

나. 전작권 전환 불확실에 따라 민간 전문인력(비상근) 감축 검토 필요

합참 합동연습지원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측 주도의 연습(전쟁모의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연합 및 합동연습시 모의기술지원 및 모의통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합동연습지원단은 연습통제 및 모의통제를 실시하

18) CBT(Computer Based Training)

19) BCTP(Battle Command Training Program)

는 ‘운용지원관’과 모의 기술통제 및 연습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관’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업체 위탁용역으로 채용되는데, 운용지원관은 예비역 군인(영관급)들로 2014년 8월말 현재 상근 18명, 비상근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술지원관은 민간 M&S(Modeling&Simulation) 기술자들로 상근19명, 비상근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근은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비상근은 대규모 연습/훈련시 증원·운영되는 인원으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표 2] 민간전문인력 운영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운용 지원관	예산액	604	604	604	604	1,060	1,060
	상근(명)	18	18	18	18	18	18
	비상근(명)	-	-	-	-	25	25
	소계	18	18	18	18	43	43
기술 지원관	예산액	504	504	504	504	1,506	1,506
	상근(명)	9	9	9	9	19	19
	비상근(명)	-	-	-	-	6	6
	소계	9	9	9	9	25	25
총계		27	27	27	27	68	68

주: 민간전문인력 지원 예산은 연구개발비(260)로 편성

자료: 국방부

합참 합동연습지원단 민간 전문인력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비상근 전문인력 감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동 인력운용은 2013년까지 상근 인원 27명(운용지원관: 18명, 기술지원관: 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전작권 전환 예정에 따라 2014년부터 한국군 주도로 모의 훈련연습을 실시할 계획으로, 비상근 인원을 신규로 대폭 충원하였다. 비상근 인원은 상근 인원과 달리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대규모 훈련(KR:Key Resolve(3월), UFG: Ulchi Freedom Guardian(8월))시에 일시적으로 투입되어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6개월의 임금²⁰⁾을 고정으로 수령하게 된다.

20) 상근 민간전문인력 보수 : 월 215만원 × 12월 = 2,580만원

비상근 민간전문인력 보수 : 월 215만원 × 6월 = 1,290만원

그런데 당초 2014년에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미군주도에서 한국군 주도로 모의 훈련을 확대하기 위해 비상근 전문인력을 증원 하였지만, 2014년 현재 전작권 전환이 2015년 이후로 상당기간 재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에도 계속 미군이 주도적으로 함께하는 모의 훈련을 실시 할 것으로 보이는데, 2014년부터 증원된 비상근 민간전문인력의 일정부분 감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2014년 민간전문인력(비상근 운용지원관) 채용 현황

	군 별	전역 계급	인원 (25명)	
비 상 근	육군	소령	2	14명
		중령	6	
		대령	6	
	해군	소령	1	4명
		중령	1	
		대령	2	
	공군	소령	-	3명
		중령	2	
		대령	1	
	해병대	소령	-	4명
		중령	-	
		대령	4	

자료: 국방부

둘째, 적정 비목의 편성이 필요하다. 합동연습지원단 민간전문인력 운용은 조달청 경쟁계약으로 체결하고 이를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민간전문인력을 합참에 지원하게 된다. 운용지원관은 작전을 포함한 전쟁모의 교관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기술지원관(정보처리기사)은 대부분 연습모델의 연동 및 유지보수 작업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동 예산의 비목을 보면, 연구개발비(260)로 편성되어 있다.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²¹⁾에서는 전산운영(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민간 전문인력들의 주 임무는 소프트웨어·분석

21) 「2015년도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75

모델 개발이 아니고 작전운용, 모델연동 및 유지보수 등이므로 연구개발비가 아닌 위탁사업비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비를 연구개발비가 아닌 위탁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적정 비목 편성이 필요해 보인다.

8.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홍보매체의 활용도 제고 검토

- 국방일보·국방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장병 정신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방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억 8,500만원(△9.5%) 감소한 169억 3,600만원 편성
- 매체별 고객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미디어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홍보매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현황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일반회계, 계속, 직접)는 국방일보·국방TV·국군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장병 정신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국민에게 국방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7억 8,500만원(△9.5%) 감소한 169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국방홍보사업 제작 및 지원비 (일반회계)	17,932	18,721	16,936	-1,785	-9.5
-신문제작	5,542	6,112	5,499	-613	-10.0
-방송제작	12,127	12,202	10,980	-1,222	-10.0
-시설유지	263	407	457	50	12.3

자료: 국방부

나. 홍보매체 활용도 부진에 따른 성과제고 필요

국방홍보원은 2013년 기획재정부 상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사업개선 노력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추세를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합리적인 목표치 인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평가 결과가 ‘미흡’(50.0점)으로 나왔다.

[표 2] 국방홍보원 기재부 상위 재정사업자율평가 현황

사업명	성과 지표	구분	예산(억원)		최종결과	
			2013년	2014년	등급	점수
국방 홍보원 운영	국방환경/정책 이해 제고기여도 (점)	국방일보	186	183	미흡	50.0
		국방TV				
		국방FM				
	홍보서비스이용자	국방일보홈 페이지				
		유투브 조회수				
		라디오 청취률				

자료: 국방부

실제 2013년 「군홍보물 만족도」 조사 결과²²⁾에서도, 40%이상의 장병들이 국방 일보를 제외한 홍보매체²³⁾를 거의 접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국방일보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의 장병 정신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에 대한 활용도 및 효과성은 크게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 2013년 장병의 국방 홍보매체 구독·시청·청취 현황

구분	거의 보지 않음/ 거의 듣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매일 (주 5회)
국방일보	22.3%	35.8%	20.4%	21.3%
국방TV	41.2%	45.6%	10.2%	2.9%
국군방송 라디오	68.0%	22.7%	4.2%	4.3%
구분	거의 못 봄	가끔 봄	매달 봄	
국방저널	40.8%	47.8%	10.1%	

자료: 국방부

22) 2013년 「군홍보물 만족도」 조사(2013.12.16., 한국사회경제연구원)

23) 국방홍보매체

종류	대상
국방일보(15만부)	장병, 예비역
국방저널(2.2만부)	군 간부 중심
국방TV(1일 24시간)	장병, 일반국민
국방FM(1일 18시간)	일반국민

자료: 국방부

따라서 매체별 고객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미디어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홍보매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방 TV 채널 성격에 부합되는 국내 프로그램을 구입할 필요성이 있다. 국방홍보원은 2013년 국내프로그램 4편, 해외프로그램 26편을 각각 3억 800만원, 9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구매하였다. 그 중 국내 프로그램의 경우 2013년은 EBS와 KBS 제작 프로그램을 연말에 구매하여 다음해에 방영하였고, 2014년도에도 ‘한 국영화결작선’을 구매하여 방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TV의 목적은 국민에게 국방정책을 홍보하는데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국내 구매 프로그램은 국방홍보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므로 국군방송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어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국방TV에서는 전문편성 방송사로서의 채널 성격을 고려하여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안보미디어의 정체성 및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방영할 필요가 있다.

[표 4] 프로그램 구매 현황

(단위: 개)

구분	국내 구매		해외 구매	
	프로그램	편수	프로그램	편수
2013	4	208	26	217
2014	1	22	0	0

주. 2014. 8. 31 현재

자료: 국방부

[표 5] 프로그램 구매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예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해외프로그램 구매	987	641	331
국내프로그램 구매	308	244	151

주: 1. 해외프로그램 평균 구매 단가: 4,484,923원

2. 국내프로그램 평균 구매 단가: 2,800,000원

자료: 국방부

[표 6] 국내 구매 프로그램 내역

(단위: 백만원, 개)

프로그램 명			계약금액	편수
2013	극한직업	EBS	27	52
	스페이스 공감		62	52
	한국인의 밥상	KBS	74	52
	걸어서 세계속으로		80	52
	소계		244	208
2014	한국영화걸작선		27	22
	총계		27	22

주: 20114. 8. 31 기준

자료: 국방부

9. 병영문화개선: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확충 필요

- 병영문화 선진화를 통한 사고예방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1,800만원(12%) 증가한 129억 7,000만원 편성
- 여성고충상담관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사·여단급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

가. 현황

병영문화개선(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병영문화 선진화를 통한 사고예방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상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4억 1,800만원(12%) 증가한 129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병영문화개선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병영문화 개선 (일반회계)	9,871	11,552	12,970	1,418	12

자료: 국방부

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격오지 부대 확충 필요

국방부는 군내 악·폐습 척결과 과학적 사고예방 시스템 정착을 통한 인명사고 예방 등 장병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²⁴⁾을 운영하고 있다. 동 제

24)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자격기준 및 선발절차

- 병영생활상담관 채용 및 자격기준
 - 채용방식 : 기간제근로자(5년 초과시 무기계약근로자)
 - 자격기준
 - 자격증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 학력·경력
 -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도는 2007년에 기본권전문상담관 20명을 시험운영하면서 점차 확대되어 2014년 8월말 기준 여단급 제대에 246명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복무부적응병사 조기식별, 복무적응유도, 현장위주 상담과 조언, 성관련 고충처리 등 안정적 부대관리여건을 조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안
인원	42	105	106	95	159	199	246	320
예산				4,131	5,852	8,098	9,477	11,043
운용제대	사단(함대, 비행단)급						여단, 연대급	

주: 2017년부터 연대급 1명 배치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 추진

자료: 국방부

각 군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육군이 177명, 해군 37명, 공군 22명, 국직부대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예산안에는 현재보다 74명 증원된 320명의 상담관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다.

국방부는 2017년까지 병영상담관 357명을 확보하여, 연대급에 1명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사단급에 병영상담관 2~4명이 배치됨으로써 병력에 비해 상담관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최근 22·28사단 총기사고 등 사고발생이 잦은 격오지(GP, GOP)부대의 증원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군내 폭력 등 사고예방차원에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증원이 필요하며, 또한 이들의 대다수가 격오지 부대에서 근무해야하므로 우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당지급 등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의 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 여성고충상담관의 점진적 폐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점진적 확대 필요

국방부는 현재 병영생활전문상담관외에 여성고충상담관 및 성고충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병영상담관이 각급 부대별 주로 남성 병사들의 고충 상담이 주 임무인 반면, 여성고충상담관과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주로 여성군인의 고충상담 등을 주임무로 한다. 여성고충상담관은 현재 육군이 128명, 해군 19명, 공군 29명 등 총 213명(사·여단급)이 근무하고 있고, 민간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한 성고충전문

상담관은 23명(군사령부/군단급)이 근무하고 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성관련 사고의 특성상 ‘민간 여성인력’으로 상담전문가를 운영하도록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2012.12)에 따라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여성고충상담관 제도는 2008년부터 여성고충 처리를 위한 별도 창구가 없어서 사·여단급 이상 제대에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표 3] 여성고충상담관 운영 현황

구 분	육 군	해 군	해병대	공 군	국 직	계
인원(명)	128	19	7	29	30	213

자료: 국방부

그런데 여성고충상담관 제도는 주로 여군 간부가 본인의 기본임무외 부가적 임무수행(겸직)으로 상담에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상담능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급자의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즉, 여성고충상담에 있어 상담과 관련된 내용이나, 위법 사실 인지 시에도 군의 폐쇄적인 구조로 문제해결에 실효적으로 대응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표 4] 여성고충상담관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 산	243	307	311	366	397
집 행	243	307	311	361	-

자료: 국방부

한편, 2014년에 처음 도입한 성고충상담관제도는 관련 법령(훈령)²⁵⁾을 정비하지 못하고, 예산도 반영되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예산에서, 활동비는 여성고충상담관(정책활동지원사업) 예산에서 전용하여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5년 예산에 신규로 성고충상담관 23명 운영

25)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2013.11.27)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인원은 군단급 이상 제대에 1명씩 운영하고 있는데, 여군²⁶⁾이 현재 1만명에 육박하는 추세에 비추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과중한 부담으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여성고충상담관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성고충 상담과 예방교육 등 전문상담 능력을 겸비한 성고충상담관의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사·여단급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5] 상담관별 주요 임무

구 분	임 무	비 고
성(性) 고충 전문상담관 (민간)	● 병영내 성(性) 관련 고충 접수 / 상담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중 성 고충분야 전담도록 특화하여 운영 * 전문상담 가능(여성 우선지원) ● 성군기 사고예방활동 지원(교육, 집단상담 등)	전담
여성고충상담관 (군 복무 5년차 이상인 자)	● 해당부대 여성인력의 고충 접수·보고·조치	겸직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민간)	● 병영내 고충해소(전문적 심리상담 등) ● 복무부적응 장병에 대한 지원(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등)	전담

자료: 국방부

26) 여군 현황

구 분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합계
인원	6,240명	1,150명	320명	1,510명	9,230명

주: 2014. 6.31 현재

자료: 국방부

10. 정책연구활동(R&D): 연구용역의 적극 공개 · 활용 및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국방정책 및 정보체계분야의 중·장기 정책연구 및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400만원(△5.0%) 감소한 8억 3,900만원 편성
- 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부 3.0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결과 공개 확대와 연례적인 집행실적 부진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가. 현황

정책연구활동(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국방정책 및 정보체계분야의 중·장기 정책연구 및 현안문제에 대한 대안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400만원(△5.0%) 감소한 8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정책연구활동(R&D)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정책연구활동(R&D) (일반회계)	841	883	839	-44	-5.0
-국방정책연구비	669	661	650	-11	-1.6
-정보체계연구비	172	192	189	-3	-1.5
-선진국방연구비	-	30	-	-30	-100

자료: 국방부

나. 연구결과의 성과 미흡 및 집행실적 부진 개선 필요

국방부는 정책연구과제 수행경비를 전액 한국국방연구원 정부출연금으로 운용하였으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일환으로 1999년부터 연구사업비 일부를 국방부 연구용역비로 편성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용역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중앙행정기관 정책연구 성과점검 결과(안전행정부 주관), 국방부의 정책연구용역 사업 평가가 70.99로 “미흡” 판정이 나왔다.

[표 2]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 성과 점검 현황

점검 과제수	정량점검	정성(품질) 점검	점검 합계
116	69 (90%환산:62.1)	88.89 (10%환산:62.1)	70.99 (미 흡)

주: 점수구간- 우수(100~90점), 보통(89~80점), 미흡(79점 이하)

자료: 국방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연구결과 평가시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과제담당관과 외부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²⁷⁾ 하여야 하나, 상당수 과제의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과제담당관만이 참여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은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책연구 결과를 공동활용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통하여 정책연구결과를 등록하여야 하나, 일부 과제의 경우 ‘비공개’라는 사유로 정책연구보고서 전체본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의 각종 결과물을 비공개하더라도 프리즘에는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연구용역의 공개율을 살펴보면, 중앙부처 평균 79.0%인 반면, 국방부는 40.4%로 연구결과의 대국민 공개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²⁸⁾

27)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① 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8) 2013년 공개율- 중앙행정부처 평균: 79.0%, **국방부 40.4%**

[표 3] 정책연구용역 지표별(정량) 성과점검 현황

점검지표(배점)	확인점검 점수 (안행부)	확인점검결과 및 의견 비고
위원회심의율(5)	5	
위촉위원 참석여부(5)	5	
수의계약 심의율(15)	15	
적정평가 과제율(20)	0	상당수 과제 시행규칙 위반 (외부전문가 또는 과제담당관만이 참여 평가)
시정조치 과제율(5)	10	
활용보고서 등록율(25)	25	
프리즘 등록률(15)	9	
비공개 적정여부(5)	0	프리즘을 통해 연구결과를 등록 해야 하나, 일부과제 미등록
기타의견	-	
총점 (100)	69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평가, 활용, 프리즘 등록 등 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정부 3.0 취지에 맞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결과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상당 규모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집행률이 2011년 83.4%, 2012년 83.7%, 2013년 81.4%로 매년 80%초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업준비에 있어 치밀한 계획의 미흡으로 연구용역 계약이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 지다보니 다수의 용역이 이월되면서 집행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4] 정책연구활동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1	1,004	132	1,136	947	159	30	83.4
2012	1,004	159	1,163	973	180	10	83.7
2013	853	180	1,033	841	74	118	81.4
2014	883	74	957	197			20.6

주: 2014. 7. 31 기준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연구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집행관리로 이·불용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동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1. 방위비분담금: 제9차협정 제도개선사항의 조속한 이행 추진

-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한미간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측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1억원(5.6%) 증가한 8,448억원 편성
-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 9차협정 제도개선사항의 세부 이행합 의서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

가. 현황

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일반회계, 계속, 직접)은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미간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측이 지원하는 예산으로, 인건비, 군사시설개선, 연합방위력 증강, 군수지원 등 4개사업으로 구성된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51억원(5.6%) 증가한 8,448억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방위비분담금 (일반회계)	800,578	799,700	844,800	45,100	5.6
-인건비	331,811	341,348	349,000	7,652	2.2
-군사시설개선	297,237	297,302	337,334	40,032	13.5
-연합방위력증강	32,391	7,200	-	-7,200	-
-군수지원	139,139	153,850	158,466	4,616	3.0

자료: 국방부

나. 방위비분담금의 연례적인 이월 문제

최근 5년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과도한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예산액 대비 34.8%인 2,595억 6,200만원, 2013년에는 예산액 대비 25.7%인 1,889억 9,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다.

[표 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B)	이월률 (B/A)	불용액
2009	760,000	82,006	727,253	112,876	14.9	1,878
2010	790,400	112,876	705,138	197,564	25.0	574
2011	732,531	197,564	728,163	201,034	27.4	835
2012	746,095	201,034	638,061	259,562	34.8	47,896
2013	736,000	259,562	800,578	188,997	25.7	5,987
2014	799,700	188,997	666,657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방위비분담금 중 군사시설 분야의 현물지원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²⁹⁾. 방위비분담금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분되는데, 현금지원의 경우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측 계좌에 이체하는 것으로 집행이 완료된다. 반면, 현물지원의 경우에는 미국측이 필요로 하는 소요를 한국측에 통보한 이후에 집행이 시작되므로 집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군사시설사업의 경우 미국측이 설계를 완료하여 한국측에 제공하면, 한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건설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통상 해당 회계연도 5~6월경이 되어서야 미국측 설계가 한국 정부에 접수되므로 사업추진 일정상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최근 3년의 집행률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1,651억 7,600만원, 2012년에는 1,948억 3,600만원, 2013년에는 1,320억 2,1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14년 8월말 현재 집행률은 49.4%로 예산현액 4,314억원중 2,131억원을 집행하였다.

29)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3조: 인건비 분담은 현금지원이며, 군수비용 분담은 현물지원이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은 현금지원과 현물지원으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의 이행 원칙에 관한 교환각서가 채택되어 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연도 말에 집행 현물지원분이 남아있을 경우 이 지원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미집행 지원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다.

[표 3] 군사시설개선 및 군수지원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군사 시설 개선 사업	2011	272,057	130,318	400,975	235,652	165,176	147	58.8
	2012	225,164	165,176	390,340	152,160	194,836	43,344	38.9
	2013	235,462	194,836	430,273	297,237	132,021	1,016	69.1
	2014	297,302	132,021	431,443	213,148	-	-	49.4
군수 지원 사업	2011	90,623	62,372	154,330	143,462	10,290	578	93.0
	2012	160,231	10,290	168,912	123,227	41,135	4,550	73.0
	2013	140,538	41,135	181,698	139,139	40,188	2,371	76.6
	2014	153,850	40,188	194,038	99,176	-	-	51.1

주: 2014. 8. 31 기준

자료: 국방부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주한미군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미국측의 소요제기 및 설계제공 시기를 앞당길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 이월규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다. 방위비분담금 미지급 잔액 및 불용액 처리 문제

국방부는 연례적인 이월규모 등을 고려하여 미국측과 협의 하에 2011년부터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총액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2011년에는 방위비분담금으로 협정액 대비 800억원 부족한 7,325억원, 2012년에는 협정액 대비 900억원 부족한 7,461억원, 2013년에는 협정액 대비 1,335억원 부족한 7,360억원, 2014년에는 협정액 대비 1,203억 부족한 7,997억원을 편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까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중 4,238억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다.

[표 4] 방위비분담금 협정액과 예산액 비교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방위비분담 협정액(A)	7,904	8,125	8,361	8,695	9,200	42,285
예산액(B)	7,904	7,325	7,461	7,360	7,997	38,047
차 액(A-B)	0	800	900	1,335	1,203	4,238

주: 방위비분담 협정액(A)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라 매년 미국측에 지급하도록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국방부

또한 특별협정 이후 방위비분담금 불용액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234억원의 불용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방위비분담 협정액은 한미간 협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미국 측에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한 절감액과 불용액에 대한 지출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향후 일정 시점이 되면 미국 측에 지급하여야 한다.

특히, 미지급 잔액과 불용액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요구될 경우 국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미국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지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5] 방위비분담금 협정 이후 불용액(2003-2013)

(단위: 억원)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불용액	10	3	12	361	168	108	19	6	8	479	60	1,234

주: 2003년 현물 지급 이후 불용액 현황

자료: 국방부

라. 제9차 협정의 제도개선사항 세부 이행합의서 개정 조속 추진 필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4월 16일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제9차 특별협정에서는 매년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총액을 증액하되,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은 4%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1월 11일 제9차 협정 협상시 방위비분담금 집행에 있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군사시설분야 이월문제, 방위비 예·결산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포괄적 제도개선에 합의하였고, 국회는 동 협정안의 비준동의안을 통과 시키면서 부대의견을 첨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례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제도개선사항과 국회부대의견에 대한 이행사항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이 부진하였던 군사건설 분야와 군수지원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는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 및 「군수비용분담 이행합의서」 등 세부 이행합의서의 개정이 완료되어야 제도개선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데 현재 한·미간 논의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 9차협정 제도개선사항의 세부 이행합의서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예산안 심사시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표 6] 제9차 협정 제도개선 및 부대의견 세부 추진 현황

제도개선사항	국회 부대의견
•분담 항목별 배정 및 소요 검토에 대한 조정 강화 → 제1~2차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개최 (2014. 6.10~8.12) → 미측, 2015년 최종 배정액제출(2014.8.15)	•주한 미군의 평택기지이전사업 종료(2016) 이후 군사건설 사업소요 국회보고 →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2014. 6.10)에서 미측의 협조 요청
•군사건설 분야의 상시 사전 협의체제 구축 → 현물군사건설 이행합의서 협의 진행중	•협정 유효기간(5년)과 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관련 연구용역 실시, 1년 내 국회보고 → 외교부 추진
•군수지원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군수비용분담 이행합의서 협의 진행중	•차기 협상 개시 시점을 기존 협정 종료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1년 전으로 하고, 국회 예산안 제출시점 이전에 비준동의안 제출 → 차기 협상시 외교부 추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 노력 및 인건비 분야 투명성 제고 → 인건비분담 계획의 이행 관련 미측이 제공하는 상세정보 내용을 이행약정상 반영(2014.6)	
•방위비예산 편성 및 결산 투명성 강화(국회보고) → 국회심의회 항목별배정에 대한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 협의결과 공유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12.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대책 검토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두 개 권역으로 이전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87억 7,700만원(24.7%) 증가한 8,005억 5,500만원이 편성
- 국방부는 반환기지의 매각 지연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이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부지 매각 활성화를 통한 세입확보에 노력할 필요

가. 현황

주한미군기지이전(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006~2016, 직접)은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따라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기지를 두 개 권역³⁰⁾으로 통·폐합 이전하여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587억 7,700만원(24.7%) 증가한 8,00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A)	2015 예산안(B)	증 감	
				B-A	(B-A)/A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19,175	641,778	800,555	158,777	24.7
-평택기지이전사업	294,927	500,980	592,459	91,497	18.3
-연합토지관리계획	4,433	1,077	8,519	7,442	691.0
-평택지원	73,700	73,700	73,700	-	-
-환경조사및치유	1,126	2,502	2,950	448	17.9
-기타이전지원	14,933	18,357	49,217	38,860	168.1
-예수이자상환	30,056	45,162	73,710	28,548	63.2

자료: 국방부

30) 중부권: 평택시 중심
남부권: 대구·김천 등 중심

나.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추진 현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용산기지이전협정(2004) 및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2002)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 사업의 만료 시점은 당초 2008년이었으나, 2012년, 2016년으로 연기되었고 이에 따라 총사업비도 5조 4,710억원에서 8조 8,670억원으로 증가³¹⁾하였다. 용산기지이전계획(YRP)³²⁾에 따른 9개 기지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³³⁾에 따른 8개기지는 우리측 부담으로, 연합토지관리계획중 나머지 23개 기지는 미국측 부담으로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유형

구분	대상 기지수	이전지역	비용부담	비고
YRP	9개 ¹⁾	평택	한국	먼저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비용 부담
LPP	4개 ²⁾	평택		
	4개 ³⁾	평택 외		
	23개	평택 등	미국	

주: 1) 메인·사우스포스트, 501정보대, 유엔사, 수송부, 8군 휴양소, 니블로 베릭스, 극동공병단, 성남 골프장

2) 동두천(캠프 모빌, 캠프 님블), 서울(캠프 김), 인천(캠프 마켓)

3) 부산DRMO(부산→김천), 캠프 페이지 일부(춘천→군산 기지), H-805(캠프 위커→왜관), 캠프 홀링위터(의정부→포천 영평)

자료: 국방부

기지이전사업 총 57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한·미 양측이 합의한 시점(2010.12)에 추계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총사업비는 8조 8,670억원이다. 이 중 건설비가 5조 341억원이고, 평택지원·환경조사 사업 등의 지원비가 3조 8,329억원이다.

31) 총사업비 증감 현황

(단위: 억원)	
	총사업비
2004년 기준	54,710
2010년 기준	88,670
증감	33,96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32) YRP: Yongsan Relocation Plan

33) LPP: Land Partnership Plan

[표 3]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총사업비 현황

기투입(A)	향후 소요액(B)	총소요액(A+B)
3.03조원	5.83조원	8.86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0.84조원	-기부대양여: 3.4조원	-건설비: 5.03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16조원	-특별회계: 2.43조원	-지원비: 3.83조원
-반환부지매각대금: 1.03조원		

주: 2014.8.31. 기준

자료: 국방부

다. 재원 부족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의존 대책 마련 필요

동 사업의 반환 기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반환대상 기지 80개 중에서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51개가 반환되었고, 나머지 29개는 2016년 이후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주한미군부대 및 그 기능이 적정한 대체시설로 이전된 후 반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⁴⁾

[표 4] 반환부지 처리 계획

(단위: 개소)

	계	기매각	매각진행	매각예정	기부양여	군활용	용산공원	기타
기반환	51	6	17	4	1	11	1	11
반환예정	29	-	3	13	3	4	3	3
계	80	6	20	17	4	15	4	14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토지매각대상은 총 43개소(기매각 6, 매각진행 20, 매각예정 17)로 총 매각금액은 4조 7,594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 2조 4,300억원³⁵⁾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4~2019년까지의 수입계획을 보면 토지매각대 등을 포함한 자체수입은 1조 5,262억원에 불과하며, 토지매각대는 1조 2,98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34)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제2조제9항

35) 2014년 8월말이후 소요액 5.83조원중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LH 공사가 부담하는 3.4조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별회계에서 충당해야 하는 비용

국방부는 반환부지 매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세입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상당 부분 의존³⁶⁾하고 있다. 2014년 8월말까지 1조 1,340억원을 예수하고 1,592억원³⁷⁾을 이자로 지급했으며, 2014년에 4,276억원 등 2019년까지 필요한 사업비 2조 4,300억원의 94%인 2조 2,802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표 5] 자체수입 및 예수금 연도별 계획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자체수입 (토지매각대 등)	2,099	2,061	2,104	2,524	3,161	3,313	15,262
공자기금 예수금	4,276	5,945	5,861	5,030	1,690	-	22,802
합 계	6,375	8,006	7,965	7,554	4,851	3,313	38,064

자료: 국방부

[표 6] 최근 4년간 토지매각대금 계획대비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세입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C)	수납율(C/A)
2011	221,340	181,366	181,185	81.9
2012	248,734	216,329	215,344	86.6
2013	205,600	168,741	168,035	81.7
2014	205,098	71,006	70,933	34.6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36) 연도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억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기금예수	3,131	-	-	-	350	3,507	1,604	1,194	2,435	2,250
원금상환	-	-	-	-	-	3,131	-	-	-	-
누계잔액	3,131	3,131	3,131	3,131	3,481	3,857	5,461	6,655	9,090	11,340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37) 2014년 8월까지 누적 이자상환액은 1,592억원임.

국방부는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충당하고 기지이전 완료 후 반환되는 부지의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2024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연례적으로 반환부지 매각 지연으로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4년간 수납률을 살펴보면 수납률이 80%초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반환부지 매각이 지연될 경우 이자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지가상승률은 1%내외에 불과하지만,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율은 3.6%수준으로 그 격차만큼 추가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7] 연평균 지가상승률 대비 예수금 이자 상승률(연평균)

	2011	2012	2013	(단위: %) 연평균
지가 상승률(전국)	1.166	0.956	1.135	1.1
예수금 이자율	4.17	3.38	3.23	3.6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동 특별회계의 부족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상당부분 충당하고 있고, 또한 예수금 상환이자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 반환된 부지의 매각 활성화 등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3. 1군지사 이전: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 원주시 요청으로 도심권에 위치한 1군지사를 예하 6개 주둔 부대와 함께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억 2,900만원(24.0%) 증가한 99억 6,100만원 편성
- 2015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은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의 일부 조정 필요

가. 현황

1군지사 이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010~2016, 직접)은 원주시 요청으로 도심권에 위치한 1군지사를 예하 6개 주둔 부대와 함께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9억 2,900만원(24.0%) 증가한 99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1군지사 이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1군지사 이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04	8,032	9,961	1,929	24.0
-토지매입비	-	5,000	5,000	-	-
-기본조사설계비	104	1,377	2,622	1,245	90.4
-실시설계비	-	1,655	2,339	684	41.3

자료: 국방부

나.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공유재산의 매수·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사업이다. 이중 군용시설 이전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의 및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 1군지사 이전사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2,992억원을 투입하여 원주시 도심에 있는 1군지사를 이전하는 사업이다.

2010년부터 예산은 꾸준히 편성되었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여 계속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 원주시와의 원활한 협의 및 협상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동 사업은 2014년 8월말 현재 집행률이 0.0%로 올해도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와 1군지사간 합의각서상 부대이전을 위하여 원주시가 용도지역 변경 및 부대진·출입로 개통, 서부순환도로 조기 개통 등의 선결조건에 대해 약속하였으나, 원주시의 약속 미이행으로 기본설계마저 실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 2] 1군지사 이전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1	4,355	-	4,355	-	-	4,355	0.0
2012	2,324	-	874	314	402	158	35.9
2013	5,441	402	4,655	104	-	4,551	2.2
2014	8,032	-	8,032	-	-	-	0.0

주: 2014. 8. 31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15년 예산안에 토지매입비(50억원), 기본조사설계비(26억 2,200만원), 실시설계비(23억 3,900만원)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용시설 이전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하며 과도한 규모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군지사 이전사업도 역시 사업집행률이 극히 부진하다.

[표 3] 군용시설 이전사업(단위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2011	505,263	93,326	598,589	323,672	34,064	240,853	54.1
2012	279,646	34,064	313,710	191,417	17,069	105,224	61.0
2013	216,039	17,069	233,108	145,391	5,605	82,112	62.4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은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에 대하여 국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이전대상지역의 여건 및 추진 일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특별회계 사업비의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한바 있다.

현재 원주시와의 협의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2015년도 예산에 집행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편성하는 것은 소요기간(약 12개월)을 고려할 때 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 사업의 2015년 예산중 실시설계비 예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 동석사업: 총사업비 조정 지연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 전작권 및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정보부대를 2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22억 4,100만원(159.8%) 증가한 361억 5,900만원 편성
- 민원발생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의 사업추진 여건과 동 특별회계의 세입부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할 필요

가. 현황

동석사업(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010~2017, 직접)은 전작권 및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정보부대를 2개 권역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22억 4,100만원(159.8%) 증가한 36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동석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동석사업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1,368	13,918	36,159	22,241	159.8
-기본조사설계비	34	-	-	-	-
-시설비	10,395	12,764	33,174	20,410	159.9
-감리비	924	707	703	-4	-0.6
-시설부대비	15	27	30	3	11.1
-자산취득비	-	420	2,252	1,832	436.2

자료: 국방부

나. 총사업비 조정 등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한 적정 예산편성 필요

동 사업은 총사업비 761억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전국에 산재된 정보부대를 2개권으로 통합하기 위함 사업이다. 2009년 12월에 이전 사업 승인, 2011년 2월에 설계완료, 2012년 10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4년 8월말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표 2] 사업 추진 경과

추진 경과
●2009. 12 : 이전사업 승인
●2011. 2 : 설계완료
●2012. 10 : 공사 착수
2015년 예산반영 (2개권역)
●A지역(금토동, 159억원) 및 B지역(우이동, 49억원)
●C지역(방배동, 64억원) 및 D지역(성남동, 60억원)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그런데 동 사업의 2010년 사업 착수 이후 최근 4년간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328억원, 2012년 257억원, 2013년 108억원 등 민원발생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으로 매년 과다한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지연 사유로 주거시설 재건축 지역에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 생활침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방부에서는 2013년 8월에 민원해소를 위해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기재부에 총사업비 조정에 대해 협의 하였으나, 기재부가 ‘수도권 관사 수급계획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요구하여 설계변경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이 보류된 상태이며, 국방부의 재건의(2014.6)로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조정을 재검토 중이다.

[표 3] 최근 4년간 동석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2011	36,346	3,521	-202	39,665	6,804	1	32,860	17.2
2012	34,406	1	-8,403	26,004	17	233	25,755	0.1
2013	12,554	233	9,432	22,219	11,368	-	10,851	51.2
2014	13,918	-	-	13,918	8,005	-	-	57.5

주: 2014. 8.31 기준

자료: 국방부

2014년 8월말 현재 동 사업의 집행률은 57.5%로 시설공사가 진행 중이나, 제반여건을 고려할 경우 일정 규모의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원발생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의 사업추진 여건과 동 특별회계의 세입부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을 적정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15. 17사단 101연대: 총사업비 재검토 등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 방화대로 조기 개설을 위해 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15년에 5억 6,700만원 편성
- 국방부는 동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제언에 따라 이전사업의 적절성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등을 정확히 재산정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가. 현황

17사단 101연대(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신규, 직접)은 지역주민이 권익위원회에 ‘군부대 이전을 통한 방화대로 개설’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방화대로 조기 개설을 위해 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5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17사단 101연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17사단 101연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	567	567	순증
-기본조사설계비	-	-	567	567	순증

자료: 국방부

나. 이전 적절성 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등 재 산정 필요

동 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2,166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역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방화대로 조기개설 고충민원을 제기(2012년 5월)하면서 추진된 사업이다. 2013년 5월 권익위 주관하에 국방부는 이전사업 추진을, 서울시 및 강서구는 이전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현 주둔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을 상호 협의하였고, 2013년 10월에 국방부는 부대이전 예정지를 강서구 ○○동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그런데 동 사업은 신규 반영된 사업으로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³⁸⁾에 따른 사전타당성 검토 대상사업이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한국국방연구원) 결과, 동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상 위험요인에 대한 ‘제한적 타당’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부대이전 사업계획서 작성 요건을 고려하여 기술조사를 통한 부지선정, 시설규모 및 공간배치, 실 공사비 산정 등의 조정 계획안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하여 기존부지 용도지역변경 등 서울시 및 강서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제언이 제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현재 이전사업의 적절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적절성 조사 결과 이전재원 조달 가능성 및 총사업비 등의 재 산정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방군사설이전특별회계’의 신규사업은 사전준비 및 치밀한 계획 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실정이다. 2014년의 신규사업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8월말 현재 155공병대대 및 657포병대대 이전사업 등 2건의 신규사업 모두 기본계획 용역 착수 지연 등으로 전혀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군용시설이전 신규사업 집행 현황(2014)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155공병대대	727	-	0.0
657포병대대	666	-	0.0

주: 2014년 8.31 기준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의 정책적 제언에 따라 이전사업의 적절성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여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등을 정확히 재산정하고, 기타 정책적 제언들을 점검하여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반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8) 「국방 전력운영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및 심층평가 운용지침」 제6조

②사전타당성 검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다만,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포함)
2.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16. 예비군훈련대: 특별회계 사업으로의 편성 부적정

- 221연대 통합훈련장의 정상적인 시험운영과 56사단의 부족한 과학화훈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15년에 2억 5,100만원 편성
- 동 사업은 세입 없는 세출로서 동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 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바, 동 사업을 일반회계 예비전력관리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가. 현황

예비군훈련대(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신규, 직접)는 221연대 통합훈련장(금곡예비군훈련대)의 정상적인 시험운영과 56사단 재배치 이후 예비군훈련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하여 부족한 과학화훈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예비군 훈련대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예비군 훈련대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	251	251	순증
-기본설계비	-	-	50	50	순증
-실시설계비	-	-	101	101	순증
-시설비	-	-	100	100	순증

자료: 국방부

나.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로 이관 필요

예비군훈련대 사업은 총사업비 41억 4,500만원 규모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육군본부 221연대 통합훈련장(금곡예비군훈련대)의 부족시설을 신축하는 신규사업이다. 2015년에는 기본설계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1억 100만원, 시설비 1억원 등 총 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기존 부지내 실내사격장, 마일즈전술훈련장, 통제시스템 등 과학화 훈련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2조³⁹⁾ 및 제5조⁴⁰⁾는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표 2] 예비군훈련대 사업현황

- 총사업비: 4,145백만원
- 사업기간: 2015~2016
- 사업규모 : 건물 1동(연면적 2,448㎡)
 - 실내사격장: 3,715백만원
 - 마일즈전술 훈련장 캣워크/통제실: 200백만원
 - 통제실 통제시스템: 230백만원

자료: 국방부

그런데 동 사업은 군부대 이전이나 여러 지역 시설을 통합·조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 시설 부지내에 새로이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 훈령」 제4조제2항⁴¹⁾은 이전대상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이 충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세입·세출 균형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 39)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 4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2. 국방·군사시설이전에 따라 소요되는 군관사의 매입비용
- 41)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 훈령」 제4조(이전사업의 대상 및 요건) ②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이전대상 국유재산(토지 및 건물 등을 말한다)의 매각대금으로 이전비용이 충당되어야 한다. 다만, 타 이전사업의 잉여세입 전환 또는 별도의 비용 충당(지방자치 단체 등의 예산지원을 포함한다)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은 세입 없는 세출로서 동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 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데, 동 사업을 일반회계 예비전력관리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17. 공공자금 예탁금: 세입수납 실적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편성 필요

- 세출예산규모를 초과한 세입 예산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7억 5,900만원(△1.8%) 감소한 1,515억 1,100만원 편성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의 토지매각 실적이 저조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탁금의 규모를 감액 조정할 필요

가. 현황

공공자금예탁(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계속, 직접)은 세출예산 규모를 초과한 세입 예산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예탁하는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27억 5,900만원(△1.8%) 감소한 1,51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공공자금 예탁금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154,270	151,511	-2,759	-1.8

자료: 국방부

나. 토지매각대 등 세입실적을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따라 2011년부터 편성되기 시작하였다.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48.9%, 2012년 13.2%, 2013년 0.0% 로 예탁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2014년의 경우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 3,479억원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예산액은 1,543억원이지만, 군용지 매각지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세입수납 예상액은 약 1,600억원이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매각 예산의 과다편성 및 토지매각실적

저조로 여유자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탁금의 과다편성은 세입의 예탁이 자수입과도 연관되어 있어 전체 세입규모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표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C/B)
2011	298,429	-	298,429	146,000	-	152,429	48.9
2012	227,048	-	227,048	30,000	-	197,048	13.2
2013	221,431	-	221,431	-	-	221,431	0.0
2014	154,270	-	154,270	-	-	154,270	0.0

주: 2014.8.31. 기준

자료: 국방부

따라서 토지매각대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사 부지의 매각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토지매각 실적이 저조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탁금의 규모를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분석 총 17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집행실적 부진 3건, 법·제도 미비 5건, 사업의 유사중복 1건, 예산 과다 편성 3건, 사업 성과미흡 2건, 사업계획 부실 3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집행실적 부진]						
일반회계	정보통신 체계운영	정보통신 기반체계	187,981	196,373	223,762	○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되는 전산장비 임차료에서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일반회계	장비획득	통신전자 장비	38,670	40,876	42,793	○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노후 장비 위주로 필수소요만 반영하는 등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집행 가능한 예산만 반영하여 재정의 효율을 기해야 할 필요
일반회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방위비 분담금	800,578	799,700	844,800	○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 9차협정 제도개선사항의 세부 이행합의서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할 필요
[법·제도 미비]						
일반회계	피복비	기본피복	303,343	330,046	335,954	○ 공정한 경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품목의 경쟁전환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조달원 복수화 및 일반경쟁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일반회계	피복비	특수피복	109,325	111,217	135,515	업체투자 연구개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방탄복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특수분야에서 생산업체를 다양화하여 방산계약에 있어 규범성을 확립할 필요
일반회계	군인적자원 개발교육	민간위탁 교육	28,411	31,113	29,029	국외 박사과정 위탁생의 교육기간 연장 및 체재비 과다지출로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교육기간연장 및 체재비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직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일반회계	병영문화 개선	병영문화 개선	9,871	11,552	12,970	여성고충상담관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성고충상담관의 운영·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사·여단급까지 확대 운영할 필요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군사시설 이전사업	예비군 훈련대	-	-	251	동 사업은 세입 없는 세출로서 동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의 대상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바, 동 사업을 일반회계 예비전력관리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

[사업의 유사중복]

일반회계	전직지원	전직지원 교육	4,210	5,890	3,520	전역예정군인의 취업역량교육은 법적 근거 및 현역군인 관리의 일원화 측면에서 국방부에 편성할 필요
------	------	------------	-------	-------	-------	---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	------	------	------------	------------	-------------	------

[예산 과다 편성]

일반회계	과학화 훈련	과학화 훈련	39,191	42,205	55,411	○ 전작권 전환이 2015년이후로 상당기간 재 연기될것으로 보이는 바, 2014년부터 대폭 증원된 비상근 인력에 대한 감축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군사시설 이전사업	1군지사 이전	104	8,032	9,961	○ 2015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함께 편성하는 것은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집행가능성이 낮으므로 예산의 일부 조정이 필요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군사시설 이전사업	공공기금 예탁금	-	154,270	151,511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토지매각 실적이 저조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탁금의 규모를 감액 조정할 필요

[사업성과 미흡]

일반회계	국방홍보 사업	국방홍보 사업 제작 및 지원비	17,932	18,721	16,936	○ 매체별 고객수요에 부응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급격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미디어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국방홍보매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일반회계	정책연구 활동	정책연구 활동 (R&D)	841	883	839	○ 연구용역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부 3.0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결과 공개 확대와 연례적인 집행 실적 부진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사업계획 부실]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단	419,175	641,778	800,555	○ 국방부는 반환기지의 매각 지연 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과 이자가 증가하고 있는바, 부지 매각 활성화를 통한 세입확보에 노력할 필요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군사시설 이전사업	17사단 101 연대	-	-	567	○ 국방부는 동 사업의 사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제언에 따라 이전 사업의 적절성 조사를 신속히 실 시하여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등 을 정확히 재산정하고 그 결과 여부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반 영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군사시설 이전사업	동석사업	11,368	13,918	36,159	○ 민원발생 및 총사업비 협의 지연 등의 사업추진 여건과 동 특별회 계의 세입부족 등을 감안하여 2015년 예산중 시설비 및 자산취 득비 등의 일부 조정 필요

[병무청]

I. 2015년도 예산안 개요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세입(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32억 6,000만원(1,975.8%) 증액된 34억 2,500만원이다.

[표 1] 병무청 소관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272	165	3,425	3,260	1,975.8

자료: 병무청

세출(총계 기준)은 2014년 예산 대비 123억 6,300만원(6.6%) 증액된 1,998억 5,600만원이다. 총지출기준도 동일하다.

[표 2] 병무청 소관 세출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174,895	187,493	199,856	12,363	6.6

자료: 병무청

II. 예산안의 주요 특징

병무청은 병역자원 관리, 징집·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등 병무행정을 관장하는 부처이다. 2015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1,999억원으로 2014년 1,874억원 대비 125억원(6.6%) 증가하였으며, ① 투명·공정한 병역처분을 위한 징병검사 능력 확보, ② 현역병 입영 등 군소요 인원의 적정 충원, ③ 사회복무요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의 원활한 지원, ④ 효율적 정보시스템 운용 등을 통한 병무행정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

병무청 소관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병무청의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61억원(8.4%) 증액된 792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징병검사(7억원), 사회복무교육(6억원), 의무자여비(17억원), 시설관리(3억원), 병무행정정보화(24억원) 등이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60억원(5.7%) 증가한 1,104억원이며,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3억원(2.5%) 증가한 103억원을 편성하였다.

둘째, 병무청의 각종 워크숍 개최시 비목 편성이 부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워크숍 개최시 관련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비목별로 엄격히 구분한 적정 비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III. 주요 사업 분석

1. 병력동원소집관리: 워크숍개최 예산의 적정 비목 편성 필요

- 병력동원 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훈련을 실시,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2,200만원(17.3%) 증가한 8억 2,800만원 편성
- 병무청은 워크숍 개최시 관련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비목별로 엄격히 구분한 적정 비목을 편성할 필요

가. 현황

병력동원소집관리(일반회계, 계속, 직접)는 병력동원 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훈련을 실시,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에는 전년 대비 1억 2,200만원(17.3%) 증가한 8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표 1] 병력동원소집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2013 결산	2014 예산 (A)	2015 예산안 (B)	증 감	
				B-A	(B-A)/A
병력동원소집관리 (일반회계)	638	706	828	122	17.3

자료: 병무청

나. 적정 비목 편성 필요

병력동원소집관리는 군복무를 마친 자 등의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와 지자체 전시 병무전담직원의 전시 임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5년 동 사업 예산중 지자체 전시임무 교육담당 워크숍 개최 비용이 일반수용비로 800만원 편성되어 있으며, 동 비용으로 워크숍 개최를 위한 숙박, 임차료, 식비, 기타 인쇄비

를 충당할 계획이다. 병무청 전체 워크숍 개최 비용(일반수용비)을 살펴보면, 2013년에 약 2,900만원, 2014년 7월말 현재 1,700만원이 집행되었다.

[표 2] 병무청 전체 워크숍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2013	2014
워크숍 개최비용	29,153	17,185

주: 2014. 7.31 기준

자료: 병무청

그런데 워크숍 개최비용을 일괄적으로 일반수용비에 편성하여 숙박, 임차, 식비 등에 충당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¹⁾에 따르면, 워크숍 및 회의개최시 일반수용비는 자료 및 홍보물 인쇄 등으로, 숙박 및 식사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강당 사용료 등은 임차료로, 행사규모가 큰 경우는 위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병무청은 주요정책담당자 업무회의, 성과관리 워크숍 등 각 부서별로 워크숍 관련 예산을 매년 관행적으로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5년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각 부서별로 워크숍 개최비용 4,782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출예산의 목적과 비목 구분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워크숍 개최 시 관련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비목별로 엄격히 구분한 적정 비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 「2015년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58

[표 3] 2015년 워크숍 관련 예산 집행계획

(단위: 천원)

세부사업 (일반수용비)	예산 및 세부집행 계획
주요정책담당자 업무회의 (250-210-01)	• 주요정책담당자 워크숍 : 3,500 - 장소대여료 500, 식비 1,500, - 인쇄 1,000, 기타 500 • 주요정책 평가지원 워크숍 : 2,000 - 장소대여료 500, 식비 1,000, 인쇄 300, 기타 200
제안, 지식 업무 담당자 연찬회 (250-210-01)	• 소요액 5,500 - 숙박 및 강의실 임차 1,500, 식사 1,600 - 현수막, 책자 인쇄 700, 강사료 400 - 버스임차 600, 다과 300, 기타 400
지자체 전시업무 교육 담당 워크숍 (308-210-01)	• 소요액 8,000(4,000×2회) - 숙박 1,200, 임차료 600, 식비 1,800, 기타 400
성과관리 워크숍 (250-210-01)	• 소요액 5,500 - '16년도 성과지표 의견수렴 * 식대, 인쇄, 다과 등
창의실용관련 워크숍 (315-210-01)	• 소요액 5,520 - '15년도 창의실용분야 사례발표 및 연구모임 발전방안 등 토론 * 식대, 인쇄, 다과 등
책임실태조사관 워크숍 (309-210-01)	• 소요액 8,500 - 식사비 1,600, 강사비 400, 다과비 200 - 임차료(숙박비 포함) 3,500 - 기타수용비 등 2,800
산업지원 담당워크숍 (309-210-01)	• 소요액 5,000 - 식사비 1,250, 다과비 150 - 임차료(숙박비 포함) 600, - 기타수용비 등 3,000
국민신문고담당자 워크숍 (250-210-01)	• 소요액 1,300 - 식사비 800, 다과비 100 - 기타수용비 등 400
병적증명 발급 및 병역 공개 담당 워크숍 (310-210-01)	• 소요액 3,000 - 식사비 1,200, 강사비 100, 다과비 100 - 기타수용비 등 1,600
계	47,820

자료: 병무청

[예산안 분석 요약]

2015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분석 총 1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기타 1건으로 요약된다.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단위사업	세부사업	2013 결산	2014 예산	2015 예산안	분석사항
[기타]						
일반회계	충원활동	병력동원 소집관리	638	706	828	병무청은 워크숍 개최시 관련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비목별로 엄격히 구분한 적정 비목을 편성할 필요

예산안분석시리즈 2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I

발간일 2014년 10월 13일

발행인 국경복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사공삼디자인 (Tel 02·2268·7886)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행정예산분석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2)
-

ISBN 978-89-6073-764-8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4